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UR 협정에 따른 산업지원법제개선과 관련하여 -

1994. 12.

연구자 : 오준근(수석연구원)
신유균(관세청 서기관)
김정순(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발 간 사

오늘날의 경제사회는 국민경제사회에서 세계경제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이는 경쟁은 한 국가의 영역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무한경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국가적 재원으로 특정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타국의 경쟁기업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대국가는 국민경제현상을 자유방임하거나 단순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활동영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대표됩니다. 지원작용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반대급부없이 급여하는 방법,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하는 방법,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는 방법, 조세등 각종 공과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제주체에게 자금과 판로를 보장해주는 방법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작용은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로 포괄됩니다.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제도는 국제적 무한경쟁의 차원으로 볼 때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체계에 보다 공정한 경쟁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은 UR협정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UR 최종협정중의 일부로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이 타결되었고, 이 협정문은 각국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제도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의 3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조금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응해 나가며, 더 나아가 선진 경제국가로 도약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법제를 국제규범에 조화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1,2,3장에서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보조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을 개관하고, 보조금제도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 및 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법제를 조사·분석한 후, 현행법제에 근거가 부여되어 있는 보조금제도를 유형적으로 구분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현행 보조금제도의 분

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도표화하고, 이 도표에 각 보조금제도의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요건 및 절차, 통제기관, 통제방법 및 통제절차등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국내 보조금정비의 기준이 될 국제적 보조금규범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달아 우리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우리 보조금제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및 독일의 보조금제도를 그 법제와 운용의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의 고찰에 기초하여 제6장에서는 현행 보조금제도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제개선방안 제시단계에서는 정부의 그동안의 입법현황 및 입법계획과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조사·분석하는 입법의견조사분석의 방법도 일부 채용하여, 법제개선방안의 제시가 일부의 의견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위험성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보조금제도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조금제도의 조사 및 분석은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에 한정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로서의 보조금제도의 종합적 의의와 법적 성격의 규명, 보조금제도와 관련된 정부지원법제를 지배하는 법원칙의 제시, 현행 보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분석 및 운용실태 파악을 통한 보조금 제도의 체계화 및 문제점 발굴등의 작업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정당한 법적 근거에서 공평하면서도 합목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해석 및 분석, 주요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운용현황의 조사 및 분석,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및 외국법제와 현행법제와의 연관성 분석등의 작업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자유무역 및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국제무역기구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제정비를 통하여 국제적인 보조금시비에 무관하도록 국내법제 정비방안을 정비함에 일조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자료로 활용되며, 장·단기적인 법제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귀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등의 관계 전문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원의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아 보고서의 기획과 작성에 수고한 오준근 박사, 공동연구자로서 집필의 일부를 담당한 관세청의 신유균 서기관과 본원의 김정순 박사, 도표의 작성 및 정리에 수고한 송영선양과 심영란양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1994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張明根

목 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보조금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5
제1절 보조금제도의 의의	15
1.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간섭수단으로서의 보조금제도 / 15	
2. 보조금제도의 의의 / 16	
제2절 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19
1. 헌법적 근거 / 19	
2. 법률적 근거 / 21	
3. 보조금제도관련법제에 적용될 법원칙 / 21	
제3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39
제1절 법적 성격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39
1. 자금급여 / 39	
2. 금융지원 / 43	
3. 조세감면 / 45	
4.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 48	
5. 공공구매제도 / 50	
제2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51
1. 보조금제도구분의 의의와 방법 / 51	
2. 상업관련보조금 / 53	
3. 광공업관련보조금 / 58	
4. 동력자원관련보조금 / 72	

- 5. 중소기업관련보조금 / 76
- 6. 농·수산업관련보조금 / 88
- 7. 환경관련보조금 / 121
- 8. 과학기술관련보조금 / 126
- 9. 국방관련보조금 / 152
- 10. 서비스산업관련보조금 / 159
- 11. 기타 보조금 / 167

제4장 UR협정상의 보조금제도 : 유형과 분석 175

제1절 개 관 175

제2절 보조금에 대한 「정의」 문제 (Definition of a Subsidy) 178

제3절 보조금공여의 「특정성」문제 (Specificity) 183

제4절 보조금의 유형과 그 분석 193

1. 금지보조금 / 193

2. 상계가능보조금 / 200

3. 허용보조금 / 208

제5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219

제1절 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219

1. 연방정부가 공여하는 보조금 및 지원의 분류 / 221

2. 미국의 보조금제도 일반 / 232

3. 주요부문별 보조금공여제도 및 그 운용현황 / 246

4.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수혜대상자 및 동 기관 / 265

제2절 일본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267

1. 중앙정부가 공여하는 「보조금등」의 분류 / 267

2. 일본의 보조금제도 개요 / 271

3. 「보조금 등」의 재정상의 위치 / 303

제3절 독일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305
1. 보조금제도의 의의와 범위 / 305	
2. 경제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 307	
3. 경제지원의 수단 / 308	
4. 독일 보조금지원 분야 / 311	
5. 독일보조금제도의 운영현황 및 변천경향 / 319	
6. 독일보조금과 유럽공동체 및 OECD보조금과의 비교 / 330	
제6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7
제1절 개 설	337
제2절 UR 협정과 현행 보조금제도개선 관련 입법의견	338
제3절 현행 보조금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372
1. 개 관 / 372	
2. 자금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73	
3. 금융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390	
4.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99	
5.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08	
6. 공공구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12	
제4절 현행 보조금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417
참고문헌	419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활동영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대표된다. 지원작용을 통한 국가의 개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반대급부없이 급여하는 방법,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하는 방법,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는 방법, 조세등 각종 공과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제주체에게 자금과 판로를 보장해주는 방법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작용은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로 포괄된다.

국가가 지원행정작용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개입하게되는 경우, 그 작용을 통하여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설정하고, 국민을 목적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목적과 방향에 자신의 경제적 행동을 일치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지원작용의 수혜를 희망하는 국민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게 된다.

국가의 지원행정작용으로 인한 영향력은 수혜국민 또는 수혜를 희망하여 각종 수혜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민에게 행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수혜국민 뿐만아니라 그와 경쟁상태에 있는 다른 경제주체에게도 미치게 된다. 경쟁자가 국가적 지원으로 인하여 보다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면,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쟁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작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국가와 국가적 지원의 수혜자, 그들의 경쟁자간의 관계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제도의 법제화가 요청된다. 국가가 일정한 경제지

제1장 서론

원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행정조직과 예산의 뒷받침이 요청되며, 행정조직과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 부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현실상 법적 근거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의 지원 제도는 보조금의 지급, 금융지원, 조세감면, 제품의 우선구매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수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대는 “국제적 무한경쟁의 시대”로 불리울 만큼 경제활동의 경쟁은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어느 특정기업에게 시혜하는 경제적 지원은 타국의 경쟁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은 UR협정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구체화되었다. UR 최종협정중의 일부로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이 타결되었고, 이 협정문은 각국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제도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등의 3개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조금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체계화하며,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과 연관하여 분류하고,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보조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을 개관하고, 보조금제도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 및 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법제를 조사·분석한 후, 현행법제에 근거가 부여되어 있는 보조금 제도를 유형적으로 구분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제1단계의 작업내용으로 한다. 제2단계에서는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된 보조금 제도에 관한 국제적 법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제3단계에서는 주요 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제4단계에서는 보조금제도관련 우리 법제와 그 운용현황을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및 주요 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 및 그 운용현황과 연관하여 분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법제개선방안

제시단계에서는 정부의 그동안의 입법현황 및 입법계획과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을 조사·분석하는 입법의견조사분석의 방법도 일부 채용하여, 법제개선방안의 제시가 일부의 의견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위험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조금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조금제도의 조사 및 분석은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에 한한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형태가 아닌 민간지원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조금,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 사실상 주어지는 보조금등은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는 주로 문헌연구, 법제조사, 외국법제조사 및 입법의견조사의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보조금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재무부,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연구과제 중 현행법제개선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결과가 합리적인 입법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실태의 현황과 유형에 대한 분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국내입법의견조사분석의 각종 연구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제도로서의 보조금제도의 종합적 의의와 법적 성격의 규명, 보조금제도와 관련된 정부지원법제를 지배하는 법원칙의 제시, 현행 보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분석 및 운용실태 파악을 통한 보조금제도의 체계화 및 문제점 발굴등의 작업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정당한 법적 근거에서 공평하면서도 합목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해석 및 분석, 주요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운용현황의 조사 및 분석,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및 외국법제와 현행법제와의 연관성 분석등의 작업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자유무역 및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국제무역기구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제정비를 통하여 국제적인 보조금 시비에 무관하도록 국내법제를 정비함에 일조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자료로 활용되며, 장·단기적인 법제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장

보조금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제2장 보조금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제1절 보조금제도의 의의

1.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간섭수단으로서의 보조금제도

국가의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가지 수단으로 대표된다. 양자 모두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규제제도가 주로 명령과 강제 및 감시와 통제를 주요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데 반하여 지원제도는 각종 우대조치를 통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즉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 간접적인 국가적 경제간섭은 일정한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과 일정한 경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지급 또는 융자, 조세감면, 무체재산권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여, 공공구매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도해내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지원방법을 통한 간접적인 국가적 경제유도행정은 상대방인 경제활동 주체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경제활동주체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국가는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기업가가 그 행동방향을 국가가 유도하는 쪽에 맞추도록 각종 여건을 만들어 낸다. 부담금의 경우 경제주체가 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고, 부담금으로 위협되는 공공복리에 저해가 되거나 행정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보조금은 경제활동주체가 특정한 행동을 할 경우의 대가로 일정한 부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주체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주어지는 부를 계산하여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보조금제도의 의의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보조금제도는 경제행정법 분야에서 논해지며 “조장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지원행정” 내지는 “교부지원행정”으로 분류된다. 자금지원행정은 “행정주체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인 또는 사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 기타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¹⁾

자금지원행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가 「보조금제도」이다. 「보조금제도」의 의의는 국가적 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보조금제도를 가장 넓게 정의한다면 “「자금지원행정」 또는 「교부지원행정」의 행정수단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직접 및 간접의 모든 행정수단이 다 포함되므로 경제행정상의 입법행정작용, 계획행정작용 및 각종 도로의 건설과 정보망의 구축등 각종 사실적 행정작용을 모두 포괄한다.²⁾ 이와 같은 가장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는 사실상 국가행정작용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적 연구과제의 선택 및 수행을 요하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는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사인 또는 사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급여하는 행정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³⁾ 이러한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제도」와 유사한 보조금의 정의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하), 508면 이하 참조.

2) 홍정선, 경제행정법과 교부지원, 고시계 90/7, 79면 이하 참조.

3) 이와 같은 보조금의 정의는 독일형법 (StGB) 제246조가 보조금사기죄 (Subventionsbetrug)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246조 제6항은 “연방 또는 각 주 법률 및 유럽공동체법에 따라서 영업장 또는 기업에게 ①시장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②경제지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보조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법 제2조). 이 법이 정의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외에는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은 현재 난립의 양상을 빚고 있는 보조금의 편성 및 교부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금교부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규율대상의 특징 및 법제정의 목적상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만을 그 의의에 포함시킨 것이다.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금전급여”는 국가가 민간경제활동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전형적이며 매력적인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보조금급여는 금전급여의 형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급여제도만을 고찰하는 것은 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행법제를 개관하며, 국제화시대에 이루어지는 국제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법논리를 개발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1947년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 출범한 이래 국제적으로 각 국가가 특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여하는 보조금을 통한 국제무역질서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GATT체제하에서의 보조금규정은 그 정의가 명확치는 않았다. GATT 협정문 제16조는 보조금에 관하여 “체약국이 어떠한 형식에 의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하는 보조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여하고 또는 유지할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이 규정은 “어떠한 형식에 의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조금제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보조금제도에 대한 정의는 1973년의 도쿄라운드에서의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코드」를 거쳐 꾸준한 논의끝에 1993년 및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을 통하여

4)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6조, 출전 : 한국법제연구원편, 대한민국헌법법령집 제48권 2015면 이하 참조.

제 2 장 보조금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구체화되고 있다.⁵⁾

1994년 4월 15일의 우루과이라운드 마라케쉬협정 「보조금및상계관세조치협정」 제1조는 “본 협정의 목적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 (예: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 (예: 대출보증)등과 같은 활동 ②납부되어야 할 정부세입의 포기 (예: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책) ③일반적인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또는 정부의 재화구매 ④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상기 ①②③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에게 정부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감독하며, 당해 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경우 (제1항)또는 GATT 1994 제16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에 의한 혜택이 주어질 경우(제2항)”라고 규정하여 보조금제도를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국제적인 보조금의 정의와 발맞추어 본 보고서는 「보조금제도」를 「가장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에서 입법작용, 계획작용 및 사실상의 작용을 제외하고, UR협정문의 보조금제도의 개념과 일치하는 「넓은의미의 보조금제도」를 보조금제도의 개념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포괄하는 보조금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업체등에 의한 금전공여, 용자·지급보증등의 금융지원,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 국유재산·시설·기기등의 양여 및 대여, 국가 소유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및 실시료면제, 제품의 우선구매등 정부구매제도를 통한 지원등을 모두 포괄한다.

5) 도쿄라운드에서의 「보조금및상계관세에관한코드」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 (상), 461면 이하 참조.

6) 마라케쉬협정문은 1993년 12월15일의 최종협정문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이다. 이 협정문은 1994년 6월 외무부에 의하여 번역되어 행정간행물로 출간되었다. 외무부의 번역문에 대하여는, “외무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994.6. 227면 이하 참조. 이 보고서의 번역은 손상호/윤재형,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해설서,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 1994.6. 5면 이하에 따른 것이다.

제2절 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가. 경제유도행정으로서의 보조금제도와 운용을 위한 헌법적 근거

보조금제도는 국가적 경제유도행정의 수단이다. 국가적 경제유도 행정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여러 규정은 국가가 행정청을 통하여 경제유도행정을 수행할 권한을 헌법상 부여한 것이며, 입법기관에게 행정청이 이와 같은 각종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기업의 자유

이들 규정과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규정은 서로간에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

제 2 장 보조금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3조)” 등의 사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상의 자유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보장된다.⁷⁾ 사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보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또 헌법상 보장되는 제도보장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영업의 자유」는 국민으로서의 사인 또는 사기업이 스스로의 영업의 선택 및 영업활동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사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라 표현되기도 한다. 기업가의 기업의 자유는 “① 기업을 설립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② 기업을 구성하는 각종 인적·물적 요소의 종합체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투자하며, 이를 자기책임하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유 ③ 제3자와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유” 등 세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⁸⁾

다. 기업의 자유와 보조금제도

국가적 경제유도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제도는 보조금을 수혜하고자 하거나 수혜하는 기업의 기업의 자유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 영향력은 단순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유익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기업을 침해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보조금제도가 가지는 첫번째 특성은 보조금제도가 국가적 경제지원행정의 수단중의 하나로서 기업가의 시장경제상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손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기업의 자유의 실현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할 것은 법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없는 보조금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조금제도는 보조금지급요건으로 제시된 특정한 행동을 보조금수혜자가 행할 것을 항상 요구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가가 자율적 및 자기책임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조직하고, 투자방향

7) 권영성, 헌법학원론, 549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436면 이하 등 참조.

8)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권영성, 헌법학원론, 549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436면 이하;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Art. 12 등 참조.

을 결정하는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보조금이 가지는 유도적 기능은 상대방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제공 목적과 요건에 합당하도록 기업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두번째 특성은 모든 보조금은 시장구조가운데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자와 보조금을 받은 자간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비하여 그 경쟁능력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조금수혜자의 선발 및 보조금액의 정도로써 경제체제로서의 시장을 조종한다. 국가의 시장조종 (Marktlenkung)과정에서 보조금 수혜자로서 선발되지 못한 기업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보조금액이 많아질수록 경쟁력의 격차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을 그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조직해나가며 각종 투자행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시장구조에서의 각종 기회 및 경쟁상의 위험을 판단함이 그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대하여 국가는 보조금수혜자의 행동조종 (Verhaltenslenkung)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조금제도는 기업의 자유에 대하여 촉진과 침해라는 이중적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조금제도가 기업의 자유에 대하여 가지는 침해성은 다른 국가적 작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⁹⁾

2. 법률적 근거

가. 보조금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보조금제도는 국가적 경제유도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수혜하고자 하거나 수혜하는 기업의 기업의 자유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기업에게 이익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기업을 침해하는

9) 기업의 자유와 보조금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Henseler, Staatliche Verhaltenslenkung durch Subventionen im Spannungsfeld zur Unternehmensfreiheit des Begünstigten, VerwArch 1986, S. 249 ff. 참조.

이중성을 띠고 있으므로 보조금제도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법률이 규정되어야 하는가가 논의된다.

보조금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긍정하거나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금제도가운데서 조세의 감면과 같이 헌법이 정한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제도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 또는 금융지원과 같은 경우까지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또 법률이 그 상세한 요건까지를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인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일률적으로 어느 견해에 따르기 어렵다. 보조금제도가 사기업주체에게 과하는 구속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제도는 모든 보조금수혜자의 기업의 자유를 동일한 강도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자유의 제한여부 및 제한정도는 보조금제도가 구성하는 보조금관계에 따라 달라진다.¹⁰⁾ 보조금관계는 보조금급여주체만이 보조금급여의무를 지는 경우 즉 일방적 행동구속관계와 보조금급여주체와 보조금수혜자 쌍방의 행동을 모두 구속하는 경우 즉 쌍방적 행동구속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방적 행동구속관계는 행정청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구속적 행동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이다. 이 경우 보조금수혜자는 기업의 자유의 실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보조금은 국가적 특혜조치에 해당된다.

보조금수혜자의 기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보조금관계가 쌍방적 행동구속관계이다. 이는 보조금수혜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이 보조금급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행정청이 요건으로 정한 특정한 의도에 따르겠다고 약속할 경우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주어질 것이라는 행정청의 유인에 기업가가 따르기로 약속할 경우 쌍방적 행동구속관계는 성립하게 된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행정청은 보조금수혜자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법률유보의 범위」 즉 “행정권의 발동을 위하여 어느 범위 및 어느 정도까지 법률의 수권 내지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가”를 놓고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현

10) 보조금관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는 Henseler, Staatliche Verhaltenslenkung durch Subventionen im Spannungsfeld zur Unternehmensfreiheit des Begünstigten, VerwArch 1986, S. 249 ff. 참조.

재 일반행정법론상으로는 「법률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학설로 「침해유보설」, 「금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면적전부유보설」, 「본질유보설 또는 중요사항유보설」등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의 민주적·법치국가적 원리가 국민생활에 직접 본질적인 것인가의 여부의 판단을 입법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한다”는 견해인 「본질유보설」을 지지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다.¹¹⁾ 법률유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보조금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은 달라질 것이나, 「보조금제도」가 과연 국민생활에 본질적인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학설이 거의 「본질유보설」을 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상호 대립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¹²⁾

앞서 언급한 대로 보조금제도가 사기업주체에게 과하는 구속성은 보조금제도가 구성하는 보조금관계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보조금관계가 「일방적 행동구속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보조금수혜자의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조금수혜자의 기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보조금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급여하는 행정주체에게 보조금급여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최소한 일반적 「재정법적 근거」는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행정은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지탱되는 바, 예산의 책정 및 그 예산을 관장하고 집행할 직제는 결국 최소한의 재정법적 및 조직법적 근거를 필수불가결하게 요구하고있기 때문이다.

보조금관계가 「쌍방적 행동구속관계」를 만들어 낼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정법적 및 조직법적 근거외에도 보조금수혜주체에 대한 행동구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의 요건을 정하는 재정법 및 조직법적 근거가 보조금의 형식을 어떤 법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보조금의 지급형식이 사법상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지급의 법형식을 법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수혜주체에 대한 행동구속의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 행정법령의 필

1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126면 이하; 김동희, 행정법 I, 35면 이하; 김남진, 행정법 I, 65면 이하;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 (상), 50면 이하 등 참조.

1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하) 440면 이하; 김남진, 행정법 II, 429면 이하; 김동희, 행정법 II, 475 면 이하;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 (하) 524면 이하; 홍정선, 행정법 II, 639면 이하 등 참조.

요성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의 지급형식이 「보조금지급 결정」이라는 행정행위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나. 보조금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내용

(1) 보조금수혜자의 기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재정법적 근거

국가는 사기업가의 특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제공을 통하여 그가 그 사업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해주거나, 그 수고를 경감시켜준다. 재정적인 조종작용으로서의 모든 보조금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중의 정당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보조금급여주체는 첫째로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가 요구하는 행동구속의 이유를 정당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가의 행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종하여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여야 한다. 즉 목표된 행동조종부분에 대하여는 주관적인 기본적인권차원에서 정당화가 요구되며, 국민의 세금의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재정법적 차원에서의 정당화가 요구된다. 객관적인 재정법적 차원에서의 정당화요구는 그 국민에게 강제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된다. 만약에 국가가 공적인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구체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징수된 조세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책임은 국가재정 내지는 국민의 세금을 경제적으로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재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나타난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공

13)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형식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어떤 형식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이 그 법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독일의 학설은 보조금수혜자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지급결정"을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형식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관하여는 Henseler, Staatliche Verhaltenslenkung durch Subventionen im Spannungsfeld zur Unternehmensfreiheit des Begünstigten, VerwArch 1986, S. 249 ff. 참조.

공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재정적 지출로 최대한도의 공공의 이익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로 표출된다.

보조금제도에 있어서는 보조금행정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제적·절약 사용의 원칙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파생원칙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사기업의 계획을 국가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합리적인 공공이익에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되어버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가에게 자금 공여, 금융지원 또는 그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등을 행하는 보조금급여주체는 사기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국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공공기관과는 달리 공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없는 사기업의 처분권에 맡기게 된다. 국가재정의 경제적 절약사용을 위한 행정은 보조금수혜자가 낭비하지 않도록 그를 지도하고 감시하여 국가의 미시적 성취목표를 달성하도록하며, 설사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재정경제적 이익에 이바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국가는 모든 경제지원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목표구속 및 감시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투자비용과 그 성과간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수혜자의 행동구속

(가) 보조금제도의 목표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행동구속은 보조금제도가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제도의 목표 내지 보조금의 목적은 단순한 한두가지의 목표를 위하여 운용되지 않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 보조금의 목표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거시적인 최종목표와 미시적인 성취목표 및 구체적인 유도목표등 세단계의 보조금제도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

특정지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제도의 도입

14) 이와 같은 3단계의 보조금제도 목표 구분에 관하여는, Henseler, Staatliche Verhaltenslenkung durch Subventionen im Spannungsfeld zur Unternehmensfreiheit des Begünstigten, VerwArch 1986, S. 249 ff.

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 있어 거시적인 최종목표로는 특정한 지역의 전체적인 취업자리 수를 높이는 것이다. 이 목표는 그 지역의 개별적인 작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취업자리의 수를 높임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개별적인 작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취업자리 수를 높이는 것이 다음단계인 미시적인 성취목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개별적인 작업장의 일자리 수를 늘이는 것은 결국 기업가의 손에 달려있다. 이 들이 일자리 수를 늘이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함이 보조금수여자의 구체적인 유도목표가 된다.

보조금급여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조금지급제도는 자신의 구체적인 유도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그 목적은 각 기업가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가에게는 국가적 목표가 자신의 이익과 부합할 경우에만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기업가에게 동기부여는 자신이 국가적 목표실현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하는 일정한 부담이 국가적 시책으로 인하여 상쇄되거나, 그 이상의 이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국가가 기업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줌으로써 기업가가 국가가 요구하는 행위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 동기에 따라 국가적 목표에 협조하게 될 때, 국가적 미시적 성취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쌍방적으로 행동을 구속하는 보조금관계의 핵심은 보조금급여주체와 보조금수혜자가 상호간에 일정한 행동을 약속하는 것이다. 첫째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표를 실현하기로 약속하며, 둘째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한 급여 및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자신의 행동을 쌍방 공동의 이익에 합치시키기를, 특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를 약속한다. 보조금급여주체는 기업가의 행동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금전적 급여를 제공하기를 약속한다. 쌍방의 급여 및 행동은 교환관계 또는 민사적 계약관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국가적 목표달성에의 협조와 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의무의 수행 또는 계약의 준수를 위한 의무의 수행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급여주체의 보조금급여를 통하여 보조금수혜자가 동기를 부여받고, 이에 따라 쌍방의 이익에 합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쌍방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이 보조금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조금수혜기업자가 실제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구속은 보조금급여자의 미시적 성취목표의 달성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기업상태를 목표에 적합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구속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구속은 목표달성을 위한 주된 의무와 구분하여 보조금급여로 인한 부수적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의 구분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될 보조금을 수혜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즉 정당성의 요구가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 목표실현을 위한 행동구속

기업가를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려면, 국가는 그가 목표실현에 직접참여하며, 국가로부터 지원된 재원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목표에 구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는 기업가가 스스로 적절한 재정적 투자를 하는 사업만을 지원한다. 보조금급여에 있어 기업가가 해당프로젝트에 대하여 일정부분 자기투자를 하도록 함은, 그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실패의 경우 스스로도 손해를 입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보조금급여제도는 기업가가 그에게 급여된 재원을 목표가 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별적 조치에 투자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다. 모든 보조금급여결정 또는 보조금급여계약은 각 기업가가 그에게 주어진 재원을 어떤 조치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지시, 바꾸어 말해서 구체적인 사용목적에 보조금이 구속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적 보조금급여결정 또는 계약에 있어 이 구속조항이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가는 경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빚는다. 많은 결정은 개괄적인 목표제시에 그치지만, 어떤 결정은 기업가를 특정한 재정적 및 투자계획의 개별적인 부분까지 적시하여 어느시기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도록 제시하는 정도로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다.

(다) 감시원칙의 준수

행정청의 기업가에 대한 재정법상의 감시의무는, 행정청이 보조금급여결정의 부관에 검사 및 통제권을 유보하여, 기업가로 하여금 정보제공 또는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감사 및 검사제도, 보고 및 영수증제시의무등이 부과되며 이들은 모두 목표지향적인 행동구속에 기여하게 된다.

(라)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조화원칙에 따른 행동구속

보조금급여주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조화원칙에 부합되도록 보조금급여결정안에 해당 사업에 투자된 국가재정이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장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가의 행동구속은 불필요한 비용지출의 금지,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특허등 지적재산권의 이전, 사업가가 보조금을 통하여 사업달성에 성공한 후 획득할 이윤에 대한 국가의 참가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 보조금수혜자의 자기구속의 법적 성질

국가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보조금급여의 원칙은 보조금수혜자가 보조금급여 결정에 포함된 각종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강제를 가하여야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러한 의무의 준수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는 기업가에게 생산, 분배 및 기타 자신의 사업의 수행을 스스로의 고유한 계획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며, 변화해 가는 시장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응해 나갈 자유를 보장한다. 보조금수혜자의 이러한 자유를 구속할 것인가, 구속한다면 어떤 강도로 구속할 것인가는 각각의 구속력의 강도와 실현가능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 행동구속이 기업가의 자기결정력 및 시장적응력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기본권침해적 의무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예컨대 대출된 금융지원의 반환의무, 보조금급여를 통하여 사업이 성공한 경우 해당 사업의 이윤에 대한 국가참여등의 의무의 경우가 그것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감시 및 보고의무의 부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의무는 기업의 비밀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도 기업의 자기결정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행동구속이 기업가의 자기결정 및 시장적응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구속하는가는 결국 보조금급여조건의 내용, 자유구속의 강도 및 그 실현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조금수혜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행동구속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한, 자기결정 및 시장적응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조금급여주체가 각종 구속적 요건의 실현을 위하여 명령과 강제를 행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보조금급여주체의 명령 및 강제로 인하여 보조금수혜자가 시장적응을 할 수 없었던 경우의 책임은 결국 보조금급여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보조금급여주체가 강력한 명령 및 강제권을 가질 경우 보조금제도가 가진 고유의 유도적, 간접적 행동조종기능은 사라지고, 직접적 명령적 행동조종제도로서 기본적인권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로 변화하게 된다. 기업가는 자신의 고유의 결정력 및 시장적응력으로서 국가적 목표달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기본적인 관념은 사라지게 된다. 보조금급여주체가 이질적인 시장평가로 보조금수혜자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공용수용의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용수용의 요건과 효과에 해당하는 법적 장치가 결부되어야 한다.

3.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에 적용될 법원칙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교부제도는 보조금급여주체인 행정청 및 보조금수혜주체인 사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영향력은 보조금수혜주체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의 영향을 받는 경쟁기업 또는 연관기업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제도는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질서의 기본원리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평등원칙 및 비례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리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보조금제도에 관한 법제와 운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법원칙은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적용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가.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즉 불합리한 또는 자의적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법앞의 평등」조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원칙은 헌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원리에 따를 경우, 보조금제도는 특정인에게 자의적인 차별대우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립되며, 운용될 것이 요구된다. 자의적인 차별대우에는 특정

인을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특혜조치와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거부되는 불이익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보조금제도의 내용과 그 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등원칙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공개성 또는 투명성의 요청은 국내적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는 기본원리에 해당된다.¹⁵⁾

둘째로 평등의 원칙은 보조금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사이의 불공평이 최소화될 것을 요구한다. 보조금제도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의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 사이의 불공평의 문제를 수반한다.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는 불공평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않는 자간의 차별이 불가피한 경우, 그 차별은 합리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조금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은 반드시 일반성·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베풀으로써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끼치는 “특정성”을 가지는 법률은 헌법원칙인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할 것이다.

“특정성”을 띠는 보조금의 지급금지는 국내적 보조금제도에서 뿐만아니라 국제적보조금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통용되는 법일반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특정성”을 상계관세등 국제적인 제재조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제도가 일반성·보편성을 띠고 있는 한, 국제적인 대응조치 내지는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보조금제도가 “특정성”을 가지도록 정립되거나 운용되는 경우에만 제재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보조금공여기관 또는 보조금근거법령이 보조금

15) 국제관계에서 이와 같은 공개성 또는 투명성의 요청은 투명성 (Transparency)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으로 정립되어 있다. 그 내용은 “각국의 행정·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적용,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하여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내용, 법집행에 위해가 되는 사항, 영업상의 비밀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투명성의 원칙에 대하여는 법무부, UR 협정의 법적 고찰 (상), 1994, 454면 이하 참조.

의 지급을 어떤 기업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함으로써 몇개의 기업에 특정하는 결과를 빚는 경우 ②보조금공여기관이 특정지역에 있는 기업중 어떤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해당지역내에 있는 특정기업이 특혜를 입게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2조 참조).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보조금 공여기관 또는 보조금제도 근거법령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보조금의 규모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당해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 수혜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 (제2조제1항 b)고 규정하여 특정성 판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특정성 판단의 기준은 국제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보조금제도의 법제화 및 운용에 있어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¹⁶⁾

세째로 「평등의 원칙」은 “공정거래” 내지는 “자유경쟁”의 이념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념은 국제적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1947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 출범한 이래로 국제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여하고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즉 수출보조금 또는 수입제한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을 규제함으로써 국제적 평등무역을 촉진하고자 노력해 왔다.¹⁷⁾

이 정신에 입각하여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서 공여되는 보조금과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의 사용에 대하여 공여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여 강력한 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조). 협정문은 그 부록에 ①정부가 수출성과에 따라서 직접 기업이나 산업에 보조금을 공여하는 경우, ②수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수출물품의 선적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국내수송 및 운임을 제공하는 경우, ④정부가 국내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품, 국산물품의 서비스를 직접·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직접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을 특별히 수출과 관련하여 면제, 환급, 또는 유예하는 경우 ⑥직접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국

16) 손상호 등,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해설서, 산업연구원 1994.6. 14면 이하 참조.

17)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6조 참조.

제 2 장 보조금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내소비용 물품생산을 위해 부과하는 것보다 수출과 관련하여 특별공제를 추가로 허용할 경우 ⑦국내소비용 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액을 초과하여 수출물품의 간접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는 경우 ⑧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의 규모를 초과하여 수출용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될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 ⑨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이 초과환급될 경우 ⑩정부가 장기적인 운용비용 또는 손실보전에 불충분할 정도로 수출보험료율이나 보증요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⑪정부가 조달비용보다도 낮은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하거나 수출기업 자금조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덜어주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지불하는 경우등을 수출보조금의 목록으로 예시하고 있다.¹⁸⁾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원칙으로서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작용하여 보조금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국제법의 일반원리로도 확립되어 있다.

나.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경제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자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국가는 오로지 보충적인 범위안에서만 개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경제영역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은 그 목표와 수단이 불가피하게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개입의 영역에는 각종 경제규제와 경제지원이 모두 포함된다. 보충성의 원칙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철저히 시장기구에 맡김이 타당하며, 오직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국가적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에 한하여만 경제규제 또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¹⁹⁾

18) 수출보조금의 목록과 금지보조금의 구체적 내용 및 이에 대한 제재방법등에 대하여는 손상호등,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해설서, 산업연구원 1994.6. 22면 이하 참조.

19)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582면 이하 참조.

보조금제도는 국가가 정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가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쟁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국적으로 「시장지배에 의한 자유경쟁」의 구조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국가적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목적이 있고, 그 목적실현을 위하여 보조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도입될 것을 「보충성의 원칙」은 요구한다. 따라서 보조금제도는 기초과학연구분야의 많은 경우와 같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의 실패가 예견된 분야등 보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도입됨은 허용될 것이나, 시장성이 있고 고도의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집중적 성장, 국제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제도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국내적·국제적으로 공정거래 또는 공정무역의 정신에 위반된다. 이 보충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에 기초한 비례의 원칙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다. 비례의 원칙

비례 (Verhältnismäßigkeit)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한 행정법의 기본원리중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합성」·「필요성」 및 「협의를 비례관계」의 존재의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적합성 (Geeignetheit) 이란 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 (Erforderlichkeit) 이란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택한 행정수단이 행정의 상대방과 일반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최소한도로 침해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협의의 비례관계 (verhältnismäßig i.e.S.)의 존재라 함은 당해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의 정도와 행정목적의 달성을 통하여 실현되는 이익간에 적절한 비례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²⁰⁾

이 비례의 원칙은 경찰작용을 중심으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영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보조금제도와

2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170면 이하; 김동희, 행정법 I, 55면 이하; 김남진,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 목촌 김도창박사 고회기념 한국공법의 이론, 267면 이하.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그다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보조금제도는 국가의 재정지출 내지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국민 전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그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보조금제도가 단순한 수익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조금수혜자 및 보조금수혜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보조금관계에 있어서 특히 과잉금지원칙 (Übermaß verbot) 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 과잉금지원칙은 목표와 수단간의 비례관계 즉 국가적으로 달성될 목표와 이를 위하여 선택하는 보조금제도간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보조금급여주체는 보조금수혜자에게 그가 의도하는 조종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주관적·자유권적 정당화의 필요성), 일반인에게는 보조금수혜자에게 보조금을 급여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함이 설명되어야 한다 (객관적·재정법적 정당화의 필요성). 국가적 행동의 판단을 위한 척도로는 비례의 원칙의 개별적인 내용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법상의 경제성 및 절약성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판단의 기준으로는 ①보조금의 급여가 보조금수혜자를 국가가 원하는 행동의 동기를 부여함에 적절한가 ②보조금수혜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국가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보다 과도하지는 않은가 ③보조금수혜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보조금수혜자의 행동을 일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정도보다 과도히 초과하는 것은 아닌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보조금의 급여는 금지되어야 하며, 보조금급여주체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또 최소한의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조금종류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금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재정법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원용할 수 없고 오직 주관적·자유권적 정당화의 필요성을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는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의 종류 및 그 금액의 과다에 관하여 다룰 수는 없으며, 오직 보조금의 급여와 결부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속성의 강도에 대하여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보조금수혜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보조금급여와 함께 부과된 각종 행동의 구속이 국가적 미시경제적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그 행동구속이 목표실현을 위하여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보조금급여자가 제공하는 이익에

비추어 보조금수혜자가 행동구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위험이 필수불가결하며, 적절한 것인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이 비례의 원칙의 개별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신뢰보호의 원칙도 「법치국가원리」 특히 「법적안정성의 원리」의 원리에 근거한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²¹⁾

이 원칙은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제행정부의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조금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수혜자는 보조금신청을 위하여 보조금교부요건에 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선행투자를 하게 된다. 또 보조금교부를 받는 경우 교부결정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각종 개발단계를 밟아나가게 된다. 보조금교부정책이 일관성을 잃게되어 보조금교부요건이 수시로, 아무런 경과조치없이 변경된다거나, 예산상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계획된 보조금교부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보조금수혜자의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은 그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보조금교부정책은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보조금교부요건이 변경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변경전의 요건을 믿고 행한 모든 투자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뢰보

21) 신뢰보호의 원칙의 법적 근거로 사법원리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드는 견해와 「법적안정성의 원리」를 드는 견해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행정법관계에 대한 신뢰의 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계획변경에 대한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며, 행정입법에 대하여도 그 변경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등의 적용영역을 볼 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의 원리보다는 헌법원칙인 법적안정성의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함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참조,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상), 158면 이하; 김동희, 행정법 I, 57면 이하 등, 독일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미,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등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는; Oh Jun-Gen, Vertrauensschutz im Raum- und Stadtplanungsrecht, S. 162 ff.

호의 원칙은 보조금제도관련 행정의 기본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보조금제도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조금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은 보조금수혜자가 보조금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보조금교부의 요건은 명확하고, 공평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보조금수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보조금제도에 대한 신뢰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 및 이에 근거한 확약 또는 행정처분등 행정청의 보호가치있는 선행조치가 있어야하며, 보조금수혜대상자는 이를 신뢰하고 일정한 처분 또는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행조치 및 보조금수혜대상자의 신뢰와 그가 행한 투자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제도를 국가가 변경해 나갈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는 국내적 및 국제적 각종상황을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정책 및 제도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요청된다하여, 자신의 기존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존의 국가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이익의 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보조금제도를 변경해 나갈 때 당사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일정한 경과기간을 주어 당사자가 충분히 변화되어가는 행정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적응보조장치로서의 각종 경과조치를 입법 또는 행정처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²²⁾

22) 신뢰보호의 원칙은 정부가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에 따라 금지보조금 및 특정성이 인정되는 보조금을 감축해 나갈 경우에도, 일정한 경과조치를 하여, 보조금감축으로 인한 충격이 최대한 감쇄되도록 하는 정밀한 행정을 함을 요구한다. 참조 Oh Jun-Gen, Vertrauensschutz im Raum- und Stadtplanungsrecht, S. 162 ff.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제3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800여건에 달하는 현행 법률은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금제도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제도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 국방, 상업(수출입을 포함), 공업, 동력자원, 농수산업, 중소기업, 환경,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 각 법률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제도의 유형은 위와 같은 경제활동의 영역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경제활동의 각 영역마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보조금제도는 그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그 범위 및 유형의 구분이 달라질 것이나, 앞서 언급한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로 파악할 경우 보조금제도는 다시 그 특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업체 등에 의한 금전급부, 융자·지급보증등의 금융지원,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 국유재산·시설·기기등의 양여 및 대여, 국가소유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및 실시료면제, 제품의 우선구매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지원책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금제도의 유형은 제1단계에서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각각의 특유한 보조금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2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의 영역에 따라 각각의 법적 특성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내용을 파악함이 전체적인 체계화 및 현황파악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1절 법적 성격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1. 자금급여

가. 의의

자금급여형태의 보조금제도란 “행정청이 기업 또는 개인등 경제주체에게 해

당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조금제도를 가장 좁은 의미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이 자금급여형태의 보조금제도만을 지칭하게 된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가재정중의 일부를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조금수혜자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구속을 요하며, 재정법적 및 보조금제도근거법 등에서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의 각종 측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사기죄 (Subventionsbetrug)」를 형법전 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금급여형태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은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 (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금급여의 형태를 띠는 보조금제도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보조금의 예산

자금급여형태의 보조금은 특별 기금에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예산으로 편성·지출됨이 원칙이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도 이 원칙이 자금급여제도 운영의 기본적 형태로 보아,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음년도의 보조금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산계상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4조). 국가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가 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법률 제5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6조). 보조금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법률 제15조).

다.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금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행정행위설, 행정계약설, 사법상 계약설, 행정행위와 사법상계약의 2단계설등으로 학설이 나뉘어 있다.²³⁾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각종 요건을 조사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조). 보조금의 결정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률 제18조)”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법률상 유보되어 있으므로 보조금급여결정이 행정법상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3) Dickersbach, Die Entwicklung des Subventionsrechts seit 1984. NVwZ 1993, S.846.; Ehlers, Die Handlungsformen bei der Vergabe von Wirtschaftssubventionen, VerwArch. 1983, S.112ff. 등 참조.

라.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법률 제22조).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률 제23조) 및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률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법률 제26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27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법률 제28조). 이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률 제29조).

마. 위법한 보조금의 수령 및 사용에 대한 제재 및 강제조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 제30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

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률 제31조). 보조사업자가 이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법률 제32조). 이외의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액에 대하여는 국가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법률 제33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 (법률 제40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법률 제41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및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률 제42조) 등은 각각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률 제43조).

2. 금융지원

가. 의의

보조금교부제도가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금융지원제도는 행정청이 기금·준비금·자금등의 형식으로 조성된 자금을 경제주체에게 장기저리등 일반시장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청이 융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고,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금융지원제도는 지원된 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지원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요건”·“행정청의 교부결정을 위한 각종 심사요건”·“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보조사업의 인계·중단·폐지 및 내용변경시 승인요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의 수행명령 및 시정명령”·“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 등 각종 고권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금융지원의 재원

금융지원은 지원된 자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의 형태이므로, 무상의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예산의 계상이 필수적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과 구분된다.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은 금융지원의 각 근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나, 대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국가·정부투자기관·기금등으로부터의 예수금, 채권·복권등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 금융지원의 법적 형식

금융지원이 「가장 좁은 의미의 보조금」의 경우와 같은 고권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지원이 행정청의 고권적 작용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은 국가·정부투자기관·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을 비롯한 여러 재원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이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지원제도가 지원된 자금의 상환을 전제로하는 제도이므로 보조금의 경우와는 달리 자금지원의 요건을 정하여 심사하고, 지원된 자금의 상환을 위한 각종 사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금융지원은 기술개발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고, 금융지원업무담당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식의 금융지원제도는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행위와 공법상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 형식의 자금교부행위의 2단계 행위로 이루어진다. 국가기관이 자금을 제공하면서 금융지원의 요건을 금융기관에게 고시하고,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의 고시에 따라 스스로 금융지원의 대상 및 액수를 결정하고 자금을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금융기관간에는 행정규칙의 반포 및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의 형태로 자금수수가 이루어질 것이나, 국가기관과 보조금수혜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보조금의 급여자체는 금융기관과 보조금수혜자간의 사법상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조금급여의 결정 및 급여행위도 당사자에게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순수한 사법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금융 지원을 위한 각종 요건이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기관은 그 구속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금융지원보조금의 공여에 있어서 보조금수혜자가 근거법령등이 정한 각종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원업무담당기관은 그 설치·운영등에 관한 법률 뿐만아니라 각종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령이 정한 제약을 받으며, 사업자도 이 한도에서 관계법령의 제약을 받는다.

더 나아가 금융지원업무담당기관은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금융지원신청기관이 자금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기업자가 관계법령과 금융지원담당기관이 정한 각종 요건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제도도 기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도 단순한 수익적 조치가 아니라 부담적 조치의 요소를 수반하고 있다. 금융지원제도는 국가기관이 조성한 자금을 시장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보조금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제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원칙은 금융지원제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금융지원제도가 넓은 의미의 보조금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문이다.²⁴⁾

3. 조세감면

가. 의의

자금급여제도나 금융지원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급여함으로써 보조금수혜자를 지원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조세감면제도는 국가가 사경제

24) 금융지원제도의 개괄적 내용에 관하여는 손상호, UR보조금, 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세계의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4.; 김광두·정운찬, 금융혁신과 기술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 연구보고서 1992.11. 등 참조.

주체에게 징수하여야 할 일정한 조세부담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사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극적인 자금급여가 아니라 소극적인 급여면제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자금급여 또는 금융지원제도와 구별된다.

조세감면제도는 납세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의 행정수단으로서 경제활동을 위한 일정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할인세율 또는 면세의 적용을 통하여 목적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행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사경제주체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일정한 조세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국가적 수입의 포기를 통한 당사자의 지원이므로 넓은 의미의 보조금의 일종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부과를 통하여 전체를 거두어서 보조금수혜자에게 그 중의 일정금액을 급여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부과될 조세액중 일부만을 거둬으로써 보조금수혜자에게 같은 금액의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국가적 차원 또는 당사자의 차원에서 일정한 자금의 급여와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 조세감면제도의 법적 형식

현행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제도도 엄격한 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 조세감면제도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속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조세감면제도는 경제·사회·문화등의 각 영역에서 지원 및 촉진이 필요한 분야마다 다투어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개별법령에서 조세감면제도가 난립되어 그 통일적 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국세기본법, 조약 및 조세감면규제법이 열거한 23개의 각종 조세관계법 즉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전화세법·국세징

수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관세법·지방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외자도입법·자산재평가법·해저광물자원법·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을 제외하고는 오직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한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정하거나 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이러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의 근거를 정한 각 법률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감면의 방식

조세지원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직접지원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과세와 간접지원인 준비금과 특별상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과세등의 직접지원은 그 감면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종국적이어서 간접감면과 비교할 때 지원효과가 크고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상의 불공평을 보다 심화시키고 경험적으로는 세수감수효과가 큰 단점이 있다. 반면 준비금과 특별상각의 간접지원은 지원시점에서 경감된 세액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환수하므로 종국적인 지원이 아니고 세부담을 이연시켜 무이자금융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나 세수감소면에서는 경험적으로 직접감면보다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감면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²⁵⁾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조세감면의 방법으로는 직접지원의 방법으로서 ①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등 특정경제활동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 세액에서 직접 공제 하는 방법 (제5조), ②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를 감액하는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세금 자체를 일정부분 감액하는 방법 (제6조),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등 일정한 소득자체를 아예 비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 (제13조), ④비료·농약 또는 농기계등 일정한

25) 조세지원의 방법과 그 장단점등에 대하여는 윤건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15면 이하 참조.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업종에 공급되는 상품, 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물품등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등 일정한 세금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면제하거나 이를 감경하는 방법 (제99조), ⑤국내제작이 곤란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방법 (제112조), ⑥일정한 재산의 취득 및 등록에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하는 방법 (제113조)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지원의 방법으로서 ①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개발비용,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 특정 경제활동비용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급에 산입하도록 하는 방법 (제4조), ②주차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제30조) 등을 들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가. 의 의

국유재산등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국공유재산등을 사경제주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여해 줌으로써 특정 경제활동을 지원·촉진하고자하는 제도이다. 국유재산등의 무상양여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며, 국공유재산등의 무상대여는 그 사용료 또는 실시료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국유의 ①부동산과 그 중물, ②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중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국채증권·지방채증권·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⑥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 부동산신탁의 수익권등이 포함된다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등의 양여 및 대여의 내용에는 이들 각종 국공유재산, 정부에 귀속된 기기·설비·시작품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여, 정부소유의 특허권등 각종 권리의 무상 양여 및 실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등이 포함된다.

나.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의 법적 근거

국유재산의 보호 및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에는 ①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 ②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공용재산」 ③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재산”인 「기업용재산」 등이 해당된다. 「보존재산」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법률 제4조).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총괄청이 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된다 (법률 제6조). 국유재산은 그 관리계획에 따라 엄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법률 제12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법률 제20조). 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 제5조제2항).

국유재산 중 오직 잡종재산만이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 및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제31조). 잡종재산은 일반적으로는 그 처분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일반에 공고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33조). 국공유재산, 정부에 귀속된 기기·설비·시작품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여, 정부소유의 특허권등 각종 권리의 무상 양여 및 실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는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여제도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령은 이를 위한 각종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등의 무상양여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며, 국공유재산등의 무상대여는 그 사용료 또는 실시료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조금제도에 관한 각종 법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5. 공공구매제도

가. 의의

자금급여, 금융지원, 국유재산등의 양여 및 대여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자금 또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며, 조세감면제도는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일정한 조세부담을 소극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사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정부가 수요자로서 특정 국가목적에 합당한 각종 용역 및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특정경제활동 관련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공공구매를 통한 경제지원제도이다.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갖는 강력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경제활동의 성패는 그 사업자가 생산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수요창출여하 및 계속적 수요획득 가능성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수요자인 국가의 구매정책에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구매제도는 특정 경제주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구매제도는 경쟁적으로 일정한 제품을 개발한 당사자중의 하나와만 정부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고, 그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계약체결과정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경쟁에서 탈락되도록 작용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구매제도는 일방적 수익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이중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일반시장에서의 각종 조건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공공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제도의 한 형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공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국가기관등이 제품의 구매를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는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예산회계법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공계약의 일반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제73조). 예산회계법상 규정된 정부구매계약에는 제품의 구매계약 이외에도, 제품의 제조계약· 각종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이 포함된다. 예산회계법은 정부구매계약의 형태로는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등은 예산회계법이 정한 특별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제76조제1항제4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요자로서 특정 국가목적에 합당한 각종 용역 및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특정경제활동 관련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제2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1. 보조금제도 구분의 의의와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체등에 의한 자금급여, 용자· 지급보증등의 금융지원,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 국유재산· 시설· 기기등의 양여 및 대여, 국가소유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및 실시료면제, 제품의 우선구매등 정부구매제도를 통한 지원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제도는 상업· 공업· 광업· 동력자원· 농수산업· 환경· 과학기술· 국방 등 다양한 국가의 경제행정영역에 정착되어 있다.

보조금제도를 국가의 행정활동분야에 따라 유형화 하고 분류할 경우,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실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을 보고받아 그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보조금의 실제적 운용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으로 재무부와 상공자원부 등 보조금제도 관장부처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로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에 근거가 부여되어 있는 보조금제도를 법령별로 조사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보조금제도를 조사하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고 유형화함으로써 보조금제도관련 법제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제도는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서도 현재 운용되지 않는 보조금제도를 가려낼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계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방법에 의한 보조금제도의 현황 파악 및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보조금제도는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보조금제도관련 국가재정의 운용을 위한 행정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담을 위한 조직법적 근거와 국가재정의 출연을 가능케하는 수권법적 근거 및 보조금제도의 장·단기적 목표를 정하는 내용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첫째로 들 수 있다. 법령에 조직법적 근거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보조금제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기업의 자유에 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제도를 아무런 입법적·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운용케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합법적 통제를 할 수 없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보조금제도의 현황은 국제적으로 현행 법제의 조사를 통하여 가장 간단하게 그 유무가 드러나게 된다. 법령에 근거를 정하여 놓고도 활용되지 않는 보조금, 법령에 특정성이 규정되어 형평의 원리를 벗어난 현행법제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보조금제도는 한국법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차원에서 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착안하여 현행 우리 보조금제도의 현황 파악은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제조사의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보조금제도의 수혜자는 사경제주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체 등 공행정주체도 해당된다. 국내외적으로 각종 법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사경제주체에 대하여 운용되는 보조금제도일 것이므로 공행정주체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본 보고서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국가의 사경제작용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상업·광공업·동력자원·중소기업·환경·과학기술·농수산업·서비스산업 및 국방보조금등의 순서로 유형화하기로 한다. 각 보조금제도는 그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요건 및 절차, 통제기관·통제방법 및 절차등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사하여 도표화하였다.

2. 상업관련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국산진흥및시장시설확충에대한경비보조	국산진흥및시장시설보조금교부규칙제1·2·3·4·5·8조	상공자원부장관	다음각호의사업또는시설을하는자 -국산품전시회의개최 -상공장려관의설치와운영 -산업실태의조사 -도매시장의개설	예산	경비의일부또는전부보조 -보조금은당해사업또는시설을완료한후에교부(원칙)→상공자원부장관의교부결정→보조금교부지령서발부	보조금교부신청청서에사업계획서,수지계산서,기타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상공자원부장관에게제출	-보조금교부지령서를받는자에게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보조금교부의정지또는취소 ·이미교부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명령(상공자원부장관)	
도·소매업의진흥위한자금	도·소매업진흥법제42조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	도·소매업자	예산	자금보조			
유통산업근대화화에필요한자금의보조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제13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유통사업자및사업시행자등	예산	자금의보조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계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시장개척자 등의 자조적 노력에 대한 자금지원	도·소매업진흥법 제8조	시·도지사	시장개척자 또는 시장관리자	예산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자조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소요자금등 지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지원신청→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도·소매업자의 격배송단지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소매업진흥법 제19조의2	상공자원부장관	직배송단지를 건립하고자하는 도·소매업자		자금지원			
지정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	시·도지사	지정연쇄화사업자		법 제26조 각호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금지원			
도·소매업의 진흥위한 자금융자	도·소매업진흥법 제42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소매업자	예산	자금융자			
유통산업근대화화에 필요한 자금융자	유통산업근대화추진법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통사업자 및 시장시행자 등	예산	자금의 융자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연불수출선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 110조제1항제 8호	내무부	연불수출선택을 소 유한 선택제조업체	조세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택으로 서 채권확보를 목적 으로 선택제조자명 의로 등기하는 경우 동선택의 취득세를 면제			
도·소매업의 진흥위한 세계 지원	도·소매업진 흥법 제42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소매업자	조세	조세감면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계지 원			
유통산업근대화 화에 대한 세계 지원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통사업자 및 사업 시행자 등	조세	세계지원			
수출손실준비 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 법 제16조	정부	외화획득사업자(동 시행령 제14조제1 항)	조세	수출사업등 외화획 득사업에서 발생한 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적립한 범 준비금을 일정한 범 위안에서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손금으 로 산입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정부	내국인으로서 해외 무역업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조감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조세	해외시장개척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손금처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정부	해외투자를 하는 내국인	조세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			
수입면허일로 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관세법 제29조, 동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6조, 동시행규칙 제23조		동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물품을 수입·재수출하는 자	조세	과세면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징수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수입면허일로부터 4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9조의2, 동시행령 제 25조의 2 제 2항, 제26조제 3항, 제26조의 2, 동시행규칙 제24조		동시행규칙 제2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수입·재수출하는 자(국내제자 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	조세	과세감면 -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85%경감 -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이내인 경우:70%경감 -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이내인 경우:55%경감 -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이내인 경우:40%경감 -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이내인 경우:30%경감 - 외국과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관세면제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세 징수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관세법 제34조, 동시행규칙 제29조		법 제34조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	조세	과세면제	동시행규칙 제29조제1·2·3항 소정의 사항 기재·관련 서류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서제출		

3. 광공업관련 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장려사업자에 대한 경비보조	공업장려금규칙 제2조	상공자원부장관	장려사업자	예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교부	상공자원부장관에 장려금교부 신청서 제출→ 신청서심사와 현지조사후 교부 결정→ 교부 결정내용과 교부조건통지	상공자원부장관 - 장려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변경 - 장려사업수행의 시정명령	
공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공업법 제102조, 동시행령 제76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광업권자	예산	중요광물자원의 탐광사업·개발시설에 대한 보조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산업디자인·포장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제3항, 동시행령 제5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포장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예산	- 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고 또는 통합 개발된 광고에 대한 우선보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공자원부장관이 출연·분할지급원칙			
산업표준화촉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산업표준화법 제35조	공업진흥청	산업표준화촉진사업을 행하는 자	예산	보조금교부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과 탄광지역 진흥위한 자금 지원	석탄사업법 제26·27조, 동시행령 제22·23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 진흥위한 사업자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 진흥을 위한 조성사업비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탄광지역 진흥사업등 광산지역개발사업·광업시설의 개선에 대한 보조,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기타 등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의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공업용역의 제조 또는 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교부	염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령 제8조	상공자원부장관	공업용역의 제조 또는 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	예산	보조금교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공업용역 제조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서 첨부·당해명령서 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영업심의회의 심의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이 교부		
발명장려보조금교부	특허법 제27조	정부	발명자	국고	발명장려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용보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2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국고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조사비·기술교류비·동시행령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개발촉진비용의 보조		주무부장관이 집행계획과 보조금 지급기준을 미리 공고함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우수해외건설업자 등에 관한 해외건설진흥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16조제3항, 제21조	건설부장관	우수해외건설업자 또는 건설부장관의 권고에 의해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	해외건설진흥 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 기금의 우선지원 등			
합작주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해외건설진흥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 제2항, 제21조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의 권고에 의해 2인 이상의 합작주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	해외건설진흥 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 기금의 우선지원 등			
건설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해외건설진흥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제2항, 제21조, 동 시행령 제21조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의 권고에 의해 해외공사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개발비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	해외건설진흥 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 기금의 우선지원 등	- 기술개발투자 권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년도계약실적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 연간 해외공사계약금액의 2/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권고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계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업종별합리화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등	공업발전법 제10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업종별합리화계획을 실시하는 합리화사업자		금융지원	상공자원부장관의 합리화업종지정의 경우 →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공업단지임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자금지원			
광물자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광업법 제102조, 동시행령 제76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광업권자	예산	중요광물자원의 탐광사업·개발필요시설에 대한 용자-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 또는 통합개발된 광구에 대한 우선용자			
광산물비축자금의 용자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상공자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권자, 조광권자, 채취업자, 제련업자, 석탄가공업자, 상공	광산물 비축 자금	광산의 합리적 개발, 해외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의 다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산업디자인 및 포장전문회사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25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 및 포장전문회사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자금지원 지도, 민영광산육성을 위한 비축자금의 용자	전문회사의 지원신고(상공자원부장관에게) → 상공자원부장관의 수리(수리권환을 서울특별시장·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위탁)		
전시출품물의 제품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 45조	상공자원부장관	전시출품물을 제화하는 자		금융지원			
석탄산업육성과 수요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석탄산업법 제 28조, 동시행령 제 24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 대한석탄공사 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자	석탄산업육성기금	월동기에 대비한 하계저탄, 석탄비축시설, 석탄산업시설의 개선, 법 제 11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조광권 및 광업시설			

제 3 장 현행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	방법및절차	비고
대체물질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이용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정부	대체물질개발자, 특정물질의 배출억제·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이용자		의 매입,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 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금융상의 지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 12조, 동시행령 제 10조	정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자		장기저리자금 및 연구개발사업비 지원	지원신청서를 항공우주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외자원개발자금의 융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3조, 동시행령 제 17조	정부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자금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시설 및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운영자금의 용자 3.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자금의 용자 4. 기타 동시행령 제 17조제1항이 정하는 자금의 용자 -용자의 이자율은 주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의 협의하에 정함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공업단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조세 (국고)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 감면			
대체물질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배출액 면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	정부	대체물질개발자, 특정물질의 배출억제·사용합리화를 위		세제상의 지원			

제 3 장 행정편성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융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이용에 대한 세계상의 지원	에관한법률 제 21조		한 설비의 개발·이용자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내국법인	조세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동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자(동시행령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조세	공정개선 및 자동차 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함	세액공제신청을 해야함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동		산업시설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세액공제를 함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함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제 등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 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24조	정 부	령령이 정하는 시설 에 투자하는 내국인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투 자를 한 내국인	조 세	경조절을 위해 필 요 인정된 투자의 투 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 는 국산기자재를 사 용하여 투자를 한 경 우에는 그 투자금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 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율을 곱하 여 계산한 상당세액 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과세연도의 소득 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1992.1.1~ 1994.12.31까지 투 자된 금액에 한함).	세 액 공 제 신 청 을 해야 함		
법인전환에 대 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	조세감면규제 법 제32조	정 부	제조업·광업·건 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에 영위하는 거주자	조 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양수도방법에 의 해 법인으로 전환하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정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	조세	<p>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p> <p>-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p> <p>-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함</p>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액공제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정부	합리화대상기업	조세	<p>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함</p>	면제신청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제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 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정부	금융기관	조세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정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함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정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함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부	농공단지안에서 농업·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감면신청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정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으로서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위해 토지등을 양도하여 소득을 발생시킨자	조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감면	세액감면신청		

제 3 장 행정편성의 근거한 보충입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광업투자준비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정부	광업	조세	탐광소요비용, 자산취득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 손금산입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	정부	법 제103조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	조세	특별소비세의 면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제28조의 7 제 4항 제 4호, 제28조의 8, 동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 2항, 제21조의 4 제1호, 제21조의 5			조세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법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동물품의 핵심부분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관세감면 : 50% 감면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서 지정받고자 하는 동시행규칙 제21조의 5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생산의 신고사업자에 대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무상)대부·양여 등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 제 13조, 동시행령 제11·12조	정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신고사업자	국유재산	국유시설 및 기기의 양여 또는 사용·수익			

마. 공공구매제도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지정품목·지정가격기술의 규격표 및 품질인증표 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3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품목의 규격표 시허가 받은 제조자 - 지정가격기술의 규격표 시허가 받은 사용자 - 규격표시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격기술을 사용하는 자 - 품질인증표시사용자 		우선구매			

4. 동력자원관련 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제 8·9·10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의 부설연구소, 대학 또는 전문대학, 기타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비 (예산)	-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연구·개발·기술평가·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기술지도 및 보급·기술연구성과의 사업화촉진·기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연 - 분할지급이 원칙			
소계곡수력발전소 건설비용의 보조	소계곡수력발전소 건설비용보조법 제 1·3·4·5·6·7·16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소계곡수력발전소의 시설비 또는 보수를 하는 전기사업자	예산	- 사업경비보조(경비의 5할 이내 원최) - 당해연도의 공사 또는 일정기간의 공사가 완료된 후 교부합이 원칙	당해연도 4월 말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 신청서 제출→보조지령서 교부	- 동규칙 제16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상공자원부장관의 보조금 교부금지명령·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계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가스안전기술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보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9조 제1·3호, 제40조, 동시행령 제25조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기금(기금의 재원은 1996년12.31까지만)	가스안전 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교육·홍보사업등의 보조		기금의 보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54조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발전소건설을 위한 전원개발 지점 조사경비의 보조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제1·3·5·6·13조	상공자원부장관	발전소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지점을 조사하는 전기사업자	예산	- 조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 당해조사가 완료된 후에 교부함인 원칙	상공자원부장관에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의 지령서 발행	- 동규칙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공자원부장관의 보조금교부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명령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전기사업자의 지원등	농어촌전회촉진법 제20조	한국전력공사	자가발전시설 운영자		자가발전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액의 지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1조	상공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사업 투자자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조성된 자금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액 투자액의 일부를 우선적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54조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	에너지이용합리화금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에 대한용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9조 제2·3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하는 자	가스안전관리금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31까지 허용)	사업자금의 용자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되,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의 협의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전기공사등의 사업지원	전기공사공제 조합법 제9조	전기공사공제 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전기공사공제 조합금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등의 지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공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	국고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다. 조세감면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54조	정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자	조세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시행령 제97조		동시행령 제97조제2·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증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조세	재활용폐자원 및 증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110분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정부	석유사업자	조세	지원내용및조건 - 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5. 중소기업관련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계열회사측진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7조	정부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		지원내용및조건 - 장기저리융자 - 선지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 보조자금등지원	지원요건및절차 - 사업계획서를 - 상공자원부장 - 관에 제출하고 - 승인받아야 함		
중소기업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부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제2항, 동시행령제44조	상공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 제3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외의 자)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내용및조건 - 보조금부	지원요건및절차 - 사업계획서첨 - 부·보조금교 - 부신청(공단이 - 사장에게)→타 - 당성검토·보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제3항	주무관청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	예산	품질규격제정·검사사업·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조금교부결정(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하에)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나. 금융지원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중소기업자의 유휴시설의 해외이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정 부	유휴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는 중소기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금의 융자 (한국수출입은행 제18조)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출자 및 융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 해외투자자금의 대출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 및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수출보험법) 		통제기관·방법및절차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의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정부	사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할 중소기업자	직업훈련촉진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에 의한 융자 - 우선적 보증(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	정부	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창업자금의 지원 - 기술개발자금의 우선 지원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 동시행령 제40조	정부	동법시행령 제40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하는 대기업		금융상의 지원			
중소기업창업자금투·융자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동시행령 제4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기	- 자금투자·융자 -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융자 한투·융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 동시행령 제5조	정부 (상공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금 (정부 또는 부외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 투·융자 - 융자금리와 상환기간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부장관과의 협의	-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동시행령 제40조	정부	동시행령 제40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하는 대기업	조세	조세상의 지원			

제 3 장 현행 법령의 근거한 보충규제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전환 계획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자	조세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 후 일정기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입 산업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정부	대통령령이 제2조제1항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의 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투자준비금을 손입에 산입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준비금명세서 제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동시행령 제2·3조	정부	중소기업	조세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원료납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함	세액공제신청을 해야함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정부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	조세	최근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감면신청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		위하는 자(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조세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감면신청		
기술집약형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정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조세	- 수도권외 창업중소기업자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세액감면 - 수도권내 창업중소기업자 : 과세연도가 ①3년 이내 종료하면 100분의 50감면 ②2년 이내 종료하면 100분의 30감면	감면신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정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감면신청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등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정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채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계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정 부	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2조	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회사	조 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자에게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보전을 위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과세표준신고 ·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 제출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정부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	조세	사업용 고정자산이 통합에 의해 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함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정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상당 세액감면)	세액감면신청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정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	조세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	감면신청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정부	지방이전중소기업	조세	지방이전중소기업의 사업이전후의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연도가	감면신청		

표 3 약 행 법 행 법 의 단 거 한 보 조 기 관 제 도 의 유 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제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합 병 장 려 업 종 을 영 위 하 는 중 소 기 업 간 의 합 병 · 통 합 으 로 인 한 각 종 등 기 에 대 한 등 록 세 면 제	조 세 감 면 규 제 법 제 113 조 제 1 항 제 2 · 3 호, 동 시 행 령 제 104 조	관 할 시 장 · 군 수 또는 구 청 장	1. 주 무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합 병 장 려 업 종 을 영 위 하 여 합 병 하 는 중 소 기 업 2. 국 가 의 산 업 정 책 상 생 산 또는 경 영 규 모 의 적 정 화 를 유 도 할 필 요 에 서 재 무 부 령 이 정 하 는 업 종 을 영 위 하 는 중 소 기 업 간 의 통 합 에 의 하 여 실 립 된 범 인 또는 통 합 후 존 속 하 는 범 인	조 세	① 3년 이내 종 료 시 소 득 세 또는 범 인 세 의 100분 의 50공 제 ② 2년 이내 종 료 하 면 100분 의 30공 제 다 음 의 등 기 에 대 한 등 록 세 면 제 1. 합 병 으 로 인 하 여 양 수 하 는 재 산 에 관 한 등 기 2. 통 합 에 의 하 여 실 립 된 범 인 또는 실 립 후 존 속 하 는 범 인 이 당 해 사 업 용 자 산 을 양 수 함 에 따 른 등 기	지 원 요 건 및 절 차 감 면 신 청		
창 업 중 소 기 업 의 체 등 기 에 대 한 등 록 세 감 면	조 세 감 면 규 제 법 제 113 조 제 2 항, 동 시 행 령 제 104 조	관 할 시 장 · 군 수 또는 구 청 장	창 업 중 소 기 업	조 세	창 업 일 로 부 터 2년 이 내 에 취 득 하 는 사 업 용 재 산 에 대 한 등 기 및 창 업 중 소 기 업 의 범 인 실 립 의 등 기 에 대 하 여 상 등 록 세 의 50% 에 상 당 하 는 세 액 감 면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칙법 제114조제1항제2호, 동시행령 제104조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조세	사업용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면제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세감면규칙법 제114조제2항, 동시행령 제104조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창업중소기업	조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감면신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칙법 제115조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창업중소기업	조세	사업용소유재산에 대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100분의 50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	중소기업	조세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상의 특별조치 - 일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간·방법및절차	비고
	제29조제1·2항				한 경우의 법인세 ·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 사업전환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감면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 해당사항 없음.

마. 공공구매제도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간·방법및절차	비고
중소기업의 우선발명의 우선구매	발명진흥법 제27조	조달기금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우수발명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우선구매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에 한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적 물품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 제7조제3항	상공자원부장관, 공공기관(국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개발물품을 생산한 중소기업자		- 우선적 물품구매 단체의 계약 체결 - 중소기업자가 생	매 회계연도의 개시 1월 전에 중소기업협동	중소기업자가 물품의 품질보장의무 위반시 → 공공기관은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단체수의 계약 체결, 중소기업자의 신개발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 동 시행령 제3조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자		신한 신개발물품중 지원과 속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우선구매	조합중앙회장의 추천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이 단체수의 계약물품을 지정·공고	6월이상 3년이내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자격을 제한하고 이사실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통지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정축진에 관한 특별구조치벌법 제17조, 동시행령 제18조, 동시행규칙 제3조	정부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해당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판장하는 주무부장관에 게 우선구매 지원요청서 제출 →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자가 개		

제 3 장 현행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발한 제품을 판 장하는 주무부 등 장관은 정부에 우 공공기관에 우 신구매조치 요 구 → 당해 기관 의 구매대상품 목의 지정 및 우 수의계약 등 우 신구매조치		

6. 농수산업관련보조금(축산·임업포함)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산물 수출한 자에 대한 보조금	농산물가격유지법 제7조, 동 시행령 제5조	정부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농산물 수출가격차로 인한 손해발생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금 교부	농림수산부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 및 경제관계장관과의 협의 하에 보조금의 교부절차 정함.		
농업생산장려	농산장려보조	농림수산부	농산사업을 영위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사업계획서에	규칙 제14조 각호에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보조금	금교부규칙 제 1·2·3조	장관	는 단체 또는 사업자		의 8할 이내의 금액에 대한 보조금교부(원칙)	당해연도수지에 산서첨부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신청→보조금교부 결정→지령서 발부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일부반환 명령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의 보전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6조 제1항, 동시행령 제33조, 동시행규칙 제18조	기금관리자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는 지정수출업자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	천재지변이나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손해의 보전	· 기금관리자에게 신청서 제출→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여부 통지(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기금관리자가 지정업자에게 통지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에 대한 보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9조 제2항	정부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	예산	지정품목의 생산·수집·가공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재원확보기금에 대한 보조			
지정생산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6조 제2항	기금관리자	지정생산자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	생산장려금 지급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별 3 상 연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지정 및 준지정 품목 농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9조	정부		- 예산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이익		- 생산한 농림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 - 농림축수산업협동조합과 생산 및 출하계약 체결하고 공동출하는 농산물에 한함 - 생산자 조합통해 보상		
농수산물매입자 등의 진흥을 위한 자금보조 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매입자·농수산물매입자협동조합		자금보조·용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동시행령 제3조, 동시행규칙 제2조·제2조의2·제3·4·5·6·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청장)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예산	복구비·이자감면등의 보조 및 지원	- 피해발생신고(농·어가→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도직할시장·도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제1·2항	농림수산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 및 생산자 단체 -농업기계등의 공동이용조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조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 영농회사 -농업기계계의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 및 부품생산업체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임을 영위하 		<p>농업기계와 농업용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의 생산·보급, 공동이용의 촉진, 이교육훈련, 상품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사후봉사 및 시험·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시책에 대한 보조금 지급</p>	<p>지시→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 -국가의 보조 및 지원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거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실시</p>		

제 53 장 생활보호법의 단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하는 자 및 농업용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업체 -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고등학교 및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고등학교 위탁영농회사					
전업농어가에 대한 전업장려금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동시행규칙 제10조	농림수산부장관	전업희망농어가의 만14세 이상의 구성원으로서 농어업외의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보조금 지급 전업장려금 지원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어가에 대한 전업장려금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10조	농림수산부장관	경영자산을 일괄하여 농어민이나 농촌진흥공사에 이전하는 농어가의 만18세 이상의 구성원으로 서 농어업외의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예산	전업장려금 등 지원			

명 칭	근 거 범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계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농수산물특정연 구사업관계자 에 대한 출연금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10 조의2	정 부	농수산물자원의 효율 적인 개발·이용과 농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 구 및 공동지도를 하 는 농어촌 지도기관 · 연구기관· 관계대 학 또는 관계전문가	예 산	출연금 지급	농림수산부장 관 또는 특정연 구사업을 주관 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이 를 예산에 상정 하여 원칙적으 로 분할 지급		
특정 농수산물 을 생산하는 농 어민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13 조, 동시행령 제24·25조	농림수산부 장관	특정 농수산물의 판 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자조금을 농 조성·운영하는 농 어민의 생산자 단체	예 산 (축산진 흥기금, 농수산 물가격 안정기 금)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의 지급대상 이 되는 농수산물 (돼지, 닭, 우유, 기 타 농림수산물)이 정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조 직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 조 성한 금액의 100분 의 50범위내로 - 지급대상이 축산물 인 경우에는 축산진 흥기금에서, 농산 물인 경우는 농수산 물가격안정기금에 서 지급(그 지급액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국내산 농수산물 의 가공업 등 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15 조 제2항, 동시 행령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식품제조·가공업 등 농수산물을 가공 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농어민 또는 생 산단체		은 정부가 다음 연도 의 예산의 범위안에 서 당해 기금에 출연 하여 보전)			
농수산물의 수 출촉진을 위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15 조 제3항	농림수산부 장관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연구기관		보조금 지급			
수입자유화 품 목생산의 포기 또는 품목을 바 꾸는 경우의 보 조금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 16조	정 부	무역업자 또는 무역 에 관련된 기관		보조금 지급			
수입자유화 품 목생산의 포기 또는 품목을 바 꾸는 경우의 보 조금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18 조 제3항, 동시 행령 제28조	농림수산부 장관	수입자유화 품목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품목을 바꾸는 농어 민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을 일 정 규모이상 생 산하는 농어가 의 신청 - 지급대상품목 고시와 대상품 목의 생산규모 결정은 농림수 산부장관이 수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제2항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예산	보조금 지급	입자유화대책 심의회의 심의 거쳐 행함	도지사는 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생산조정 또는 출하 조정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 및 하한가격 보장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보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정부 및 생산자단체 (약정담판기관)	- 생산조정이나 하조정의 체결한 농가 출하를 약정하는 농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정부 출연)·생산자단체의 적립금	· 손실금 보전 - 손실액 중 80/100을 정부가 보전 - 나머지는 약정담판기관이 부담	· 생산조정 또는 출하 조정의 약정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손실보전신청서 제출→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손실보전액 지급 · 지급 후 10일이내에 농림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지의 개발사업 및 영농비용자금지원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9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농지개발사업자	국고	농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비 및 영농비용	수산부장관에 계결과보고	농림수산부장관은 보조조건을 위배하 거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시 교부를 정지하 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함.	
농가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자금보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2조	국가	농가주택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			
농가주택개발사업용 자재생산에 대한 보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3조	농어촌진흥 공사	농가주택 개발사업 용 자재를 생산하는 자		보조	농림수산부장 관의 사전 승인 필요		
농촌근대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 는 자		현금 또는 현물의 보 조금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규정 제3 · 4· 7· 17· 18조	농림수산부 장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 진법에 의한 사업시 행자	예산	보조금교부 - 100분의 100이내의 보조율에서 100분 의 50이내의 보조율 까지	교부신청→지 령서 교부	- 농림수산부장관 -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 정지 또는 취소 - 교부한 보조금의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촌진흥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지도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농촌진흥법 제 10조	정부	시험연구사업, 지도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	예산	- 현물교부의 경우: 전액 보조가능 조성금 또는 보조금지급		전부나 일부 반환 명령	
농촌진흥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농촌진흥사업 보조금교부규정 제 2·3·5·6·13조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 법인, 민간단체, 학교 또는 자연인		- 소요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의 보조금교부 - 시행분기별로 교부	-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조금(조성금)교부 신청 → 15일 내 교부지령서발부	- 농촌진흥청장 - 일정한사유로 인한 보조금 또는 조성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정지 · 취소 또는 반환 명령	
내수면개발촉진을 위한 보조금등 재정지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12조, 동시행령 제 32조		·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 -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역내의 사업 - 내수면어업개발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 지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 양어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보조금 교부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연초경작자에 대한장려금	담배사업법 제 8조, 동시행령 제7조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초경작자		보조금 교부			
미강착유장려를 위한 보조금 교부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미강착유업자	국고	입담배의 생산을 장려하고 연초경작기술의 향상을 위해 경작자에게 장려금 지급			
사료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보조금	사료관리법 제 3조제3항	정부		예산	미강의 착유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및 안정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의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산림법 제109조, 동시행령 제 108조의2	정부	동시행령 제 108조의2 각호의 산림사업을 하는 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보상	산림법 제114조, 동시행령 제111조, 동시행규칙 제106조	산림청장		예산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금액)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림청장(임업협동조합(임업협회)에게 제출→보상금지급여부 결정→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결과통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한 보조금	수산업법 제87조, 동시행령 제67조	행정관청	동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보조금 교부			
수산업 또는 그 시설을 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3·4·5조	수산청장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계기한 수산업 또는 그 시설을 하는 자	예산	· 보조금 교부 - 소요되는 경비의 8할내에서 교부함을 원칙	매년 4월 30일까지 수산청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수산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산진흥법 제13조제1항	정 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보조금 교부			
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기구구입에 대한 보조	식물방역법 제24조제3항	농림수산부장관	방제(防除)를 실시할 농업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		방제용약제와 기구의 구입 비용의 일부보조			
양곡의 관리와 수급조절등 관	양곡관리법 제26조, 동시행	정 부 (농림수산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개선, 양곡의 가	예산	보조금 교부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연사업에 대한 보조금	령 제31조	부장관	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동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연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연초생산협동조합과 중앙회		보조금 교부(인건비)	조합과 중앙회가 공사에 지급 청구서 제출		
연초경작자에 대한 비료대금의 보조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7조 제2항, 동시행령 제2조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초경작자		복합비료대금의 일부 보조	- 조합과 중앙회가 공사에 지급 청구서 제출 - 조합통해 지급 -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공사가 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연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동시행령 제2조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연초생산협동조합과 중앙회		보조금교부(인건비)	조합과 중앙회가 공사에 지급 청구서 제출		
인삼경작방법의 개량 또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장려금	인삼사업법 제9조제2항, 동시행령 제9조	한국담배인삼공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삼경작자 또는 인삼경작자 단체 1. 인삼경작지를 새		장려금 또는 장려품 지급			

별첨 2 별첨 4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또는 장려품지급			로이 개척한 경우 2. 우량인삼경작기술을 개발한 경우 3. 인삼경작방법의 개량등 생산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인삼협동조합법 제7조, 동시행령 제2조	한국담배인삼공사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보조금 교부		· 용도의 사용시 - 보조금 지급중지·보조금 반환명령	
인삼사업진흥을 위한 보조금	인삼사업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1조제2·3항	인삼협동조합중앙회	기금관리자(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동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인삼사업진흥기금	- 보조금지급 - 보조금의 총액은 기금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재무부장관-매회 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기금관리자에게 기금의 운용계획지침 통고 · 기금관리자-연간 기금운용계획수립 · 매회계연도 개시 30일까지 재무부장관의 승인요	
잠업발전도모를 위한 장려금교부	잠업법 제10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잠품종, 상품종을 육성개발한 자, 상묘생산자, 잠종생산자, 잠견생산자		장려금 교부			

제 3 장 행정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잠건출하장려금	잠업법 제20조 제2항, 동시행령 제23·24조	농림수산부장관, 기관관리자	양잠농가	잠업진흥기금	잠건의 농가출하가격을 제사업자 인수가격 보다 높게 정하였을 때 그 차액을 기금에서 잠건출하장려금으로 지급	· 농림수산부장관은 지급의 목적·지급대상·지급금액·산출방법 등을 고시함. · 잠건대금지급시에 잠건수매기관이 지급→기관관리자에 계정산결과통지→기관리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급결과보고		
잠건의 생산과 생사류 및 견직물의 소비촉진 또는 수출장려를 위한 장려금	잠업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4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잠업농가, 장종 및 상모생산자, 생사류 및 견직물생산자, 잠업단체	잠업진흥기금	장려금 지급			
조수의 보호·번식에 관한 보조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업위탁을 받은 조수의 보호·번식에 관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종묘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보조	종묘관리법 제17조	정부		예산	종묘의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에 대한 보조	주요농작물종자법 제19조	국가 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도지사	농업단체 또는 농가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지력증진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자금보조	지력증진법 제7조, 동시행령 제4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개인	예산	지력증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농산장려보조의 교부절차에 의함		
청원산림보호 직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	예산	경비의 일부보조			
초지조성에 대한 자금보조	초지법 제1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1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초지조성자		연도별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초지조성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작업장 또는 작업장의 시설비 보조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시설비의 일부보조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축산법 제57조 제2항, 동시행령 제21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축산발진기금	보조금 지급	기관관리자에 계신청서등 제출 →교부결정 →통지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축산사업 장려 를 위한 보조금	축산사업 장려 보조금 교부규 칙 제1·2· 3·5·7· 14조	농림수산부 장관	축산사업을 하는 자	예산	보조금교부 - 필요경비의 3할 -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 필요 경비 의 8할초과 교부	사업계획서에 당해연도 수지 예산서 첨부하 여 농림수산부 장관에 신청 → 보 교부결정 → 보 조지령서 발부	· 일정한 사유가 있 는 경우 농림수산 부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	
진도건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한 경비보조	한국진도건보 호육성법 제9 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한국진도건보육협동 조합 또는 개인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 보조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낙농진흥에 대 한 용자	낙농진흥법 제 5조, 동시행령 제15조	농림수산부 장관	우유의 도입 및 임 식, 법 제8조에 규정 하는 낙농지대만의 사업, 축사 또는 싸 이로 시설 및 낙농기 구의 도입 그리고 낙 농처리장공시설 및 운영을 하는 자	낙농진 흥기금	용자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질 처	통 제 기 관 · 방 법 및 질 처	비 고
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자금 융자	농산물가격유지법 제6조, 동 시행령 제4조	농업협동조합 및 일반은행	수출업자		수출농산물확보자금의 융자			
산지가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림수산부장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지원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농림수산부장관	- 지정품목의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전통식품명인		자금지원(전통식품명인에 대해 전통식품가공자금 및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은 산지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전통식품명인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전통외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농림수산부장관	국산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외식업을 영위하는 자		전통외식의 개발·보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보급등에 대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부장관	농수산물 가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		자금지원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질 차	통 계 기 관 · 방 법 및 질 차	비 고
자금지원	법률 제10조제2항, 동시행규칙 제24조		한 농수산물가공기술 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					
산지가공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농림수산부장관	수입개방등에 대응하여 생산하는 가공품의 품질진전등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공업자		자금의 융자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농림수산부장관	농어민·생산자단체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단체		농수산물의 조제가공·선별·포장등에 필요한 기계 기타 장비의 시설비, 포장자재비등의 자금지원			
품질인증받은 특산물등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농림수산부장관	품질인증받은 특산물등의 생산자		자금지원			
가공원료의 안정생산·공급에 위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동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농림수산부장관	지정된 주산지안에서 가공원료를 생산하는 자 및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된 생산자 단체		자금지원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	방법및절차	비고
수출단지등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3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출단지·지정생산자		자금지원				
지정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4조	정부	지정수집·가공업자 및 지정수출업자		지정품목의 수집·가공 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융자				
지정품목에 대한 진흥기금의 융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8조, 동시행령 제35·36조	기금관리자	지정품목의 생산·수집·가공 및 수출을 하는 자	농수산물진흥기금	- 자금융자 - 융자기간은 1년 이내 - 물적담보 또는 연대보증 필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지정생산단지 등에 대한 생산자금의 융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농림수산부장관	생산단지에서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생산자금의 융자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생산자금의 융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 농수산물 생산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영농·어자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융자알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3항, 동시행령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영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융자알선				

제 3 장 행정편성의 근거한 보조사업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에 관한 자금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제1·2항	농림수산부장관	농어민 및 생산단체		자금융자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영농회사		융자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동시행령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가공업 등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		융자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3항	농림수산부장관	농수산물가공업에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연구기관		융자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	정부	무역업자 또는 무역에 관련된 기관		융자			
수입자유화품목 또는 생산의 포기 또는 품목을 바꾸는 경우의 자금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제3항, 동시행령 제28조	농림수산부장관	수입자유화품목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품목을 바꾸는 농어가		융자	대상품목을 일 정규모 이상 생산하는 농어의 신청 - 융자대상품목 고시와 대상품목의 생산규모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계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경작 에 대한 우선적 금융지원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 제45 조제2항	정 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경작농민		금융지원	결정은 농림수 산부장관이 수 입자유화대책 심의회의 심의 거쳐 행함.		
농지구입자금 의 우선적 지원	농어촌진흥공 사및농지관리 기금법 제13조 제2항	농어촌진흥 공사	진업농육성대상자	농 지 관 리 기 금	농지구입 자금의 우 선적 지원(음자)	-음자의 한도와 조건은 농지관 리 기금운용위 원회의 심의거 쳐 농림수산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합의하 여 결정 -공사는 지원대 상자 선정하여 해당 금융기관 에 통보		
장기임대차 간 척농지등의 매 입에 대한 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공 사및농지관리 기금법 제16조 제1항	농어촌진흥 공사	경작농민		농지구입 자금지원	-공사는 지원대 상자 선정하여 해당금융기관 에 통보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전업농가의 영농부귀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지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관리법 제19조 제2항	농어촌진흥공사	농지매도후 2년 이내에 영농복귀하고자 하는 전업한 농가		농지구입 자금지원	-공사는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해당금융기관에 통보		
농업기계구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정부	농업기계 구입자·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조기종의 농업기계생산에 대한 자금용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2항	정부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용자			
공동이용을 위한 농업기계구의 구입·운영관리 등에 대한 경비지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	정부	공동이용사업수행자		공동이용을 위한 농업기계구입과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농지의 개발사업 및 영농비의 자금지원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9조	정부	농지개발사업자	국고	농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 및 영농비용자		농림수산부장관은 용자조건에 위배하였거나, 용자목적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시 용자금 대출을 중지하거나 이미 대출된 용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음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설 차	통 계 기 관	방 법 및 설 차	비 고
미강착유장려를 위한 자금용자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 동시행령 제5조	정 부 (농림수산부장관)	미강착유업자	국 고	미강착유를 장려하기 위해 자금용자				
사료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금용자	사료관리법 제3조제3항	정 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 향상 및 안정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의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자금용자				
산림사업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한 용자	산림법 제106조, 동시행령 제100조, 동시행규칙 제105조의3	산림청장	동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 제105조의3의 각호의 사업자	산림개발기금	- 자금용자	용자조건은 산림청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자	산림법 제109조, 동시행령 제108조의2	정 부	동시행령 제108조의2 각호의 산림사업업을 하는 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자				
양곡의 관리와 수급조절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용자	양곡관리법 제26조, 동시행령 제31조	정 부 (농림수산부장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동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	예산	자금의 용자	용자금의 이자 등 용자조건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정함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계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영농기술자에 대한 영농자금 등 우선적지원	영농기술훈련규정 제11조, 동시행규칙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기술 검정에 합격한 영농기술자		영농자금 등 지원			
인삼경작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인삼사업법 제9조제3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인삼경작자		자금의 용자			
인삼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인삼사업법 제20조, 동시행령 제21조제1항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사업 관계자	인삼사업진흥기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경작자금의 용자 - 인삼류의 구매·생산·가격조절·생산·출하의 장려 등을 위한 용자 - 인삼류의 수출축진을 위한 용자 - 인삼류의 보관·관리 및 가공을 위한 용자 - 인삼경작의 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인삼사업진흥에 필요한 사업에의 용자 			
잠사류의 생산·수집·가공·수출에 대한 자금용자	잠업법 제24조, 동시행령 제31조, 동시행규칙 제29조의3	잠업진흥기금관리자	잠사류의 생산·수집·가공·수출업자	잠업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용자 - 물적담보설정 또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신청서에 기금의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제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지력증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자금조성	지력증진법 제 7조, 동시행령 제4조	농업협동조합	지력증진사업자	비료조절계정의 자금	이상의 연대보증 -용자기간은 3년이내(생산 및 운영자금:1년이내, 시설자금:3년이내)	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초지조성에 대한 자금유지	초지법 제1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1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초지조성자		자급비료 증산을 위하여 자금유지	농산장려보조금의 교부절차에 의함.		

다. 조세감면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제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농수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지에서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조세	조세상의 지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경작에 대한 우선적 조세상의 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45조제2항	정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경작농민	조세	조세상의 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효율적인 농어촌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조세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	농어촌발전사업	조세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농지개발에 대한 조세 및 수수료의 감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1조	정부 (농림수산부장관)	농지개발사업자	조세	개발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함.			
수산진흥을 위한 조세감면조치	수산진흥법 제14조	정부		조세	다음 조세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감면 - 어업용유류에 대한 유류세 - 어업 및 어선건조용자재와 수산용기자재의 도입에 관한 관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어업자, 어업종사자 및 국가가 특히 장려하는 어업에 대한 소득세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정부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내에서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농수산물가공업	조세	투자준비금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재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절 차	통 제 기 관 · 방 법 및 절 차	비 고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정 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농수산물가공업	조 세	-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 내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농수산물가공업 영위시 당해사업용 자산에 대해 일반감가상각액의 100%를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동 시행령 제51조	정 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농민	조 세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조합원의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면제 - 농민이 영농조합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위탁협동회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칙법 제53조, 동시행령 제52조	정부	위탁협동회사	조세	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감면신청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칙법 제54조, 동시행령 제53조	정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의 사업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 - 농·임·축·수산물 - 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 진통민속주의 제조업 - 관광도산품의 제조업	조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 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 당해 사업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면제신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칙법 제55조, 동시행령 제54조	정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	8년이상 계속·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		

명 칭	근 거 법 령	지 원 주 체	수 혜 자	채 원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요 건 및 질 차	통 계 기 관 · 방 법 및 질 차	비 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동 시행령 제55·56조	정 부	농지등 소유자 - 농업생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조 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율 면제함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개 면제신청→ 양도소득세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은 양수자의 주소관할세무서장에 개 면제 사실 통보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정 부	농지등 소유자	조 세	농지등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함	농지등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함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동 시행령 제57조	정 부	농지등의 소유자	조 세	농지등의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	농지등의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세의 면제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면제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동시행령 제67조	정부	10년이상 계속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을 발생시킨 자	조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세액감면	세액감면신청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동시행령 제92조	국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축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포함)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신고·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 제출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동시행령 제93조	정부	영림개발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조립한 지 10년이상 인 산림·채종림·보안림 및 친연보호림을 벌채 또는 양도	세액감면신청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 해당사항 없음

마. 공공구매제도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산물의 가격유지를 위한 농산물 매수	농산물가격유지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조	정부	농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	예산	· 농산물 매수 ·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기관의 매수업무 대행가능			
농수산물(쌀·백류 제외)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농비축·출하조절용 농수산물의 수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0조, 동시행령 제10·11조	농림수산부장관, 비축사업 등 실시기관(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생산자 및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또는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농수산물 가격안정금	· 지정 또는 준지정 품목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 · 재배 또는 양식 계약이나 선매계약 체결·선금지급			

제 3 장 행정법령의 근거한 표시관리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수산물 과잉 생산시의 가격 안정을 위한 구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동시행령 제12조	농림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 장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	·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정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 기후여건등으로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확 이전에 구매가능			
양곡의 수급조절·적정가격유지를 위한 양곡매입	양곡법 제4조, 동시행령 제3·4조	농림수산물 장관	다음에 열거하는 양곡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예산	양곡매입	농림수산물장관은 양곡의 매입 가격·매입량·매입기간·매입장소·매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정부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은 국회의 동의필요	

7. 환경관련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농어촌환경보존에 대한 자금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 특산물생산단지의 임주자		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방지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재정상 지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국가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집행비용의 보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국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집행하는 단체	국고	자연환경보전사업 집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금의 보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사업자	공급발전기 또는 공급발전기 기반기술 개발사업 자금, 중소기업구조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 자금등 보조			

제 3 장 현행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비용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3조제2항	환경처장관	자원재활용협의회	예산	협회운영비용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폐기물관리법 제5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국고	-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재정지원	폐기물관리법 제5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환경보전관련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사업자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보전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 관련 학술조사·연구자 및 기술개발자		환경보존관련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			
환경보전협회의 운영비용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4항	국가	환경보전협회	예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의 경비의 일부지원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금의 융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사업자	- 공업기 발사 개발사 업자금 -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 - 에너지이 용합리화 기금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의 융자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	환경처장관	사업자	환경개선 부담금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제4호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	환경오염 방지기금	-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과학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은 재무부장관과의 협의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환경보존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환경정책기본 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사업자	조세	환경보존을 위한 시 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제상 의 조치			
환경오염방지 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 의 7 제 1 항 제 1·2·3호, 제 28조의8, 동시 행규칙 제21조 의 2, 제21조의 3제1항, 제21조 의 4, 제21조의5		환경오염방지용품 을 수입하는 실수요 자 또는 시공자		①폐기물처리용 또 는 재활용품 ②오 염물질배출방지 또 는 처리용품 ③산 업채해 및 직업병에 방용품중 국내제 작이 관련한 것으로 동시행규칙제21조 의2제1항에 해당하 는 물품중 재무부령 이 따로 정하는 것 에 대한 관세감면 : 50%	- 관세감면을 받 고자 하는 자 는 당해물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의 확인필요 -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서 지 정받고자하는 자는 동시행규 칙 제21조의 5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함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감 면받은 용도외의 사 용·양도가 있는 경 우 - 감면된 관세들 즉시 징수함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등 : 해당사항 없음

마. 공공구매제도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	방법및절차	비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0조, 동시행령 제30·31조	환경처장관, 재활용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공공기관	재활용제품제조자		재활용제품의 구매추진을 위한 우선구매 등의 조치(요구)·권유	· 환경처장관과 재활용제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①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우선구매계획·우선구매실적을 환경처장관에 게 통보)②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 우선구매 등 권유			

8. 과학기술관련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출연	공업발전법 제 13조제2항	상공자원부장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기관		출연금지급 - 분할지급원칙			
과학기술에 관한 발명연구·개발·응용 또는 그 진흥 및 기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	과학기술진흥법 제18조	정부						
과학기술법인·단체등에 대한 보조	과학기술진흥법 제19조	정부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개인	예산	소요경비의 일부보조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등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제3항제1호	과학기술처장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法人·단체 또는 개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	과학기술진흥기금	장려금 지급			
과학관설립·운영경비의 일부보조	과학관육성법 제1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등록 과학관		설립경비일부, 과학관운영경비일부보조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8조	정부	규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자금지원			

제 3 장 연행법령에 근거한 보조단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4, 동시행령 제17·18·19조	과학기술처 장관	연구수행기관 또는 단체	정부 예산	출연금지급			
기초과학연구인력에 대한 장학금등 지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정부	기초과학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지원			
기초과학학술단체활동경비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3조	정부	학회 등 기초과학 학술단체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의 개최, 학술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지원	동시행령 제 18조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 · 21 · 22 · 23 · 24 · 26, 동법시행령 제 25 · 26 · 27조	과학기술장관	지원사업의 시행자 (공공시설사업 : 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청·군수 또는 구청장,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사업 : 사업자)	방사성 폐기물관리금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금의 출연 및 지원 - 지원금의 상한금액 (건설기간 : 매년 50억원, 운영기간 : 매년 30억원) - 상한금액과는 별도로 건설기간전에 특별지원금지원 가능 - 지원금은 시설주변 지역에 사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원사업울 우선적으로 시행 -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증상사성폐기물 영구	· 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 교부신청(분기개시전 1월 전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 · 당해 분기개시 7일 전까지 사업자에 교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 중단케 할수 있음.	

제 3 장 행정법령의 단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발명진흥법 제 23조	특허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 등		처분시설 및 사용 후 해연료 중간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으로 함. 금융지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우수평가결과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신청→특허청장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우선적 자금지원 요청		
우수발명시작품제작에 대한 자금지원등	발명진흥법 제 25조	정부	우수발명시작품제작자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발명의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등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수행에 대한 보조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 2·3·11조	특허청장	- 발명자 및 그 승계인 -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수행하	예산	보조금교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특허청장에 제출→	- 특허청장 - 일정한 사유 있는 경우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는 개인 또는 단체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조합의 사업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 12조, 동시행령 제8조	정부 (과학기술처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우선적 지원	·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합의 사업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안 조치요구	· 보조금의 교부과정지 또는 취소·보조금의 결정액삭감·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 · 일정한 기간내에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 지정기일까지 보조금 반환안할 경우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출연 또는 보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정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에 대한 자금의 출연 또는 보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제1·2항	정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2.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공제사업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	예산	자금의 출연 또는 보조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원자력관계 연구에 대한 연구 보조금 또는 위탁연구비교부	원자력에 관한 연구보조금및 위탁연구비교부 규정 제1조·2·3·4·5·6·12조	정부	원자력의 기본원리·개발·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자격기준은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 장관이 고시)	예산	기계장치·기구등의 구매·제조·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원재료 구매·제조·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연구보조금)와 비용의 전액 교부(위탁 연구비)	교부신청(과학기술처장관)→자부결정(원자력위원회심의)→통지→20일 이내에 서약서 제출(과학기술처장관)	제12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과학기술처장관의 연구보조금 또는 위탁연구비 교부의 취소명령, 이미 교부한 연구보조금이나 위탁연구비나 이로써 취득한 기계·기구 기타 물품의 반환명령 또는 변상명령	
원자력에 관한 특수한 자에 대한 상금교부	원자력에 관한 특별명칭에 대한 장려금및 상금교부 규정 제2·7조	정부	원자력에 관한 특별명칭으로 특히 우수한 작품을 발명한 자	예산	· 상금교부 · 일시교부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한 장려금	원자력에 관한 특허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교부 규정 제 3·5·6·7·9조	정부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하여 그 시작품을 제작하려는 발명자	예산	·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장려금교부 · 일시교부 또는 분할교부	과학기술장려금 · 과학계 장려금 · 교부신청→원자력위원회 · 의결을 거쳐 결정	제9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과학기술장려금의 장려금교부의 중지 또는 취소 명령, 교부된 장려금의 일부를 또는 전부의 반환 명령	
유전공학연구사업에 대한 장려금 또는 교부의 교부	유전공학육성법 제18조 제3항, 동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정부 (과학기술처장관)	유전공학연구와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	유전공학연구 학연금 · 과실	유전공학의 연구개발, 유전공학연구과의 신기술사업화, 유전공학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 전문인력의 개발교류, 유전공학의 정보수집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	과학교육진흥법 제16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지정된 용도에 의한 자금을 사용한 때→과학교육진흥법 제16조 제3항 또는 장려금을 직접 회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함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 기구에 대한 출연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 동시행령 제4조	정부 (과학기술처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	특정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 기구	예산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 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지급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와 장려금의 용도에 대한 계획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학술활동 및 연구에 대한 보조금	학술진흥법 제 13·19조, 동 시행령 제15·16·17·21조	한국 학술진흥재단	국내외의 대학 및 그 소속교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 단체와 그 소속연구원, 대학원 및 대학원생, 대한민국의 13조 및 대한민국예술향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학술원·대한민국 예술원이 건의하는 학문·예술에 진력하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기금 (정부와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연구장려금, 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교육부장관에게 연구비 지급신청 → 지급여부·지급금액 및 연구기간등을 결정하여 통지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동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교육부장관의 연구비의 지급중단·연구비 회수명령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해양개발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정부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기관	출연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출연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우선적 연구개발비 지원 및 운영지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5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 및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을 지정받	-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과의 연구개발협력기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우선적 지원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우선적 지원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우선적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의 운영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령 제10·11·12조		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이 2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의 일부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의 운영 경비지원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비의 일부 지원 -지정협동연구개발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비지원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자금을 기업에 융자할 경우 협동연구개발 과제 	이 경우 미리 과학기술처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3년이내에서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상환기간 또는 담보조건등을 우대함.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기술개발촉진자금의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정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사용자, 신기술·도입기술의 소화에 의하여 국내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시험연구용·물품구입과 연구시설의 건설자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 중 일부를 우선지원			
기타 기술개발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정부	법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기타 기술개발자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 중 일부를 우선지원			

제 3 장 실행방법의 단계별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국산신기술제품제조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6·7·8·9·12·13·26조	정부(과학기술처 또는 주무부장관)	국산신기술제품제조사	각종기술개발자금 및 자금, 과학기술진흥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공업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타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각종기금·자금의 우선지원(자금대출) - 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결정일부터 1년 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위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지원기간정함.	-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범제작 단계에서 신고서제출(과학기술처장관)→심사(과학기술처장관)→지원여부결정(심사와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과학기술처장관이 결정)→신고인에게 통지	-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설 또는 제품 생산을 하지 아니한 때→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지원조치취소가능(이경우 사전의견 기술기획부여)	
산업기술연구조합과 연구원 상호간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동시행령 제7·8조	정부	조합,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원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소프트웨어 동계발구역에 대한 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개 발촉진법 제 9조, 동시행령 제16조	정부	소프트웨어 공동개 발 구역지정을 받은 자		금융지원 등			
에너지기술개 발·투자에 대 한 금융지원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15조	정부	에너지절약형설비 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를 제조·설 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 관한 사업	에너지이 용합리화 기금 및 기타 정부 가 설치한 기금 등	금융상의 지원			
유전공학연구 사업에 대한 자금용자	유전공학육성 법시행령 제 16조제3항, 제 21조제2항	과학기술 처장관	유전공학연구와 유 전공학에 관한 연구 사업에 종사하는 연 구기관·단체 또는 개인	유전공학 연구기금	· 유전공학의 연구 개발, 유전공학연 구 결과의 신기술 사업화, 유전공학 연구 및 이와 관련 된 산업기술 전문 인력의 개발교류, 유전공학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필 요한 자금의 용자	유자금의 이월 및 상환 기간 등은 과학기술 처장관이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함.	과학기술처장은 지정된 용도에 자 금을 사용한다는 금용기관으로 하여 금 용자된 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 나, 기타 적절한 조 치 행한다.	
유전공학 신기 술제품의 생산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유전공학육성 법시행령 제 13조	과학기술 처장관 · 처 장 부 의 장	유전공학연구 결과 를 산업화하는 신기 술 제품의 생산자		신기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	과학기술처장 관이 유전공학 중합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정부	전산망사업자	금융상 지원		처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지원조치 요청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투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동시행령 제2·4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기술개발 및 기업화사업	· 자본금 · 기술개발채권 · 기술개발채권 · 국가, 각종 기금등으로 부터의 장기저리 자금	· 자금용자 - 이자율의 범위는 과학기술처장관이 미리 재무부장관과의 협의하에 승인 - 판매액의 일정율로 상환받는 조건 의 자금대여도 가능 (기술개발에 실패하여 제품판매를 못한 경우에 대하여 자금의 상환을 면제하고 손비처리가능) - 100분의 90이상 을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해야 한다.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사용자에 대한 조세감면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정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사용자	조세	조세일부감면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개발비에 대한 법인·소득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제출, 세액공제신청		
기타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정부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기타의 기술개발자	조세	조세의 일부감면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개발비에 대한 법인·소득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제출, 세액공제신청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동시행령 제6·7·13·2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8·9·10조	정부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	조세	연구개발에서 기업화단계까지 투자된 자본의 회수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조세의 일부감면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개발비에 대한 법인·소득세액공제, 신기술 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공업화시험원료 단계 또는 시범적 단계에서 신기술제품(과기처장관)→심사(과기처장관)→지원여부결정(심사와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기처장관이 결정)→신고인에게 통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설 또는 제품생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국산신기술제품의 성능·품질보장에 필요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원조치를 취소할 수 있음(이 경우 사전의 견진술기화부여).	

제 3 장 연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발명진흥법 제 28조	정부	발명을 진흥하는 자,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실시 등을 하는 자	조세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사업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 13조	정부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정을 의 금액을 당해년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조합의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신제품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의 수입건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	비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부 (국세청)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투자한 자	조세	4. 조합이 사용하는 연 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경감 -신기술사업금융회 사가 투자한 주식 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신기술사업금융회 사의 투자손실준 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처리 -신기술사업금융회 사에 투자한 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특례 -신기술사업투자조 합이 신기술사업 자에 대한 투자로 인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과 그 조 합원의 소득에 대 한 소득세과세의 특례			

제 3 장 연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유전공학연구 활동에 필요한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유전공학육성법 제19조제1항		유전공학연구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구·시약중국 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수입하는 자	조세	· 관세 및 부가가치세감면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전산망사업자	조세	조세상의 지원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동시행령 제9조	국가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조세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의 100분의 50상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0조	국가	기술 및 인력개발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조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 다음 2가지 방법중 하나 선택 1. 투자금액의 일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기술이전 소득세액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동시행령 제11조	국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내국인 - 동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술비범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조세	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①연 구시험용시설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그 외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2. 투자자산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	감면신청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칙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2조	국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조세	· 수혜자가 각각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다만,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감면신청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칙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2조	국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조세	· 수혜자가 각각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다만,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과세표준신고 · 투·융자손실준비명세서 제출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동시행령 제13조	국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기술자	조세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게 세액면제 신청서 제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5·6호, 제28조의8, 동시행규칙 제17조제4·5항, 제18조		동시행규칙 제17조제4항각호의 기관(과학기술연구·개발용물품수입자)	조세	동시행규칙 제17조제4항각호가 정하는 기관이 외국으로부터 기증받는 물품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5항각호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사용·양도가 있는 경우 -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함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한수용하기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의 5 제 1항 제 9호, 제28조의 8, 동시행규칙 제17조제8항, 제18조		다음 각호의 1의자로서 동시행규칙 제17조제8항에 해당되는 자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치하고있는 기업 2. 산업기술연구조합	조세	마그네딕테이프 또는 디스크 : 100% 감면 - 기타 물품 : 관세의 감면율은 90% 감면 동시행규칙 제17조 제8항 각호가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동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딕 테이프 또는 디스크 : 100% 감면 - 동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물품 : 80%감면 - 기타 물품 : 90% 감면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기술개발선도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경감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동시행령 제2조의3		동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는 별표1 제2종제5호 물품 중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및 디지털 오디오테이프레코더와 별표1 제2종제11호 물품 중 캠코더 및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생산하는 자	조세	기술개발선도 물품 중 수출전략상 내수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조세감면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 법제1조제2항 제2종의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함)의 10%적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40%적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70%적용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연구용역수행자, 연구용역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산권등의 양여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동시행령 제22조, 동규칙 제4조	주무부장관	연구용역수행자, 연구용역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	국고	· 정부에 귀속한 산업재산권, 연구기기, 설비 및 시제품 등의 무상양여 · 산업재산권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신청서제출(주무부장관에게) → 양여계약 체결(재무부장관· 조달청장과의 협의) → 양여계약서사본송부(과학기술처장관에게)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시설주변지역의 주민		· 법 제21조의 규정 · 에 의한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무상대부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 기구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4조, 동시행령 제7조	정부	특정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 규정의 공동관리기구	국고	·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 대부 ·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양여 가능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는 공동관리기구와 의 양여 계약·대 부계약에 의한다. ·무상대부의 대부기 간은 2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마. 공동구매제도

명 칭	근 거 법 령	지원주체	수 혜 자	재 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 고
국 산신기 술제 품의 우선구매	기술개발촉진 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 6·7·8· 10·12·13· 26조	정부(과학 기술처장관 또는 주무 부장관)	국산신기술제품 조자		우선구매(국산신기 술제품의 지원결정 일로 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 서 과학기술처장관 의 요청에 의해 주무 부장관이 정함)	공업화시험안 료 단계 또는 시범제작단계 에서 신고서제 출(과학기술처 장관에게)→심 사→지원여부 결정(심사와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 여 결정)	주무부장관이 정하 는 기간내에 공장진 실 또는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파기 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조치취소가능 (이 경우 사전의견 진술기회부여).	
조합의 연구성 과를 기업화한	산업기술연구 조합육성법	과학기술지 장관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제품을		제품의 우선구매	조합원이 우선 구매 등의 조치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15조, 동시행령 제9조, 동시행규칙 제6조		생산하는 조합원			요청서를 과학기술처 장관에 제출→검토→과학기술처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요구		
유진공학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유진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과학기술처 장관·관계부처의 장	유진공학연구결과를 산업화하는 신기술제품의 생산자		제품의 우선구매	과학기술처 장관이 유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우선구매조치 요청		

9. 국방관련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위한 보조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별조치법	경부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예산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필요시 다음 사항	보증금의 교부 기준 기타 필요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의교부등의교부등	제9조, 동시행령 제26·27조	관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 - 방위산업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 품질검사·관리 - 기타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정하는 사항관리	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방산물자의개발등에대한장려금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26·27조	정부(국방부장관)	방산물자관련 핵심기술연구개발자	방산물자연구개발을위한출연금과그이자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안에서 장려금 지급			
기능사처우개선을위한장려금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동시행령 제29조	정부(국방부장관)	방산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수요원이라고 인정하는 자	예산	장려금 지급	장려금의 지급 기준·절차 기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지급기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원자재비축명령에 의한 원자재비축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국방부장관	원자재비축한 방산업체		원자재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조금교부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방위산업 우선자를 위한 자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동시행령 제14조	정부 (국방부장관)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금의 장기저리용자 1.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2. 원자재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기타군용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국방부장관은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유자를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추천가능 · 자금유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용자추천을 얻어 해당자금의 취급금용기관에 용자신청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 동시행령 제20조, 동시행규칙 제22·23·24조	정부 국방부장관 한국산업은행	방산업체, 연구기관, 일반업체 또는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업체	방위산업 육성 자금	1. 자금용자-연9분 대출금리 ①방산시설의 도입·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용자-7년(2년의 거치기간포함) ②일반원자재확보 위한자금용자-3년 ③방산업체의 운영 자금용자-3년 ④방산물자의 생산 위한 토지의 매입 자금용자-7년(2년의 거치기간포함) 2. 자금용자-연1분의 대출금리 ①비축용원자재확보 위한 자금용자-5년(2년의 거치기간포함) ②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위한 자금용자-	국방부장관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용도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 자금출급을 위한 날부터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함	국방부장관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용도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 자금출급을 위한 날부터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함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5년(2년의 거치기간포함) ③방산물자 기타군 용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용 자-5년(2년의 거 치기간포함)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방산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정부	방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조세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세감면			
첨단·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부칙 제7조		- 정밀전자산업·신소재사업 등 151개 업종 - 방위산업지정업체	조세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에 대한 관세 감면(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 되는 것에 한함)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 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	통제기관·방법및절	비고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부칙 제 7조		방위산업지정업체	조세	- 해당관세율의 35% 감면(1994년), 30% 감면(1995년), 25% 감면(1996년), 20% 감면(1997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 제1항 2호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것에 한함)			
방위산업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 석용품 및 건물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10호, 제28조의8, 동시행규칙 제17조제10항, 제18조		방위산업제품연구·개발용 시험분 석용품 및 건물 수입자	조세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그 시험분 석용품 및 건물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방위산업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사용·양도가 있는 경우 -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함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경우: 90% 감면 - 기타업체의 경우: 80% 감면			

라.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군수품의 무상양도·대여	군수품관리법 제14·15조, 동시행령 제28·29·30조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기관	국가 이외		군수품의 무상양도·대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사후 승인은 예외)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방위산업예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동시행령 제25조	정부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국유재산	잡종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방산물자의 생산·연구·시제 생산을 위한 정부 전용기기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국방부장관의 추천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		

마. 공공구매제도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방산업체의 보호 호육성을 위한 우선구매	방위산업에관 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정부	방산업체		방산물자의 우선구 매	국방부장관은 생 방산물자의 생 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 방산 업체에 통보		

10. 서비스산업관련보조금

가. 자금급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자 금보조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동시행령 제2 ·3조	정부	항공운송사업자	예산	항공기 조종사, 정 비사, 무선기술기사 의 양성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의 20%이 내의 보조	보조금 교부신 청서를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장 려금 교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4조, 동시행령 제4 ·5조	정부	외화의 획득 또는 절 약에 현저한 공이있 는 항공운송사업자	예산	· 신규개발노선 또는 결손노선에 의하여 획득한 연간 외화운 입에 대하여는 미화 1불당 15원.	· 신규개발노선 의 항공사업자 에 대한 장려 금 교부는 노 선신규개발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관광진흥법 제 53조, 동시행령 제37·38·40조, 동시행규칙 제47조	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사업자	국고	- 관광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지급함	의한 취항일로부터 5년에 한함. · 장려금 교부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보조금의 지급조건위반시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급정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민간항공단체의 육성을 위한 자금의 일부보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9조, 동시행령 제6조	정부	민간항공단체	예산	소요자금의 일부보조	소정의 신청서와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버스노선개설 명령에 의한 운송영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육운진흥법 제 5·11조, 동시행령 제6·7·8조, 동시행규	교통부장관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동차운수사업자	예산	- 버스노선개설명령에 의한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손실보상금은 운행	손실보상금의 청구(당해 분기 종료일 후 30일 내)에 교통부장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보상금 회수함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칙 제 2·3·4·5·6·8조				거리·은행회수 및 승차인원을 감안하여 동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지급함	관에게)→시·도 지사의 심사·배정요청(분기종료 후 45일내 교통부장관에게)→분기종료후 60일내에 지급액 결정, 당해시·도 지사에게 통지		
여객선의 취항·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이나 예비선박의 확보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해운법 제17조, 동시행령 제4·5조, 동시행규칙 제11조	해운항만청장	내항여객운송업자	예산	손실보상	매월 해운항만청장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심사·보상금액결정·지급통지서 발부→매월 보상금 지급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보조	해운산업육성법 제4·20조, 동시행령 제2·3조	정부	해운업자	예산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의 보수에 대한 소요자금의 20% 이내의 보조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	-보조금을 받은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국외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	

제 3 장 현행법령의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국제항에 중 사하는 해운업 자에 대한 장려 금 교부	해운산업육성 법 제14·20 조, 동시행령 제9조	정 부 (해운항만 청장)	(기간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수송, 외국과 외국간의 항로를 개 척하여 행하는 화물 의 수송 또는 콘테 이너 화물등 주요수 출입물자의 수송으 로 우리나라의 국제 해운발전에 현저하 게 이바지한) 외국 화물운송사업자	예산	장려금교부	소정의 신청서 를 해운항만청 장에게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취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조정등 의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한 경우에, 해운항 만청은 보조금의 교부중단결정 가능	
국제항로 취항 결손에 대한 보 조금 교부	해운산업육성 법 제15·20 조, 동시행령	정 부	국제정기항로에 취 항하는 해운업자	예산	대외무역증진을 위한 국제항로취항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실에	소정의 신청서 와 서류를 해운 항만청장에게	- 보조금을 받은 자 는 자금의 사용내 역서를 작성하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제10·11조				대한 보조금 교부 1. 한·일구역 및 동남아구역의 취항결손은 손실액의 80%이내 보조 2. 기타 구역의 취항선박은 손실액의 100%이내 보조	제출	분기별로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 -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국외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취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조정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운항만청장은 보조금교부중단가능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항공운송사업자진흥을 위한 자금융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동시행령 제2·3조	교통부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자금	①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을 위한 제장비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70%이내의 융자	융자교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제 3 장 .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융자	해운산업육성 법 제4·20조, 동시행령 제2 ·3·6조	정 부	해운업자		<p>②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무선기술기사의 양성사업 소요자금의 70%이내의 융자</p> <p>-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에 대한 선가총액의 80%이내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앞선)</p> <p>-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의 보수에 대한 소요자금의 80%이내의 융자(융자일선포함)</p> <p>-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건조자금 중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80%이내의 융자(융자일선포함)</p>	<p>-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p> <p>- 해운항만청장은 매년 계획조선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민투자기금 등으로 조성</p>	<p>- 융자금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p> <p>-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국외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 취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조정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운항만청장은 융자금의 지원 중단결정가능</p>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육운진흥법 제 4·11조, 동시행령 3·4조	정부	자동차운수사업자		자동차구조의 개선, 노후차량의 대체, 공동시설의 확충·개선, 유통시설의 확충·개량에 소요되는 자금의 80%융자	동시행령 제4조 소정의 서류와 신청서를 교부 통부장관에 제출	통제기관·방법및절차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융자금 회수	
화물터미널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화물유통촉진법 제36조	정부	화물터미널사업자	재정자금	①화물터미널의 건설 ②화물터미널위치의 변경 ③화물터미널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융자			
창고업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융자	화물유통촉진법 제47조	정부	창고업자		창고의 건설, 창고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융자			
복합운송주선사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화물유통촉진법 제22조	정부	복합운송주선사업자		소요자금의 융자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 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외국항행신박 · 항공기 제조 · 수리용부분 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 의4, 동시행령 제16조의2, 동 시행규칙 제14 조, 제14조의 2, 제15조		선박·항공기 제조 · 수리공장의 지정 을 받은 자	조세	- 동시행규칙 제14조 의2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되는 물 품에 대한 관세감면 '94 : 50% 감면 '95 : 40% 감면 '96 : 30% 감면 '97 : 20% 감면 -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조완 료(기간완료일로 부터 2년의 범위안 에서 연장가능 : 세관장에게 신청)	제조공장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세관장에 게 신청서 제출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 정 하여 지정(갱신 가능)		
자동차운수사 업의 진흥을 위 한 조세감면	육운진흥법 제 7조	정부	자동차운수사업자	조세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관광사업 진흥 을 위한 세제지 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 4호, 동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5의2호	국세청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외국 인건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 관광호텔 업자	조세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11. 기타보조금

가. 자금여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5조, 동시행령 제75조	정부 (보훈처장)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는 자 중 동시행령 제7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자	예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80일이내에 지급여부 결정·통지		

나. 금융지원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국가유공자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대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정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보훈기금 중 대부자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장기저리로 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		

다. 조세감면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천재지변등에 따른 주민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179조의6, 동시행령 제130조의16	시장,군수	주민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세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주민세 감면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직권조사(시장·군수) -신청→시·군의회 의결의 의결→통지(신청인·납세의무자)		
천재지변등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195조, 동시행령 제145조	시장,군수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세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			
천재지변등에 따른 농지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02조제1·2항, 동시행령 제154·155조	시장,군수	-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납세의무자	조세	1.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지세감면 2.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나 동원된 때에는 농지세 감면	1. 시·군의회 의 의결 필요 ①피해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서 제출이 원칙 ②직권감면(예외) 2. 종군 또는 동원된 날이 속하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제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친재지변등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34조의24	시장,군수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세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감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50% 경감(60일이 내귀환한 때는 경감불인정)	통제기관·방법및절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세감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2·3·4·5·6항, 동시행령 제18조	정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 1.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조세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1. 법 제1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 ①소득세·법인세의 면제-동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②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①당해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시행일이 속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주무부장관과의 협의·감면결정·통지 ②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제 3 장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채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외국인투자사업의 자본제에 대한 관세등의 감면	외자도입법 제 15조	정부	법이 정하는 사업	조세	<p>감면 -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p> <p>2. 법 제14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p> <p>-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p> <p>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p>	내무부장관과의 협의		

제 2 절 국가의 경제활동분야에 따른 보조금제도의 유형

명칭	근거법령	지원주체	수혜자	재원	지원내용및조건	지원요건및절차	통제기관·방법및절차	비고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정부	금융기관 는 외국인투자자가 1.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인투자기업으 로부터 받은 배당 금 및 외국인투자 자가 출자한 대외 지급수단으로써 외 국인투자자가 출자 하고 있는 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조세	합리화대상기업으 로부터 취득한 자산 의 양도차액에 대하 여 특별부가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제 4 장

UR협정상의 보조금제도 : 유형과 분석

제4장 UR협정상의 보조금제도 : 유형과 분석²⁶⁾

제1절 개 관

1995년 UR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각국의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간 각국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의 보조금지급은 경제 및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은 보조금(Subsidy)문제에 대하여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으로 삼분화(신호등접근법)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금지보조금은 ①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파에 따라서 공여되는 보조금 및 ②수입품을 대체하는 국내생산품의 사용에 대하여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바, 이러한 보조금은 지급하거나 유지할 수가 없으며, UR협정의 발효이전부터 지급하여 오던 기존의 보조금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WTO회원국이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 위반하여 금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국가는 ①30일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②분쟁처리기구(DSB)에 소위원회(panel)의 구성을 요청하여 동 패널이 90일의 기간동안 분쟁사건을 검토한 후, 그 금지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판정되면 즉시 그 지급의 철회를 권고한다. ③한편,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소기관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결정은 무조건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④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⑤상대국의 대응보복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중재를 요청할

26) UR협정상의 보조금제도를 검토·분석하는데 있어서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해설서, 손상호/윤재형 공저, 산업연구원 발행(1994년 6월)을 크게 참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수가 있다.

한편, 상계가능보조금은 원천적인 폐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수입국이 그 보조금수혜를 받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그런데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는 여하한 체약국도 보조금의 지급으로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다고 규정(동협약 제 5조)하고 있어서 상계가능보조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동 협약 제6조제1항은 ①보조금의 지급이 상품가액(ad valorem)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②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의 공여, ③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의 공여(단, 장기적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회피를 위하여 지급되는 비반복적인 일회적 조치는 제외함) ④동 협약 제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채무감면(정부보유채권의 면제 또는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지원)의 경우에는 타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간에 마찰의 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동 협약 제6조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may arise)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마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 ①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공여국가로의 유사상품의 수입이 대체(displace) 또는 저해(impede)되는 경우,
- ②보조금으로 인하여 여타체약국의 제3국에 대한 유사상품의 수출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
- ③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타체약국의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인하를 초래하거나, 타상품의 가격인상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및
- ④보조금으로 인하여 해당품목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직전 3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증가가 보조금지급기간 중 지속적인 추세를 나타낼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만, 보조금공여국가가 당해보조금이 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네가지의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동 조항이 규정하는 「심각한 손상」의 간주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동 협약 제6조제2항). 그리고 이

러한 상계가능보조금이 타채약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 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①이해당사국간의 협의(60일간의 협의), ②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패널의 구성 및 심의(120일), ③패널의 결정(보조금의 철회나 타채약국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권고, ④상소(패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청구)를 거쳐 ⑤보복조치(6개월 이내에 피해정도와 그 성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은 폐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국이 치유하기 곤란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보조금이다.

종전의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는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연구개발지원, 일정한 조건하의 지역개발지원 및 환경보호보조금의 경우에는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허용보조금을 정책상 잘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허용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치유하기 곤란한 손상이 야기되는 경우와 같이 타채약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를 미친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국가에게 구제조치가 인정된다.

그러한 구제조치로서는 ①해당 보조금지급국가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고(60일간의 협정), ②협의를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WTO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회부하여 120일간에 걸친 검토를 거쳐 불리한 효과의 제거를 위한 보조금 조정권고를 포함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③동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WTO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수입국가가 적절한 대응조치(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9조).

한편, UR협정에서는 기존의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함)에 대한 보조금공여문제는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과는 별도로 UR농산물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다. 농산물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는 일용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의 적용을 받으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공여문제는 UR농산물협약에서 별도로 규정되다가 동 협약발효일로부터 10년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 자동으로 편입된다. 서비스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도 UR서비스협약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의 규율대상은 공산품, 광산품 및 수산품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다자간 민간항공기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항공기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당분간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 물론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은 종전의 도오쿄라운드 보조금/상계조치협약과는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모두에 적용되는 실효성있는 국제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 물론 UR협정의 발효는 곧 일면 「보조금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미국,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타이완, 싱가포르 등)들이 UR협정의 발효이후에 은밀히 벌일지도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공여행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또한 이에 쌍무적으로 또는 WTO를 통한 다자간적인 대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결코 불리한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종합무역법이나 EU의 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NCPI)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무부장관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공여행위에 대한 연례적인 조사·연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제2절 보조금에 대한 「정의」문제 (Definition of a Subsidy)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definition)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보조금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즉,

첫째,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또는 GATT 1994협정 제16조에 명시된 가격 및 소득지지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benefit conferred on to the recipient)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가격 및 소득지지가 아닌 정부의 조치는 보조금 규율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비록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이 있을지라도 수혜자에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 하겠다.

가. 협약 제1조 :

동 협약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본 협약의 목적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1) 다음과 같이 회원국 영역내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하 “정부”라 함)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경우

(i)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예 :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예 : 대출보증 등)과 같은 활동

(ii) 납부되어야 할 정부세입의 포기(예 : 세액공제²⁷⁾)와 같은 재정적 유인책)

(iii) 일반적인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또는 정부의 재화구매

(iv)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상기 (i)~(iii)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에게 정부가 권한을 위임하거나 감독하며, 당해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또는

(a)(2) GATT 1994 협정제16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b) 이에 의해 혜택이 주어질 경우

1.2. 1.1에서 정의된 보조금은 제2조에 규정된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협약 제2부가 적용되거나, 제3부 또는 제5부가 적용된다”

나. 해설

제1조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27) GATT 1994 제16조 및 본 협정 Annex I에서 Ⅲ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소비용 유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내국세를 수출품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당초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 또는 내국세를 환급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ontibution)의 취지를 검토하여 보아야만 한다. 우선 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개념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또한, 공공기관(public body)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정부대행기관,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공권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특수기관을 포함한다. 이때 정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공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거나 또는 기금의 일부를 공여받음으로써 그 활동이 정부의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민간기구까지도 포함된다. 정부의 재정적기여란 공공계정상의 부담을 의미한다. 공공계정상의 부담은 무상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등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직접 이전되거나, 대출보증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잠재적으로 이전되거나, 민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세입을 포기하거나,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가 민간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정부의 공공계정에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정부가 민간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자금이전(direct transfer of funds)에 해당되는 무상지원은 대출이나 지분참여와는 달리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에는 정부의 각종 보험이 포함된다. 정부세입의 포기에는 직접세의 면제, 환급, 유예에 해당되는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 준비금제도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전단계 누적 간접세의 면제, 환급, 유예 및 관세의 감면, 환급 등도 정부세입의 포기에 해당된다. 다만, GATT 1994협정 제16조 및 본 협약의 Annex I에서 III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소비용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내국세를 수출품목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당초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 또는 내국세를 환급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공여의 특정성(specificity)문제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은 수혜대상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사회간접자본이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든지, 사회간접자본시설지역으로 여타 기업들이 이주하는 것을 정부가 제한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을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입국으로 부터 상계조치발동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GATT 1994 협정 제16조에 의한 소득지지(income support)

는 정부가 기업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보조를 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반정책을 의미한다. GATT 1994협정 제16조의 가격지지(income support)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지원이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본 협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정성」 테스트(Specificity Test)를 거쳐야 한다. 정부에 의한 이중곡가제도나 정부의 수출가격지원정책 등이 가격지원에 해당된다.

보조금의 정의상 그 필요조건에 해당되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는 「정부의 재정적부담」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지시를 받는 민간기관의 계정에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된다. 즉, 정부가 반드시 공공계정상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와야만 보조금의 정의상 필요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제반활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정부의 특정조치가 보조금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라는 필요조건과 함께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충분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본 협약 제14조의 “수혜자의 수익개념에 따른 보조금액의 계산”에 의해 판단된다 하겠다. 기실 종전까지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는 국가 즉, 미국, 캐나다, EU 및 호주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타국가들은 보조금의 존재여부를 「정부의 비용」 개념(cost to the government)으로 판단하였으나, UR 협약에서는 「수혜자의 수익개념」(benefit to the recipient)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확립되었다.

UR협정과정에서 미국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즉, 캐나다, EU 및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의 차입이자율(borrowing rate)과 대출이자율(lending rate)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의 존재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였는 바, 정부의 공공계정에 반드시 부담이 발생하여야지만 보조금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의 비용」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GATT규정과는 달리 보조금의 판정시 「수혜자의 혜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특정조치에 의해 수혜자가 혜택을 받으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경우 「혜택」이란 수혜자가 시장에서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이 되며, 이와 같은 초과부분이 바로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의 혜택」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공공계정에 반드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우대조치(preferential treatment)로 인해 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보조금이 존재하게 된다.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의 방법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①무상지원(grants)은 지원액전체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채무감면은 감면시점에서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혜택이다. 대출의 경우에는 수혜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당해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바로 혜택이 된다. 정부 대출시에 기업이 받는 혜택은 신용에 의해 대출이 가능한(creditworthy) 기업과 신용이 없으므로 대출이 불가능한(uncreditworthy) 기업, 또는 출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②정부의 지분참여(equity infusion by the government)는 민간투자자의 통상적인 투자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정부가 당해기업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주식의 가격이 일반투자자가 당해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주식의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으면 혜택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기업(unequityworthy firm)에 대한 정부의 지분참여는 주로 당해기업의 투자수익률과 동종업체의 전국평균투자수익률의 차이(rate of return shortfall : RORS)를 근거로 하여 기업에 대한 혜택부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③대출보증은 정부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시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정부의 보증이 없을 때에 기업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의 차이를 혜택으로 보게 된다.

④정부가 세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은 특정세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업이 지불해야 할 세액과 동 세제가 존재할 때에 기업이 지불해야 할 세액과의 차이가 된다. 직접세의 면제, 환급, 유예에 해당되는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 준비금제도 등은 당해세제에 의해 발생하는 세액감면금액이 바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된다. 간접세에 대한 면제, 환급, 유예도 동 세제에 의해 발생하는 세액감면액이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다. 다만, 간접세에 관하여 본 협약상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초과감면이나 초과환급만이 기업에 대한 혜택이 된다.

⑤정부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정부에 의한 재화구매시의 혜택도 상업적 고려와 함께 판단된다. 정부가 관할지역내에서 일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이들이 생산한 재화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발생한다. 또한, 본 협약상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해 국내물품의 생산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요소(국내물품 또는 수입품)를 제공하되 수출물품의 생산에 제공되는 조건들이 세계시장에서 상업적으로 가능한 조건보다도 유리하면 보조금 공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⑥소득지지에 의한 혜택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신 해결할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정부의 소득지지가 기업의 의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이익만을 제공하면 혜택은 발생하지 않는다.

⑦가격지지의 경우에는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기업에 혜택을 공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보조금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가격안정제도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건별로 각기 따로 판단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3절 보조금공여의 「특정성」문제 (Specificity)

보조금공여에 있어서 「특정성」(specificity)의 존재유무 즉,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특정조치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가」하는 사전적인 제한성의 문제와 사후적으로 「대상기업들이 동 조치를 공평하게 이용하였는가」하는 실질적인 이용가능성(accessibility)의 문제를 말하는 바, 결국 보조금이 특정성을 띄어 타 체약국의 경제적이익에 불리한 효과(disadvantageous effect)를 발생시켰다면 그 체약국은 사후적으로 상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보조금이 “특정성”을 띄우지 않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

의 공여로 인해 비록 타 체약국의 경제적 이익에 불리한 효과가 초래된다고 할지라도 쌍무간 또는 WTO 다자간채널을 통해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2조는 「특정성」(specificity)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협약 제2조 :

“2.1 제1조제1항에서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기관의 관할지역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하 “어떤 기업”이라 함)에 대해 특정적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a)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어떤 기업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b)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²⁸⁾을 설정하고, 당해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 수혜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면 특정성이 없다. 다만, 이들 기준 및 조건은 입증 가능하도록 법령,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c) 상기 (a), (b)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수의 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어떤 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주된 사용, 어떤 기업에 대해 비례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공여²⁹⁾, 보조금공여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에 의한 선별적인 방식.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제도가 집행되는 기간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급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의 다양성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2.2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특정지역내에 위치하는 어떤 기업에 제한 되는

28) 여기서 객관적인 기준 및 조건이라 함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하여 특혜를 받지말아야 하며, 경제적 성격의 것으로서 종업원의 수 또는 기업의 규모등과 같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9)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본 협약의 목적상 어떠한 수준의 정부에 의해서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결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3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4 본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나. 해설

1) 제2조제1항(a)와(b)는 사전적인 제한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공여기관 또는 관련 법률이 보조금의 지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할지역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본 협약에서는 “어떤 기업”으로 통칭됨)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하면 특정성이 존재한다. 이때 “어떤 기업”이란 관할지역내의 “모든 기업”이 아닌 어떠한 수의 기업이나 산업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관할지역내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하여 보조금을 공여하면 특정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종업원수 또는 기업규모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금액을 법령,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시한 뒤, 동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수혜대상이 된다면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몇개의 특정기업에 국한하게 되면 “특정성”이 발생한다. 그러면 산업이나 산업군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면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업분류체계 등을 이용한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특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수혜대상을 산업별로 지정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하면(예를 들어, 첨단산업 또는 중소기업부문) 특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견해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보조금지원이라 할지라도 일부의 중소기업에만 국한하면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을 대상으로하여 세제지원을 하거나 사실상 제한된 범위의 기업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제도를 선별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특정성을 갖게되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제조업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면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 USITC의 입장이다. 한편, 관할지역의 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의 결정이나 변경은 “특정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가격 및 소득지지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치 자체가 “특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의 일부인 “가격 및 소득 안정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 및 소득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개의 보조금공여제도들이 상호연계된 상태에서 개별기업이나 개별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각 지원제도들간의 상호연계성까지 검토하여 특정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설치지역으로의 기업진출을 제한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몇개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기업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면 특정성을 띄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사회간접자본의 사용가능성이 정부의 조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의 입지와 그 독특한 특성때문에 제한된다면 특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2)정부가 사전적으로 그 수혜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조금을 공여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일부 기업이나 산업에 의해 보조금이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정부가 공여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하면 사실상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의 사후적이고 실질적인 이용가능성(accessibility)에 대한 규정은 본 협약 제2조제1항(c)에 4가지 형태로 요약되어 있다. 즉, ①몇개의 제한된 기업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②몇개의 기업에 의해 보조금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 ③몇개의 기업에게만 비례적이지 않게 보조금이 많이 공여되는 경우, ④공여기관이 선별적으로 보조금공여를 결정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특정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간과 보조금을 공여받는 기업이나 산업의 경제적 활동의 다양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 네가지의 조건을 사분법설(four-prong test)이라하여 이들중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면 특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특정성이 없으려면 네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아야만 한다 (1994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Softwood Lumber 와 Magnesium에 관한 상계관세부과의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특정성판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상무부 국제무역실)은 사전적인 제한성과 사후적인 이용가능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특정성문제를 판단하고 있다. 즉 첫째, 외국정부가 제도의 가용성에 제한을 두고 있는가? 둘째, 동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의 수가 비례적이지 않거나 주된 사용자가 존재하는가? 셋째, 제도의 공여과정에서 정부의 선별적인 행동이 취하여졌는가? 등이다(U.S. Dept. of Commerce, 19 CFR Part 355, ITA, may 1989).

3) 특정지역과 관련된 특정성문제는 본 협약 제2조제2항에 언급되어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공여기관이 관할지역내의 특정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면 특정성이 존재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공여기관이 관할지역내의 특정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면 특정성이 없게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동 지역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보조금수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면 특정성이 없게된다. 만약 이와같은 해석이 옳다면 제8조제2항에서 언급되는 낙후지역에 대한 허용보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제2조제2항의 규정만으로서도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당초 캐나다가 주장한 동 제2조제2항의 규정은 WTO발족후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시점에서 보면 동 조항은 중앙정부가 관할지역내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하여 보조금을 공여하면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하겠다. 즉, 입지조건이 열악한 특정지역에 입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을 관할정부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상하면 상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한편, 본 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은 예외없이 특정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해당사국에 의하여서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5) 보조금 구성요건으로서의 「특정성」에 대하여 미국의 실정법, 미국상무부의 규정과 구체적 사건에 관한 미국 판례를 분석하면 보다 상세한 판단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미국 법률상의 「특정성」요소 (Specificity) : 상계관세규정을 정치하게 명기한 미국관세법 제1677조 제5항(B)의 규정에 의거하면 동 조항은 상무부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여된 특혜(benefit actually conferred)가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일군의 기업이나 산업에 귀착되어 수혜로서 발생(accrued)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보조금시책의 법적인 성격과 그러한 특혜(benefit)의 명목적인 일반적 사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환언하면, 수출국에 의한 국내보조금의 공여로 특혜기업 또는 산업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상의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얻은 정도를 검토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 미국 상무부 「보조금조사측정규정」상의 「특정성」요소 분석 :

- 일반론 : 「특정성」요소의 분석을 정밀한 수리적 분석으로 귀착될 수는 없지만, 미국 상무부 「보조금조사측정규정」(19 C.F.R. Part 355)은 타요소와 함께 다음의 네가지 요소를 특히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 규정 제355.43조 (b)항 (2)〕

즉, ①보조금의 사용가능성을 제약하려는 정부조치의 범위 ②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일군의 기업이나 산업의 숫자 ③보조금의 지배적 사용자가 있는지 또는 불균형적으로 대규모의 보조금특혜를 받는 기업이나 산업 또는 일군의 기업이나 산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④보조금을 공여함에 있어서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그것이다.

- 구체적 사례의 검토 : 상기규정에서 명기하고 있는 네가지의 고려요소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①수출국의 특정지역에 입지한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된 특혜는 특정성을 띠고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산업을 여타 전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대비하여 고려해 볼 수는 있다.〔동 규정 제355.43조 (b)항 (3)〕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Certain Granite Products from Spain, (1988. 6. 28)이 있다.

②정부가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설치된 지역으로의 진출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련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특정적」으로 공여된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그 사회간접자본시설(기반시설)은 사실상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일군의 특정기업이나 산업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소재한 모든 기업이나 산업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동 규정 제355.43조 (b)항 (4)]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Carbon Steel Wire Rod from Saudi Arabia (1986. 2. 3.)이 있다. 이점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우리정부가 지원한 광양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비단 포항제철(주) 광양제철소만이 아니고 광양지역에 소재한 여타의 석유화학업체(예 : 대림산업(주)의 에칠렌공장, 한양화학(주), 호남정유(주) 등)가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포항제철(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미국측이 주장하는 포항제철(주)에 대한 우리정부의 보조금교부 주장을 유효하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사우디아라비아산 탄소철강봉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사건에 있어서 미국법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내 공업단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지원을 상계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여하는 보조금의 특정성여부는 해당정부의 각 관할권내에서 동 보조금의 사용가능성과 실제의 사용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동 규정 제355.43조 (b)항 (5)]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Live Swine and Fresh, Chilled, and Frozen Pork Products from Canada (1985. 6. 17.)가 있다.

④특정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보조금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한(예컨대, 보조금의 집행, 전체산업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입증, 입법목적에 규정된 보조금제도의 목적, 보조금에 쓰이는 자금의 조달방법 등) 보조금의 특정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전적으로 보조금의 사용가능성과 실제의 사용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동 규정 제355.43조 (b)항 (6)]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Certain Fresh Atlantic Groundfish from Canada (1986. 3. 24.)가 있다.

⑤「소규모의 기업 또는 중소기업에만 공여되는 보조금」은 반드시 특정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동 규정 제355.43조 (b)항 (7)]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Textile Mill Products and Apparel from Singapore (1985. 3. 12.)가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법원은 Iron-Metal Construction Castings from Mexico(1985. 10. 24.)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여보조금이 법률적(de jure)으로는 특정성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용자가 배분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보면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것도 우리나라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판례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⑥「농업부문에만 제한된 보조금」은 반드시 특정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동 규정 제355.43조 (b)항 (8)]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는 Live Swine and Fresh, Chilled, and Frozen Pork Products from Canada (1985. 6. 7.)가 있다.

다) 「특정성」요소에 대한 주요 미국판례의 태도

① Cabot Corp. v. U.S., 620 F. Supp. 722(국제무역법원, 1985년) : 이 사건은 소위 “Cabot I” 이라고 불리우는 판결인 바, 멕시코정부가 carbon black feedstock(인쇄잉크원료)과 천연가스를 두개의 제조업체에 공급한 행위가 보조금의 특정성(Specificity)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정부가 책정한 가격으로 어느업자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general availability)은 상계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카본블랙 생산업자가 특혜(benefit)나 무역상의 비교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받았는지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례는 후술할 PPG Industries, Inc. v. U.S. 와 함께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기본 판례이다.

② Cabot Corp. v. U.S., 694 F. Supp. 949(국제무역법원, 1988년) : 이 사건은 소위 “Cabot II” 라고 불리우는 판결인 바, 멕시코정부가 공여하는 보조금의 일반적 사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의 운용방식(actual implementation)에 있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Cabot I” 판결을 한단계 더 보완하고 있다.

③ PPG Industries, Inc. v. U.S., 662 F. Supp. 258(국제무역법원, 1987년) :

이 사건은 소위 “PPG I” 이라고 불리우는 판결인 바, “Cabot I” 판례를 인용하면서 멕시코정부의 기금 FICORCA(미지급외화표시 등록대외채무의 원금상환을 위한 기금임)는 상계가 가능한 특정성을 띤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일반적 사용가능성(general availability)이외에도 특혜기업(discrete class of beneficiaries)이 사실에 있어서(de facto) 특정적으로 수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멕시코정부가 물품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천연가스의 가격이

국제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서 보조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상기 두 사안에 있어서 멕시코의 판유리(float glass)업체에 공여한 멕시코정부의 외환기금과 국제가격 이하로의 천연가스 공급조치가 상계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④ PPG Industries, Inc. v.U.S., 712 F. Supp.195(국제무역법원, 199년) :

⑤ Ipsco, Inc. v.U.S., 687 F. Supp. 614(국제무역법원, 1988년) :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Cabot I” 판례와 “PPG I”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매사건별로 별개로 분석(de facto case by case analysis)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 소재한 철강업체에게만 「종합개발협정」에 근거한 하부계열철강협정에 의거하여 자금을 공여하는 수출국의 조치는 법률상으로서나 사실상에 있어서도(in law and in fact) 특정산업이나 일군의 특정산업에 국한하여 보조금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⑥ Saudi Iron and Steel Co. (HADEED) v.U.S., 675 F. Supp.1362(국제무역법원 1987년) :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 비록 명목적으로는 23개의 기업(그 중에서 일부는 상호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게 융자혜택을 부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의 기업과 그들의 철강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융자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⑦ Can-Am Corp. v. U.S., 664 F. Supp. 1444(국제무역법원, 1987년) :

법원은 “PPG I” 판례를 인용하면서 멕시코정부에 의한 석탄산업용 연료(fuel oil)가격의 책정은 특정성을 띤 상계대상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게도 유용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라고 하겠다.

⑧ Alberta Pork Producers Marketing Board v.U.S., 669 F. Supp. 445(국제무역법원, 1987년) :

법원 “Cabot I” 판례와 “PPG I” 판례를 인용하면서 일반적 사용가능성은 상계대상 보조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 요소일 뿐 특혜자의 사실상의 수혜효과 등도 검토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농업안정법(ASA), 지역소득안정화시책 및 양돈사업 성과기록제도(Record of Performance Program for hogs)를 특정성을 띤 상계대상 보조금이라고 판결하였다. 즉, 농업안정법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불특정인에게도 지급은 가능하지만 특정상품

의 생산자에게 사전에 인가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치는 보조금에 해당하며, 지역소득안정화시책(Five Provincial Stabilization Programs)은 비록 법률상으로는 지원대상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특정품목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결정이 객관적인 경제적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지원대상품목이 11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성을 띤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사업성과기록제도(Record of Performance)는 돼지, 소, 젓소, 면양, 닭 및 벌꿀양육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을 띤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⑨ Bethlehem Steel Corp. v.U.S., 590 F. Supp. 1237(국제무역법원, 1984년) :

법원은 남아공화국의 중업원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경비의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내국세의 감면이 비선택적(non-selectivity)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여 특정성이 없어서 상계대상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⑩ Carlisle Tire & Rubber Co. v.U.S., 564 F. Supp. 834(국제무역법원, 1983년) :

법원은 세법상의 가속상각제도는 모든 제조업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계대상 국내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11) armco Inc. v.U.S., 733 F. Supp. 1514(국제무역법원, 1990년) :

상기 Carlisle 판례와는 달리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말레이시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공제제도가 모든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실질적 운용상황까지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서 동 감가상각공제제도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극히 제한된 범위의 말레이시아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12) Agricultural Export Co., Ltd. v.U.S., 604 F. Supp. 1238(국제무역법원, 1985년) :

법원은 이스라엘정부의 장미재배(rose growers)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이 장미의 생산을 산업적으로 목표화(targeting)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부에 의한 부대서비스의 제공이 타농업분야에는 관계없이 장미의 생산·수출만을 특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4절 보조금의 유형과 그 분석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은 소위 “신호등 접근법”을 채택하여 보조금체계를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으로 3분류하였다.

금지보조금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상계가능보조금은 사용은 할 수 있으나 타 계약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면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며, 허용보조금은 대응조치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보조금은 유형별로 구제절차를 달리함으로써 WTO다자간채널을 통한 분쟁해결의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UR협상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타결된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는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무역왜곡효과가 큰 수입대체보조금에 한정되었으며, 수량기준의 도입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보조금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규정되었다.

1. 금지보조금

가. 협약 제3조 :

“3.1. UR농산물협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가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보조금은 금지된다.

(a) Annex I³⁰⁾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³¹⁾,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

(b)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 물품의

30) 이 기준은 보조금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성과와 관련이 없으나, 실제로는(in fact) 예상 또는 실제 수출이나 수출로 인한 소득과 연관된다는(tied) 사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동 보조금이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31) 예시목록(Illustrative List)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조치는 본 규정 및 본협정의 어느 규정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아니한다.

사용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

3.2. 회원국들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나. 해설

즉,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수출보조금은 동 협약 Annex I에 제기된 “수출보조금 예시목록”(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을 포함하여 유일한 또는 여러가지 다른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in law) 또는 사실상(in fact)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지칭한다. 수출보조금은 보조금의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실제로 예상되는 수출, 또는 실제의 수출이나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출성과”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수출성과”(export performance)란 기본적으로 수출에 근거한 활동을 의미하며, 수출에 약간이라도 관계가 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즉,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동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수출실적에 기초하거나 또는 수출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수출보조금인 것이다.

이 경우 수출의무란 명시적으로 규정화된 조항은 물론 사실상 수출의무와 연결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내수와 수출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수출성과”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규모가 실질적인 수출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여야지만 수출보조금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활동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을 공여하면 모두 수출보조금이 된다.

수출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수출보조금 예시목록」(동 협약 Annex I)에 12개의 중요한 유형들이 열거되어 있다.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기여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목록은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을 모두 망라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수출보조금에 대한 금지조항(제3.1.(a))에 “수출성과”라는 일반적인 조건을 삽입시키고 있다.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12가지의 재정적 기여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즉, ①정부가 수출성과에 따라서 기업이나 산업에 공여하는 직접보조금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직접 공여되고 수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때 직접보조금이란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직접적인 자금이전이나 조세감면 등의 제반 정부조치를 의미한다. 반면,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공여시에 재할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보조금공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정부가 특정상품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물품가격을 낮추고 기업에 이익을 주는 조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②외화보유제도(currency retention schemes)나 수출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출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관행들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즉, 수출업자가 자신의 수입목적이나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외화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제도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수출업자에게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나, IMF협정에 의거하여 복수환율제도를 운용하면 수출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③국내 선적시 보다도 수출물품의 선적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국내수송 및 운임을 제공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국내소비용 화물보다도 수출화물의 운송료를 낮게 책정할 것을 정부가 지시하면 비록 정부의 공공계정상에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에 대한 우대조치가 된다.

그러나, 운송료의 차이가 거래자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거래관행의 차이에 기인한다든지 또는 상업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정부가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품, 국산물품 및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출보조금이 된다. 즉, 정부가 원자재나 용역을 국내소비용 물품생산의 경우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물품의 생산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부가 수입규제하에 있지 않은 원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 동 원자재가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해 공급되는 가격이 세계시장가격보다도 고가이면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는 수입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수입규제하에 있는 원자재를 국제가격보다는 비싸지만 내수기업보다도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로 제공하면 수출보조금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계정상에 부담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기관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⑤기업이 납부해야 할 직접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을 특별히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환급, 유예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다만, 각주57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본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란 일반적인 기업(enterprise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직접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부과하는 것보다도 수출과 관련하여 특별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면 수출보조금으로서 성립한다. ⑦물품생산이나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징수되는 간접세의 면제 및 환급이 수출보조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국내소비용 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액을 초과하여 수출물품의 간접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수출물품생산의 최종단계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의 면제나 환급은 그것이 초과면제나 초과환급이 아닌 이상 수출보조금이 아니다(동 협약 제 1조제1항의 각주).

⑧물품생산의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 누적적 간접세에 대한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의 규모를 초과하여 수출용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는 수출보조금이 된다. 이때 재화와 용역은 기계, 노동력, 자재, 에너지, 기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생산 요소이다. 다만, 국내소비용 물품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수출용 물품에 부과된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초과면제, 초과환급 또는 초과유예가 아닌 이상 보조금이 아니다. 이때 면제, 환급 또는 유예의 대상은 전술한 언급된 기계와 노동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로서 물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요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촉매제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허용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수출보조금의 예외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⑨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부과된 수입과정금이 초과환급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다만, 기업이 수입원자재를 가지고 수출상품을 제조, 수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국산원자재로 대체하

여 수출상품을 제조, 수출하였을 경우에도 수입과 그 대응수출이 2년을 넘지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수입원자재를 수출상품의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의 수입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환급제도 (Substitution Drawback System)에 관한 결정지침(guidelines)은 동 협약 Annex III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⑩정부가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보전에 불충분할 정도로 수출보험료율이나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미국상무부는 직전 5년 동안의 수출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운영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며, 이때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료율과 기업이 받는 혜택의 차이가 바로 기업에 대한 수혜이다.

(11) 정부가 조달비용보다도 낮은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하거나, 수출기업 자금조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즉, 수출신용을 공여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거나 수출신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재할인지원 등 정부가 취급기관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 수출보조금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수출신용에 관한 OECD 가이드 라인」과 이에 부속된 OECD 다자간조선협정, 항공기협정, 핵플랜트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들 협정에 부합하여 수출신용을 공여하는 한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12) 상기에 예시된 11개의 목록들은 과거 특정국들의 관행을 중심으로 하여 GATT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비교적 그 내용이 명확하다. 그러나 이들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수출보조금은 그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요건도 일반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2항은 기타 모든 수출보조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부 공공계정상의 부담발생과 GATT 1994협정 제16조제4항이 규정하는 “가격차의 조건”(price difference)을 수출보조금의 요건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정의”(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부공공계정상의 부담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수출보조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의 계정에 부담이 발생하여도 수출보조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입대체보조금은 종전의 도오꼬 라운드 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는

국내보조금으로 분류되었으나, 금반의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는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가지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여되는 보조금이다. 즉, 국산품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산품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대체 등을 조건부로 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면 수입대체보조금이 된다. 동 조항은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는 바, 지금까지 동 조항을 운용한 사례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할 것이다. 다만, 교역재의 경우에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국산물품의 사용에 우대조치를 취하면 일용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제절차

금지보조금은 사용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다자간 규범을 통해 특정체약국이 동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금지보조금에 대한 다자간의 구제절차는 쌍무적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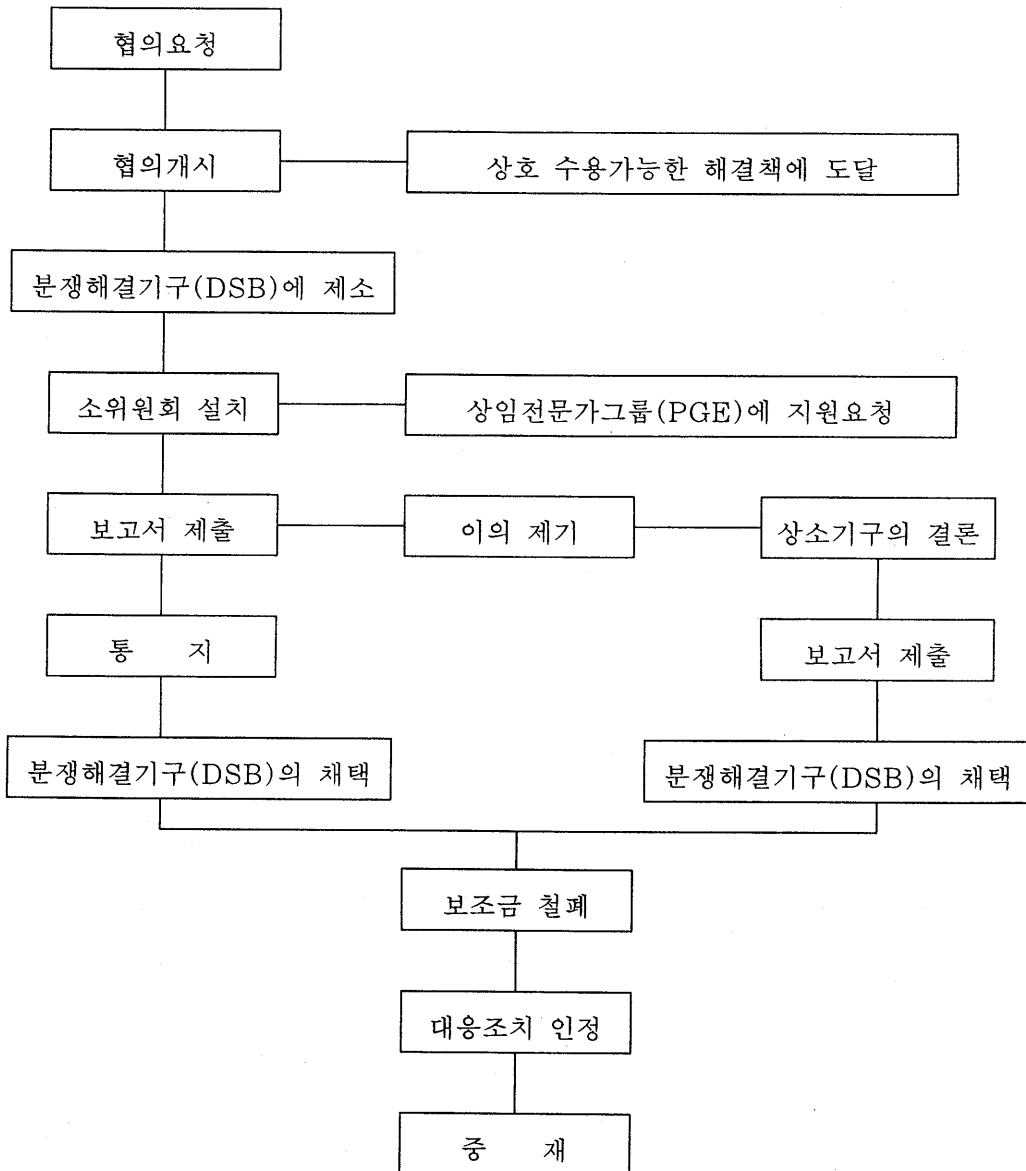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을 통한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동 협약 제4조). 우선 타 체약국이 금지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가 함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체약국은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면 분쟁해결기구(DSB)에 사안을 위임하여 소위원회(panel)의 구성을 요구한다.

소위원회는 당해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상임전문가그룹(PGE)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임전문가그룹은 소위원회가 결정한 기한내에 결론을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는 상임전문가그룹의 결론을 수정없이 채택해야 한다.

만약 분쟁당사국이 소위원회의 통보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채택되고 이해당사국에 의해 조건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피제소국이 소위원회가 지정한 기간내에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소국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분쟁당사국이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재자가 대응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표 4-1>과 같이 된다.

<표 4-1> 금지보조금의 공여에 따른 타체약국의 구제절차



2. 상계가능보조금

가. 개 관

WTO 체약국은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을 만족하는 보조금을 통하여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만약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공여한 결과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WTO 다자간 또는 쌍무적 채널을 통해 상계조치가 가능하다. 타 체약국의 이익에 대한 불리한 효과는 도오쿄 라운드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8조제3항에 열거된 개념들과 일치한다. 첫째,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타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타 체약국의 국내산업이나 기업의 수익률을 저해시키면 상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관세양허품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면 UR관세양허에 따른 타 체약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가 주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방지되어야 한다. 셋째, 타 체약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은 사전에 감시되고 방지되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러한 보조금의 “불리한 효과”(adverse effects)에 관하여서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 체약국은 제1조(보조금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a) 타 체약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³²⁾

(b) GATT 1994협정, 특히 GATT 1994협정 제2조의 양허로 인해 타 체약국이 직접·간접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nullification or impairment)³³⁾

32)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라는 용어는 본 협약 제V부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다.

33) 본 협정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라는 용어는 GATT 1994협정의 관련규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는 동 규정 적용관행에 따라 입증된다.

(c) 타 계약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³⁴⁾

이 조항은 농산물협약(Agreement on Agriculture) 제13조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하여서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협약 제6조 :

그런데 계약국의 보조금지급에 따른 이해당사국의 상계조치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이해당사국에게 “심대한 손상”(serious prejudice)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6조에서는 이에 관하여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 협약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조 : 6.1. 다음과 같은 경우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 보조³⁵⁾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³⁶⁾

(b)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c)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acute)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비반복적이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되풀이될 수 없는 1회적 조치를 제외한다.

(d)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 보유채권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등³⁷⁾

6.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이 당해 보조금이 아래 제3항에 열거된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심각한 손상의

34) “타 계약국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GATT 1994협정 제16조제1항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며, 심각한 손상의 우려도 포함된다.

35) 총보조금액은 Annex IV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36) 민간항공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다자간 규범이 적용되므로 5% rule은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7)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된 금융지원의 경우 실제판매 실적이 예상판매실적보다 저조하여 전액 상환되지 않았다면 본 세항의 목적상 그 자체만으로는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식된다.

추정은 배제된다.

6.3. 아래와 같은 경우 제5조(c)에 규정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a)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공여국으로 다른 회원국 유사물품의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
- (b) 보조금으로 인해 여타 회원국의 제3국에 대한 유사물품의 수출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
- (c) 보조금으로 인해 동일시장에서 타 회원국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피보조물품이 현저하게 가격인하(undercutting)를 하거나, 피보조수입으로 인해 동일시장에서 가격인상이 억제(suppression)되거나, 가격하락(depression)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 (d)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회원국의 특정 피보조 일차산품 또는 상품³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 3년간의 평균점유율에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와 같은 증가가 보조금지급 기간중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날 때

6.4. 제3항(b)의 목적상 수출의 대체 또는 저해는(관련물품의 시장변동 추세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어도 1년이상의 적절한 대표적 기간에 걸쳐서) 아래 제7항의 규정을 고려하며 비보조 유사물품의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불리하게 변화해 왔음이 입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 (i) 피보조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경우
- (ii)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상황에서 피보조물품의 시장점유율이 불변인 경우
- (iii) 피보조물품의 시장점유율이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경우

6.5. 제3항(c)의 목적상 가격인하(price undercutting)는 동일시장에서 공급되는 피보조물품과 유사 비보조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입증된 경우를 포함

38) 기타 다자간에 합의된 별도의 규정이 당해 산품 또는 상품의 무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야 하며, 동 비교는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동일한 유통단계(level of trade) 및 비교가능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격인하의 존재는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증될 수 있다.

6.6. Annex V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국은 해당상품의 가격 뿐만 아니라 관련 회원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관련정보를 제7조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당사자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제공하여야 한다.

6.7. 제3항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대체 또는 저해는 아래와 같은 상황³⁹⁾ 중 어떤 하나가 일정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a) 분쟁해결요청회원국의 유사물품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나, 분쟁해결 요청국으로부터 제3국시장으로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b)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비상업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요청회원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c)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 품질, 수량 또는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노사분규, 교통마비, 기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d)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e) 분쟁해결요청 회원국이 해당물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경우(당해 회원국의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당해물품을 재분배하는 경우를 포함함)

(f) 수입국이 제정된 표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8. 제7항에 언급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의 심각한 손상은 Annex V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에 제출되거나 패널이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9) 본항에서 일부 상황이 언급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GATT 1994협정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립되거나, 간헐적이거나 또는 기타 사소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6.9. 본조는 농산물협약 제14조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하여서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해설

본 협약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체약국의 이익에 “심해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발생시켜야만 동국에 의해 상계조치가 가능한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으로서 성립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본조에 관하여서 평석하여 보고자 한다.

“심해한 손상”이라는 개념은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 최초로 채택된 개념인 바, 여타의 상계가능보조금과는 달리 산전적인 감시기능이 도입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금지보조금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다만 “심각한 손상”에 관한 조항은 WTO 협정발효후 5년간 잠정 적용된 뒤에 재검토되며, 개도국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보조금은 타체약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더라도 제소가 가능하며, 피제소국은 동 보조금의 사용으로 인해 타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정체약국은 타체약국이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율이 5%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공여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채무감면을 해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피제소국은 동 보조금의 공여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수입이 저해되거나, 제3국시장에서 타 체약국의 수출을 저해하거나, 가격인하(price undercutting), 가격억제(price suppression) 및 하락(price depression)을 초래하거나, 또는 세계시장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동 보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정체약국이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불리한 효과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피해국이 아니라 보조금공여국이 타 체약국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금지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손상”의 존재여부에 대해 제소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조

건은 다음과 같다.

①물품가액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또는 특정물품에 대한 총보조율이 5%를 초과하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보조금액의 계산은 편의상 “수혜자의 수익개념”이 아닌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증거확보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혜자의 수익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예외적으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기초로 계산되는 “정부의 비용” 기준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⁴⁰⁾

②특정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공여하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사양산업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영업손실보전용으로 자금을 직접 공여하는 경우에는 “심대한 손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③특정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공여하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비반복적인 1회의 조치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에 대한 추정이 배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조항은 특정기업에 대한 퇴출지원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하겠다.

④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면제시켜 주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무상지원을 하는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채무를 감면시켜 주는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네가지의 경

40) 총보조율은 특정물품이나 특정기업에 수혜되는 총보조금액을 우선 계산한 뒤, 보조금 지급 기간 이전 판매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가장 최근 12개월 동안의 수혜기업이나 당해 물품의 총판매가액을 가지고 이를 나눔으로써 계산된다. 이때 총판매가액은 보조금지급기간 이전의 판매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보조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를 통하여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에 물품가액은 조세관련 조치가 취해진 회계연도의 수혜기업 총판매가액으로 계산된다. 또한, 특정연도의 총보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혜받고 있는 상계가능보조금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물품가액은 인플레이션율로 조정된다. 특히, 사업을 개시한 뒤 1년동안 생산은 개시되지 않았으나 보조금혜택과 함께 제품개발 또는 생산설비에 자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총투자금액의 15%까지 총보조율이 허용되며, 본협약의 발효이전에 공여된 보조금일지라도 미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 보조금의 계산에 포함된다.

우를 타 체약국이 인식하고 협의를 요청되면, 보조금공여국은 보조금공여로 인해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WTO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에 입증해야 한다. 보조금공여국은 다음과 같은 조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동 협약 제6조제4항).

첫째, 보조금공여국은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외국유사물품의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보조금공여국은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제3국시장에서 여타 회원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저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관련물품의 시장변동추세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1년 이상의 적절한 기간동안 피보조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하여야 할 상황에서 감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등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가지고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보조금공여국은 제3국정부에 질문서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장분석을 할 경우에도 제3국에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셋째, 보조금공여국은 타회원국의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피보조물(subsidized product)의 가격이 현저하게 인하되었다거나, 또는 동일시장에서 가격인상이 억제되었거나 가격이 하락하였거나 또는, 판매감소가 초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인하는 동일시장에 공급되는 유사 비보조물품(non-subsidized like product)의 가격과 비교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제반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되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없으면 (export unit value)를 이용할 수도 있다.

넷째, 보조금공여국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세계시장점유율이 직전 3년동안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가가 보조금 지급기간중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보조금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수출입이 왜곡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공여국이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타 체약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지 않았음을 동 위원회에 입증할 필요가 없다(동 협약 제6조제7항).

첫째, 분쟁해결요청국의 유사상품이 수출되는 과정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금지되는 경우, 또는 분쟁해결요청국의 유사상품이 제3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제한이 가해지거나 금지되는 경우,

둘째,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비상업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요청국으로부터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셋째, 분쟁해결요청국에 자연재해, 노사분규, 교통마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품질, 수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넷째, 분쟁해결요청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협정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다섯째,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상품수출을 재배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요청국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축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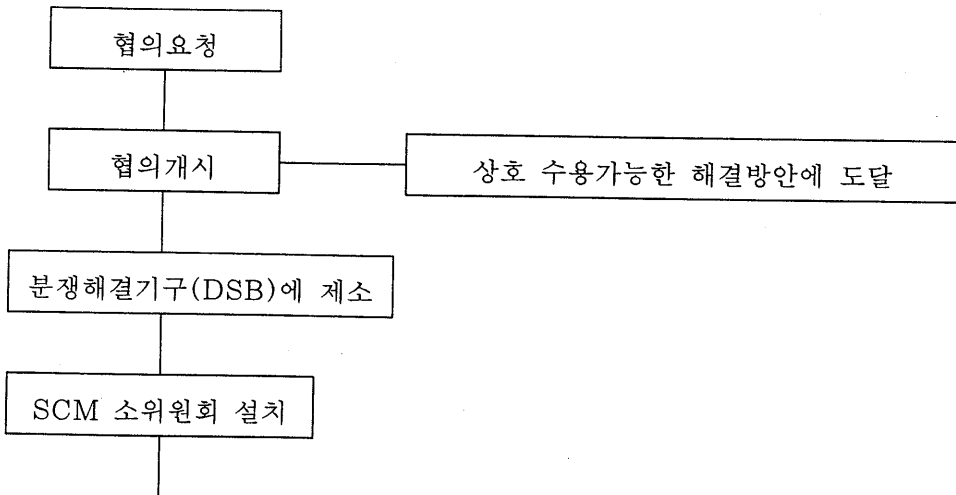
여섯째, 수입국이 제정한 각종 표준 및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심각한 손상”의 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Annex V (심해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획득절차)는 정보획득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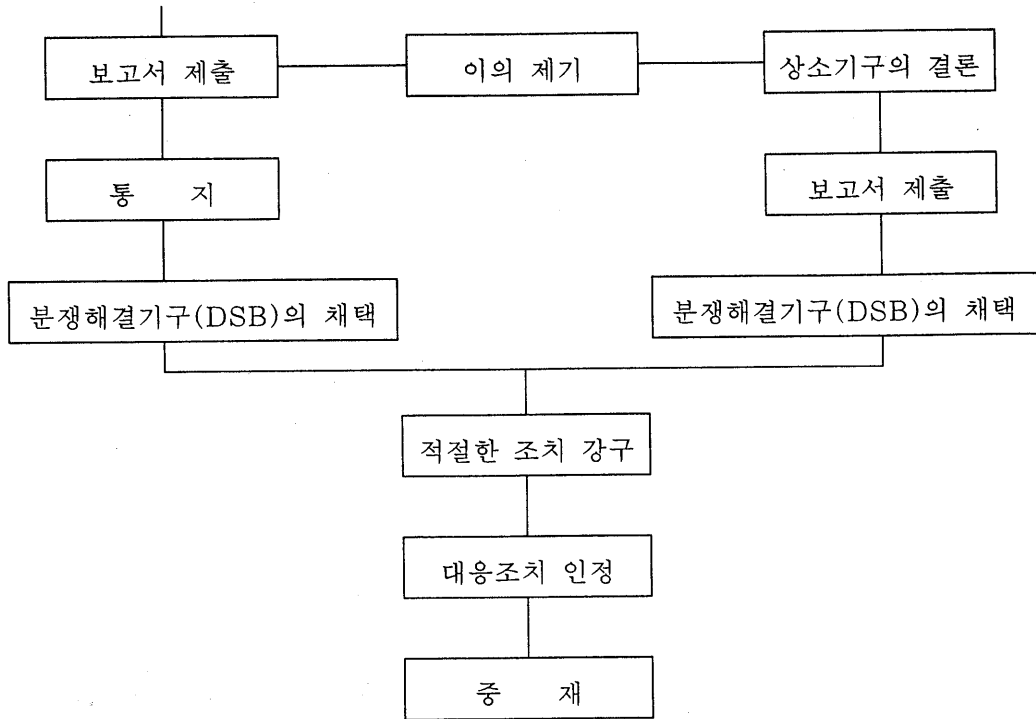
라. 구제절차

상계가능보조금의 공여와 관련하여 “심해한 손상”을 받은 타체약국은 WTO 체제내의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한 바, 본 보고서에서는 동 협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도식화하여 봄으로써 이에 가름하고자 한다 <표 4-2>.

<표 4-2> 상계가능보조금의 공여에 따른 타체약국의 구제절차



제 4 장 UR협정상의 보조금제도 : 유형과 분석



3. 허용보조금

가. 협약 제8조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도입된 개념인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은 UR협상의 결과,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으로 한정되었다. 허용보조금에 관하여서는 동 협약 제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동 규정을 고찰하여 본다.

“8.1.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non-actionable)된다.⁴¹⁾”

41)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체약국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원이 본조가 규정하는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체약국들이 이와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 (a) 제2조(특정성)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
- (b)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특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아래 제2항(a), (b) 및 (c)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8.2. 본 협약의 제3부와 제5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된다.

(a) 기업 또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것^{42), 43), 44)} 등 지원⁴⁵⁾이 산업적 연구⁴⁶⁾ (industrial research)인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전 개발활동^{47), 48)}

42) 민간항공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다자간 규범이 적용되므로 본 세항의 규정은 동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3) WTO협정발효일 이후 18개월 이전에 제24조에 규정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본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이 규정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세부적인 조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정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연구제도 운영상의 경험과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라 본 세부조항에 설정된 범주에 관한 정의를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44) 이 협정의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기초연구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구"라는 용어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의 확대를 의미한다.

45) 본 세항에서 규정된 허용되는 지원의 수준은 개발계획의 존속기간동안 발생된 모든 비용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46) "산업적 연구"라 함은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해 동지식이 새로운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계획된 연구 또는 비판적인 조사를 의미한다.

47) "경쟁전 개발활동"이란 함은 산업적 연구의 결과를 상업적 용도로는 즉각 사용될 수 없는 시제품 개발을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청사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 용어는 대체적인 상품·공정 또는 용어에 관한 개념적인 표현과 도안 및 최초의 시범과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되 동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의 물품, 생산라인, 제조 공정, 용역 기타 진행중인 작업을 일상적 또는 장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록 그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인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상가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 (i) 인력비용(연구원, 기술자 및 기타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기타 지원 직원)
 - (ii)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이용되는(상업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구·설비·토지 및 건물비용
 - (iii) 구입된 연구·기술지식·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상담 및 그에 상응한 서비스의 비용
 - (iv)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용
 - (v)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재료, 공급품등과 같은 비용)
- (b) 지역개발을 위한 일반적 계획⁴⁹⁾에 의하여 회원국내의 낙후지역을 위한 지원으로서 수혜지역내에서는 (제2조 규정에 의한)특정적이지 않게 공여되는 것. 단,
- (i) 낙후지역(disadvantaged region)이라 함은 경제적, 행정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지리적으로 명백히 인접한 특정지역이어야 한다.
 - (ii) 지역의 낙후성 여부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지역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⁵⁰⁾에 의해 고려된다.

48)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허용되는 지원의 수준은 본세항(i)-(v)항목에서 설정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에 따라 계산된 상기 두 범주에 적용가능한 지원은 양지원에 허용되는 지원수준의 단순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49) "지역개발의 일반적 계획"이란 지역보조금 제도가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의 일부이고, 한 지역 전체의 발전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공여되지 않아야 한다.

50)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란 지역발전정책의 계획내에서 지역적 불리함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는 기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적 보조금제도는 개별 보조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지원액의 상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하며, 투자비용 또는 직업창출비용(cost of job creation)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의 배분은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2조에 규정된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그 기업에게 다액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입증 가능하도록 법령, 규정 또는 공식 문서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iii) 이들 기준은 아래의 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한다(이들 측정치는 3년의 기간동안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다른 요인도 포함될 수 있다).

- 1인당 소득, 1인당 가계소득 또는 1인당 GDP중 하나. 단, 전국 평균의 85% 이상이 아닐 것.

- 실업률이 최소한 전국 평균의 110%일 것.

(c) 기업들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⁵¹⁾을 개선시키는 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i) 비반복적 일회적 조치이어야 하며,

(ii) 개선비용의 20%로 한정되어야 하고,

(iii)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된 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며,

(iv) 기업이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여야 하며, 달성될 수 있는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고,

(v) 새로운 장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8.3.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조금은 제7부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전에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모든 통보는 타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매년 최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개별 제도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전년도 이후의 제도 수정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타 회원국들은 통보된 제도의 개별적인 보조사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⁵²⁾

51) "기존시설"이라 함은 새로운 환경요건이 부여되는 때에 최소한 2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52) 이 통지규정은 비밀기업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8.4.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통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에게 검토대상인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과 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검토결과(또는 사무국의 검토가 요청되지 않는 경우, 통지 그 자체)를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보조금계획에 대한 통보와 위원회의 정규회의 사이에 적어도 2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본항에서 규정된 절차는 통보이후 위원회가 소집되는 최초의 정규회의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본항에서 규정된 검토결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제3항에서 언급한 연례 개정시 통보되는 계획의 실질적인 수정에도 적용된다.

8.5.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사례에 있어서 통보된 제도상의 조건 위반 뿐만 아니라, 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그러한 결정의 부재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기구는 당해 사안이 동 기구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동기구의 결정을 회원국에 발표하여야 한다. 본항에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상해사항(DSU)은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나. 해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이며, 이와같은 종류의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상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다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협약상 허용보조금이며, 이들 보조금은 공여후 타체약국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를 주게 되면 상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가) 특정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

육기관이나 연구소가 행하는 「산업적 연구」의 경우에 정부가 연구비용의 75%까지, 상업화 이전 단계의 「경쟁전 개발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개발비용의 50%까지 무상지원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 경우 산업적연구(industrial research)란 신제품, 신공정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된 연구 또는 조사를 뜻한다.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이란 산업적 연구의 결과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계획, 청사진 또는 디자인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적으로 즉시 이용될 수 없는 시제품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결국 판매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개발, 수정 및 개선에 이용하게 된다. 또한, 「경쟁전 개발활동」은 대체적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개념화, 디자인 및 최초의 시범, pilot project도 포함하나, 이와같은 계획들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전환 또는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제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기타의 작업을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비록 그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경쟁전 개발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지원제도가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지원의 허용범위는 두 종류의 활동이 허용하는 지원수준의 단순평균(62.5%)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동 협약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일반적 과학·기술지식의 확대로서의 기초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연구개발보조금에서 허용되는 지원수준은 개발계획들이 존속되는 총기간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계산되며, 이때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①연구원, 기술자 및 기타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②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이용되는 도구, 설비, 토지 및 건물비용, ③구입된 연구, 기술, 지식, 특허권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이용되는 상담 및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비용, ④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간접비용, ⑤재료, 공급품과 같이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 등이다. 다만,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각국의 경험과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에 비추어 보아 주요용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된다.

나)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일반적인 지역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되는 「낙후지역」(disadvantageous region)을 대상으로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특정성을 갖지 않은 형태로 지원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때 낙후지역이라 함은 일시적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발전지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즉, 직전 3년동안 측정된 해당지역의 1인당 소득, 1인당 가계소득 또는 1인당 GDP중 하나가 전국평균의 85% 이하이거나, 또는 직전 3년동안 측정된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110% 이상인 지역으로서 경제적, 행정적으로 동일성을 지니는 행정단위이어야 한다.

이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보조금」은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원상한액을 달리 설정하여야 하며, 지원상한액은 투자비용이나 직업창출비용등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입증이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이 지역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됨으로써 수혜대상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즉, 보조금이 전체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특정한 고립지역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다) 「환경보조금」은 최소한 2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존설비(공장이나 건물)를 새로운 환경관련법규나 규정에 적응시키기 위한 비반복적인 1회의 지원으로서 개선비용의 20%까지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때 지원 규모는 기업의 오염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감축수준에 비례하여야 하며, 새로운 장비, 기계와 생산공정을 채택하는 모든 기업에게 이용가능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향후로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설비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과 같이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은 시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WTO보조금/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해야만 한다. 즉,

①보조금의 형태(무상지원, 융자, 조세감면 등)

②단위당 보조금, 이것이 불가능하면 연간 보조금총액(가능하면 전년도의 단위당 평균보조금을 나타내는), 또는 보조금 소요예산총액

- ③ 정책목표와 보조금의 목적
- ④ 보조금의 지속기간과 기타 보조금에 부과된 시한
- ⑤ 보조금의 무역효과측정을 위한 통계자료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을 사용하는 회원국은 매년 최근의 운용현황을 동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제도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전년도 이후의 제도수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타 회원국은 통보된 제도의 개별 보고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WTO 사무국은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에 대한 통지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체약국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검토결과를 동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도의 적정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검토결과(또는 사무국이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 그 자체)를 신속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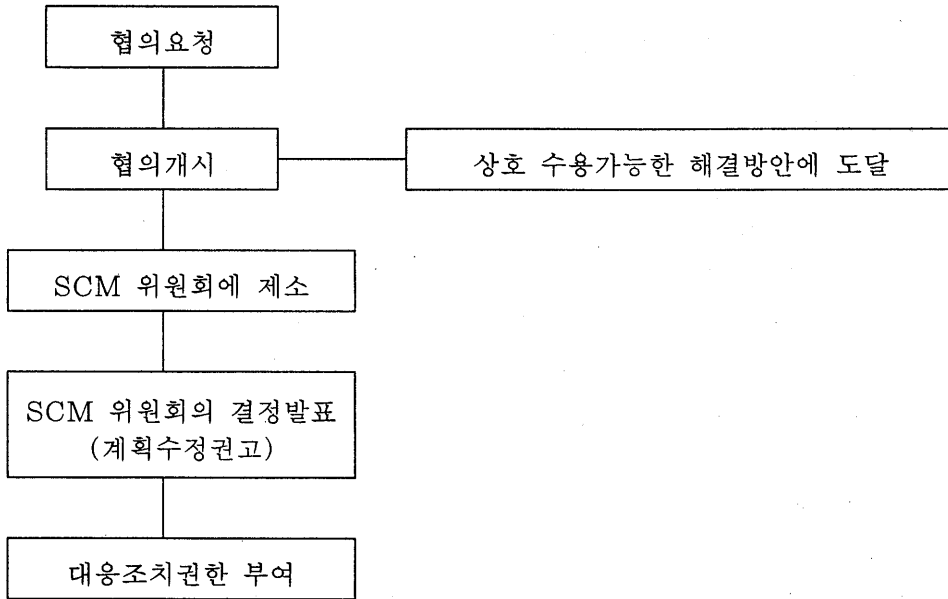
다. 구제절차

체약국의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의 공여에 따른 타체약국의 구제절차는 <표 4-2>와 같이 이해당사국간의 협의로부터 시작한다. 협의를 요청받은 국가는 즉시 협의를 개시하여 60일 이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WTO보조금/상계조치 위원회 제소되며, 동 위원회는 보조금의 효과와 제반증거들을 검토한 뒤 제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타체약국에게 불리한 효과 발생한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당해계획에 대한 수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가 6개월 이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 위원회는 상계조치 권한을 협의요청 체약국에게 부여한다.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는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와는 달리 동 위원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다른 보조금의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반면에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특히 상소절차가 없으므로 동 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표 4-3>와 같이 된다.

〈표 4-3〉 “특정성 있는 허용보조금”의 공여에 따른 타체약국의 구제절차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제5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다양한 정치적 욕구가 혼효된 상태에서 결국 국민에 의한 선택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가마다 사회적 특성, 역사, 지리적 성격 등으로 말미암아서 국내보조금(domestic subsidy)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각 국가마다 국가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립되고 발전되어온 보조금제도는 이제 1995년 UR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그 협정에서 제시된 골격에 맞게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조금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방향을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변화시켜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보조금제도에 관한 확립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앞서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우리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에는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은 북미국가,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와 같은 유럽공동체국가 및 일본을 대표적인 국가로 꼽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소위 G7국가로 불리워진다. 이들 국가중 북미국가에 속하는 미국과 유럽공동체국가에 속하는 독일 및 아시아국가에 속하는 일본의 보조금제도관련 법제와 그 운용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미국과 독일은 아주 상이한 방식의 연방제국가형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단일국가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두드러진 특성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장에서는 각각의 국내보조금제도의 나라별 특성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및 독일의 보조금관련 법제와 그 운용의 내용을 차례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제1절 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내보조금(domestic

subsidy)은 1950년대경부터 그 종류, 공여기관 및 공여금액에 있어서 급속히 확대되어 왔는 바, 그 내용상의 대부분은 포괄적 보조금(comprehensive subsidy)이 아닌 개별적 보조금(individual subsidy)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즉, 개별적 보조금(individual subsidy)은 대체로 세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州(state)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재정부담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충당시켜 주는 보조금공여행위, 둘째,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이 연방으로부터 보조금수혜를 받는 사업에 편중되어 주 및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행하는 본래의 사업활동이 소홀히 될 염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공여행위, 셋째, 주 및 지방정부의 창의적 주도성이 제한을 받는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너슨행정부는 1972년에 세입분배제도(Revenue Distribution System)를 1972년에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그 사용용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 바, 따라서 일반재원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었는 바, 결국 1986년에 폐지된 바 있다.⁵³⁾

한편, 일반적 보조금으로서는 1976년에 도입된 바 있는 불황대책으로서의 원조사업계획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일반재원으로서는 불가하나 동일한 사업(Program)의 범위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보조금(comprehensive subsidy)제도가 있다. 지방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공여제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개별적 보조금의 점유비율이 의회측의 선호경향으로 말미암아 9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이후로는 포괄적 보조금의 공여비율이 증대되고 또한 개별적 보조금이 지니는 특정성(specificity)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하기에서는 미국연방정부가 구사하는 국내보조금제도를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⁵⁴⁾

53) 신정 보조금제도 p.188, 가동 강일 및 병등 광치 여저, 일본전산기획 발행(1988년 6월).

54) 미국의 주정부(state government) 및 각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공여하는 약 500개에 달하는 비연방정부 보조금(non-Federal Subsidy)제도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에서 일용 제외한다.

미국연방정부의 경우 1994 회계년도 현재 1353개의 연방정부차원의 국내보조금 및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전년도인 1993 회계년도의 1,308개보다는 오히려 45개 제도가 신규로 증설된 것이다. 미국연방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보조금은 이를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여기관별(51개의 기관)로 분류하는 방법과 보조금의 기능별(20개의 대기능 및 176개의 소기능)로 분류하는 방법 및 보조금의 성질별(15개의 성질유형)로 구분하는 방법등이 있다.⁵⁵⁾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지면의 제약 및 서술의 편의상 국내보조금을 공여기관의 사업별(Agency Program)로 분류하고자 하는 바, 이를 재정지원의 여부와 연계하여 동시에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보조금을 그 성질 및 기능별로 고찰하여 보는 것도 중요한 분류방법이기는 하나 다만, 그 내용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이를 구분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자 한다.

1. 연방정부가 공여하는 보조금 및 지원의 분류

가.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성질별 분류

미국행정부(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국내보조금 및 지원행위를 그 성질별 유형에 따라 15개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바, 그중 7개는 재정지원의 형태(financial type of assistance)를, 나머지 8개는 재정비지원의 형태(nonfinancial type of assistance)를 띄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기 15가지 형태의 성질별 분류에 관하여 고찰하여 본다.⁵⁶⁾

55) 실제로 미국행정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및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가 1965년 이후 년도별로 발행하고 있는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는 연방정부의 국내보조금을 공여기관별, 기능별, 성질별 및 수혜대상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56)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1994), pp.6-94 XV, XVI, published b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표 5-1〉 미국연방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성질별 분류

성질별 구분	내 용
1) 법령에 의한 무상 자금배정 (Formula Grants)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된 배분공식에 의거하여 주 또는 그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특정사업에 국한되지 않은 계속적 성격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주 또는 그 지방정부에 자금을 무상배정하는 보조금.
2) 특정사업용 무상 공여 (Project Grants)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특정서비스나 특정물품을 제공하는 보조금공여행위로서 두경우 모두 그 이행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이 범주에 속하는 보조금으로서는 장학금, 학문연구비, 학술조사비, 훈련비용, 실험 및 실연비용, 평가비용, 기획비용, 기술지원비용, 탐사비용, 건설비용, 및 비권유계약체결에 따르는 무상자금의 공여행위를 들 수 있음.)
3) 특정용도를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 (Direct Payments for specified use)	연방정부가 개인, 사기업 및 기타 사립연구기관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재정지원으로서 수혜자에 의한 특별한 사업이행 실적을 자금지원수령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특정한 활동을 장려하거나 또는 보조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 다만, 연방정부를 위한 물품과 서비스의 권유에 의한 조달계약의 체결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직접적 재정지원 (Direct Payments with unrestricted use)	연방정부가 수혜자의 자금용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수혜대상자요건을 충족시키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자금을 공여하는 보조금 (예: 은퇴비용, 연금, 보상자금공여 등)
5) 직접융자 (Direct Loans)	연방정부가 상환을 조건부로 하여 일정기간동안 재정자금을 공여하는 조치로서 융자수령자의 이자지급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6) 융자보증 (Guaranteed Insured Loans)	융자공여자의 융자에 따른 융자수령자 또는 상환책임자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의 상환불이행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융자자에게 배상하는 조치

성질별 구분	내 용
7) 보험 (Insurance)	특정조건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공여하거나 보험회사 등의 사기업체를 통하여 공여하는 조치임.
8) 재산 및 물품의 판매, 교환 또는 증여 (Sale, Exchange, or Donation of Property and Goods)	연방정부의 부동산, 동산, 상품 및 토지, 건물, 장비, 음식 및 약품을 위시한 기타물품의 판매, 교환 또는 증여에 관한 사업 계획. 다만, 연방정부의 시설이나 재산의 대여, 사용 또는 접근활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9) 재산, 시설 및 장비의 사용 (Use of Property, Facility, and Equipment)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재산중 수혜자의 점유하에 있지 않는 동시설이나 재산의 대여, 사용 또는 접근활용에 관한 사업계획
10) 전문서비스의 제공 (Provision of Specialized Services)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나 개인의 복리를 위하여 어떤 임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계획. 이러한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아닌 인사와 공동으로 행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단순한 협의와 자문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이어야 함.
11) 자문서비스 (Advisory Services and Counseling)	연방정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지역사회나 개인에게 협의 또는 자문하여 회의개최, 분임토의나 개인적 접촉을 하게끔 하는 사업계획. 단, 이 경우 공개된 정보의 사용은 허용되나 다만, 제2차적 자격에서 사용하여야 함.
12) 기술정보의 전파 (Dissemin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교환소나 도서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적 성격의 정보나 자료의 발행 및 배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전래적인 공공정보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13) 훈련 (Training)	연방기관이 직접 연방정부에 고용되지 않은 개인들을 위하여서 행하는 훈련교육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14) 불평신고에 따른 조사	연방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이 어떤 조치가 연방법률이나 정책 또는 행정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나 조사가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성질별 구분	내 용
(Investigation of Complaints)	필요하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 요구 및 신고에 根基하여서 행하는 연방행정기관의 조치.
15) 연방정부에 의한 고용 (Federal Employment)	연방정부에 속하는 민간기관의 요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데 있어서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 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료) :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1994), pp.6-94 XV, XVI, published b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나.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기능별 분류

미국행정부는 국내보조금 및 지원행위를 그 기능별 유형에 따라 20개의 기본적인 기능카테고리(대분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를 특정한 관심분야별로 중분류하여 176개의 중분류기능카테고리(중분류)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기 20개의 대분류와 176개의 중분류방식에 관하여 고찰하여 본다.

<표 5-2> 미국연방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기능별 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1)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보전 및 개발 · 생산 및 영업 · 유통 · 연구개발 · 기술지원, 정보 및 서비스 · 임업 · 안정 및 보전서비스
2) 기업 및 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경제개발 · 경제적 피해 및 자연재해 · 상업적 어업

대 분 류	중 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문제 · 국제문제 · 통계 · 특별기술서비스 · 소수민족인에 의한 기업활동
3)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사 · 건설, 복원 및 활동 · 역사적 보전 · 농촌지역개발 · 여가활동 · 용지취득 · 북미인디언 원주민 행동서비스 · 연방 잉여재산 · 기술지원 및 서비스
4)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검사 및 집행 · 불평처리조사 · 정보 및 교육서비스
5) 문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진흥 · 자선행위 조장
6) 재해예방 및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사태대비 및 시민방어 · 홍수예방 및 제어 · 긴급보건서비스 · 재해구제
7)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교육훈련 · 교육장비 및 자원 · 교육시설 · 초등 및 중등교육 · 일반조사평가 · 신체장애자교육 · 보건교육훈련 · 고등교육-(일반) · 미국인디언 원주민교육 · 도서관 및 기술정보서비스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대 분 류	중 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교육 및 훈련 · 핵교육 및 훈련 · 간호교육 · 자원개발 및 지원-(초등·중등교육) · 자원개발 및 지원-(일반 및 특수이익기관) · 자원개발 및 지원-(고등교육) · 자원개발 및 지원-(토지 및 장비) · 자원개발 및 지원-(학교원조) · 자원개발 및 지원-(과학) · 자원개발 및 지원-(학생용자원조) · 자원개발 및 지원-(직업교육 및 신체장애자교육) · 교사교육 · 직업개발
<p>8) 고용, 노동 및 연수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조사 및 실연 · 사업계획개발 · 직무교육 및 고용 · 연방정부의 고용 · 유대관계 및 인증 · 고용기획의 평등 · 실업자지원 및 서비스 ·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 통계작업 · 노무관리서비스 · 시설, 기획, 건설 및 장비
<p>9) 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 탐사 및 개발 · 교육훈련 · 시설장비 · 전문기술서비스 · 일반정보서비스
<p>10) 환경의 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관리 · 공기오염관리 · 고체폐기물관리 · 살충제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 및 소음관리 · 조사, 교육 및 훈련
11) 식량 및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위한 식량 및 영양 ·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식량 및 영양 · 식량검사 · 조사
12)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일반) · " -(법령의 집행) · " -(기획) · " -(조사) · 전염병 · 교육훈련 · 시설용 융자 및 보험 · 시설기획 및 건설 · 일반보건 및 의료서비스 · 보건조사-(일반) · 보건서비스기획 및 기술지원 · 인디언원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 도서관, 정보 및 교육서비스 · 출산, 유아, 소년 · 정신건강서비스 ·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 신체단련(physical fitness) · 예방과 관리 · 사업계획개발 · 전문보건조사 및 연수 · 재향군인의 보건
13)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및 저당보험 · 주택구입 및 주택소유 · 주택개발 · 조합주택, 임대주택 · 농촌주택 · 다가구주택 · 실험 및 개발사업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대 분 류	중 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디언원주민의 주택문제 · 건축 및 주택재개발 · 기획 · 용지취득 · 주택지정비
<p>14) 소득보장과 사회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구자 및 신체장애자 서비스 · 불구재향군인 · 긴급/위난지원 · 가족 및 아동복지사업 · 인디언원주민에 대한 사업 · 정보 및 정보전달사업 · 법률구조사업 · 영양 · 고령자부조 · 예방 · 공적 부조 · 난민 및 유입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 조사 및 시연 · 사회보장 및 보험 · 특수가족과 아동복지 서비스 · 특수서비스 · 훈련 · 연수지원 · 재향군인지원서비스 · 청소년서비스
<p>15) 정보 및 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조사자료 · 일반 · 도서관, 정보센터, 문서관리소 · 미국의회도서관 및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의한 서비스
<p>16) 법, 정의 및 법률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집행-(기획 및 운용) · " -(조사, 교육, 훈련) · " -(마약 및 위험약물) · " -(범죄분석 및 자료) · 법률서비스-(일반 서비스) · " -(고용에 관한 권리)

대 분 류	중 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노사관계) · " -(주택에 관한 권리) · " -(외국정부에 대한 청구)
17) 자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조사 · 수자원보전 및 조사 · 지역용수공급사업 · 야생동식물조사 및 보전 · 토양보전 · 리크리에이션
18)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 · 기획 및 기술원조 · 용지취득·복구 및 시설물건조 · 교통 · 에너지 · 주택 · 교육 · 보건 및 영양 · 자원개발
19) 과학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일반) · 조사-(전문) · 정보 및 기술 서비스
20)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대상교통 · 고속도로, 公道 및 교량 · 철도교통 · 항공교통 · 수로항해

(자료) :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1994), pp.6-94. FIS-1 and FIS-2, published b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and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다.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공여기관별 분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연방정부는 1994년 현재 51개의 행정기관이 도합 1,

353개에 달하는 국내보조금 및 지원을 수혜대상자 또는 기구(개인, 지방정부, 비영리공익기관, 주정부, 미국속령 및 인디언원주민자치기구)에 공여하고 있다.

이를 공여기관별로 분석하여 보면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및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등 시민으로서의 기초적수요(basic needs) 내지는 사업진흥(business promotion)을 목적으로하는 보조금 및 지원이 그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보조금을 공여기관별 및 지원의 소관건수에 따라 검토하여 보면 아래의 <표 5-3>과 같이 나타난다.

<표 5-3> 미국의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공여기관별 소관건수

(단위:건수)

공 여 기 관	제 도 상 의 건 수
1. 농무부	130
2. 상무부	90
3. 국방부	31
4. 주택도시개발부	95
5. 내무부	52
6. 법무부	47
7. 노동부	39
8. 국무부	5
9. 교통부	52
10. 재무부	6
11. 아팔라치아지역위원회	11
12. 인 사 관 리 처	9
13. 민 권 위 원 회	1
14. 평등고용기회위원회	8
15. 연방통신위원회	1
16. 연방해사위원회	1
17. 연방노사중재조정위원회	2
18. 연방상사위원회	1

제 1 절 미국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공 여 기 관	제 도 상 의 건 수
19. 조달청	6
20. 정부인쇄국	2
21. 州際상사위원회	2
22. 의회도서관	7
23. 국가항공우주국	2
24. 국가신용조합국	2
25. 국가예술인문재단	44
26. 국가노사관계원	1
27. 국립과학재단	9
28. 신체장애자고용대통령위원회	1
29. 철도종사자퇴직원	1
30. 증권거래위원회	1
31. 중소기업청	22
32. 국제무역위원회	1
33. 테네시계곡관리청	3
34. 재향군인부	37
35. 환경보호부	46
36. 국립예술전당	1
37. 해외투자공사	2
38. 고령자지원국립공사	5
39. 핵규제위원회	3
40. 선물거래위원회	1
41. 에너지부	34
42. 미국공보처	2
43. 연방비상관리처	24
44. 교육부	183
45. 해리트루먼 장학재단	1
46. 연금수혜보장공사	1
47. 건축교통장해처리원	1
48. 국립문서기록청	3
49. 미국평화연구소	2
50. 국립장애자위원회	1
51. 보건후생부	321
총 계	1,353

(자료) :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1994), pp.6-94. AI1~28, published b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and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그런데 <표 5-3>에 나타난 5개의 연방정부기관에 의한 국내보조금 및 지원내역을 자금의 공여가 수반되는지의 여부라는 각도에서 검토하여 보면 총계 1,353개의 건수중에서 그 대부분인 1,068개의 건수는 직접적으로 재정자금 또는 금융자금의 공여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2개의 건수는 기술지원 및 정보의 제공 등과 함께 재정 또는 금융자금의 공여가 수반되는 것이어서 결국 총 1,353개의 건수중 그 83.5%에 해당하는 1,130개의 건수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금융자금의 용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자금의 공여가 없는 순수한 기술지원이나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는 총계건수 중 그 16.5%에 불과한 223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미국연방정부가 공여하는 국내보조금 및 지원제도가 우루과이라운드(UR)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약이 규정하는 「특정성」(specificity)을 띤 보조금으로서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또는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actionable subsidy)이 아닌지의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관심분야를 추출하여 일응 검토하여 보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부록에서는 연방보조금 및 지원내용을 그 공여기관별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는 바^{57) 58)}, 동 부록중의 우측난은 동 보조금 및 지원이 재정자금의 공여를 수반하는 것인 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보조금제도 일반

가. 미국연방정부의 신용공여제도

1990년의 연방신용개혁법에 의거하여 미국연방정부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57) *supra*, pp.6-94 FIS 1~2.

58) 보조금 및 지원의 공여기관별 내역은 그 분량이 방대하여서 이를 번역하여 나열하는 것 보다는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1994)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바이다.

금융차입자에게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또는 대출보증을 행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대출이자율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공적 차입이자율보다도 종종 낮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연방정부가 사기업(私企業)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증액은 대부분 파산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도록 하고 있다. 차입자 혹은 피보증인의 파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금융손실은 연방신용개혁법에 의거하여 무상공여(grants)로 처리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대출 및 대출보증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한 기관(GSE)이 신용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5-4〉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공여 및 공적 보험제도의 잔액

(단위: 10억달러, 잔액기준)

연도별잔액 구 분	1991 년	1992 년	'93-98년간(추정)
직접대출	160	157	9-20
융자보증	723	587	4-29
연방정부보험지원	4,687	4,709	50-80
GSEs	966	1,105	- 1
합 계	6,536	6,558	63-130

(자료) :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994.

GSEs :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정부지원기업)의 신용공여 및 보험공여 잔액

〈표 5-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년도말 현재 미국연방정부의 신용공여 및 연방신용 및 보험지원잔액은 6조5,8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직접대출이 1,570억 달러이고, 융자보증이 5,870억달러, 연방정부에 의한 보험공여액수가 4조 7,090억 달러이며, 정부지원기업(GSE)에 의한 신용 및 보험공여잔액이 GSE가 1조 1,050억 달러에 달한다. 1993년에서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 연방정부가 공여할 신용 및 보험의 잔액은

630억달러에서 1,300억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인 것이다.

나. 미국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Assistance)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목표 및 방향

미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미국민을 위한 직업을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모색하며, 또한, 민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생산적이며 적절한 정부의 역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기초과학, 수학 및 공학분야에서의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R&D)투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미국의 R&D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은 기존의 기초분야에 대한 투자로부터 산업분야에 대한 R&D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1994회계년도 예산은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장기지원, 신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기술협력증진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특히 미국상무부의 산하기관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기술개발과 민간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1993회계년도에 비해 25%나 증액시키고 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대한 자금공여의 주요대상분야는 고성능컴퓨터, 첨단제조기술, 전자, 생체과학, 화학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경비지출

(가) 연구개발투자의 변화

미국연방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994회계년도 및 1995회계년도 예산에 나타난 새로운 기술정책은 상업화와 관련된 경쟁이전개발단계(pre-competitive development stage)의 연구개발행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개발은 726개에 이르는 연방정부산하의 연구소를 포함한 연방 R&D局과 민간기업과의 비용을 분담하는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cost-sharing cooperation).

민간부문에 대한 연구개발(R&D)비용 지출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지출의 비중을 하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절대액에 있어서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의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1994회계년도의 연구개발비용의 지출은 약 760억달러에 달하였는 바, 1993년 회계년도에 비해 3%나 증가하였다.

일용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 1994년 미국행정부는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58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중 민간부문에 할당하는 방위산업예산은 170억달러로 1993년에 비해 6% 증가한 수준이며, 정부가 담당하는 방위산업예산은 400억달러로 1993년에 비해 1%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

과학, 수학, 공학 및 기타분야에서의 기초연구는 응용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연구개발결과의 상업성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간취할 수 있다 하겠다. 1994회계년도의 예산에서 기초분야의 R&D는 1993년에 비해 2%증가한 수준인 바, 이 중 민간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3%가 증가한 반면에,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은 오히려 10%나 감소하고 있다.

(나) 주요부문별 연구개발경비지출

1) 제조기술분야의 연구개발(Manufacturing R&D)

제조기술의 연구와 제조기술확포센터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제조기술로 연구개발제품의 질을 제고시키고 비용을 낮추며, 또한 그 상품화를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는데에 지원의 목적이 있다. 1994회계년도의 경우 제조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5억달러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만이 이러한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중소기업은 아직 첨단제조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초고속정보체제(Information Superhighway)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접근이 중요해짐에 따라 1994회계년도 예산에서는 이 분야에 10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1993년에 비해 26%나 증가한 것이다. 초고속정보체제화사업은 고속자료처리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법은 고속컴퓨터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네트워크를 통한 초고속컴퓨터(Supercomputers)를 연계시켜서 통합조정된 연방정부의 조사연구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적 정보초고속화체제(National Information Superhighway)를 창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은 보조금지원을 비롯한 고속자료처리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내 외국계기업에 비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우호통상조약(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상의 내국민특혜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민간운송부문 사회간접자본(Civi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운송분야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이 응용되고 있으며, 1994회계년도에 자기부상열차, 초고속철도, smart-highway 등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개발과 응용에 2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1993회계년도에 비해 29%나 증액된 금액이다.

4) 대학내연구(University Research)

연방정부는 1994회계년도에 미국의 각 대학에 11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금중 93% 이상은 주로 국립과학재단, 국가보건연구소, 에너지부, 국방부, 항공우주국 등에서 공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내연구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장기적인 과학기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국립연구소(National Laboratories)

국립연구소는 고에너지 물리학, 생체과학, 핵물리학,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 대학, 정부, 민간기업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 및 시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국립연구소는 기초과학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하며 민간기업 및 대학, 정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력중의 일부는 협력연구협정(CRADA :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의 형태로 지원된다. 1994년에는 1700개 이상의 CRADA가 체결되었으며 동 CRADA에 따른 연구개발투자는 1993년에 비해 17%가 증가한 30억달러를 초과하였다.

〈표 5-5〉 미국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 내역

(단위:백만달러)

년 도	1992	1993	1994	1993년에 대비한 1994년도 예산의 증가율(%)
구 분				
국 방 분 야	40,083(59%)	41,608(59%)	41,978(58%)	1%
민 간 분 야	27,970(41%)	28,695(41%)	30,115(42%)	5%
기 초 연 구	12,984	13,701	13,940	2%
민간부문	11,838	12,306	12,688	3%
국방부문	1,146	1,395	1,252	-10%
응 용 연 구	55,069	56,602	58,153	3%
민간부문	16,132	16,389	17,427	6%
국방부문	38,937	40,213	40,726	1%
소 계	68,053	70,303	72,093	3%
연구개발시설	3,903	3,259	3,498	7%
총 계	71,956	73,562	75,591	3%

(자료) :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994.

(주) : 표에 나타난 수치는 budget authority의 수치이며 실제지출금액은 아니다. budget authority란 매년도에 의회가 책정한 예산으로 금년도 budget authority 금액이 금년도에 모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후년도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지출은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으로 지출의 내역은 과거의 budget authority의 자금과 현재 budget authority 자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의 지출금액을 보면 1992년도의 R&D총액은 647억2800만달러이며, 1993년에는 686억500만달러, 1994년에는 704억29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6) 우주과학과 탐험(Space Science and Exploration)

우주과학분야에는 1994회계년도의 경우 1993년에 비해 6%가 증가한 70억 달러 이상이 지원되었다. 우주과학에 대한 지원은 우주에 대한 탐험 및 탐험에 필요한 연구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각종의 실험 및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7) 환경문제연구(Environmental Research)

연방정부는 1994회계년도에 기후, 에너지 보존, 기타 에너지자원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에 3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중의 하나가 세계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1993년에 비해 13%이상이나 증가한 15억달러가 책정되었다.

다. 과학기술지원정책

(1) 첨단사업계획(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

ATP는 미국상무부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원 (NIST :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 and Technology)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기업의 합작투자,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제도는 당초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처음 규정되어 창설된 제도인데, 그 후 1992년 미국기술우위유지법(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2)에 의하여 보장되었다. 즉, 신법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통하여 중요한 고도기술산업분야에 있어서의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 물론 본제도에 의거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지원규모는 1990년도에 1천만달러, 1993년도에는 6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바, 1997년까지는 그 전체예산을 7억5천만달러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ATP는 1990년부터 3년간 18개의 합작투자를 포함하여 60개의 각종 개발시상수여(award)와 150개의 기관에 자금지원을 행하였다. ATP의 지원대상은 상업화 이전단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전기, 광학녹음, 고온초전도, 신소재, 환경보호 및 기타의 제반분야에서 기존기술의 개선 등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즉, ATP는 상품중심 및 공정중심의 기술 모두가 수혜대상인 바, 그 수혜대상자중 48%는 중소기업, 30%는 합작투자, 그리고 22%가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미국기술우위유지법은 동법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행정인가법(Technology Authorization Act of 1991)과 함께 교역상대국기업에 대한 차별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명문상으로나 조문의 해석상 일방적으로 차별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i) 첨단기술계획(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인가조항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합작연구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합작파트너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ii) 동법상의 미국산 물품의 의무적 구매조항(Buy American Provisions)은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적 구매정책을 불공정하게 유지하는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의 구매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특히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의 구매업무에 간여한다는 사실자체가 불공정무역규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외국의 구매정책이 공정한지 또는 불공정한지의 판단여부를 미국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놓았다는 점이다. 상당한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또한 동법은 더 나아가서 입찰사업의 경우 비록 외국기업의 응찰조건이 미국기업의 응찰조건보다 우월하다 하더라도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미국기업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경제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이외에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도 위배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iv) 동법상 기존의 기술혁신법(Technology Innovation Act로서 Stevenson-Wydler법이라고 통칭됨)을 수정하는 조항은 외국의 미국내 현지법인이나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등을 배제한채 특허권 공동사용(patent-pools)을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에의 위반여부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동법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입법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제조기술확보협력(MEP : Manufacturing Extention Partnership)

제조기술확보협력은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서 관장하는 4가지의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s (MTC)
- State Technology Extention Program(STEP)
- Manufacturing Outreach Centers(MOC)
- LINKS

(가) 제조기술센터(MTC :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s)

제조기술센터는 전국의 주요 기업센터에 위치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

및 생산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기구인 바, 1994회계년도의 예산은 6억 달러이며, 이 중 절반이 MTC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되고 나머지는 주 또는 민간 자금에 의해 마련된다. 제조기술센터의 주요업무는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설비를 관찰하고 제조기술사용의 개선가능성을 제안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며 또한 신설비를 이용한 기업에게 생산설비의 활용방법 등을 지원한다.

(나) 州別 기술확보프로그램 (STEP : State Technology Extention Program)

19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를 둔 주별 기술확보프로그램은 주정부가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국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STEP은 기술정보를 배포하며, 주 정부가 기존의 기술확보프로그램을 정비하거나 기술확보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상공여 한다. 1993회계연도의 예산은 1억2,800만달러였으며,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3년동안 23건의 무상공여를 제공했다.

(다) 제조기술확보센터(MOC: Manufacturing Outreach Centers)

제조기술확보센터는 MOC가 설립되기에는 적은 수의 기업이 있는 곳에 설립된다. 제조기술확보센터는 1년에 약 1억달러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그 중 절반은 MEP에서, 나머지 절반은 주정부나 민간기업이 지원한다.

(라) LINKS

LINKS는 제조기술센터 및 제조기술확보센터 및 기타 제조기술확보센터를 연결하는 중앙정보네트워크이다. LINK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정보의 종합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조기술확보협력(MEP)제도는 첨단제조기술법(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Act of 1991)에 근거하고 있는 것(다만, STEP제도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바 있으나, 신법에 의하여 수정보강되었음)으로서 동법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로 하여금 내국 민간기업과의 협업사업 및 민관합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토록 지시하며, 또한 민간기업의 첨단제조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동법을 검토하여 보면, 외국계 합작기업이나 외국인 인수기업

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i) 미국내의 외국계 합작기업이나 외국인 인수기업이 상기 민관합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일정 기준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또한, 동 참여조건들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개정되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협력 연구사업법(NCRA)의 관련의무조건들을 또한 만족시켜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질은 의도를 깔고 있다할 것이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계획 (SBIR :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gram)

중소기업기술혁신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연구분야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중소기업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BIDA :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1986년과 1992년에 의회는 SBIDA의 지속적인 효력유지를 승인하였다.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계획에는 13개의 연방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동 사업계획의 연구주제를 계획·발표한다. 참여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기관으로서는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부, 운수부, 환경보호부, 국가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핵규제위원회(NRC) 등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계획은 3단계로 구분되며 제 1~2단계에 한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제안된 아이디어의 과학적·기술적인 가능성을 평가하며, 이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에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개발결과를 확대하고 진척시키는 것으로서 2년간의 수행기간에 75만달러까지 지원한다. 제3단계에는 제2단계결과의 상업화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본사업계획의 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의 전체 중소기업기술혁신프로그램에 의한 수혜는 향후 수년내에 8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1997회계년도에는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국가기술정보서비스 (NTIS : 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효력을 자극하고,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미국정부가 소유한 기술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일차적으로 미국정부가 지원한 연구와 공학연구보고서,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 및 정부소유발명품에 관한 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한다. 다만, 정보의 제공에 따르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만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160만개가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관련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민간이 연방소유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중요기술법(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Act of 1991)에 근거하고 있는 본제도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미국기업에게 연방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외국의 기술개발상황을 파악하여 미국기업에 전파하는 동시에, 국가적 중요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관합동추진계획을 장려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동법을 검토하여 보면, 외국계 합작회사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i) 미국내의 외국계 합작기업이나 외국인 인수기업이 상기 민관합동추진계획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일정기준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또한 동 참여조건들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개정되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협력연구사업법(NCRA :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의 관련의무조건들을 또한 만족시켜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동법은 외국계기업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짙게 깔고 있는 극히 미국기업보호지향적인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5) 기타 과학기술지원을 위한 의회법의법안

1994년 현재 미국의회에는 최소한 10개이상의 첨단기술지원을 위한 법률들이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화될 가능성들이 있는 법안인 바,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관하여 그 개요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기술이전촉진법안」(Technology Transfer Improvements Bill of 1991).

본 법안은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Technology Innovation Act)을 수정하여서 연방정부가 후원한 합동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연방정부기관이 보장하고, 또한 이를 허가하여 주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차별적인 내

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지적재산권의 공동사용 및 허가발급에 있어서 차별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연방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피허가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결국 미국인 소유의 기업에 우선적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UR 협정상의 내국민대우정신과 미국이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우호통상조약상의 내국민대우원칙과도 거리가 먼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를 미국이 1988년에 가입한 베른저작권협약(Berne Convention)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연방기술전략법안」(Federal Technology Strategy Bill of 1991)

본 법안은 연방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산업체주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또한 동 신기술을 상업화하는데에 주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연방정부가 국가협력연구사업법(NCRA)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국내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는 합작연구개발사업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내의 외국계 합작법인이나 외국인 인수기업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제조산업기술전략법안」(Manufacturing Strategy Bill of 1991)

본 법안은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을 수정하여, 상무부로 하여금 첨단제조시스템연결망 프로젝트를 창설하여 미국기업의 첨단제조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동 법안에는 “미국회사(U.S. company)”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망컨대, 입법과정에서 “미국기업의 정의를 소유권에 기초한 개념에 입각하여 규정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첨단제조시스템연결망 프로젝트에 외국인특지참여기업의 참가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둘째 연방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동 법안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각종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있어서 외국인 인수기업 또는 외국기업합작파트너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국가협력생산법수정법」(National Cooperative Production Act Amendments of 1991)

본법은 국가협력조사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을 수정하여 동법의 적용범위를 조사연구개발을 위한 합작사업 이외에도 합작생산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법을 검토하여 보면, 외국기업의 합작생산업체에의 참여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동시에, 또한 동 업체에 의한 물품의 생산제도가 미국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찰컨대, 미국이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우호통상조약상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의 소지가 있는 바, 즉 외국기업의 미국내 현지법인이나 외국인에 의한 지분인수(take-over) 비율이 50%미만인 미국기업에 대하여서 상술한 참여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내국민대우를 불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미국기술경쟁력강화법안」(America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Bill of 1992)

본 법안은 과학연구개발사업(R&D)을 위한 민관협력협정의 체결을 권장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의 촉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본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i) 첨단기술사업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분참여기업을 민관협력사업협정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ii) 또한, Stevenson-Wydler기술혁신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청(Technology Administration)으로 하여금 미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 제조기술센터의 네트워크를 개발토록 하는 규정도 외국인지분참여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현행의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에서도 미국기업을 외국인소유기업보다도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사) 「에너지부 시험검사소의 에너지기술조합설립법안」

본 법안은 에너지와 관련한 "중요기술"의 개발과 실용을 위하여 에너지부 산하의 각 시험검사소와 민간기업간에 에너지기술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에 의거하여 미국인 소유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에너지기술조합을 민관합작으로 설립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는 미국내의 외국인지분참여기업에 대하여 차별화하겠다는 규정으로서 내국민대우를 불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 「무역 및 기술경쟁력실설치법안」

본 법안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내에 무역 및 경쟁력강화실을 설치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신설되는 무역 및 기술경쟁력실로 하여금 미국의 경쟁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또한 중요한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일체의 모든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의 행위를 조사·청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파문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수퍼 301조라고 할 수 있겠으며,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교육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조항인 것으로 분석된다.

라. 기타부문에 대한 보조금지원

(1) 환경분야에 대한 보조금지원

미국연방정부는 환경관련 부문의 연구에 30억달러의 연구개발(R&D)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오염을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 및 기타 자연자원 및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투자에 무상지원(grants)을 하고 있다.

· 오염통제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무상지원은 1992년에는 26억3,1000만달러이었으며,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26억6,400만달러, 28억

1,5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 자연자원 및 환경보존을 위한 투자에 1992년에는 1억3,800만달러의 무상공여를 제공했으며, 1993년과 1994년의 추정금액은 각각 2억5,000만달러와 2억1,9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더 나아가서 연방정부는 환경관련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 연방정부는 기타 자연자원 및 환경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1992년에는 13억3,400만달러,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18억3,900만달러와 19억5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위한 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다.

(2)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지원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은 각주(各州)에 의해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주 및 지방정부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제공한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원금액은 1992년에는 45억달러 이었으며,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69억달러와 72억달러로 추산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통한 지원이외에도 연방차원의 지역개발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투자지출금액은 1992년에 40억7,700만달러이었으며,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51억4,000만달러와 64억8,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역개발계획중의 하나가 외국무역지역(FTZ) 혹은 기업자유지역 등이다. 상무부 국제무역실(ITA)에서 관장하는 외국무역지역(FTZ : Foreign Trade Zone)은 외국으로부터 미국내로 제조 및 가공시설을 이전하고,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FTZ는 상업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제고시키고 있는 바, 따라서 FTZ는 일반적으로 각주의 지역개발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FTZ내에 위치한 기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물류비용의 절감등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따른 경비도 절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주요부문별 보조금공여제도 및 그 운용현황

상술한 바와 같이 보조금이 공여되는 부문 및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 부문 및 근년에 미국이 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해운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보조금지원제도 및 그 운용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농업보조금지원제도 및 그 운용현황에 관한 고찰

농업보조금에 관한 제도는 크게 가격 및 소득지지(Price and Income Support)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출진흥(Export Promotion)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가격 및 소득지지제도

현행 농산물의 가격 및 소득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식량농업교역법(Food, Agriculture and Trade Act of 1990, 일명 Farm Act라고도 함)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①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재정자금의 공여조치(Deficiency Payment) ②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가 공여하는 단기저리의 융자를 통한 가격보장조치 및 ③잉여산품의 구매를 통한 가공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지지조치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상기의 조치들을 특정산품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⁵⁹⁾

(가) 차액보전지원(Deficiency Payment)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Target Price, 생산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보장한 가격)과 시장가격 [또는 시장가격이 대부이자율(loan rate)보다 낮을 때에는 그 대부이자율]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하여 줌으로써 농민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1994년현재 목표가격은 1990년도의 수확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다.⁶⁰⁾ 본제도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

59) 1994 Report on Unfair Trade Policies by Major Trading Partners, p.114, Resea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Publications Department, Tokyo, Japan.

60) supra, p.114.

하여서는 생산계획 및 경작면적감축계획에 참여한 농민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본제도는 표면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미국국내의 가격 및 소득지지수단이나, 또다른 한면에 있어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대외교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EU 및 기타국가들 보다는 낮은 농산물 국내가격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수준에서도 직접적 수출보조금의 공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⁶¹⁾

(나) 단기보조금성격의 대부(가격지지를 위한 대부이자율의 활용)

본제도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로 부터 보조금 성격의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하는 바, 농민의 수확산품을 과거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대부이자율로써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대부이자율보다 하회하게 되면 생산농민은 동 공사에 수확산품을 담보물로써 인도하여야 하며, 결국 이를 통하여 공급을 감소시켜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시장가격이 대부이자율보다 상회하게 되면 생산농민은 동 공사에 담보로 맡긴 수확산품을 환매하여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는 바, 결국 이를 통하여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인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품신용공사(CCC)의 대부이자율의 결정은 농무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매년의 농산물수확계획(Crop Plan)에서 결정되는 것이다.⁶²⁾

(다) 낙농품에 대한 가격지지제도

낙농품에 대한 시장가격지지와 생산농민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신용공사(CCC)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간접지지를 하고 있다.

61) 1994 Report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Doc. No. I/194/94), p.73, Serv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pril 1994, Brussels, Belgium.

62) 1994 Report on Unfair Trade Policies by Major Trading Partners, pp.114~115,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Publications Department, Tokyo, Japan.

(2) 수출진흥제도

1980년대에 걸쳐 EU 각국은 농산물을 과잉생산하였는 바(참고 :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결과로 소위 “mountains of butter and rivers of wine”의 현상이 발생한 바 있음),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EU는 농산물의 역외수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산 농산물의 대외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세가지의 수출진흥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즉, (1) 수출진흥계획(Export Enhancement Plan : EEP)와 (2) 상환이자율조정대부제도(Marketing Loans) 및 (3) 목표수출지원제도(Targeted Export Assistance)가 그것이다.

(가) 수출진흥계획(Export Enhancement Plan : EEP)

본제도는 보조금을 받는 외국의 농산물수출로 말미암아 미국의 농산물수출이 감소한 시장을 선정하고, 외국의 수입선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에 상응하는 상여금(현재 CCC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양곡이나 또는 동 공사의 양곡과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미국의 농산물수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식량안정법(Food Security Act of 1985)은 당초 소수몇몇 국가(사실상 전통적인 EU 시장을 겨냥하였음)에 대한 미국산 소맥(wheat)의 수출을 위하여 EEP제도와 관련하여 상품수출공사(CCC)의 재고분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진흥계획제도(EEP)가 포괄하는 대상농산물은 당초의 소맥(wheat)은 물론 밀가루, 보리, 맥아, 사탕수수, 가금용사료, 채유, 냉동가금, 계란, 쌀, 세모리너(양질의 거친 밀가루), 축산우 및 복숭아통조림 등의 품목으로 까지 대폭 확대되었으며, 동 제도상의 수혜를 받아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대상이 되고있는 국가는 현재 70개국이상에 달하고 있다.⁶³⁾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농산물수출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1988년의 농업경쟁력강화교역법(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rade Act of 1988)은 EEP제도의 유효기간을 1990년까지도 연장시켰으며, 드디어 1990년

63) 1994 Report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Doc. No. I/194/94), p.71, Serv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pril 1994, Brussels, Belgium.

의 식량농업교역법(Food, Agriculture and Trade Act of 1990)은 농업에 대한 미국의 자세를 강화시켜 동 EEP제도에 관한 제약사항을 전면 제거시켜 버렸다. 따라서 동 EEP제도의 지속적인 존치·운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함께 UR농산물협약 및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 물론 미국은 EEP제도의 운영상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총액 25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1992회계년도에는 968백만달러를, 1993회계년도에도 12억달러(추계치임)를 공여한 바 있으며, 1994회계년도에도 이미 1994년 2월 7일 현재로 536백만달러를 공여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물량상으로 본다면 1985회계년도부터 1994년 2월까지의 기간동안 미국은 소맥 142.8백만톤, 소맥분 4.4백만톤, 사료곡물 13.6백만톤, 채유 1.67백만톤을 비롯하여 상당량의 계란, 축산우, 냉동가금 및 복숭아통조림 등이 EEP제도에 의하여 수출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⁶⁵⁾

미국농무부에 의하면 1992회계년도의 경우 9,000톤의 복숭아통조림을 일본, 한국 및 멕시코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1백만달러를 지원한 것은 미국과 EU와의 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측의 보복조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즉 통조림과실에 관한 EU와 미국간의 협약상 동 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지원(Processing Aid) 수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를 EU측이 거절한데에 대한 EU의 제3국시장점유를 봉쇄하기 위한 미국측의 우회보복이라는 사실이다.⁶⁶⁾ 우리의 관심을 끄는 「숨겨진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93회계년도에도 2,654톤에 달하는 복숭아통조림의 수출에 EEP제도에 의한 수출보조금을 공여한 바 있다.⁶⁷⁾

한편, 이 이외에도 미국정부는 1993회계년도에 축산물수출장려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에 의거하여 약 1.61백만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해바라기유지원계획(Sunflower Oil Assistance Protram)에 의거하여 25.3백만달러를 綿實油지원계획(Cotton Seed Oil Assistance Program)에 의

64) supra, p.72.

65) supra, p.72.

66) supra, p.72.

67) supra, p.72.

거하여 6.8백만달러를 지원한 바도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발효되면 상기 지원계획을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라고 하니 할 수 없겠다.

(나) 상환이자율조정대부제도(Marketing Loans)

본제도는 생산농민의 상품신용공사(CCC)로부터 단기융자를 받은 융자기간 내에 대부이자율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에 그 상환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저리로 상환케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금리 보조성격의 보조금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1985년의 농업법(Farm Act)에서 최초로 규정된 제도인 바, 사료곡물, 소맥, 두유에 대하여서는 농무부가 재량사항으로 있지만, 쌀과 高地産 목화에 대하여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8년의 농업경쟁력강화교역법(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rade Act of 1988)은 소맥과 사료곡물에 대하여서는 자동적으로 본제도를 발동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참고 : 미국은 1994년 현재까지 소맥과 사료곡물에 대하여 본조항을 발동한 사례는 없음), 또한 1990년의 식량농업교역법은 더 나아가서 고지산 목화 및 쌀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본제도를 발동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규정을 대두 및 기타의 유채종자(oil seeds)에 대하여까지 확대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제도는 해당농산물의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산품의 대외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인 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미국산 쌀과 목화 및 유채종자 등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을 공여하는 효과를 띄고 있는 것이다.

(다) 시장확충계획제도(Market Promotion Program : MPP)

본제도는 당초 1985년의 식량안정법(Food Security Act of 1985)에 의하여 설치된 목표수출지원제도(Targeted Export Assistance : TEA) 후신으로서 미국산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시장의 개발, 유지 및 확대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1990년의 식량농업교역법에서 시장확충계획(Market Promotion Program : MPP)으로 재명명되었다. 목표수출지원제도(TEA)는 미국산 농산물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의하여 그 수출이 불리한 영향을 받는 품목에

한하여서만 가동되는 제도이었던 반면에, 시장확충계획(MPP)은 이러한 품목 이외에도 기타 농산물 품목군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점이 상이한 것이다. 아롱 든 목표수출지원제도(TEA)하에서 1989회계년도와 1990년회계년도에 각각 2억달러와 2억2천만달러가 인가되었으며, 시장확충계획(MPP)하에서 1992회계년도, 1993회계년도 및 1994회계년도에 각각 2억달러, 1억48백만달러 및 1억달러씩 배정된 바 있다.⁶⁸⁾

(라)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본제도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진흥을 위한 최대의 제도로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私的 단기용자에 대한 상환을 최고 3년의 기한동안 보증하는 제도이다(GSM-102).

한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는 1985년의 식량안정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제도로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사적 용자에 대한 상환을 3년내지 10년의 기한동안 보증하는 것인 바, 기존의 GSM-102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GSM-103). 그 운용실적을 보면 GSM-102제도에 의하여 매년 최소 50억달러 이상의 보증한도가 설정되어 왔으며, GSM-103제도에 의하여서는 매년 5억달러의 보증한도가 설정되고 있다. 1993회계년도의 경우를 보면 GSM-102제도와 GSM-103제도에 의하여 보증을 받은 금융기관 용자금액은 합계 36억달러에 달하고 있다.⁶⁹⁾

(3) 평가

(가) 법적 문제점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검토하여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약(UR Agreement on Agriculture)의 규정에 의하여 체차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국내보조금이 농업보호총량측정수단의 습(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Total AMS) 즉, 농업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

68) *supra*, p.73.

69) *supra*, p.73.

초농산물에 대한 보조와 품목불특정보조(non-product-specific support) 및 농업보조상당치의 습[동 협약 제1조(h)]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 보조금은 동협약에 의거하여 WTO발족후 6년간에 걸쳐 그 20%를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직접적 수출보조금도 동 6년간에 걸쳐 그 36%를 감축하여야만 하며, 또한 그러한 보조금을 받은 수출물량도 그 21%를 감축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미국이 UR농산물협약을 충실히 준수하여 동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을 감축할른지의 여부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나) 경제적 문제점

GATT가 1993년 8월 16일에 발표한 「보호무역에 따른 선진국의 경제적 코스트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높은 대가를 최종수요자인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말미암아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값비싼 경제적 대가(economic cost)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컨대, 농업부문의 종사자수 및 그 소득수준의 유지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선진24개국은 1992년에 도합 3,537억달러를 각종의 직·간접적 보조금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가 국민 1인당 970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 1인당 부담율이 가장 많았고, 핀랜드가 910달러, 스위스가 840달러, 일본이 600달러, EU는 450달러, 미국의 국민들은 평균 360달러씩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지급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구축결과로 쌀 100파운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45~50달러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참고 : 일본의 소비자들은 170~250달러를 부담하였음).

이렇게 볼 때 각국이 자국의 산업보호 및 고용의 유지를 위해 보조금지원 등의 보호무역정책을 계속 추구할 경우에는 ①보호를 받는 기업들이 자본집약적이거나 또는 신기술위주의 경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이고도 신기술을 외면하는 비효율적인 노동집약적 기술을 계속 도입하는 반면에, 이러한 결과에 따라 ②결국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오

히려 종사원의 해고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⁷⁰⁾

나. 해운 및 조선산업보조금지원제도 및 그 운용현황에 관한 고찰

(1) 개 관

미국은 수출물품을 해상운송하는 수단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간 다각적인 지원조치를 제공하여 온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클린턴행정부가 1993년 10월에 발표한 조선산업지원을 위한 정책선언에서도 여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클린턴행정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미국내 조선소(shipyards)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연구개발계획과 선박업체에 대한 융자보증을 위한 상선법(Merchant Marine Act)상의 Title X I (제11장)계획을 재발동시키고 있다.

1994년 9월 현재 미국의회는 외국정부의 자국조선소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폐지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Gibbons/Breaux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부는 조선산업의 상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⁷¹⁾ Gibbons법안은 조선교역개혁법안(Shipbuilding Trade Reform Bill)으로서 조선보조금이나 선박수리업에 보조금을 공여하는 국가의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선박에 대하여 미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Breaux법안은 해운안정 및 경쟁력강화법안(Maritime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Act)으로서 연방정부로 하여금 해운공사가 운영하는 美國旗船 일척당 매년 2.1백만달러에서 2.3백만달러의 보조금을 10년동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군용조선소를 상업조선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통조선(series-built ship construction)을 위한 지급계획을 설치하고 있다.

세계조선시장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만 할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70) GATT, 보호무역에 따른 선진국의 경제적 코스트에 관한 Report, 1993년 8월 16일.

71) 1994 Report on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Doc. No. I/194/94), p.108, Servic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pril 1994, Brussels, Belgium.

(2) 해운 및 조선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공여 및 조세정책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일명 Jones Act임)은 1936년에 제정되어 그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동법은 조선업부문에 대한 각종의 보조금공여조항과 내국세유예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장(Title V)은 연방정부의 직접적 무상공여(grant)인 선박건조차액보조금(Construction Differential Subsidy)을 미국산물품 구매규정과 관련하여 미국기상선(US-flag merchant ships)을 미국내 선박소에서 건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만, 1981년 이후 연방정부가 재정자금을 공여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선법 제607조의 규정은 미국의 선박소유자가 미국산 자재나 물품들 사용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다만, CCF공여계획과 관련하여 어선의 경우에는 예외임) 선박을 구입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주요건조기금(Capital Constructions Fund : CCF) 및 건조준비기금(Construction Reserve Fund : CRF)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CF에 산입된 금액은 1992년말 현재 약 12억달러에 달하며 동 기금보유자는 108개업체에 이른다. 또한, CRF에 산입된 금액은 1993회계년도 현재 3.6백만달러에 달하며 동 기금보유자는 6개업체에 그치고 있다.⁷²⁾

상선법 제601조의 규정은 미국산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의 미국운항자에게 운항차액보조금(Operating Differential Subsidy)을 공여함으로써 외국의 경쟁자들에 비해 운항비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1981년 이후 신규운항차액보조금이 공여된 사례는 없었으나, 1993회계년도의 경우 기존의 운항차액보조금제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계약과 관련하여 215.5백만달러 이상을 배정하였다.⁷³⁾ 그런데 미국행정부는 운항차액보조금에 기초한 계약을 새로운 제도하의 계약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입법조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⁴⁾

72) *supra*, p.108.

73) *supra*, p.108.

74) *supra*, p.108.

(3) 조선업체에 대한 선박금융보증

상선법 제11장은 거의 모든 범주의 선박(단, 어선은 제외함)을 건조하거나 또는 재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국인 선박소유자가 대부받는 상업금융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연방선박금융보증(Federal Ship Financing Guarantees)을 이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한도는 선박의 실체가격의 75%로 까지 하고 있다. 어선이 아닌 신규선박이 동 보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동 선박이 전적으로 미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야만 하며, 선체 및 상부구조에 사용되는 모든 부분품이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선박전체가 미국내에서 조립되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Buy American Policy 및 Build in U.S. Policy를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9월 30일 현재 상선법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은 1,900척(288척의 barge선을 포함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18억달러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⁵⁾

1993회계연도의 경우 49백만달러에 달하는 8건의 신규선박건조에 연방선박금융보증이 이루어졌으며, 잔존부채의 借換(refinancing)을 위한 6건에 대하여서도 동 보증이 이루어졌다.

(4) 국가조선 이니셔티브(National Shipbuilding Initiative : NSI)

1994년도 국방예산수권법(FY 1994 Defence Authorization Bill)은 1993년 10월초 클린턴 행정부가 선언한 정부주도의 국가조선 이니셔티브(NSI)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동 계획은 선박수출을 위하여 미국의 선박소에 연방정부의 용자보증(상선법 제11장이 규정하는 수출용 용자보증 147백만달러) 및 선박디자인 및 제작용 연구개발을 위한 방위전환자금 50백만달러의 지원을 통하여 미국민간조선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부활시키려는 5개부문으로 구성된 계획이다. 그런데 동 계획(NSI)의 수혜대상은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미국내에 소재하는 조선소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계획은 규제적인 개혁심사프로그램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미국조선업체가 외국으로 부

75) supra, p.108.

터의 주문을 획득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출진흥제도를 보다 널리 활용토록 요구하고 있다.⁷⁶⁾

(5) 외국에서 행해진 미국 선박수리 행위에 대한 과세상의 차별조치

미국은 미국영토밖에서 행해진 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한 비긴급수리행위(non-emergency repairs) 및 어망을 비롯한 어선용 수입장비에 대하여 50%의 증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 과세조치는 1930년에 제정되어 1971년 및 1990년에 개정된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466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1990년의 관세법수정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에서 수리된 "LASH" (Lighter Aboard Ship) barge선과 선박예비부품 또는 자재에 대하여 50%의 증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하여서는 동 과세조치를 늦어도 1999년까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동 과세조치의 폐지를 UR협정상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의거하여 멕시코 및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하여서도 적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6) 평가

상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 Buy American Policy의 제도상의 강요는 미국의 조선업체 및 장비제조업체를 명백히 우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의 반영이며, 또한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몇몇 보조금우대조치가 과거 수년간 발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도 계속하여 발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94년 7월 17일에 타결된 OECD조선협상상의 정상경쟁조건(normal competitive conditions)에 관한 합의가 충실히 준수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도 같이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국선박수리행위에 대한 과세상의 차별조치(50%의 증가세 부과)를 GATT 1994협정 제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red

76) *supra*, p.109.

Nation Principle)의 정신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서도 1999년까지는 폐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WTO발족이후의 미국의 조선산업육성정책 및 그 방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나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출금융지원제도에 관한 고찰⁷⁷⁾

(1) 특징

지구중심의 지원으로서 미국수출은행(EXIM),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미국 국제개발처(AID), 중소기업청(SBA), 농무부등을 통해 제공한다. 수출금융은 수출품목의 생산단계보다는 마케팅과정에서 주로 실시되며 미국내 누적재고의 처리, 신제품수출, 신수출시장의 개척, 불공정무역관행국가 또는 대미 흑자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의 구매자에게 미국상품구매자금을 공여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구매자신용형태(buyer's credit)로 이루어 진다.

(2) 주요 수출금융공여기관

(가) 미국수출입은행(US EXIM Bank)

수출입은행은 신용있는 해외구매자가 미국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 혹은 보증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연방금융기관이다.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는 미국산 부분품을 적어도 50%는 포함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상환보증이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한다. 수출입은행은 네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즉, 해외구매자에 대한 대출, 상업대출자에 대한 보증과 운전자본에 대한 보증 및 수출신용보험의 제공이 그것이다.

1) 용자(loan-making)

· 수출입은행은 미국 수출품의 해외구매자(foreign buyer)에게 직접대출

77) 국제화시대의 산업지원제도, 손상호, 윤재형 공저(산업연구원 발행) 및 미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Annual Report of US EXIM Bank와 동 은행의 업무편람을 참고로 하였다.

(direct loan)을 하며, 미국산 자본재 및 관련서비스의 해외구매자에게 대출을 확대하는 상업대출자에게 간접대출(indirect loan)을 한다.

- 미국수출자의 수출액의 85%까지 직·간접 융자가 제공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이상이다.

- 모든 직접대출과 중개자에 대한 간접 장기대출은 시장조건을 감안해 「OECD 수출금융 Guideline」이 허용하는 낮은 이자율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자율은 재무부채권(Treasury Bond)의 이자율보다는 1%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EXIM Bank는 융자신청수수료(application fee)로 0.5%를 징구하고 있는 바, 실질에 있어서 대출이자율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

2) 상업대출자에 대한 보증

- 수출입은행은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구매자에게 융자한 민간부문 대출자에 대한 상환을 보증해 준다.

- 보증은 개별적으로 혹은 간접대출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대부분 정치적·상업적 위험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증하며, 종합적 위험(comprehensive risk)에 대해서는 100%까지 보증한다.

- 보증은 고정이자율 및 변동이자율에 기초한 수출용대출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즉, 2년 혹은 그이상의 상환조건을 가진 대출금액의 85%까지 보증하며, 보증한도는 원금과 이자액의 100%까지 이다.

3) 운전자본에 대한 보증

- 수출입은행은 상업대출자가 수출관련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한 융자에 대해 그 상환을 보증한다.

- 피보증자금은 수출용 상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수출용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서비스, 노동력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 예비 신용장, 입찰, 계약이행보증금에 충당하거나 판매활동을 위한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

- 운전자본에 대한 보증은 대출원금과 이자액의 100%를 보증한다.

4)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

- 수출입은행은 신용수출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종류로서는 신규수출보험과 단기다수구매자 보험이 있다.

- 신규수출보험(new export insurance)은 중소기업청(SBA)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키고, 또한 과거 2년동안 신용수출이 평균 2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180일내) 보험이다.

- 신규수출보험은 상업적위험(commercial risk)에 대해서는 95%, 그리고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 대해서는 100%까지 부보한다.

- 다수구매자보험(multiple purchaser insurance)은 단기수출 받을어음의 정치적·상업적 위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다(예비부품, 원료, 그리고 소비재에 대해서는 180일까지, 그리고 자본재, 농산물과 비료에 대해서는 360일까지 부보함).

- 다수구매자보험은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는 100%까지, 상업적위험에 대해서는 90%까지, 그리고 정치적위험과 상업적위험들 모두에 대해서는 95%까지 보상한다.

(나) 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OPIC)

OPIC는 프로젝트금융, 투자보험, 투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미국정부의 투자기관이다.

1)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 OPIC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보증과 직접대출을 중기금융과 장기금융의 두가지 형태로 제공한다.

- OPIC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체 비용의 50%까지, 성공적인 기존 기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전체 비용의 75%까지 금융지원을 한다.

- OPIC의 대출보증은 6백만달러부터 5천만달러의 범위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직접대출은 일반적으로 6백만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다.

- 직접대출과 피보증대출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2년의 상환만기(maturity)를 가진다. 이자율은 프로젝트의 금융적, 정치적 위험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

2)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

- OPIC는 통화의 태환불능, 몰수, 정치적 위험을 가진 해외투자에 대해 투자·보험을 제공한다.

(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SBA)은 정규기업대출, 국제무역대출 그리고 수출신용회전을 통해 수출자에게 금융지원을 한다.

1) 정규기업대출(Regular Business Loan Program)

- SBA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이 고정자산과 일반운전자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155,000달러 이하인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 155,000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한 SBA의 보증은 최대 750,000달러 또는 대출금액의 85%까지의 한도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 상환만기는 고정자산획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25년, 운전자금에 사용된 대출은 7년을 그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

2) 국제무역대출(International Trade Loan Program)

- SBA의 국제무역대출(ITL)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또한, 수출시장을 확대·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융자인 바, 국내시설, 토지, 장비를 구매 또는 확대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 SBA는 운전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250,000달러 그리고 시설 혹은 장비 대출에 대해서는 100만달러까지 대출보증을 하며,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85%까지이다. 대출금의 상환만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수출회전신용한도(Export Revolving Line of Credit)

- 본 프로그램은 수출용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노동력과 원료의 구입을 위하여서거나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및 진출과 관련한 특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 본 프로그램은 SBA가 155,000달러 이하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증하

도록 하며, 155,000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85%까지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SBA가 보증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750,000달러의 보증을 받기 위해 본 프로그램과 다른 SBA의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이용할 수 있다.

· 주요 지원대상은 1,000명 이하의 고용자를 가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체와 연간매상액이 1,450만달러 이하인 컴퓨터 서비스 기업 등이다.

(라) 농무부

1) 대출

· 식량안전법(Food Security Act)상의 수출신용계획에 의해 단기 및 중기의 수출신용이 공여된다.

· 개도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수출시장개척을 목표로 하여 저리의 양허성 대출을 제공한다.

· 국제가격이 수출업자가 생산농민으로부터 구입하는 농산물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그 인하분 만큼 상품신용공사(CCC)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을 무상으로 공여해 줌으로써 국제가격의 하락에 관계없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대출을 제공한다.

2) 대출보증

·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국에 제공된 미국상업은행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서 상품신용공사(CCC)가 대출원금의 98%까지 보증한다.

3) 기타 농산물수출보조금

· 과잉생산농산물과 누적재고의 처리 및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지원한다.

· 수출진흥계획은 특정시장에 미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 미국정부가 수출업자에게 정부보유곡물의 현물제공이나 현물과 교환가능한 증권을 지급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계획이다.

· 중점수출지원계획은 외국의 보조금공여, 수입쿼터설정 및 기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르는 불리한 효과를 상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연간 1억1,000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마) 기타 수출지원금융제도

①국제개발처(AID)는 프랜차이즈 보증프로그램(franchise guarantee program)을 통해 미국의 프랜차이저(franchiser)들이 개도국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②해외신용보험협회(FCIA : Foreign Credit Insurance Association)는 주요민간보험회사들의 협회이며, 수출입은행과 협력하는 수출입은행의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FCIA를 통해 수출입은행(USEXIM Bank)은 수출자에게 정치적 위험을 보험하고, 모든 상업적 위험에 대해 수출자에게 보험 또는 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수출입은행의 대리점으로서 FCIA는 다양한 보험증권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매자의 신용요구나 클레임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③상품신용공사(CCC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는 미국의 농가 소득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원하려는 목적과 농산물의 균형있고 적절한 공급의 유지 및 그 정상적인 분배를 도모코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GSM-102프로그램(1981년부터 운영)을 통해 3년까지의 신용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하에서 CCC는 이자금액의 4.5%까지, 그리고 원금의 98%까지를 보증한다.

· 간접수출신용 보증프로그램(GSM-103)을 통해 3년이상 10년 이하의 장기상업신용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GSM-103 프로그램하에서 CCC는 원금의 98%까지를 보증한다.

· 민간수출기금공사(Private Export Funding Corporation : PEFCO)는 수출자의 중장기 고정금리부 자금조달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미국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구매자에 대해 자금조달의 보충적 원천으로서 역할을 한다. 동 공사는 51개의 수출기업 등이 투자하여 설립한 민간수출금융지원기구이다.

라. 조세지원제도

(1) 미국내 투자진흥을 위한 조세인센티브

미국의 50個州는 그 모두가 어떤 형태를 띄우든 내국세의 감세 면제, 유예 혹은 투자관련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가장 일반적인 조세지원의 대상은 법인소득세, 판매세(sales tax) 및 사용세(use tax), 그리고 재산세 등이다.

- 기계와 장비의 판매 혹은 사용,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조세의 면제가 41개의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 산업연료 및 원료에 대한 판매세 및 사용세는 40개의 주에서 면제되고 있다.

- 기업의 재고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이 34개의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6개주, 직업창출을 위한 세액공제가 25개주, 연구개발(R&D)에 대한 소득세경감 등의 기타 인센티브가 20개의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단지 통과중(in transit)인 상품 즉, 주밖에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37개의 주에서 판매세 등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2) 수출진작을 위한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미국은 수출진흥을 위해 1984년 국세법수정법(Internal Revenue Act Amendment of 1984)에서 미국인 수출업자가 정부가 지정하는 외국이나 미국 속령에 설립한 해외판매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의 해외판매이익에 대하여 최소 15%의 소득공제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 현재 국세청장이 지정한 해외판매법인(FSC)설립 대상지역은 25개의 지역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역은 미국령인 Virgin Islands 와 Barbados이다. 현재 상기의 2개지역에는 수천개의 해외판매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소득공제대상행위는 미국내에서 재배, 추출 또는 생산된 상품으로서 해외수출판매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해외판매법인(FSC)은 해외관리필요조건(즉, 주주총회의 개최, 이사진의 구성, 역외은행계좌의 유지 및 사용) 및 해외경제과정 필요조건(즉, 해외판

매실적과 해외사용직접비용의 유무)을 충족시켜야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⁸⁾ 아 물론 미국행정부의 정책은 해외판매법인(FSC)의 설립을 권장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우리에게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있다 하겠다.

마. 예술부문에 대한 보조금지원

미국은 연방정부의 예산에 「국가예술보조금」을 계상하여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1995회계연도의 예산안에도 약 1억67백만달러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1994회계연도의 예산보다도 340만달러가 삭감된 것이다. 그런데 동 「국가예술보조금」에 대하여서는 수년이래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폐지논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삭감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대체로 공화당측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논쟁은 국가보조의 타당성에 대한 일반론보다는 보조금을 받는 작품의 외설 또는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⁷⁹⁾

하여는 매년 10만건이상에 달하는 예술작품 및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약50건정도는 예술성여부와 관련하여 심각한 보조금폐지·삭감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예술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하겠다.

4.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수혜대상자 및 동 기관

미국연방정부가 공여하는 국내보조금 및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및 수혜기관은 이를 크게 6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겠다.⁸⁰⁾ 즉, 수혜자(Recipient)는 개인, 지방정부, 비영리공익기관, 주정부기관, 미국의 속령 및 연방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 자치기구로 대별되고 있다. 여기서

78) Chase Trade Ink, pp.183, Spring 1993~94(Special Edition), published by Chase Trade Inc., Charlotte Amalie, U.S. Virgin Islands.

79) 동아일보, p.6, 1994.7.3일자.

80) Applicant Eligibility Index,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p.6-94, AEI-1.

(가) 개인(Individuals)이라 함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나) 지방정부(Local)라 함은 주(State)정부산하의 정치하부기구의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city), 타운(town) 및 타운십(township), 지방행정구(parish), 구(municipality), 부락(village), 군(county), 학사행정구(school district) 및 기타 특별지방행정구(special local distsict)를 말한다. 그리고 Local에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주정부가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족, 인디언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종족 및 동 집단, 푸에블로종족, 인디언족 學事위원회 및 주정부가 지정한 인디언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및 병원은 Local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비영리공익기관(Nonprofit Organization)이라 함은 일반대중전체 또는 그 일부의 혜택을 위하여 특수한 역할이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립 또는 사설기관을 말한다. 동 기관의 기능수행 및 역무제공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바,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다.

(라) 주정부(State)라 함은 50개주의 정부기관 및 콜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C.)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의 정치하부기구는 포함하지 않지만 고등교육기관 및 병원은 State에 포함된다.

(마) 미국의 속령(U.S. Territories)이라 함은 푸에르토 리코 자치령, 버진 아일랜드, 마리아나 군도, 괌자치령, 미국령 사모아 및 태평양의 미국 신탁통치 군도를 말한다. 그리고 또한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동 속령들의 정치하부기구 및 고등교육기관과 병원이 있다.

(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인디언원주민기구(Federally Recognized Indian Tribal Organization)이라 함은 연방내무부장관이 인정·확인한 인디언 원주민 및 동 집단이거나 동 조직화된 그룹 및 지역사회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이 이외에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알래스카원주민 청구권보상법(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에 규정되어 있는 원주민부락(Native Villages)이 있다.

제2절 일본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일본에 있어서 「보조금」에 관한 정의는 대체로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특정의 사무 및 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견지로 부터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무 및 사업의 실시에 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고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고 있다.⁸¹⁾

그러나 실정법 즉, 「보조금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적정화법”이라고 칭함)은 동법이 적용되는 보조금 등을 보조금, 부담금(다만,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은 제외함), 이자보급금 및 기타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급부금으로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것을 칭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조금을 피해복구사업에 관한 국고부담금(동법 제10조의 3), 위탁비(동법 제10조의 4), 장려보조금(동법 제16조) 및 재정원조보조금(동법 제16조)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장려·조성적 급부금인 협의의 보조금(조성금을 포함함) 이외에 부담금, 보급금(부족경비보족비), 위탁비(사무위탁에 따른 반대급부)를 합하여 「보조금 등」이라고 칭한다.

1. 중앙정부가 공여하는 「보조금 등」의 분류

가. 「보조금 등」의 주요경비별 분류⁸²⁾

일본은 1987년도부터 세출예산총액과 보조금 등을 주요경비별로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여 보면, ①사회보장관계비 ②문교 및 과학진흥비 ③은급관계비 ④방위관계비 ⑤공공사업관계비 ⑥경제협력비 ⑦중소기업대책비 ⑧에너지대책비 ⑨식량관리비 ⑩기타 주요경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81) 신정 보조금제도 p.1, 가등 강일 및 병등 광치 공저, 일본전산기획사 발행(1988년 6월).

82) supra, pp. 18~32.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1) 사회보장관계비는 ①생활보호비 ②사회복지비(노인복지시설보호비보조금, 노인의료급부비부담금, 신체장애자보호비부담금, 사회복지시설등 시설정비비보조금, 지방개선시설정비비보조금, 아동보호비등 보조금 등) ③사회보험비(의료급부비등 보조금, 재정조정교부금, 사무비부담금 등) ④보건위생대책비(정신보건대책비등 보조금, 원자폭탄피폭자수당교부금, 결핵의료비부담금 등) ⑤실업대책비(실업대책사업비보조금, 직업전환훈련비보조금)로 구성되어 있다.

(2)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①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 ②과학기술진흥비(과학연구비보조금, 우주개발사업단보조금, 전자계산기개발촉진비보조금 등) ③문교시설비(공립학교시설정비비보조금, 아동생도급증시정촌공립소·중학교규모적정화특별정비사업비보조금, 공립사회교육시설정비비보조금 등) ④교육진흥조성비(사립대학등 경상비보조금, 사립고등학교등 경상비조성비보조금, 공립양호학교교육비국고부담금, 요보호 및 준요보호아동생도원조비보조금, 유치원취원장려비보조금 등)로 구성되어 있다.

(3) 방위관계비는 교육시설등 소음방지대책사업비보조금, 장애방지대책사업비보조금, 시설주변정비조성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공공사업관계비는

①주택대책비(주택금융공고보급금, 공영주택건설비등 보조, 주택택지관련공공시설정비촉진사업비보조, 주택지구개량비보조 등) ②하수도환경위생등 시설정비비(하수도사업비보조, 수도수원개발시설정비비보조, 공단사업비보조, 폐기물처리시설정비비보조 등) ③농업기반정비비(포장정비사업비보조, 농도정비사업비보조, 농촌종합정비사업비보조, 관개배수사업비보조 등) ④기타 일반공공사업비(어항수축비보조, 임도사업비보조, 조림사업비보조등) ⑤재해복구사업비(「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부담법」 및 「농림수산업시설재해복구사업비국고보조의잠정조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지원비용)로 구성되어 있다.

(5) 경제협력비는 ①국제협력사업단(JICA)교부금, ②국제어업진흥협력사업비보조금 및 ③경제개발계획실시시설계 등을 위한 위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중소기업대책비는 ①소규모사업지도비보조금 ②중소기업지도비보조금 및 ③중소기업설비근대화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에너지대책비는 ①일본원자력연구소보조금 ②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

단보조금 및

③연구개발위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식량관리비는 「식량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취하여지는 쌀의 매매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위한 경비, 정부가 보유하는 과잉미의 처분에 따르는 손실보상, 쌀과 보리의 수급·가격·유통상에 있어서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경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기타사항의 경비

통칭 잡건이라고 불리우는 사항에 소요되는 보조금경비로서 농업구조개선사업보조, 도·도·부·현 경찰비보조 등 사실상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해당보조금중 중요한 보조금을 grouping하여 이를 열거해 본다.⁸³⁾

① 운수관계비

- 버스운행대책비보조금
- 특정지방교통선특별교부금
- 일본국유철도청산사업단보조금
- 일본철도건설공단공사사업비등보조금
- 일본철도건설공단보급금
- 지하고속철도건설비보조금
- 일본철도건설공단정비신간선건설추진준비사업비보조금
- 이도항로보조금

② 농림수산관계비

- 농업구조개선사업비보조금
- 임업구조개선사업비보조금
- 연안어업구조개선사업비보조금
- 농림어업금융공단보급금
- 농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보조금
- 어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등 보조금
- 피해농가영농자금이자보급등 보조금

83) *supra*, p.17.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 농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금
- 어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금
- 축산진흥사업단교부금
- 농업생산체질강화대책사업비보조금
- 농업공제사업사무비부담금
- 잠사사탕류가격안정사업단교부금
- 축산종합대책사업비보조금
- 지역개선대책사업비보조금
- 산촌등진흥대책사업비보조금
- 농잠원예진흥사업추진비보조금
-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

③ 경찰·소방관계비

- 도도부현경찰비보조금
- 도도부현경찰시설정비비보조금
- 지바현경찰신도오교국제공항경비대비보조금
- 소방시설등정비비보조금
- 대지진화재대책시설등정비비보조금

④ 기타

-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부담금(각성공통)
-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각성공통)
- 통계조사사무지방공공단체위탁비
- 공해건강피해예방협회교부금
- 일본무역진흥회사업비보조금
- 토지이용규제등대책비교부금

나. 「보조금 등」의 법률보조/예산보조별 분류

보조금 등을 공여하는 근거가 법률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보조」라고 하고, 법률이 아닌 세출예산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보조」라고 한다.

「법률보조」에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이 승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가 증가된 경우, 1인당 요양급부비등의 부담금이 증가한 경우, 피보험자수의 증가에 따

른 증액, 1인당 노인의료급부비부담금이 증가한 경우, 노인보건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증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산보조」에는 농산물가격제도의 운용개선을 위한 야채가격안정대책비보조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히 중소기업청이 공여하는 중소기업지원예산 등에 이러한 예산보조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2. 일본의 보조금제도 개요

일본의 보조금제도를 연구개발(R&D)보조금, 중소기업지원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수출보조금 및 기타 지원제도로 나누어서 고찰하여 본다.⁸⁴⁾

다만, 본 보고서에서 고찰하고 있는 보조금공여제도는 1994년 현재 일본의 현행제도인 바, 1995년 WTO의 발족과 함께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의 규정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 연구개발보조금제도

(1) 금융지원 및 무상보조금의 공여

- 연구개발투자규모의 거대화, 개발기간의 장기화, 개발성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단계별로 각종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최초의 기술개발단계에서는 일본개발은행의 기술진흥융자제도와 정부의 재정투자및융자를 통해 지원하며, 신기술 및 신제품의 상품화, 기업화단계에서는 일본개발은행 및 중소기업금융공고 등의 금융기관과 민관합동의 특수법인을 통해 소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아래의 <표 5-6>에서는 일본의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금융지원제도를 요목별로 검토하여 본다.

84) 일본의 보조금제도일반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주요국의 국제화시대의 산업지원제도, 손상호 & 윤재형 저[산업연구원발행(1994)]를 저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표 5-6〉 일본의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제도

구분 지원형태	목 적	지원대상사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상환조건	주관부처
일본개발 은행의 산업기술 진흥기금	민간기업의 기 술개발촉진을 통한 국제경쟁 력 강화	- 산업기술진흥 · 신기술개발 · 기업화시작 · 대형기계개발 - 1983년부터 『신기 술개발』에 창조적 기술개발의 촉진 과 관련된 『연구시 설설비』등을 추가	· 용자비율 : 총사 업비의 50~70% · 금리 : 년 7.3% ~7.5% · 용자기간 : 15년 이내 · 거치기간 : 3년 이내	일본개발은 행 (통상산 업성이 심사 를 수행)
중소기업 금융공고의 기업화용자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의 단 계를 종료하고 그 성과인 신기 술 신제품을 기 업화함에 따르 는 리스크 경감	- 신기술의 기업화 - 신규기계의 상품 화	· 용자금리 : 년 9.1%로 하되 설비 자금에 대해서는 1억5천만 원 엔을 한도로 하여 처음 3년간은 8.5%, 그 이후는 8.8%로 함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추 천을 받아 중 소기업금융 공고가 수행
정보처리 진흥금융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서비 스업자에게 업 무고도화와 프 로그램개발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	- 사업활동의 효율 화에 기여할 전자 계산기 본체 및 부속기기의 도입 자금 - 정보처리서비스 에 관한 업무의 개 선 및 기술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과 범용적이고 선 진적인 프로그램 개발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용자금리 : 6.5% · 용자한도 : 소요 자금의 30%이내 · 용자기간 : 3년 이내 · 보증한도 : 차입 금액의 95% · 보증요율 : 보증 금액의 년 2%	통상산업성 기계정보산 업국에 용자 추천신청 → 정보처리진 흥협회에 보 증신청 → 장 기신용은행 및 일본홍업 은행에서 용 자

구분 지원형태	목 적	지원대상사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상환조건	주관부처
연구개발형 기업육성센 터(VNC)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나 자금력이 부 족한 중소기업 을 위해 이들이 관계금융기관 으로부터 차입 하는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 무 담보 보증	- 보증이용중소기 업요건 · 신기술개발 및 기업화를 기업경 영의 주요 목적 으로 하여야 함. · 신기술개발 및 기 업화에 필요한 기 술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자	· 보증한도 : 차입 금액의 80%이내, 건당 135백만엔 이내 · 담보 : 물적담보 는 불요함. · 보증요율 : 보증 금액의 년 2%	

(자료) : 1) 일본과학기술청, 「과학기술백서」, 1991년

2) 일본개발은행, 「Annual Report」, 1991년

(주) : 국제화시대의 산업지원제도, 손상호 & 윤재형 공저, 산업연구원발행(1994년) 을 참
고하였음

- 한편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각부처별로 연구과제의 공익성과 외부경제효과를
감안하여 무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기초화학연구분야와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를 다음의 <표 5-7>에서 요약하여 본다.

<표 5-7> 일본의 기술개발관련 무상보조금(과학기술청, 문부성, 후생성 등의 소관)

소 관 기 관	분 야 (교 부 대 상)	보조비율
(과학기술청) - 발명의 실용화 시험비 보조 금 - 화학법 우라늄농축기술 확립 비 보조금	- 과학기술에 대한 발명의 실용화 및 창의적 연구활동(개인, 민간단체 등) - 화학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기술개발 (민간기업)	1/2
(문부성) - 과학연구비 보조금	- 인문과학, 자연과학에 관한 기초연구 성과의 간행(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 구자)	정액

소 관 기 관	분 야 (교 부 대 상)	보조비율
- 민간학술연구진흥비 보조금	- 인문대학,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민간학술연구기관)	정액
- 사립대학의 연구설비 정비비 등 보조금	- 학술연구에 필요한 연구설비와 학술연구 및 정보처리교육에 필요한 정보처리관련 대학을 설치하는 학술법인	2/3 (정보처리관계설비에 대하여서는 1/2)
- 사립대학 등의 경상비 보조금	- 사립대학의 경상적 경비(사립대학 등을 설치하는 학교법인)	정액
- 사립대학의 시설정비비 보조금(사립대학의 연구장비 등 시설정비비)	- 사립대학 등의 연구장치 등	(1/2)
- 공립의과대학의 경상비 보조금	- 공립의과, 이과, 간호학과, 단기대학의 경상비(지방공공단체)	정액
(후생성)		
- 후생과학연구비 보조금	- 식품위생, 신약개발 등에 관한 연구 (지방공공단체)	정액
- 과학시험연구비 연구조성금	- 특정질환, 심신장애 등에 관한 연구 (지방공공단체, 개인 등)	정액 (10/10, 1/2)
- 암연구보조금	- 암에 관한 연구(개인)	정액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 시험연구비 보조금	- 농림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개인)	정액 (10/10, 1/2)
- 식품산업 기술대책추진 사업비 보조금	- 식품산업에 있어서 신기술의 개발연구사업, 실용화시험 등(민간단체)	정액 (1/2)

(자료) : 일본과학기술청, 「과학기술연감」, 1991년

또한, 위의 <표 5-8>에서 고찰한 것 이외에 통상산업성에서는 별도로 신기술산업분야에 대하여 무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즉, 1994년 현재 차세대항공기개발조사비, 신재료기술개발비, 정보처리진흥대책비 등의 명목으로 유관기관을 경유하여 무상보조금을 공여하고 있다.

이를 아래의 <표 5-8>에서 살펴본다.

〈표 5-8〉 일본 통상산업성소관 기술개발관련 무상보조금

(단위: 천엔)

구 분	내 역	1993년 국고 보조액		교부대상
		보조비율	예산액	
1. 차세대 항 공기개발 조 사비보조금	· 1991년부터 예산보조 · 1991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수 요의 신장이 예견되는 소형 민 간수송기 등의 개발사업에 필 요한 소요자금을 보조함.	정액(1/2)	21,746	민간단체
2. 신재료 기 술개발비 등 보조금	· 1987년부터 예산보조 · 개성적인 고기능의 주택을 적 정한 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한 신공업화 주택생산 기술·시 스템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소 요자금을 보조함.	1/2·정액	100,075	신공업화 주택의 생 산기술, 시 스템, 개발 기술
3. 정보처리진 흥대책비 보 조금			1,139,321	
(1) 정보처리진 흥사업협회 사업비 보조 금	· 1970년부터 예산보조 ·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그 성과 의 보급 및 정보처리에 관한 조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보조함.	정액 (10/10 상당)	508,169	인가법인 정보처리 진흥사업 협회
(2) 정보처리기 술연수비 보 조금	· 1987년부터 예산보조 · 정보처리기술 전문가의 연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 요자금을 보조함.	정액·1/3	57,692	중앙정보 교육 연구 소
(3) 미래형 분 산정보처리 환경기반기 술 개발 비 보조금	· 1990년부터 예산보조 · 21세기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human interface에 관한 기초적, 공통적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 을 보조함	정액(1/2)	162,519	민간단체

(자료) : 대장성 주계국, 「보조금총람」, 1993년 5월

(2) 세제지원

- 기술개발과 관련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특정한 기술개발과제를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기술개발과 그 촉진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실질적인 국가보조금의 성격을 지니며, 산업의 급속한 기술진보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 현재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주요 세제혜택은 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제도, 기반기술 연구개발촉진세제, 중소기업강화세제, 기술무역에 관한 소득공제제도, 기부금 공제제도, 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의 시험연구용 고정자산취득등에 관한 특별조치,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시험연구용 기계 및 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 등이 있다.

· 민간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연구비에 대한 세금을 특별감면하는 제도와 연구개발 관련설비에 대해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로 대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5-9>에서 설명되고 있다.

<표 5-9> 일본의 기술개발관련 세제상의 우대조치

구 분	제 도 명	주 요 내 용	적용기간
특별 세 제감면	시험연구비의 세액 공제제도	적용년도의 시험연구비가 과거 최고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액의 20%를 세액공제	1967.6.1 ~95.3.31
	기반기술 연구개발 촉진제도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7%를 추가 세액공제	1985.4.1 ~95.3.31
	중소기업기술 기반 강화세제	시험연구비의 6%를 세액공제	1985.4.1 ~95.3.31
	특정 환경기술 개발 촉진세제	“에너지절약·리사이클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지출금의 특별상각제도, 압축기장인정	

제 2 절 일본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구 분	제 도 명	주 요 내 용	적용기간
	학술연구법인의 연구 자산에 대한 비과세 조치	학술연구법인의 학술연구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등을 비과세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시험용기계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	동 조합법의 승인을 얻어 적용기간중 신규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3개년도분에 한해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4/5로 함	1985.4.1 ~95.3.31
특별상 각	고도기술 공업집적지역에서의 고도기술 공업용 설비에 대한 특별상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에서의 연구소용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해 최초년도에 15% 특별상각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시험연구용 고정 자산취득에 관한 특별조치	동 조합이 시험연구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조합원에 부과한 지출금 전액을 특별상각	1986.4.1 ~95.3.31

- (자료) : 1) 일본과학기술청, 「과학기술백서」, 1991년
 2) 일본대장성, 「재정금융통계월보」, 1991년 5월
 3) 통상산업조사회, 「산업세계 Handbook」, 199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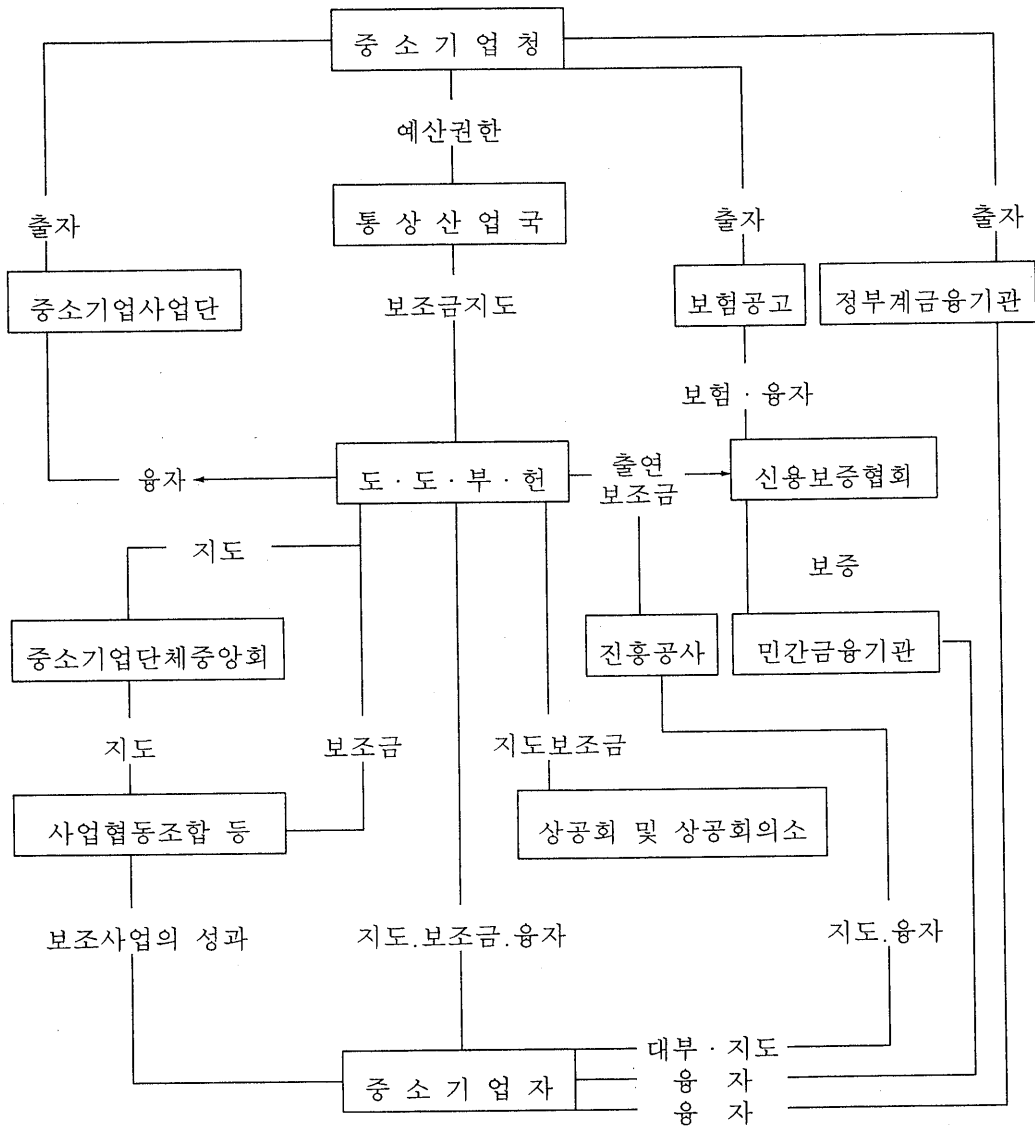
(주) : 산업연구원발행 전개서에서 인용하였음.

나. 중소기업지원 보조금제도

(1) 금융지원 및 무상보조금의 공여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에 의해 총괄, 수립되며, 수립된 시책은 그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를 <표 5-10>에서 도식화하여 본다.

〈표 5-10〉 일본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추진경로



(자료) : 중소기업시책 가이드, 중소기업총합연구소, 1993년 6월

1994년 현재 통상산업성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무상보조금 (grants) 종류는 10가지로 대분류되고 있는 바, 즉 중소기업지도사업비, 소규모

모사업지도비, 조직화 지도비, 중소기업 설비근대화 보조금, 하청기업진흥사업비, 중소기업진흥대책비, 상업기반시설정비비, 중소기업사업단보조금, 신용보증협회기금보조금, 지역중소기업활성화자금이자보급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표 5-11> 일본정부의 중소기업지원 무상보조금 개요

(단위:천엔)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중소기업 대책비>	<총 계>		113,875,610	
1. 중소기업지 도사업비보 조금			19,338,784	
(가)중소광산 등 진흥지 도 사업비 보조금	· 1983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 등의 경영·기술 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광 업권자 등의 광산주변조사 에 필요한 경비보조	1/2 · 2/3	1,024,994	광업권자 등
(나)지도사업 비 보조금	· 1950년부터 법률보조 · 중소기업지도법(1963년 법 률 제147호)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단지도, 연수 사업, 기술지도 등에 필요 한 경비보조		5,739,030	지방공공단 체 (민간단 체 등)
(다)중소기업 정보화촉 진 사업비 보조금	· 1983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용 범용프로그램이 용에 관한 조사, 중소기업정 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중 소기업용 소프트웨어 모델	정액 (10/10)	773,006	인가법인정 보처리진흥 사업협회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라)중소기업 에너지 환 경 대응 추 진 사업 비 보조금	· 1993년부터 신규예산보조 · 중소기업의 에너지사용 합리 화 및 재생자원의 이용촉진 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등의 사용합리화 및 재생자 원의 이용에 관한 사업활동 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가칭)」에 기초하여 중소기 업의 조합이 승인사업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보조	1/2	240,000	도·도·부 · 현(사업협 동조합 등)
(마)기술지도 시설 비보 조금	· 1958년부터 법률보조 · 중소기업지도법(1963년) 제9조에서 정부는 도·도· 부·현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 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소기업자의 기술지도실 시 및 그에 따른 설비투자 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	1/2·1/4	501,786	지방공공단 체
(바)기술개발 연구 비보 조금	· 1963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中에서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관계공공시험연구기관이 실 시하는 공동연구 등을 촉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보조	1/2·1/4	647,632	지방공공단 체

제 2 절 일본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사)기술개선 비보조금	· 1967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의 생산분야, 특히 생산기술개선, 품질성능향 상, 양산화 등 기술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보조	1/2 · 1/3	1,337,283	중소기업자, 중소기업단 체, 도 · 도 · 부 · 현(중 소기업소기 업단체)
(아)지역기술 활성화사 업비보조 금	· 1983년부터 예산보조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관학 연대하에 도 · 도 · 부 · 현 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조	1/2	1,135,000	도 · 도 · 부 · 현
(자)지역중소 기업진흥 대책비보 조금	· 1979년부터 예산보조 · 지역중소기업의 진흥과 경 영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보조 · 198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 술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하는 신기술 개발사업에 필 요한 경비보조 · 1988년부터 지역중소기업 의 연구개발, 상품개발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부 흥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지 역산업창조기반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 · 1992년부터 특정 중소기업 집적활성화에 관한 임시조 치법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정액 (1/4) · 1/2	1,463,735	지방공공단 체 (사업협 동조합 등)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산액	
(차)지방산업 등진흥대 책비보조 금	<p>이 보유한 전통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보조</p> <p>· 1988년부터 예산보조 ·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 디자인능력 등의 강화, 인재확보 및 양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조성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기업화 지원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축적된 기술을 테크노폴리스지역주변의 중소기업에 파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p>	정액 (1/4) 1/2 · 1/3 · 1/10	1,980,311	지방공공단체 및 재단 법인지역전 통예술활용 센터
(카)지역개선 대책, 대 상지역산 업진흥대 책사업비 보조금	<p>· 1982년부터 예산보조 · 대상지역의 기업이 신제품의 기획개발, 전시회 개최 등의 수요개척활동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p>	1/2 · 1/3	840,007	도 · 도 · 부 · 현 (사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
(타)중소기업 노동력확 보추진사 업비보조 금	<p>· 1991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의 노동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협동조합 등이 노동력확보를 위한 개선계획을 작성하거나 노동시간단축, 직장환경개선, 복리후생시설 정비 등 고용</p>	정액 (10/10 상당) 1/2 · 1/3 · 1/2 · 6/10	2,647,789	일본상공회 의소 (상공 회의소등 중 소기업관계 단체) 특수법인 일 본무역진흥

제 2 절 일본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타)중소기업 노동력확 보추진 사 업비보조 금	<p>관리개선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지도 및 기술개발 사업, 이미지개선사업 및 고 령자를 대상으로 한 時短축 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p>			회, 중소기업 관계단체 (중소기업 단체) 사단법인 국 제상사중재 협회
(파)중소기업 국제화 대 책 사업비 보조금	<p>· 1983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촉진 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활 동에 필요한 경비보조</p>			특수법인 일 본무역진흥 회, 중소기업 관계단체(중 소 기업 단 체), 사단법 인, 국제상사 중재협회
(하)전통적공 예품산업 산지진흥 대책비보 조금	<p>· 1974년부터 법률보조 및 예산보조 · 전통적 공예품산업의 진흥 에 관한 법률(1974년법률 제57호) 제9조에서 정부는 해당사업을 실시하는데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 도록 명기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공단체나 공공법인이 자료보급 및 후계자 기술연 수 등을 위해 설립하는 시설 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보조</p>	1/3 · 1/2	241,872	지방공공 단 체 등(사업협 동조합 등)
(거)전통적공	<p>· 1975년부터 법률보조 ·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p>	정액 (10/10)	293,544	재단법인 전통공예품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너) 생활용품 진흥센터 보조금	<p>에 관한 법률(1974년 법률제 57호) 제24조에서 정부는 협회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부터 예산보조 · 일본 중소기업산업의 진흥을 위해 생활용품센터에서 수행하는 경영근대화지도, 잡화디자인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정액 (10/10) 3/4 · 1/2	298,520	재단법인 생활용품진흥센터
2. 소규모사업 지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5년부터 예산보조 · 1960년부터 법률보조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4조에서 정부는 예산범위내에서 해당 보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등이 수행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 		51,362,978	상공회, 상공회의소 도 · 도 · 부 · 현 전국상공회 연합회
3. 조직화지도 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의 조직화, 중소기업단체육성 및 지도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보조 		7,033,027	도 · 도 · 부 · 현, 전국 중소기업단 체중앙회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4. 중소기업설 비근대화보 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근대화자금 등 조 성법(1956년 법률제115호) 제3조1항에서 정부는 도도 부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설비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의 설비구입자금에 대한 대 출 및 기계류의 대여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 	1/2	3,625,000	도·도·부· 현(도도부현 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
5. 하청기업진 흥사업비보 조금			1,702,870	
(가)도·도· 부·현 하 청 기업 진 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5년부터 예산보조 · 하청거래의 알선 등을 수행 하는 하청중소기업의 안정 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보조 		1,583,788	도·도·부· 현(하청기업 진흥협회 등)
(나)전국하청 기업 진 흥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부터 예산보조 ·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도 모하기 위해 하청중소기업 에 대한 발주정보제공, 업 종별거래약관 작성 및 보 급, 국제하청거래알선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보조 		119,082	재단법인 전국하청기업 진흥협회
6. 중소기업진 흥대책비보			6,806,813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율	예 산 액	
조금				
(가) 전국상점 가진 흥조 합 연합회 보조금	· 1969년부터 예산보조 · 상점가 근대화를 위한 조 사, 연구 및 성과의 보급, 강습회개최 등의 사업에 필 요한 경비보조		30,493	전국상점가 진 흥조합연 합회
(나) 중소소매 상업 등 진 흥 대책 보조금	· 1985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소매업자, 중소도매업 자 등의 정보화, 물류 효율 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보조금임. 중소소 매업관계 전국단체가 수행 하는 유통정보 네트워크 개 발의 타당성조사, 시스템설 계, Voluntary Chain의 사업운영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물류기능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상품코드 등 공 동DB구축, 도매기능강화 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 에 필요한 경비보조	6/10	291,320	중소기업 관계 전국단 체
(다) 상업환경 개선설비 정비비보 조금	· 1991년부터 예산보조 · 상업기능의 강화 및 환경개 선시설의 충실을 통한 상점 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점가의 공공적 공동시설 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1/4)	6,485,000	도·도·부 · 현 (상점 가진 흥조합 등)
7. 상업기반시 설정비비보 조금	· 1991년부터 예산보조 · 상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액 (1/4)	6,915,000	도·도·부 · 현 (상점

제 2 절 일본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자 ()안은 간접
		보조율	예 산 액	
조금	상점가의 교양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진홍조합 등)
8. 중소기업사업단보조금			14,162,932	특수법인 중소기업사업단
9. 신용보증협회기금보조금	· 1971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자의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신용보증협회에 대해 재정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	1/2	2,700,000	지방공공단체 (신용보증협회)
10. 지역중소기업활성화자금이자보급금	· 1989년부터 예산보조 · 중소기업금융공고로부터 지역중소기업활성화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위해 금리지급에 따르는 경비보조	정액	228,206	중소기업자 등

(자료) : 보조금총람, 대장성 주계국, 1994년 5월

· 1994회계연도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대책 무상보조금은 전체 예산액의 0.9%인 1,619억엔으로 전년도인 1993회계년도에 비해 9.6%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시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자금과 자체자금을 합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 이렇게 조성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할지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되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고 예치된 자금의 4~5배 규모가 개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된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에 대한 일정한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금융기관이 주관하여 중소기업개별업체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보조금 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누어 보면 <표 5-12>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표 5-12>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중소기업지원시책

구 분	주요 사업	보조금 교부대상
보조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연수, 기술지도사업, 기술개발 등에 대해 경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1/2~1/4을 중소기업청이 보조 · 조직화 지도경비(조합등의 지도사업 인재양성, 활로개척조사 지도사업 등)의 비용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1/2씩 분담하여 보조 · 경영개선보급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경영지도, 지역중소기업활성화 추진비용을 분담하여 보조지원 	<p>지방자치단체</p> <p>지방중소기업단체 중앙회, 조합 등</p> <p>상공회, 상공회의소</p>
융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근대화자금에 대한 대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대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자금을 합하여 직접 개별기업에 대출 · 근대화 설비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설비대여기관에 일정한 Guide line을 제시 	<p>지방자치단체</p> <p>설비대여기관 (지방중소기업진흥공사)</p>

구 분	주 요 사 업	보조금 교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경영지원자금 - 경제환경이 급변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협조융자방식에 의하여 지원 	금융기관

(자료) : 일본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조사결과, 상공자원부, 1993년 11월.

그런데,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중 전문성을 요하거나, 전국적으로 공통추진 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원업무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체지방조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재교부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 이외에도 정부투자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은 일반적으로 자체지방조직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역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각종의 특례지원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투자한 중소기업금융기관은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직접 중소기업이나 조합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3>에 나타나 있다.

<표 5-13> 일본의 정부투자중소기업금융기관의 주요지원시책

기 관	주 요 지 원 시 책
중소기업금융公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에 대한 장기설비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 특별융자 : 상업근대화자금, 구조개선, 하청대책, 신산업 및 기술진흥, 중소기업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촉진자금 등의 분야에 대한 융자
국민금융公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 · 무담보, 무보증에 의한 자금융자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기 관	주 요 지 원 시 책
상공조합중앙금고 환경위생금융公庫	- 특별융자 : 도산대책, 근대화촉진, 구조개선, 정보화, 에너지설비자금, 경제조정대책, 수산가공, 섬유활성화, 노동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대출 - 상공조합중앙금고에 출자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금융자 - 환경위생관계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련 설비의 근대화촉진을 위한 자금융자

(자료) : 중소기업시책 가이드, 중소기업총합연구소, 1993년 6월.

또한, 전국 52개의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 세제지원

중소기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은 크게 일반적 조치와 특별법률에 근거한 특례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조치는 설비투자촉진·시험연구추진을 위한 특별조치, 자원절약·에너지절약을 위한 특별조치, 공해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해외거래를 위한 특별조치 등으로 나뉘어 진다.

14개 이상의 특별법률에 근거한 특례조치는 일반적 조치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세제상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준비금적립의 특례, 事業所稅의 비과세, 교체자산의 압축기장, 상업시설 등의 특별상각, 기계 등의 특별상각, 시험연구비부과금의 임의상각 등이다.

한편, 1993년의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항목중 통상산업성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 「소규모사업자 등 지원산업촉진법」에 따라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이 지원하는 부동산대여업 및 정보제공사업에 대한 사업세와 사업소득세는 비과세 조치 하며, 토지사용에 따른 특별토지보유세도 비과세조치하였다.

- 또한, 「중소소매업진흥법」의 경우 동법에 의거해 정비된 상업시설에 대해

특별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했으며, 상점가정리지원계획에 의한 공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특별토지보유세의 특별토지보유세조치를 2년간 연장하였다.

다. 지역개발지원 보조금제도

지역개발지원정책은 통상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여러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수단은 크게 예산조치,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입지적정화대책, 농촌지역 공업도입대책, 외자계기업입지촉진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업입지 또는 공업재배치 관련정책으로 Technopolis의 추진, 리서치코어, 테크노마트 그리고 뉴미디어 커뮤니티의 추진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1) 예산조치

공업재배치촉진보조금제도는 이전촉진지역에 위치한 지방, 市町村 또는 해당 민간기업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공업입지를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 誘導地域中에서도 특별히 공업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조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도 계속 추가하고 있다.

· 특히 최근의 기술혁신 및 정보진전을 감안하여 보조대상도 단순한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 정보기능을 포함한 지역의 기술고도화에 유용한 분야에까지 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1986년에는 기존의 지원대상에다가 지역의 연구개발기능의 강화 또는 벤처비즈니스의 창출을 위해서 제3섹터가 행할 시험연구시설과 연구개발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형기업의 공동이용시설(Venture Business Incubator)에 대한 설비비용의 보조가 추가되었다.

공업재배치촉진보조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현재 통상산업성소관 보조금으로 공업재배치촉진 환경정비비보조금과 공업재배치촉진시설정비비보조금이 있으며, 근거법령과 제도개요는 <표 5-14>에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중업원대책을 위한 노동성소관의 지역고용이전교부금과 하청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청소관의 공장이전관련 하청기업진흥사업보조금이 있다.

〈표 5-14〉 일본의 공업재배치촉진보조금 내역

구분	관계기관		근거법령	개요						
보조금	공업재배치촉진비	통상산업성	이전보조금	공업재배치촉진법(제8조)	이전촉진지역으로부터 유도지역으로 공장, 민간연구소, 정보서비스사업소 및 대사무소서비스업을 이전한 기업이 환경보전시설, 복지시설 및 방재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공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함.					
					공업재배치촉진비보조금교부규칙	일반제도	입지지점	보조단위(한도액)	특례단지가산액	
							공장이전	유도지역내 공업단지 농공도입지구 공장적지 신산·공특 산탄지역 저공업지구	5,000엔/m ² (1억엔)	
						민간연구소등		5,000엔/m ² (1억엔)		
						특별유도지역내	공장이전	공업단지	7,500엔/m ² (1억5,000만엔)	2,500엔/m ² (5,000만엔)
								농공도입지구 공장적지 신산·공특 산탄지역 저공업지구	7,500엔/m ² (1억5,000만엔)	
							민간연구소등	특별유도지역내	7,500엔/m ² (1억5,000만엔)	5,000엔/m ² (1억엔)

(자료) : 지역통계요람, 지역진흥정비공단 1990년판.

한편, 테크노폴리스의 構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중 통상산업성 소관 보조금 으로서는 지역프론티어 기술개발비보조금, 중요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 공업재 배치촉진보조금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5>에 나타나 있다.

<표 5-15>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촉진을 위한 보조금지원제도

구분	관계 기관	제 도	근거법률	개 요
보 조 금 교 부	통산성	지역프론티어 기술개발비보 조금(중소기 업청)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중핵연구(국가1/2, 도현1/ 2보조), 중소기업이 행하는 응용연구 (국가1/3, 도현1/3, 기업1/3)등에 대한 보조
		중요기술연구 개발비보조금 (지역의 공업 기술원)		지역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기 위 한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이 행하는 연 구개발에 대해 1/2이내에서 보조
		공업재배치촉 진비 보조금	공업재배치촉 진법(제8조)	유도지역에 포함된 테크노폴리스지역내 에 설립된 재단법인 등의 기금에 출자하 거나 또는 제3섹터 연구시설 등에 보조

(자료): 지역통계요람, 지역진흥정비공단 1990년판.

(2) 금융지원

공업재배치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지역진흥정비공단을 통한 지원
과 일본개발은행을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지역진흥정비공단은 「공업재배치촉진법」 제8조와 「지역진흥정비공단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장이전유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전에 필요한 자금
을 융자하고 있다.

· 일본개발은행은 「공업재배치촉진법」 제8조와 「일본개발은행법」 제18조에
의거하여 3대 도시권으로 부터 유도지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저리용
자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은 일본개발은행, 북해도 동북개발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공고를 통해 여러가지 형태의 對기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6>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표 5-16>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구분	관계관	제도	근거법률	개요
용	일본개발은행	지방개발용자	일본개발은행법(제18조)	북해도, 동북지방을 제외한 지역의 산업진흥개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함. (기준금리는 년 6%) · 지역기술진흥 특별금리(5.3~5.8%) 공업재배치촉진법의 유도지역내 공업개발거점(공단 등)에 입지하여 지역기술수준을 향상시킨 기업 · 테크노폴리스 특별금리(5.3~5.8%) 테크노폴리스지역내 입지하는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 · 산업구조조정 특별금리(5.3~5.8%) 신분야 진출기업, 특정지역활성화사업, 지역경제고도화산업 등
	북해도 동북개발공고	지방개발용자	북해도 동북개발공고법(제19조)	북해도, 동북지방의 산업진흥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 설비자금 대출 : (년 6%, 총공사비의 70%, 10년 이내) · 운전자금 대출 : (년 6%, 소요자금의 50%, 5년 이내)
자	중소기업금융공고	과밀공해이전용자	중소기업금융공고법(제19조)	자본금 1억엔 또는 300인 이하의 과밀·공해 중소기업의 이전 : (년 5.6%~6.0%, 5억2,000만엔 한도, 2년거치 20년상환)
		단지용자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조성된 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

구분	관 계 관	제 도	근 거 법 률	개 요
				(년 5.6%, 5억2,000만엔 한도, 2년거치 20년상환)
	국 민 금 용 公 庫	이전용자	국민금융공고법 (제18조)	자본금 1,000만엔 이하 또는 영세기업의 이전시 : (년 5.6%, 4,500만엔 한도, 2년거치 20년상환)
		특정지역 진흥	"	특정지역중소기업대책임시조치법에 의해 특정지역에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제 조업체 또는 정보서비스업체 : (년 5.6%, 5,200만엔, 2년거치 15년상환)

(자료) : 지역통계요람, 지역진흥정비공단 편, 1990년판.

(3) 세제지원

공업재배치시책에 있어서 세제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 후의 고정자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국가가 3년간 지방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공업재배치촉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된 공장에 한하고 있다.

·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의 감면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사업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감면과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로는 공업재배치시책지원을 위한 고정자산세나 특별소비세의 차등과세 이외에도 손금산입특례나 고도기술공업용 설비의 특별상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7>에 표시되어 있다.

· 또한, 1992년 10월부터는 「특별중소기업집약활성화에 관한 입시조치법」(“집적활성화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역중소기업의 집적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반강화세제를 통하여 해당기업의 기계 및 장치에 대하여 30%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의 특별상각 또는 7%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 또한, 시험연구세제를 통해서도 실험연구비부과금의 임의상각과 시험연구비자산의 압축기장 등을 허용하고 있다.

- 기타 특별토지보유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도 감세조치하고 있다.

〈표 5-17〉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구분	관 계 관	제 도	근 거 법 률	개 요
세 제 상 우 대 조 치	국 가	연금산입 특례	고도기술공업집 적지역관계촉진 법(제7조)	관련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는 재단법인 등의 기금에 대해 해당 민간기업의 부담금을 손금산입함.
		고도기술 공업용 설비의 특별상각	조세특례법 (제44조)	고도기술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테크노 폴리스 지역내에 고도기술공업용기계등 (시험연구용 건물 및 부속건물 포함)을 신 증설할 때, 취득가액 10억엔 이상인 설비 에 대해 최초년도에 30%(건물, 부속설비 15%)를 특별상각함.
	지 방 공 공 단 체	고정자산 의 차등 과세	고도기술공업집 적지역개발촉진 법(제8조)	테크노폴리스지역에서 취득된 고도기술관 련 시험연구상각자산 중, 1대 또는 1기의 가격이 250만엔 이상이거나, 시험설비의 취득가액의 합계가 1,400만엔 이상일 때 고정자산세를 차등과세함.
		특별토지 보유세	지방세법 (제586조)	고도기술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테크노 폴리스지역내에 신증설한 고도기술공업용 기계 등의 취득가액이 1억엔 이상일 때, 당해 설비에 관련된 건물부지에 대해 차등 과세함.

(자료) : 지역통계요람, 지역진흥정비공단 편, 1990년판.

라. 수출지원제도

(1) 금융지원 및 무상보조금의 공여

일본은 1970년대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시현이 계속됨에 따라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우대조치를 축소 또는 폐지했으며, 1994년 현재 실시중인 제도는 대체로 수출전대관계 준상업어음제도, 일본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무역보험 및 보증제도로 집약된다.

(가) 일본은행(중앙은행)의 수출전대관계 준상업어음제도

· 수출전대관계 준상업어음제이란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와 체결한 수출계약에 의거하여 수출품의 선적시까지 당해 물품의 제조, 가공, 집하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위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상업어음에 준하는 어음으로 취급하여 재할인을 실시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일반금융기관이 수출업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수출대금회수를 위해 발행되는 엔화표시 기한부 수출어음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이 상업어음에 준하는 어음으로 취급함으로써 엔화표시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나) 일본수출입은행(JEXIM)의 수출지원제도

· 일본수출입은행의 지원제도로는 수출업자에 대해 민간상업은행과 함께 융자해주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과 외국구매자에게 직접융자를 제공하는 구매자신용(buyer's credit)이 있다.

· 공급자신용을 통해 일본의 수출업자에게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거나, 해당자금의 융자를 제공한 일반금융기관에 대해 어음할인을 실시한다.

· 구매자신용을 통해서도 외국정부, 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및 외국법인에게 일본으로부터의 설비수입 또는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

·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일본수출입은행은 대개의 경우 구매자신용이 아닌 공급자신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무역보험제도

· 무역보험제도는 1950년 「수출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수출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로 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1987년 수출보험법으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후 전불수입보험 및 중개무역보험이 추가되었으며, 동시에 해외투자보험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 법률명칭이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개칭되었다.

· 상업은행이 수출업자에 제공한 수출신용을 통상산업성의 수출입보험국(EID)이 보증해 줌으로써, 수출업자가 상업은행으로부터 해외프로젝트 등에 대한 장기수출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라) 금융지원 이외에 무역진흥과 관련된 예산상의 무상지원으로서는 통상산업성 소관의 일본무역진흥회사업비보조금과 해외시장조사사업비보조금이 있으며, 교부대상은 일본무역진흥회(JETRO) 및 기타 재단법인으로 간접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무역진흥관련 무상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18>에 나타나 있다.

<표 5-18> 무역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무상보조금의 개요

(단위: 천엔)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
		보조율	예산액	
1. 일본무역진흥사업비보조금	· 1950년부터 예산보조		21,738,040	특수법인 일본무역 진흥회 (JETRO)
(가) 해외경제조사사업비보조금	· 1950년부터 예산보조 · 일본의 무역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정보수집과 조사분석 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10/10 상당)	285,808	
(나) 해외경제	· 1965년부터 예산보조	정액	1,655,635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
		보조율	예산액	
정보제공 서비스보 조금	· 해외경제정보 등에 대한 다방 면으로부터의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한 정보서비스 활동, 무 역에 관한 각종 상담 등의 사 업에 필요한 경비보조	(10/10 상당)		
(다) 해외홍보 전시사업 비보조금	· 1950년부터 예산보조 · 일본과 여타국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일본의 경제, 산업, 무역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및 외국과의 대외경제 관 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인적 교류촉진, 對日本 경제마찰완 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필 요한 경비보조	정액 (10/10 상당)	461,409	
(라) 개발도상 국무역촉진 협력사업 비보조금	· 1966년부터 예산보조 · 개발도상국의 무역진흥을 지 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 비보조	정액	4,001,270	
(마) 수입촉진 및 산업협 력추진사 업비보조 금	· 1978년부터 예산보조 · 일본의 수입촉진, 시장국제화, 선진국의 산업고도화 및 재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수입촉 진 및 산업협력추진사업의 수 행에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10/10 상당) 1/2	5,090,851	
(바) 특정업종 및 무역진 흥사업비 보조금	· 1955년부터 예산보조 · 특정업종에 있어서 외국과의 상호이해 및 세부적인 시장대 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재	정액 (10/10 상당) 1/2	780,184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
		보조율	예산액	
	원 파견 각종 조사사업 및 대외홍보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보조			
(사) 해외사무소 운영사업비보조	· 1953년부터 예산보조 · JETRO CENTER 등 해외 사무소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10/10 상당)	5,874,369	
(아) 국내관리비등 보조금	· 1962년부터 예산보조 · 국내관리비 등에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3,588,514	
2. 해외시장조사등 사업비보조금			508,260	
(가) 日本과 中國간의 경제교류등 사업비보조금	· 1973년부터 예산보조 · 일·중간의 경제교류 확대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사업 및 일·중간의 기술교류촉진사업, 지역경제발전협력사업 등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	2/3·1/2	56,406	재단법인 일·중 경제협회
(나) 교류협회사업비보조금	· 1973년부터 예산보조 · 국교가 없는 日本·대만간에 무역 경제관계를 원활히 유지수행키 위해 동협회가 전개하는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124,266	재단법인 교류협회
(다) 아시아등 통상원활화사업	· 1972년부터 예산보조 · 일본과 러시아·동구 간의 원활한 통상관계 구축 및 일본경	정액·1/2	256,343	사단법인 러시아·동구

구 분	내 용	1993년 국고보조액		교부대상
		보조율	예산액	
비보조금	제사회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촉진사업, 조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			무역회
(라) 日本·EU 산업협력센터 사업비보조금	· 1987년부터 예산보조 · 산업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EU의 중견 기술자,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일본경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	1/3	29,909	민간단체
(마) 경제자립형 플랜트 건설협력 등 사업비보조금	· 1953년부터 예산보조 ·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 국제수지개선 등을 위한 경제자립형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	정액 (3/4 상당)	65,136	사단법인 일본플랜트 협회
(바) 산업구조 전환 등 합의 형성 대책비보조금	· 1987년부터 예산보조 · 산업구조전환 등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계, 노동계, 지역사회 등의 합의도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보조	1/2	27,200	민간단체

(자료) : 보조금총람, 대장성 주계국, 1994년 5월.

(2) 세제지원

수출촉진세제는 1966년 할증상각제도의 할증율인하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인상, 1968년 수출공헌기업의 할증상각 등을 통해 강화, 확충되었으나, 수출초과경향이 정착됨에 따라 1970~1972년에 걸쳐 수출할증상각제도,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제도 및 수출공헌기업의 할증상각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기술수출과 해외투자관련 조치만 일부 남아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오히려 무역수지의 흑자축소를 위해 1985년부터 기계수입 촉진세제를 실시한 이래 1990년대에는 특정제품류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제품수입촉진세제를 수립하여 세액공제와 할증상각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수입확대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촉진대상제품의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법인세액을 10%(중소기업의 경우 15%) 공제해 주며, 상각할증율을 여타 제품보다 10%높게 인정하고 있다.

마. 기타의 보조금지원제도

(1) 특정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보조금공여

일본은 특정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예산상의 무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혁업, 광업, 별갑산업, 섬유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제혁업에 대해서는 피혁산업기술연수사업비, 피혁산업국제교류촉진사업비, 공해방지대책비, 영세피혁산업기술지도사업비와 같은 명목으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 및 지방공공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 별갑사업자의 구제대책을 위해 실시하는 대체품연구개발사업, 지원조사, 경영지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1990년부터 구제대책비보조금을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일찌기 1966년부터 「섬유공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섬유공업구조개선협회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섬유산업 정보화와 견제품의 신규수요개발촉진을 위해 섬유산업진흥지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에너지·환경관련 세제지원

에너지·환경대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수급구조개혁과 환경조화형 산업경제구조구축에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이 실시되고 있다.

「에너지절약·리사이클 지원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7%

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산업기반정비기금의 채무보증업무에 소요되는 인지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조치를 신설했다.

또한, 「석탄광업구조임시조치법」에 의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기구가 석탄회사의 신분야개척을 지원하는 융자업무에 대해 사업세의 비과세조치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재생자원이용 및 회수축진을 위한 세제조치, 폐기물재생처리설비의 특별상각제도, 오존층보호대책추진을 위한 우대세제조치, 천연가스사용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대세제조치 등 환경보호에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보조금등」의 재정상의 위치

일본에 있어서 「보조금등」의 총액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많다는 점도 되지만 또한, 정부가 「보조금등」을 지원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의 <표 5-19>에서는 「보조금등」의 규모를 살펴보고, 또한 <표 5-20>에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보조금등」의 추이를 검토하여 본다.

<표 5-19> 일본의 보조금등의 규모(1988 회계년도)

(단위: 억엔)

보조금의 구분 회계등의 구분	補助金	負擔金	交付金	輔給金	委託費	計
일반 회 계	46,640	78,187	10,084	5,915	1,177	142,003
특별 회 계	18,411	6,647	130,134	734	1,452	157,378
정부관계기관	-	-	-	-	823	823
계	65,051	84,834	140,218	6,649	3,452	300,204

(자료) : 신정 보조금제도, p.15, 가등 강일 및 병등 광치 공저, 일본전산기획사 발행 (1988년)

〈표 5-20〉 일본의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보조금등의 추이

(단위:억단)

구분 연도	일반회계예산액		보 조 금 등			
	총액(A)	증가율 %	총 계(B)	증가율 %	증감액	(B)/(A), %
1959	14,192	8.2	3,592	11.6	347	25.3
1960	15,697	10.6	4,183	16.5	591	26.6
1965	36,581	12.4	10,196	18.8	1,614	27.9
1970	79,498	18.0	22,544	22.7	4,173	28.4
1975	212,888	24.5	68,200	26.6	14,338	32.0
1976	242,960	14.1	81,816	20.0	13,616	33.7
1977	285,143	17.4	95,664	16.9	13,848	33.5
1978	342,950	20.3	113,219	18.4	17,555	33.0
1979	386,001	12.6	128,851	13.8	15,632	33.4
1980	425,888	10.3	138,520	7.5	9,669	32.5
1981	467,881	9.9	145,067	4.7	6,547	31.0
1982	496,808	6.2	147,658	1.8	2,591	29.7
1983	503,796	1.4	149,950	1.6	2,292	29.8
1984	506,272	0.5	145,645	△ 2.9	△4,305	28.8
1985	524,996	3.7	144,301	△ 0.9	△1,344	27.5
1986	540,886	3.0	141,090	△ 2.2	△3,211	26.1
1987	541,010	0.0	140,779	△ 0.2	△ 311	26.0
1988	566,997	4.8	142,003	0.9	1,224	25.0

(자료) : 신정 보조금제도, p.17 가등 강일 및 병등 광치 공저, 일본전산기획사 발행 (1988년).

(주) : 각년도의 당초예산에 기초한 금액임.

위의 〈표 5-20〉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국가 「보조금등」은 1959년이래 일반회계예산액 대비 25.3%~33.7%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는 바, 최근에 와서 그 비중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의 방위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예산의 절대액증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된다. 아뭏든 1994년 현재

의 보조금지원제도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과 함께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동 협약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상당부분 개편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3절 독일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1. 보조금제도의 의의와 범위

독일에 있어서의 보조금제도는 좁은 의미의 보조금제도와 넓은 의미의 경제지원제도로 나누어진다.

좁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는 “연방 또는 각 주 법률 및 유럽공동체법에 따라서 영업장 또는 기업에게 ①시장경제적인 반대급여를 요구하지 않고 ②경제지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 보조금은 그 승인 및 보장이 법률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업이 보조금을 법이 정한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경우 그 반환이 「보조금법 (Subventionsgesetz)」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좁은 의미의 보조금은 형법 (StGB) 제264조 보조금사기죄 (Subventionsbetrug) 제6항에 정의되어 있는 바, 이러한 좁은 의미의 보조금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또는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등의 처벌을 위한 형벌의 구성요건을 구성한다. 독일 보조금법은 형법 제264조의 구성요건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기에 관한 법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형법의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⁸⁵⁾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는, 학자에 따라 용어사용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지원 (Wirtschaftsförderung) 제도로서 포괄된다. 경제행정법상의 수단으로서의 경제지원제도는, 경제규제법 내지는 경제감시법 (Wirtschaftsüberwachungsrecht)이 경제참여자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하고, 경제조종법 (Wirtschaftslenkungsrecht)이 전체경제적 정당성을 위하여 경제참여자들을 조종함에 반하여, 경제지원제도는 일정한 급여의 보장을 통하여 경제참가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지원제도의 핵심은 공행정

85) Lackner, StGB, § 264, 855ff.

주체가 기업가에게 특정한 경제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우대조치 (Begünstigung)를 보장하는 것이다.⁸⁶⁾

공행정주체가 기업가에게 보장하는 우대조치는 일정한 자금 또는 물적 재화의 급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보증·부담금의 면제 또는 조세감면·공공구매에 있어서의 우선권의 보장등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독일법상의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로서의 경제지원제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정책적 목표 및 행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경제지원제도의 수혜자에는 사기업 및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인이 해당된다. 공공단체 및 공기업의 경우도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공공단체와 공법인은 국가가 직접 법규의 근거에 따라 설립하고, 그 활동목표를 설정하며, 철저한 국가적 감독하에 놓여 있고, 그 조직과 활동이 경우에 국가행정조직의 일부 및 국가행정활동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근거로 들어, 통설은 공공단체와 공법인을 경제지원제도의 수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적 경제지원제도는 국가가 사기업의 그 행동을 특정한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간접적으로 조종하고자 사기업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경제안정및성장촉진지원을위한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 제12조는 연방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넓은 의미의 보조금의 예산 및 운용현황을 매2년 마다 연방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자금지원과 조세감면 모두를 보조금의 개념속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액수, 목적, 법적 근거, 기간 등을 세부 항목별로 부록의 형식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1968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1993년 8월 26일에 연방의회에 제14차 보조금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조금보고서에는 보조금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정부의 경제지원을 위한 광의의 지원제도를 지금까지의 14차의 보고서를 통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지

86) Sto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S. 135ff.

원제도는 각종 기업에 대한 적용, 유지 및 생산지원제도 및 기타 시장구조에 의하여 정해지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공급 및 소비과정에서 사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이 보조금보고서는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 각종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의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 재정 및 조세정책 수립을 준비함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법상의 보조금제도와 그 운용 현황은 보조금보고서의 내용이 되는 광의의 보조금제도 즉 경제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⁸⁷⁾

2. 경제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독일에 있어서의 경제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는 헌법규정과 다수의 법률규정에 산재되어 있다. 그 중 연방헌법과 주헌법에 규정된 경제지원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예로 들자면

- 독일기본법 제74조 제17호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지원)
- 독일기본법 제91a조 (제1항) (지역적 경제구조의 개선)
- 독일기본법 제109조 제1항 (경제성장 - 국가적 성장고려의무에 따른 전체 경제적 균형)
- 바이에른 헌법 제164조, 자아란트 헌법 제55조 (농업지원)
- 바이에른 헌법 제153조, 헤센헌법 제43조 (중소기업지원)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각 경제지원의 수단 및 분야별로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연방법률의 예로는 자금급여지원, 지급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예산 회계법 (BHO), 농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 및 금융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및해안보호”를위한공동임무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87) 「경제안정및성장촉진지원위한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 제12조에 따른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의 독일연방의재정지원및조세감면에관한보고서(제14차 보조금보고서)」, 독일연방의회 인쇄물 (Bundestagsdrucksache) 12/5580, 1993. 8. 26. 9면 이하 참조.

Küsten-schutzes”), 영화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산업진흥법 (Filmförderungsgesetz), 베를린지역지원을 규정하고 있던 베를린지원법 (Berlinförderungsgesetz, 통일후 폐지), 구동독지역에 대한 새로운 주택건설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지원법 (Wohnungsbau-Prämiengesetz),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해외투자지원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낙후지역에 대한 주택건설등에 대하여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촉진지역법 (Fördergebietsgesetz) 등과 소득세법 (EStG), 재산세법 (VStG), 영업세법 (GewStG),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보험금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국보험법 (RVO) 등을 들 수 있으며, 주 법률의 예로는 각 주마다 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법 (Mittelstandsförderungsgesetz)을 들 수 있다.

3. 경제지원의 수단

경제지원의 임무와 목표 못지않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제지원의 수단도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조치들은 특별법, 예산규정 및 중소기업지원규범에 언급되어 있다. 경제지원의 수단들은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수단은 공행정주체로 하여금 사경제주체의 재산상황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사경제주체의 특정한 행동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다. 간접적 수단이란 사경제주체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리한 주변상황을 만들어 주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특히 각종 준비조치 및 부수조치들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지원조치는 전면적 및 부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부분적 조치에는 특정지역, 특정분야, 특정사업장 또는 특정사업들에 대한 조치들이 해당된다.

가. 직접적 지원수단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따라, 또 연방국가의 형태로 건설된 독일에 있어서의 직접적 경제지원제도는 전면적 경제지원수단을 채택하기 어렵다. 시장구조, 경쟁력 및 경제의 다양성의 유지와 발전등을 목표로 경제지원제도는 특정한 부

분에 대한 경제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직접적 경제지원제도는 일정한 경제적 급여의 보장(급여보조금 Leistungssubvention)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의 면제(면제보조금 Verschonungssubvention)의 두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된다.

(1) 자금급여지원 (Finanzhilfe)의 형태를 취하는 경제지원제도

(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급여 (Verlorene Zuschüsse)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급여」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공행정주체는 자금급여를 통하여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지만, 사경제주체는 지급된 자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자금급여는 모든 경제지원 프로그램 속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이제도에 속하는 것으로는 특히 투자지원금(Investitionszuschüsse), 청산지원금(Abwrackzuschüsse), 이자지원금(Zinszuschüsse), 자문비용지원금(Beratungskostenzuschüsse)등을 들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연방예산회계법 제3조 및 제23조 (§ 3, 23 BHO), 베를린지원법 제19조 (§ 19 Berlinförderungsgesetz) 등을 들 수 있다.

(나) 보상금 (Prmien)

보상금 또는 포상금제도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이미 종료한 사업의 성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전통적인 사업종료보조금(Ex-Post-Subvention)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분야에의 취업기회 마련을 위하여,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및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 기업의 폐업등을 위하여 지급된다. 그 법적 근거로는 베를린지원법 제28조 이하 (§ 28f. Berlinförderungsg), 광업지원법(BergmannsprämienG) 등을 들 수 있다.

(다) 저 이율의 자금지원 (Zinsgünstige Darlehen)

보조금 수혜자에 대하여 일반 시장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저이율의 자금지원제도」이다. 독일에서는 「저이율의 자금지원」제도가 가장 흔한 보조금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는 공법상의 금융기관 또는 공공재정을 집행하는 특정한 금고등을 통하여 집행된다. 그 법적 근거로는 영화산업진

흥법 제32조 (§ 32 FilmförderungsG),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중소기업지원법 제19조 (§ 19 BW MittelstandsförderungsG) 등을 들 수 있다.

(라) 보증 (Bürgschaften)

보조금급여주체가 보조금수혜자의 지불능력을 담보해 줄 구속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증제도이다. 보조금수혜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능력은 이러한 보증을 통하여 증대된다. 그 법적 근거로는 연방예산회계법 제39조 (§ 39 BHO),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중소기업지원법 제19조 (§ 19 BW MittelstandsförderungsG) 등을 들 수 있다.

(마) 보장 (Garantie)

보조금수혜자가 특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에 실패한 경우, 그에게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의무를 보조금급여주체가 부담하는 제도가 「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증 (Bürgschaften)」제도와 비슷한 점이 많다. 즉 평상시에는 공공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제도는 위험사업을 그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며, 보증제도와 같은 목표하에 선택된다. 그 법적 근거로는 연방예산회계법 제39조 (§ 39 BHO)를 들 수 있다.

(바) 물적 보조금 (Naturalsubvention)

보조금급여주체가 보조금수혜자에 대하여 일정한 물자를 일반시장의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물적 보조금」제도이다. 일정한 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이익보장을 위한 공장부지 또는 영업장 부지의 임대 또는 임대료가 이에 해당된다.

(사) 공공 용역에 있어서의 우대 Bevorzugung bei der öffentlichen Auftragsvergabe)

보조금수혜자가 일반 시장에서의 조건보다 가격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 용역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용역에 있어서의 우대」 제도도 보조금 제도의 한 형태로 취급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2) 급여면제 (Leistungsverschönung)의 형태를 취하는 경제지원제도

(가) 조세상의 우대조치 (Steuervergünstigung)

국가경제상 징수되는 무수한 조세부담에 대하여 그 중의 일부 수입을 포기하는 제도가 조세상의 우대조치인바, 이 제도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베를린원조법에는 소득세의 감경청구, 사업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의 요율 및 범위의 확대, 법인세의 감경청구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공공요금의 우대조치 (Gebührenvergünstigung)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무수히 많은 공공요금에 대하여 그 중의 일부 수입을 포기하는 제도가 공공요금의 우대조치이다.

(다) 부담금의 우대조치 (Beitragsvergünstigung)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무수히 많은 부담금에 대하여 그 중의 일부 수입을 포기하는 제도가 공공요금의 우대조치이다.

4. 독일 보조금지원 분야

독일의 주요 보조금지원 분야는 크게 농림업 분야, 상공업분야, 교통분야, 주택건설분야,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분야등 다섯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다.

가. 농림업 분야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농림업분야의 보조금의 목적은 농림업분야에 장기적인 적절한 경제여건을 형성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 및 범유럽·범세계적 경쟁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는 농림업분야에 대한 47종의 보조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 중 지원규모가 1억마르크를 넘어서는 주요한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1〉 독일의 주요 농림업 보조금 목록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지원금	농업경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자를 지원	제국보험법 제780조	615.0 (520.0)
연금보험료 지원금	농경대규모화를 위해 소규모농업 경영자 농지교부시 연금지급보장	고령농부지원법 제41 - 46조	253.0 (262.1)
농업포기연금 지원금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을 포기할 경우 연금지원	농업경영중지를 위한법률	199.0 (82.0)
가스및석유염가 공급지원금	농업에 사용되는 가스 및 석유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한 염가공급	농업석유가스사 용에관한법률	910.0 (823.5)
사회구조적 소득보전금	가족적 소규모 농업경영자에 대하 여 1천-8천마르크를 지원	농업축진법	940.0 (646.7)
우유생산포기 지원금	낙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우유 생산포기자에 연금지원	우유생산포기지 원보장법률	100.0 (99.3)
연방브랜드 전매청지원금	연방브랜드전매청의 생산가격보 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브랜드전매에관 한법률	320.0 (333.1)
농지구획정리 지원금	농지구획정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원	농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226.8 (226.0)
개별적농업사 업장지원금	농업사업장 경영자의 경쟁력 강하 를 위한 지원금 지급	농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502.7 (394.5)
취약지역에대한 보상보장금	저밀도거주지역등 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농경자에 대한 보상보장	농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608.2 (442.5)
수리경제및전래 농법농업지원금	수리경제 및 전래농법의 농업경영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농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216.0 (200.9)
시장구조개선 지원금	생산 및 제품화의 개선과정에서의 소득손실보전금, 구동독중심	농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2190.0 (1663.0)
개별농지휴업 지원금	시장구조적응을 위한 개별적 농지 휴업시 지원금 지급	농업구조개선에 관한법률	405.0 (277.9)

나. 상공업분야 (Gewerbliche Wirtschaft)

상공업분야의 보조금은 탄광업, 에너지 및 원자재조달, 기술혁신지원, 특정산업분야 지원 및 지역적 구조개선지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는 상공업분야에 대한 55종의 보조금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상공업분야의 보조금 내용을 각 개별적 분야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광업분야 (Bergbau)

광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탄광지역의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의 경제력 및 노동시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된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에 제시된 광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목록 중 지원규모가 1천만마르크를 넘어서는 주요한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2> 독일의 주요 상공업 보조금 목록 - 광업분야 -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채광중지지속 경비지원금	채광중지시에도 수질오염방지등을 위해 부담하는 지속적 경비지원	행정계약	100.0 (144.3)
시장축소적응 지원금	루르탄광회사에 대한 시장축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	보조금지급결정	119.4 (119.4)
심저갱도채탄 비용지원금	지하갱도깊은곳에서의 고난도채탄 작업경비지원 (전기료중심)	보조금지급결정	155.0 (300.5)
코크스가격 지원금	독일탄광이 독일제철회사에 공급하는 코크스가격유지 지원금	유럽공동체결정	1900.0 (2469.4)
석탄근로자 퇴직지원금	탄광폐광으로인한 퇴직 석탄근로자에게 퇴직금 지원	보조금지급결정	350.0 (228.0)
석탄철강근로자 사회보장지원금	석탄 및 철강근로자에게 사회보장 부담금을 지원함	유럽공동체결정 원보장법률	250.1 (204.5)

(2)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분야 (Energie- und Rohstoffversorgung)

에너지 및 원자재조달분야에 대하여는 구서독지역에 대하여는 모든 보조금이 철폐되었으나 구동독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난방시설 및 취약한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를 기하고자 한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에 제시된 에너지 및 원자재조달분야에 대한 보조금 목록 중 지원규모가 1천만마르크를 넘어서는 주요한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3〉 독일의 주요 상공업 보조금 목록 - 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분야 -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지역난방개선 지원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지역난방의 개선 경비지원 (동독지역중심)	보조금지급결정	150.0 (-)
에너지절약자문 촉진지원금	에너지소비사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위한 자문비용지원	보조금지급결정	14.5 (8.5)

(3) 기술혁신지원분야 (Technologie- und Innovationsförderung)

기술혁신지원분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지원, 구동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마이크로 기술개발지원, 생산공정마감기술지원, 바이오공학 기술지원, 기술지향적 기업창업지원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에 제시된 기술혁신지원분야에 대한 보조금 목록 중 지원규모가 1천만마르크를 넘어서는 주요한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4〉 독일의 주요 상공업 보조금 목록 - 기술혁신지원분야 -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연구프로젝트 지원금	경제력있는 연구기관에 연구프로 젝트 경비지원 (구동독)	행정규칙	150.0 (-)
중소기업기술 이전지원금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이전시 필요 한 각종 경비를 지원	보조금지급결정	40.0 (13.5)
중소기업연구개 발잠재력지원금	연구개발잠재력있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지급 (구동독)	행정규칙	70.0 (12.7)
중소기업신기술 개발지원금	신기술, 혁신절차로 신제품생산중 소기업에 지원금지급 (구동독)	행정규칙	50.0 (0.2)
연구인력증원 지원금	경제연구개발잠재력 증강을 위한 증원연구인력에 지원금지급	행정규칙	24.7 (30.3)
마이크로기술연 구개발지원금	마이크로기술 연구개발중소기업에 지원금 지급	행정규칙	30.0 (22.1)
바이오공학산업 지원금	바이오공학기술 향상지원을 위해 지원금 지급	행정규칙	27.0 (1.6)
위탁연구개발 지원금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 지급	행정규칙	50.8 (31.7)
기술집약기업혁 신위험부담금	기술혁신기업 설립, 기술개발등에 서 발생하는 손실분담금 지급	행정규칙	39.5 (25.9)
기술지향기업 창업지원금	기술지향적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	행정규칙	51.8 (20.0)

(4) 특정산업지원분야 (Hilfe für bestimmte Industriebetriebe)

특정산업분야 지원은 조선산업과 항공·우주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 보고서에 제시된 특정산업지원분야에 대한 보조금 목록 중 지원규모가 1천만마르크를 넘어서는 주요한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5〉 독일의 주요 상공업 보조금 목록 - 특정산업분야 -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조선공업지원금 -부채부담지원-	조선공업경쟁력약화에 따른 부채 이자의 감경 및 면제	조선공업지원 계획	345.0 (246.3)
조선공업지원금 -경쟁력강화-	타국의 조선공업보조금상용액수의 보조금지급을 통한 경쟁력강화	조선공업지원 계획	89.5 (265.4)
구동독조선기업 지원금	구동독조선기업의 국제경쟁적응촉 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	동방진흥계획	80.5 (85.1)
항공우주산업 지원금	항공우주산업의 진흥과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금 지급	행정규칙	220.3 (1373.1)

(5) 지역적 구조개선지원 분야 (Regionale Strukturmaßnahme)

지역적 구조개선지원은 주로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보장을 위한 투자촉진조치를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독일 통일 이전에는 베를린지원법에 의한 베를린지원이 구서독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독일의 통일로 그 임무가 완성되었고, 현재는 구동독지역에 대한 구조개선자금이 주로 지급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에 제시된 지역적구조개선분야에 대한 보조금 목록 중 지원규모가 1천만마르크를 넘어서는 주요한 보조금을 예로 든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6〉 독일의 주요 상공업 보조금 목록 - 지역적구조개선지원분야 -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동서접경지기업 수송경비지원금	동서접경지기업의 교통불편에 따 른 추가수송경비 지원금	접경지역지원법	6.1 (20.8)
지역경제구조 개선지원금	구동독지역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기업투자 지원금 (구동독)	지역구조개선을 위한법률	210.0 (215.2)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폐광지역투자기업투자지원금	폐광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지원금	지역구조개선을 위한법률	30.0 (-)
제조업투자지원금	구동독지역에 공장형태로 투자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지역구조개선을 위한법률	2730.0 (592.2)

다. 교통분야 (Verkehr)

교통분야의 보조금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직결된다. 일반적인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적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다만 해상운송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보조금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독일연방정부 제14차 보조금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4종의 교통분야 보조금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표 5-27> 독일의 교통분야 보조금 목록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베를린항공교통지원금	베를린과 다른지역간의 항공교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철폐)	행정규칙	- (0.2)
해상운송지원금	해상운송업자의 선박건조 및 개조비용 지원	행정규칙	100.0 (86.7)
내수면수송구조개선지원금	내수면수송의 유럽차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지원	유럽공동체규칙	4.8 (3.9)
구동독해상운송업자지원금	구동독에 본부를 둔 해상운송업자구조개선지원금 지급	동방진흥계획	- (25.0)

라. 주택건설분야 (Wohnungswesen)

독일에서의 주택건설분야는 지속적인 수요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지역

으로의 인구유입의 급증과 소득증대에 따른 분가현상의 심화등이 주택수요증가를 촉진시키고 있다. 주택수요증가에 따른 주택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지원, 주택저축에 대한 지원, 주택개량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난방지원, 공무원 관사의 건설지원등에 대한 각종 보조가 행해지고 있다. 독일연방정부 제14차 보조금보고서는 19종의 주택건설분야 보조금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현존하고 있는 주요한 보조금을 열거한다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5-28〉 독일의 주택건설분야 보조금 목록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사회주택(공공) 건설지원금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원금 및 융자금지급	헌법 104a조 주택건설법	1481.4 (988.5)
구동독사회주택 건설개량지원금	구동독사회주택의 건설 및 개량을 통한 주택공급 지원금 지급	헌법 104a조 주택건설법	649.8 (56.5)
지역별사회주택 건설지원금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회주택건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	헌법 104a조 주택건설법	16.0 (642.6)
대학교기숙사 건설지원금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건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	헌법 104a조 행정협약	110.0 (150.0)
주택자금 융자지원금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저렴한 이자 보장을 위한 금융지원금지급	헌법 104a조 행정협약	25.0 (68.6)
구동독주택개량 융자지원금	구동독주택의 개량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지원금 지급	행정계약	440.0 (-)
공무원관사건설 융자지원금	연방군인및 공무원관사건설에 대한 금융지원금 지급	주택건설법	170.3 (50.8)

마.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분야 (Sparförderung und Vermögensbildung)

근로자의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에 관하여는 「재산형성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근로자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 보

조금은 본래 저축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다가 1981년의 「보조금감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주택저축지원금」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독일연방정부 제 14차 보조금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보조금은 아래의 한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표 5-29〉 독일의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분야 보조금 목록

(지원규모는 1994년 기준, 괄호안은 1991년, 지원단위 : 100만 마르크)

보조금구분	보조금지급내용	법적 근거	지원규모
근로자주택저축 지원금	근로자주택저축가입자가 주택건 설시에 지원금 지급	주택건설지원법	450.0 (552.1)

5. 독일 보조금제도의 운영현황 및 변천경향

가. 개 관

1994년 현재 독일 연방보조금의 총액은 376억 마르크 (환율 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18조8000억원)에 달한다.⁸⁸⁾ 독일 연방보조금은 1994년에 농업분야에 64억7천5백만 마르크 (17.2%), 상공업분야에 161억5천2백만 마르크 (42.9%), 유통업분야에 12억9천2백만 마르크 (3.4%), 주택건설업 분야에 103억6백만 마르크 (27.4%),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 분야에 10억7천6백만 마르크가 투입되었는 바, 그 중에서 215억7천5백만 마르크가 자금급여지원 (Finanzhilfe)의 형태로, 160억5천1백만 마르크가 조세감면 (Steuervergünstigung)의 형태로 투입되었다.

88) 이 자료는 독일연방정부가 연방회의 제12차 회기에 제출한 제14차 보조금보고서 즉 「경제안정및성장촉진지원에위한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 제12조에 따른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의 독일연방의 재정지원및조세감면에관한보고서(제14차 보조금보고서) », 독일연방의회 인쇄물 (Bundestagsdrucksache) 12/5580, 1993. 8. 26.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 1991년부터 1994년 까지의 연방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의 변천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30〉 독일연방의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보조금) 변천현황

(단위 : 100만 마르크)

구 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총액	재정 지원	조세 감면	총액	재정 지원	조세 감면	총액	재정 지원	조세 감면	총액	재정 지원	조세 감면
I. 농림업												
1. 농림업일반	8001	7500	501	6448	5959	489	5767	5318	449	5535	5105	430
2. 유럽공동체 조화조치	1622	647	975	1704	1704	-	1410	1410	-	940	940	-
총액 I	9623	8147	1476	8151	7662	489	7177	6728	449	6475	6045	430
II. 상공업												
1. 광업	3631	3551	80	3539	3465	74	3467	3399	68	2959		64
2. 에너지와자원	141	18	123	219	165	54	174	163	11	166		1
3. 기술혁신지원	399	236	163	591	591	-	566	564	2	605		-
4. 특별산업지원	1970	1970	-	1559	1559	-	1050	1050	-	735		-
- 선박	597	597	-	607	607	-	665	665	-	515		-
- 항공	1373	1373	-	952	952	-	386	386	-	220		-
5. 지역구조개선	9568	1409	8159	9451	2203	7248	9861	3111	6746	8574		5595
6. 상업일반	2112	683	1429	2271	963	1308	2689	1433	1256	3114		1269
총액 II	17821	7867	9954	17629	8945	8684	17807	9724	8083	16152	9223	6929
III. 교통	1130	91	1039	1185	73	1112	1297	121	1176	1292	105	1187
IV. 주택	5802	3052	2750	6979	3745	3234	6917	3004	3913	10306	5752	4554
V.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	1133	552	581	1183	577	606	1160	550	610	1076	450	626
VI. 기타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1795	-	1795	1986	-	1986	2210	-	2210	2325	-	2325
VII. 총액 I ~ VI	37304	19709	17595	37113	21002	16111	36566	20125	16441	37626	21575	16051

나. 독일의 통일과 보조금제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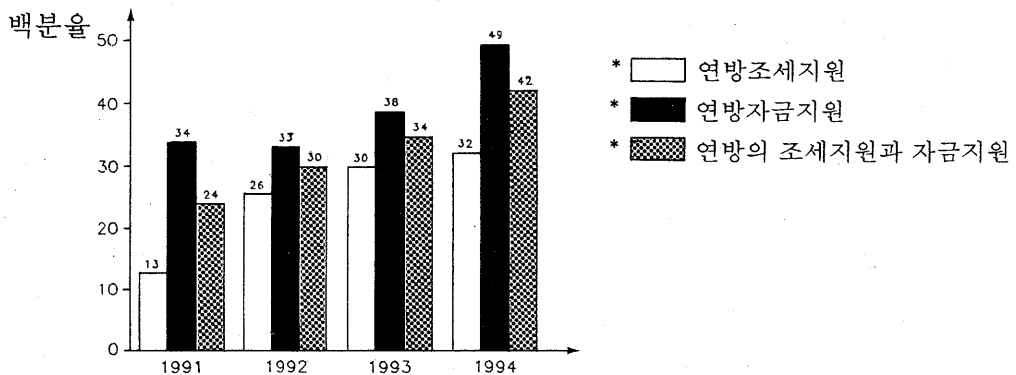
독일 연방보조금중에서 1994년에 157억 마르크가 구동독지역에 투입되었다. 이 금액이 전체 보조금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 %에 해당한다. 그 비율은 통일 후 첫해인 1991년에 24 %에 달했던 것에서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보조금의 유형 중 자금지원분야에서는 구동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50 %를 넘어섰다.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자금지원의 절반이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투입되는 셈이다. 1991년 이래 구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은 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사기업의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며 또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으로는 특히

- 투자지원금 (Investitionszulagen : 27억 마르크)
- 경제구조개선지원금 (Verbesserung der Wirtschaftsstruktur : 27억 마르크)
- 자기자본지원금 (Eigenkapitalhilfe : 13억 마르크)
- 특별지원금 (Sonderabschreibungen : 12억 마르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특기사항으로는 1994년부터 독일 연방정부는 구동독 주택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남은 부채의 이자상환액의 50 %를 부담하며, 그 액수는 23억 5천만마르크에 달한다.

*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및 조세지원 즉 보조금중에서 구동독에 대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부터 1994년 까지 변천된 현황을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표 5-31> 구동독에서 연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천현황



구동독지역 경제구조에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1994년의 구동독 국민총생산에서 연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에 달한다. 이는 두서독지역에서 0.75 %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큰 차이를 드러낸다. 보조금액수를 개인별로 나누면, 구동독지역에서는 1991년에 개인당 560 마르크였던 것이, 997 마르크로 높아진 반면, 구서독지역에서는 1991년에 개인당 443 마르크였던 것이 338 마르크로 낮아졌다.

구동독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적 투자를 뚜렷하게 촉진시켰다.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국회에 보고한 1994년 보고서에서 보조금지원이 “구동독의 구조개선과정을 지원하며, 자생적인 성장기반의 토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필수불가결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1992년 까지 1500억 마르크의 사기업투자가 구동독지역에 행해졌으며, 이로써 300만명을 위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거나, 확보되었다.

그 반면에 구서독지역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현저히 감축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구서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또는 조세감면은 650억 마르크가 감축되었으며, 감축비율은 전체의 25 %에 해당된다. 이를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할 때 1991년도에 국민소득에 대한 보조금비율이 1.1 % 였던 것이 1994년에는 0.75 %에 불과하도록 감축된 것을 보면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구 서독지역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보조금감축」이라는 목표를 특별히 설정하고 보조금감축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세부 분야에서 감축된 내용을 열거한다면

- 특정지역지원 (서베를린 및 동서독경계지역 지원 등) : 50억 마르크 (73 %)
- 항공산업 : 12억 마르크 (84 %)
- 농업 : 8억 마르크 (15 %)
- 광업 : 7억 마르크 (20 %)
- 조선 : 1억 마르크 (25 %) 등이다.

구 서독지역지역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1990년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1980년대에는 매년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규모가 증가하여 총 60억 마르크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0년 이후 1994년 까지는 매년 감소하여 총 75억 마르크가 감소됨으로써 1994년도의 구서독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1982년도의 보조금 총액보다 오히려 17억 마르크가 감소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독일의 경

제규모가 현격히 커짐에 따라 연방보조금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축되었다. 연방정부의 지출총액중 자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에는 4.9 % 였던 것이 1994년에는 4.5 % 로 감축되었고,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총액에서 조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는 6.4 % 였던 것이 1994년에는 4.2 % 로 감축되었다. 구서독의 국민총생산에서 구동독지역에 대한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도 1982년에는 1.5 % 에 해당되던 것이 1994년에는 0.75 % 에 해당되어, 액수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비중은 오히려 절반정도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독지역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의 감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보조금의 감축은 연방재정의 부담을 더는 목적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높은 보조금을 통하여 지탱하던 방식을 이제는 시장경제 지향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변화시켜 나가려는 목적을 겸하고 있다. 장기적 전망으로 볼 때 국제경제적으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구조개선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연방정부의 재정계획서에는 1997년 까지 구서독지역에서 84억 마르크 (24 %)의 보조금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에 대하여도 경제구조변경을 계속진행하여 현재 쏟아부어지고 있는 고액의 보조금에 대한 증액을 중지하거나, 보조금액을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독일 연방정부의 계획이다.

* 1991년 부터 1994년 까지의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액수의 변천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표 5-32〉 연방보조금현황 변천에 대한 동서독 비교표

(단위 : 100만 마르크)

구 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총액	구 서독	구 동독	총액	구 서독	구 동독	총액	구 서독	구 동독	총액	구 서독	구 동독
I. 농림업												
1. 농림업일반	8001	3916	4085	6448	4394	2054	5767	4167	1600	5535	4028	1507
2. 유럽공동체 조화조치	1622	1622	-	1704	1704	-	1410	1030	380	940	683	257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구 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총액			총액			총액			총액		
		구 서독	구 동독		구 서독	구 동독		구 서독	구 동독		구 서독	구 동독
총 액 I	9623	5538	4085	8151	6098	2054	7177	5197	1980	6475	4711	1764
II. 상공업												
1. 광업	3631	3603	28	3539	3508	31	3467	3386	81	2959	2879	80
2. 에너지와자원	141	140	1	219	67	152	174	21	153	166	10	156
3. 기술혁신지원	399	345	54	591	233	358	566	174	392	605	171	434
4. 특별산업지원	1970	1885	85	1559	1408	151	1050	818	232	735	605	130
- 선박	597	512	85	607	456	151	665	433	232	515	385	130
- 항공	1373	1373	-	952	952	-	386	386	-	220	220	-
5. 지역구조개선	9568	6880	2688	9451	4280	5171	9861	3178	6683	8574	1881	6693
6. 상업일반	2112	1676	436	2271	1606	665	2389	1552	1137	3114	1501	1613
총 액 II	17821	14529	3292	17629	11101	6528	17807	9129	8678	16152	7046	9106
III. 교통	1130	946	184	1185	969	216	1297	1092	205	1292	1085	207
IV. 주택	5802	4908	894	6979	5368	1611	6917	5897	1020		6420	3886
V.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	1133	1008	125	1183	980	203	1160	933	227		863	213
VI. 기타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1795	1457	338	1986	1576	410	2210	1737	473		1822	503
VII. 총액 I ~ VI	37304	28387	8917	37113	26091	11022	34566	23983	12583	37626	21947	15679

다. 분야별 연방보조금제도의 변천현황

독일의 경제지원제도의 중점은 상공업분야 (1994년의 경우 43%), 주택건설분야 (27%), 농업분야 (17%)에 놓여 있다. 이들 각 분야는 1991년 부터 1994년 까지 각각 다른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상공업분야 중에서 광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1991년에는 36억 마르크였던 것이 1994년에는 30억 마르크로,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1991년에는 14억 마르크였던 것이 1994년에는 2억 마르크로, 지역적 구조개선자금은 96억 마르크에서 86억 마르크로 감축되었다. 이 감축된 금액은 구동독지역의 산업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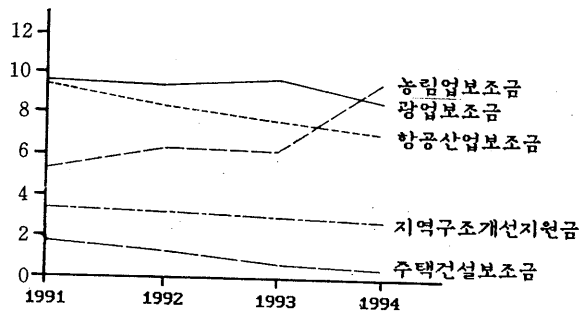
자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사회간접자본지원금에 투입되었는 바, 이 영역에 대한 구동독지역의 보조금은 1991년 28 %에서 1994년 78 %로 인상되었다.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도 1991년에 비하여 1994년에는 31억 마르크가 감축되었는 바, 특히 농업생산물의 수출보조금 및 가격보전금이 대폭 감축되었다. 농업보조금의 감축은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그 반면에 주택건설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구동독지역에서는 30억마르크, 구서독지역에서는 15억 마르크가 증가함으로써 주택건설보조금의 총액이 1991년에는 58억 마르크 였던 것이 1994년에는 103마르크에 달하게 되었다. 독일의 중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수에 대한 1991년 부터 1994년 까지의 변천현황은 앞 도표에 표시한 바 있다. 독일의 중요분야의 보조금제도의 변천현황을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표 5-33〉 독일의 중요분야의 보조금변천 현황

(10억 마르크)



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방보조금제도의 변천현황

보조금제도의 변천현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독일에서의 1982년부터 1994년 까지의 보조금제도의 변천은 한편에서는 보조금의 감축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독일 연방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조금의 항목을 만들어내는 긴장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이래 보조금은 감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1982년 부터 독일이 통일하는 시점인 1990년 까지 독일의 경제성장률에 해당하는 매년 3 % 씩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1991년 부터 1994년 까지의 보조금제도의 변천은 통일에 따른 구동독지역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따라 달라진다. 1991년에는 보조금 총액이 77억 마르크가 증액되었는 바, 이 중 구서독지역에 대하여는

13억 마르크가 감소되었고, 증액된 총액과 감축된 액수를 합하여, 구동독지역에 90억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구동독지역에 대한 보조금액수는 매년 증가하여 1994년에는 155억 마르크에 달하게 되었는데, 보조금액 전체의 총액은 376억 마르크로서 1991년의 373억 마르크에 비하여 3억 마르크 밖에는 많지 않은 액수이다. 이 결과를 독일 전체를 놓고 볼 때, 보조금액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1990년에 비하여 1994년에 75억 마르크가 감축된 220억 마르크에 지나지 않는 액수의 경제지원을 받게 된 결과가 되었다.

* 1970년부터 1994년 까지의 독일 연방보조금의 변천과정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표 5-34> 독일연방보조금의 장기적 (1970-1994) 변천현황

(1) 1970~1982년

(단위 : 100만 마르크)

구 분	1970		1980		1982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I. 농 림 업	4755	34.0	3673	15.0	2658	11.2
1. 농림업일반	4209	30.1	3511	14.4	2658	11.2
2. 유럽공동체 조화조치	546	3.9	162	0.7	-	-
II. 상 공 업	3702	26.5	9163	37.5	8884	37.6
1. 광업	532	3.8	2587	10.6	1445	6.1
2. 에너지와 자원	19	0.1	278	1.1	459	1.9
3. 기술혁신지원	150	1.1	527	2.2	682	2.9
4. 특별산업지원						
- 조선	28	0.2	254	1.0	240	1.0
- 항공	150	1.1	372	1.5	403	1.7
- 철강	-	-	49	0.2	399	1.7
5. 지역구조개선	2051	14.7	4249	17.4	4458	18.8
6. 상업일반	772	5.5	847	3.5	798	3.4
III. 교 통	906	6.5	2467	10.1	1976	8.4
IV. 주 택	1310	9.4	3862	15.8	4599	19.4

제 2 절 독일의 보조금제도 관련 법제와 그 운용

구 분	1970		1980		1982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V.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	2695	19,3	3841	15,7	3888	16,4
VI. 기타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604	4,3	1451	5,9	1654	7,0
총액 I ~ VI	13972	100,0	24457	100,0	23659	100,0

(2) 1985년~1994년

(단위 : 100만 마르크)

구 분	1985		1990		1991		1994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I. 농 림 업	4741	17,3	5764	19,5	9623	25,8	6475	17,2
1. 농림업일반	3041	11,1	4098	13,8	8001	21,4	5535	14,7
2. 유럽공동체 조화조치	1700	6,2	1666	5,6	1622	4,3	940	2,5
II. 상 공 업	11079	40,4	14534	49,1	17821	47,8	16152	42,9
1. 광업	1604	5,8	3323	11,2	3631	9,7	2959	7,9
2. 에너지와 자원	420	1,5	199	0,7	141	0,4	166	0,4
3. 기술혁신지원	919	3,3	534	1,8	399	1,1	605	1,6
4. 특별산업지원								
- 조선	148	0,5	381	1,3	597	1,6	515	1,4
- 항공	405	1,5	1134	3,8	1373	3,7	220	0,4
- 철강	703	2,6	-	-	-	-	-	-
5. 지역구조개선	5429	19,8	7157	24,2	9568	25,6	8574	22,8
6. 상업일반	1451	5,3	1806	6,1	2112	5,7	3114	8,3
III. 교 통	1665	6,1	1974	6,7	1130	3,0	1292	3,4
IV. 주 택	5294	19,3	4606	15,6	5802	15,6	10306	27,4
V. 저축장려 및 재산형성	3105	11,3	1213	4,1	1133	3,0	1076	2,9
VI. 기타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1572	5,7	1508	5,1	1795	4,8	2325	6,2
총액 I ~ VI	27456	100,0	25599	100,0	37304	100,0	37626	100,0

마. 지방보조금의 변천현황

독일 보조금제도 가운데서 연방보조금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이다. 1993년도에 연방보조금이 365억 마르크에 달했던데 반하여 각 주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보조금은 499억 마르크에 달했다.

* 1970년 부터 1994년 까지 독일 지방보조금의 변천현황을 연방보조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35〉 독일의 연방과 각주의 보조금총액 분석

(단위 : 10억 마르크)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I. 연 방										
1. 금융지원	7.8	10.1	12.5	11.9	12.3	14.1	14.2	19.7 (6.7)	21.0 (6.9)	20.1 (7.7)
2. 조세지원	6.2	9.7	11.9	15.6	16.7	15.2	15.4	17.6 (2.3)	16.1 (4.1)	16.4 (4.9)
II. 각 주										
1. 금융지원	6.8	8.3	13.1	13.1	12.1	14.6	16.2	22.4 (5.2)	23.8 (6.7)	28.5 (10.3)
2. 조세지원	6.6	11.5	14.0	18.2	20.2	18.3	18.0	21.3 (3.2)	20.6 (5.5)	21.4 (6.5)
III. ERP-금융지원	1.1	1.3	2.7	2.9	3.5	3.6	5.6	10.8 (7.3)	11.5 (8.7)	13.9 (9.8)
IV. 유럽공동체시장 구조조정자금	2.9	2.2	6.2	8.0	10.8	9.4	9.5	10.5	15.5	13.5
보조금총액 (금액 I ~ IV)	31.4	43.0	60.4	69.7	75.6	75.2	78.9	102.3 (24.7)	108.5 (32.0)	113.8 (39.3)

* ()안은 구동독지원금임.

독일 지방보조금 중에는 자금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각 주가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지원은 1993년의 경우 285억 마르크에 달했다. 이는 1991년도의 224억마르크에 비하여 61억 마르크가 증액된 것이다. 이 자금지원금 중에서 구서독지역에는 1991년도의 150억 마르크에 비하여 1993년도에 160억 마르크로 10억 마르크 (7%)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연방보조금이 감액된 것과는 다른 방향이나 그 증가의 폭은 비교적 적다. 1993년도에 구서독지역에 지출된 자금지원금은 농림업분야에 24억8천5백만마르크 (15.5%), 상공업분야에 47억 6천1백만마르크 (29.7%), 유통업분야에 17억4천2백만마르크 (10.9%) 주택건설업 분야에 70억4천4백만마르크 (43.9%) 등이다.

* 구서독지역에 대한 각 주의 자금지원금 (베를린포함)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36〉 1991 - 1993년간의 구서독지역의 자금지원액의 변천(베를린 포함)

구 분	자 금 지 원					
	1991		1992		1993	
	100만마르크	백분율	100만마르크	백분율	100만마르크	백분율
I. 농 림 업	3014	20.1	3176	21.3	2485	15.5
II. 상 공 업	4531	30.2	4325	29.1	4761	29.7
III. 교 통	1612	10.7	1684	11.3	1742	10.9
IV. 주 택 건 설	5849	39.0	5697	38.3	7044	43.9
총 계 (I ~ IV)	15007	100.0	14882	100.0	16033	100.0

구서독지역에서 7% 정도의 보조금 증가를 보였던데 반하여 구동독지역에는 1991년도의 45억마르크에 비하여 1993년도에는 93억 마르크로 10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1993년도에 구동독지역에 지출된 자금지원금은 농림업분야에

제 5 장 보조금제도 관련 외국의 법제와 운용

11억4천3백만마르크 (12.3 %), 상공업분야에 47억3천만마르크 (50.8 %), 유통업분야에 5억6천6백만마르크 (6.1 %) 주택건설업 분야에 28억7천만마르크 (30.8 %) 등이다.

* 구동독지역에 대한 각 주의 자금지원금 (베를린제외)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37> 1991년 - 1993년간의 구동독지역의 자금지원액의 변천(베를린 제외)

구 분	자 금 지 원					
	1991		1992		1993	
	100만마르크	백분율	100만마르크	백분율	100만마르크	백분율
I. 농 림 업	220	4.8	1130	19.2	1143	12.3
II. 상 공 업	2620	57.7	2377	39.7	4730	50.8
III. 교 통	808	17.8	412	7.0	566	6.1
IV. 주 택 건 설	894	19.7	2004	34.1	2870	30.8
총 계 (I ~ IV)	4542	100.0	5883	100.0	9308	100.0

6. 독일보조금과 유럽공동체 및 OECD 보조금과의 비교

가. 유럽공동체 보조금백서 (EG-Beihilfenweißbuch)에 따른 유럽공동체 보조금현황과 독일보조금

유럽공동체는 1992년에 제3차 보조금백서를 편찬하였다. 이 보조금백서에는 12개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공업·농업·광업·유통업 등의 분야에 대한 보조금 현황이 서술·비교되어 있다. 이 보조금백서에는 유럽공동체가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높다.⁸⁹⁾

유럽공동체가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 (유럽공동체보조금)중에는 농업분야의 구조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공동체보조금은 농업분야에서 장기적 보조금이 많으며, 유럽 각 지역 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특색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유럽공동체 바나나시장규칙」은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부과된 관세를 유럽공동체와 유럽공동체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바나나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경우에도 보조금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의 보조금 평균액의 총액이 920억 ECU 였던데 반하여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의 보조금평균액은 890억 ECU 로 감축되었다. 각 국의 국내총생산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6부터 1988년사이에는 2.2 % 에 달했으나,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2.0 % 로 감축되었다. 정부지출의 총액에 대한 대비는 4.6 %에서 4.3 %로 감축된 결과이다. 독일의 보조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2.5 %에서 2.4 %로 감축된 결과로 나타났으나, 유럽공동체 전체평균에 비하여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유럽공동체에 비하여 독일의 보조금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광업, 농업 및 유통업에 대한 보조금에서 찾을 수 있다. 광업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자금지원 비중은 18 %였던데 반하여, 독일은 32 % 였고, 농업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자금지원비중이 9.6 % 였던데 반하여, 독일은 20 %에 달했다.

* 유럽공동체 각국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보조금 비중,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환산액 및 제조업과 농업분야로 구분한 총 부가가치에 대한 보조금비중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89) “독일연방의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에 관한 보고서 (제14차 보조금보고서)”, 독일연방의회 인쇄물 (Bundestagsdrucksache) 12/5580, 1993. 8. 26. 9면 이하”에 따르면 유럽공동체의 보조금백서는 매2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평균치를 발표한다. 여기에 인용되는 1992년도 보조금백서는 1988년부터 1990년사이의 평균치를 수록한 보조금백서이다.

〈표 5-38〉 유럽공동체 각국의 보조금 비율 (1988년 - 1990년의 평균)

구 분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에이레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유럽공동체
총 계													
- 국내총생산중 보조금비율	2.8	1.1	2.4	3.1	1.8	1.8	2.0	2.9	4.0	1.3	2.2	1.1	2.0
- 노동자 1인당 보조금액 (단위 ECU)	1040	409	971	387	480	735	584	982	1389	528	245	312	687
경제분야에 따른구분 국민총생산에 대한보조금													
제조업분야	4.1	2.1	2.5	14.6	3.8	3.5	4.9	8.0	2.8	3.1	5.3	2.0	3.5
농업분야	8.5	8.1	20.0	3.2	1.3	9.0	4.4	12.9	15.5	6.4	10.1	8.6	9.6

(자료) : 제3차 유럽공동체 각국보조금 보고서, 독일연방정부 제14차 보조금보고서 제 40면에서 재인용

나. OECD 보조금 조사에 따른 OECD 보조금 현황과 독일 보조금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기구)는 OECD 회원국들에 대한 보조금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자금지원 및 조세지원 기타 산업지원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제적 비교를 손쉽게 하고, 보조금제도 전체에 관한 국제적 준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제무역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고자 한다.

OECD는 국제적 농업정책의 개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업보조금 분석보고서를 편찬하였다. OECD가 중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각국의 산업지원제도의 비교·분석이다. OECD 산업위원회는 OECD 경제장관회의 자료로 1992년에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산업보조금분석서를 제출하였다. 각국의 제출자료가 서로 상이한 근거위에 자리잡고 있어 국제적 보조금 비교의 설득력을 입증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OECD 산업위원회의 보조금보고서는 국제적 보조금 규범마련을 위한 혁혁한 공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그 완벽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독일연방정부가 제14차 보조금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이다⁹⁰⁾

OECD 산업위원회의 보조금 보고서는 산업지원보조금 가운데서 공공재정투자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비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원금, 융자금, 지급보증, 자기자본출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접적 지원제도와 조세감면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는 하나 각국별로 다른 내용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세부적 비교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내용은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조금감축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서는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29%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졌다. 1986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감안한다면 실질가치에 대하여는 36%의 감축이 이루어진 셈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상품가치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1.8%로 낮아졌다. 특히 감축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가 조세감면 분야이다. 1986년에 비하여 1989년에는 절반 가량 감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 지원금은 약간 상승하였는 바,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1986년과 1989년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국 보조금중 조세감면과 직접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졌다. 1986년에는 조세감면액이 전체보조금의 3분의2를 차지하였으나, 1989년에는 직접적 지원금이 오히려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 OECD 회원국들의 보조금의 감축비율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90) "독일연방의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에 관한 보고서 (제14차 보조금보고서)", 41면 이하 참조

〈표 5-39〉 OECD 회원국의 산업지원보조금 비율 변천현황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86년 지수 100			
지원총계	100	91	90	70
직접지원	100	114	142	108
조세감면	100	80	63	52
	백분율 (%)			
물가상승률대비 보조금 비율	3.3	2.6	2.3	1.8
	백분율 (%)			
지원총계비율				
직접지원	34	42	54	51
조세감면	66	58	46	49

(자료) : OECD 산업위원회 조사보고서, 독일연방정부 제14차 보조금보고서 제42면에
서 재인용

제 6 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개 설

경제운용과 관련된 행정에 대하여는 국제화 및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 1백25개국대표들이 우루과이라운드 (UR)의 종결과 함께 WTO의 출범을 알리는 UR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림에 따라 전후 50년간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해온 GATT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세계무역기구(WTO)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보조금/상계관세협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문의 발효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보조금제도 또한 국제적 규범과 일치되도록 가다듬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보조금제도의 유형적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금급여·금융지원·조세감면·국공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제도를 상업·광공업·동력자원·농업 등 각 산업분야와 국방·과학기술·중소기업 등 각 경제영역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들 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가 경제운용과 관련된 각종 행정법령속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제도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보조금제도를 보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먼저 법령의 규정 그 자체를 가지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제개선방안을 주안점으로 하므로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중 법원칙에 위반하는 법제는 없는가 또 국제적인 규범과의 관련상 명백한 금지보조금으로 드러나는 보조금은 없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 자체의 분석만으로는 충분한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각 근거법령은 대부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수권법령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개별적인 운용을 수권된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수권규범은 오직 예산과 기금 등 각종 재원의 범위안에서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각종 제도의 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보다 정확히 드러날 수 있다.

보조금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경제활동현장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 각 실무부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세연구원·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등 각 연구기관 및 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보조금의 실제적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구체적인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입법의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제시에 앞서 이들 입법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입법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나름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보고서는 보조금제도 관련 입법의견을 먼저 조사·분석하고 이에 이어서 유형적으로 분석된 현행 법제에 드러나 있는 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에 들어가고자 한다.

제2절 UR 협정과 현행 보조금제도개선 관련 입법의견

○ 정부의 보조금제도 개편방안

정부는 앞으로 국내전체 보조금을 금지, 상계가능 및 허용 등 3개 보조금으로 분류해 명백히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입대체보조금은 5년 이내에, 수출보조금은 8년 이내에 철폐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바뀌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의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 따라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특별설비자금대출제 등 각종 수출 및 수입대체보조금을 앞으로 5~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계가능 및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도 비특정적 지원제도의 활용, 객관적·중립적 기준의 설정, 보조금제도운영의 공정성확보 및 소액보조금제도의 이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는 국산 농기계 구입 때 지원되는 농기구 구입자금은 수입대체보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농수산물 가공기계 육성자금도 금지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제도, 항공운

송사업진흥보조금, 외국인 관광기념품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원, 농업생산자재 개발시험연구사업지원, 환경보전협회 지원제도 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고, 중전의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94.02.26, 세계일보 94.07.01 07면)

○ 정부의 산업지원제도 개편방안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됨에 따라 수출·투자촉진·기술개발 등 1백여개 산업지원제도를 정밀 분석, 세부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산업지원수단인 금융과 세제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 앞으로의 각종 정책자금은 우대금리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업체별 지원한도를 없애거나 해당기업을 신용보증상 우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연리 8.5 - 9 %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국산 기계구입자금 무역금융 등은 모두 실세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대신 업체별 수혜한도는 없어져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게 바뀔 전망이다. 또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각종 세제지원은 금융지원 축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지역개발 등 기능별로 조세감면이나 경감폭을 현재보다 크게 늘려 간접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앞으로 UR 보조금규정에 맞게 국내 산업지원제도를 특정 산업에 대한 선별지원 보다 기술력확충, 자동화, 정보화 등 기능별 지원으로 개편,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한국일보 94.1.6. 세계일보 94.04.15. 중앙일보 94.09.05).

○ 정부의 농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특별세 재원을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쓰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특별세 재원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정리사업과 농촌도로 건설, 교육여건개선 등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즉 경지정리와 중대형 농기계보급 및 도로건설 등에 집중 투자되고, 보조금이나 보상금형식의 지출은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5조의 재원은 경지정리 (3조), 농촌도로건설 (5조), 200만원 이상의 중대형 농기계 반값 공급 (2조), 농촌복지개선 (2조), 농업전문대설립 등 교육여건 개선 (1조), 농지은행설립 (1조), 기타 사업

(1조)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오는 98년 까지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해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 4조1천2백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농업보조금 지원형태를 바꾸는 것도 불가피하게 됐다. UR이후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거나 가격지지효과를 가진 보조금은 금지된다. 때문에 현행 정부보조금의 약85%를 차지하는 추곡수매지원을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생산기반투자나 직접소득보조금 등으로 개편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매년 일정률씩 정부보조금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세계일보 94.01.09 02면)

○ 각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개편방안

UR에서 허용하는 정부연구개발 보조금은 일단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지 않아야 하되, 특정성 연구개발보조금이더라도 산업용 연구개발 보조금은 총비용의 75%, 경쟁전 (상업용으로 만들기 전 시제품까지의 개발단계) 개발연구보조금은 50% 까지 각각 허용된다. 상공자원부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UR협정 타결에 따라 문제가 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은 2001년 까지 11개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총개발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이다. 이 중 고화질 텔레비전 (정부지원비율 43%), 차세대자동차 (50%), 첨단생산시스템 (50%), 차세대반도체 (47%) 등 4개 사업은 정부지원비율이 50% 이내이고 경쟁전 개발과제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차세대원자로 (100%), 신에너지 (73%), 환경공학 (74%),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58%)등의 사업은 보조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애로기술 및 기반기술개발에 지원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도 UR 협정문 규정과 부합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67%인 중소기업지원분의 지원비율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선일보 94.1.9.)

○ 정부의 세제개편방안

정부는 우선 개방화·국제화시대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감가상각제도와 세무회계방법등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칠 계획이다. 이는 UR타결로 현행 조세감면제도가 대부분 금리보조금에 해당되는데다 우리나라가 오는 1996년 OECD(경제협력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일대 수술이 불가피해졌

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방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을 이룬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안과 관련, 납세편의 행정수요 세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부과대상 금융소득의 종류와 기준금액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등을 감안, 당장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정부는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액이 큰것부터 시작해 점차 그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 또하나 특기할만한 대목은 신고납부제의 전면시행이다. 납세자가 소득액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신고납부제는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순간 세액이 결정되는 제도다. 정부는 이밖에 특소세 부가세 상속세등과 관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분들을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치려 하고 있다. 예컨대 특소세의 경우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등은 이미 「특별소비」가 아닌 「보통소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높은 특소세를 물림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또 모피 보석등 일부 품목은 100%를 넘는 높은 특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위한 밀수가 범람하는 원인이 되고도 있다. 상속세도 배우자간 상속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부가세과세특례제도는 업체들의 매출축소와 무자료거래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한국일보 94.04.26.한겨레신문 94.04.27)

○ 정부의 보조금관련 예산구조개편방안

정부는 정부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활동이 구체적 목표와 성과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구조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은 국회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출석, 「우리 경제의 경쟁력제고방안」보고를 통해 예산편성구조개편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연구개발자금과 산업지원자금등 국가경쟁력 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사업별 목표의 적정성과 이의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설정된 목표의 성취도를 평가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 목표달성이 미흡한 사업은 지원규모를 수정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94.05.21)

○ 정부의 UR에 따른 법령개편방안

정부와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대외무역법, 공업발전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모두 53개의 UR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비대상은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및 규제 유형을 정비(대외무역법으로 일원화), 상계 및 허용가능한 보조금을 제외한 1백여종의 금지보조금을 관련법에서 폐지(농산물가격 유지법·양곡관리법·농어촌발전특조법·사료관리법·해운산업육성법 등 개정), 긴급 수입규제 발동요건의 제한 및 수출자율규제의 폐지 또는 제한적 운영(대외무역법 개정),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지금까지 농림수산장관이 허용토록 돼있던 양곡의 수입제한을 관세율의 조정에 의해서만 가능(양곡관리법 개정) (한국일보 94. 7. 23) 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중 연구개발지원을 규정한 「실용화사업」규정이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적선이용을 의무화한 해운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타결에 따라 조세감면체계를 축소·정비해 나가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UR 보조금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대리업제도의 신고제 전환, 산업설비수출신고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개방체제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취약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관련법을 대폭 정비 또는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기업활동 등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을 포함, 금융·외환·토지 등 경제활동 관련법 1천5백개를 재검토하고, 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및 유통산업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법·농지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의 지원을 기술우선 지원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해 발명진흥법과 산업기술대학법을 제정키로 했다.(중앙일보 94.02.15, 경향신문 94.07.20).

○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상), 506면 이하; 우리나라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각종 수출보조금제도를 통하여 수출지원정책을 펴왔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산업구조개편작업도 병행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업별지원에서 기능별지원으로 전환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광범위한 보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향후 많은 제도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보조금을 크게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출보조금은 금융지원과 조세지원, 국내보조금은 기술개발지원, 구조조정지원, 환경보존지원, 투자촉진지원, 중소기업지원등으로 구분된다. UR협정상 우리나라는 금지보조금 중 수출성과부 보조금은 협정발효 후 8년 이내에, 수입대체효과 보조금은 5년 이내에 폐지해야 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3.25%를 넘는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년내에 폐지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현행보조금 중 UR협정상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은 첫째 확실한 금지보조금 으로, 수출용 원자재 공급지원제도(수출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구매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획득지원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수출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외화획득산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해외사업 소득공제(수출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사업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해외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수출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 사업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해외 접대비 손금 인정(수출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외화획득사업 영위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수출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제조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특별감가상각비(투자촉진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중소기업 등의 수출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설비자금 확충 등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금지보조금 해당여부 논란소지가 있는 보조금으로는 무역금융(수출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수출촉진 및 외화획득률 제고를 목적물 대상으로 함), 수출산업설비자금 대출제도(수출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수출기업의 설비 촉진, 소재부품의 국내개발 촉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유망중소기업발굴 및 지원(중소기업자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수출 또는 수입대체가 크게 증대되는 중소기업의 발굴, 집중육성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중소 소재·부품운전자금(중소기업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수입대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지원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상계가능보조금으로는 신기술 기업과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기술개발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중 일정률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또는 취득가액 일정률

의 특별상각 인정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공업발전기금중 합리화 사업자금(구조조정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공업의 균형적 발전과 합리화 촉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석유사업기금중 산업구조조정자금(구조조정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공업의 균형적 발전과 합리화 촉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합병 또는 자산양수도 원활화지원(구조조정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합병지원, 자산처분지원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정리기업 인수 원활화 도모(구조조정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산업합리화 지원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산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육성(구조조정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시설투자와 노후시설 대체, 국민투자기금(투자촉진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중화학공업관련분야의 시설투자촉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 특정설비투자지원(투자촉진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생산성 향상,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등 시설투자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촉진지원(조세지원)의 성격임,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금액에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목적물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중소기업지원(금융지원)의 성격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적극 추진을 목적물 대상으로 함)등을 들 수 있다. 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첫째, 허용보조금 중심으로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둘째, 보조금운용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특정성을 배제하며, 셋째,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그 운용을 개선하여야 하고, 넷째,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섯째, 중소기업지원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유진수), 농산물, 65면이하, 우리의 대응방안

개도국지위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조금감축에 관한 제반 의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임. 이에 따라 농업,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직·간접 지원조치(즉 농업에 대한 투자보조, 농업투입재보조 등)의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지원과 국내운송비 지원에 대한 감축의무도 면제됨.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관세화는 농업생산의 89~90%를 차지하는 품목들에 대한 시장개방을 초래함. 이는 영세적이고 취약한 생산기반을 가진 국내농업으로 하여금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게 만듦으로써 상당한 대내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쇠고기 등 15개 품목의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잉여(부가

가치) 감소액은 1995~2001년 기간동안 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류 분야에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GN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7.8%에서 2001년에 2.8%로 떨어지고,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992년에 42억 6천만달러에서 2001년에 130억 3천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국내농업보조금이 감축대상이 됨으로서 기존 지원정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정책선택의 폭이 제한될 것임. 수확기에 산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단정기에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수매제도는 이중곡가제도이므로 보조금 감축대상임. 또한 농가에 대한 저리융자나 농업기계화 지원 등이 감축될 경우, 농민 스스로의 농업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고(농업의 투자이익율 6~8%), 생산성증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업기계화의 작업이 정체될 것임. 특히 쌀에 대한 국내보조는 우리나라 전체보조의 85% (198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한국농업의 완전한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의 수출증대 또한 필요한데, 수출보조금의 감축으로 수출시장의 개척도 더욱 어려워질 것임. 또한 농업부문의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 자본시설 등은 부문간의 유통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문의 시장개방은 자원의 유희화와 실업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특히 농업종사자의 교육수준·연령 등을 감안할 때 타부문으로의 전업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잉여의 증가를 가져오고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가질 것임.

-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장기적인 구조조정, 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화 and 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마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우리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와 인력이 적게 들고 기술·자본집약적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국제분업화에 알맞는 방향으로 작목을 조정하고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우리농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작목체계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는 쌀, 쇠고기 등 NTC품목은 영농규모의 확대, 영농기계화와 함께 품질을 고급화시켜 수입품과 차별화시키는 것이바람직함. 또한 97개 품목에 대해 가능한 국영무역과 부과금제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이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소득보상프로그램 개발, 취업훈련과 같은 이농·탈농 지원, 농가소득원의 확대와 농의소득 증대, 농촌지역의 생활 및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임. 농업에서 이탈하는 노령농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개방의 이익이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감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추곡수매제도, 양곡관리제도, 농업보조금제도 등 관계법령 및 제도를 UR협상결과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이 때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더라도 품목간 감축을 조정 등을 통해 상당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효율적인 감축이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또한 시장개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입급증, 불량농산물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세계농산물의 가격변화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동식물 검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허용보조금을 활용하여 도로확충, 의료 및 교육지원, 탈농지원, 주택현대화 등 농어촌 생활개선, 농민연금제 및 재해보상제도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김동준, 보조금·상계조치 253면 이하

WTO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보다 신중한 상계조치 발동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허용보조금 범위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반영은 미약하였음.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 산업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됨. 허용보조금 및 상계가능보조금의 구분, 특히 그 관건이 될 특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보조금 운용의 대폭적 축소는 불가피할 것임. 그러나 본 협정에 의해 보조금의 개념이 명료화되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보조금 운용에 대해 각국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주요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 수단으로 남용해 온 관행이 개선될 경우 우리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국내적으로는 종래 특혜와 자원배분 왜곡의 소지가 있어온 정부의 직접적 지원 시책이 감소·조정됨으로써 기업의 체질개선 및 산업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부과사례도 없는 사예관세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현재 금지대상으로 되고 있는 수출증대나

국내생산품 사용증대를 위한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경과기간 중 점진적 축소가 바람직함.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산업시설투자자금·무역금융과 같은 금융지원과 수출손실준비금·외화획득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등 조세지원제도 부분의 개편이 불가피함. 그대신 본 협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수출보험·연불수출금융·관세환급제도·무역어음 제도 등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보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혜기준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특정성에 대한 시비의 여지를 줄여나가야 함. 특히 각종 기금조성을 통한 금융인센티브의 부여는 보조금 지급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특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개별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지원은 허용보조금에 속하지만, 타국에 불리한 효과가 있을 경우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보조금의 지급의 내역 및 상한선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아울러 정부는 기술혁신분야의 선정과 투자결정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중소기업 지원은 대체로 무역효과가 별로 없으며, 산업기반조성 및 경쟁축진을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WTO협정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의 비특정성이나 또는 허용보조금의 조건에 합치한다는 보장은 없음. 특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특히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를 목표로 하는 보조금인 유망중소기업지원 및 수입대체용 소재·부품업체 운전자금 등은 금지보조금의 마찰소지가 있으므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현행 중소기업 지원은 복잡하고 중복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허용보조금 체계에 이를 맞추어 이를 대폭 재정비하여야 함. 특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등을 기술개발자금으로 흡수하여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반영이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행 우리나라 산업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출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더욱 제약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증대나 업종전문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

○ 서헌제, 시장개방과 법제개편,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제4회 공개토론회, 법과 사회 제10호 (1994년 하반기), 42면 이하, UR협정의 타결에 따른 법령의 정비, 농수산물 협정과 법령정비

농수산물관련 보조금감축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수매제도, 가격안정제도, 정책자금 (영농자금)의 저리공급, 농기계공급보조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원제도에 대하여는 이들이 농산물협정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그 폐지나 감축 또는 다른 지원대책으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지원제도들이 보조금협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보조금이라 하여도 그 폐지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8년)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쓸데 없는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용어를 가급적 협정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으로 고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농어촌재해대책법, 농조육성법, 종축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지력증진법, 잠업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수출진흥법상의 수출보조용어를 삭제하고 사업내용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선에서 법령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 서헌제, 시장개방과 법제개편,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제4회 공개토론회, 법과 사회 제10호 (1994년 하반기), 42면 이하, UR협정의 타결에 따른 법령의 정비, 보조금·상계관세협정과 산업지원법제의 개편

우리의 산업지원제도는 지난 30년간 단기간 내에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여왔지만 그 지원의 대상이나 수준·규모에 있어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어왔고 그에 따른 각종 특혜 시비나 정경유착 등 부작용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전반적인 행정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법제정비가 이루어져왔지만, UR보조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조금협정상의 허용보조금 중심으로 산업지원법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책은 경과기간중에 점차적으로 이를 축소하여 폐지해나아가고, 계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인정되는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대체 수단을 개발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이나 환경지원 등은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활용방안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산업지원에서 특정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혜 기준 및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특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에 대한 현행의 편중된 지원방식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산업지원을 전반적으로 감축하고 그것의 한시적 성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지원제도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이고 보조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을 과도하게 할 경우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적어질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넷째, 국가의 지원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별 기업 또는 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술과 물류비용인바, 이러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특혜성 정책금융을 축소하여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금융의 자율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지원수단은 거의 전적으로 세제와 금융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나 이제부터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의 개발, 기초과학 연구나 응용과학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저개발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 환경보호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UR보조금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산업지원으로서 기술지원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국제기술규범의 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도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기술인프라)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임재주, UR농산물협상 타결에 대응하는 국내농업 지원대책, 입법조사월보, 94.1·2월호, 103면 이하

국내보조의 감축 : UR협정안에 따르면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과 관련이 없는 허용대상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금에 대해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감축율을 살펴보면 개도국은 10년간 13.3%이며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검토할 사항을 살펴보면, 수매제도, 가격안정대제도, 정책자금(영농자금)저리공급, 농기계공급보조지원 등이 허용대상보조에 포함되는 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며 UR협상의 타결내용에 맞게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하겠다.

○ 류환민,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른 국내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입법조사월보, 94.3월호

허용보조금 중심의 산업지원제도 개편 : 현재 금지대상으로 되고 있는 수출증대나 국내생산품 사용증대를 위한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를 감소·철폐하거나 상계가능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계가능보조금도 특정성이 없거나 무역효과가 작은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대체목적의 국산시설재에 대한 차별적 혜택부여는 그 시정이 필요하며, 산업합리화지원이나, 투자촉진지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금운용의 객관성 제고 및 특정성 배제 : 국내보조금의 운용에 있어 수혜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특정성에 대한 시비의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한다. 즉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에 대하여 비특정적 지원제도의 활용, 객관적·중립적 기준의 설정, 보조금제도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소액보조금제도의 이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협정상의 의무등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의 축소 및 운용개선 : 정책금융중 금리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재정정책자금의 운용은 일반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자금으로 흡수하여 보조금적 성격을 가급적 희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중복투자 등 운영상 문제소지가 많은 각종 기금을 통폐합, 담당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초과자금수요가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자금가용성 증대에 대한 특혜시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율화를 통하여 정책금융 자체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 지원체제 정비 : 개별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지원

은 허용보조금에 속하지만, 타국에 불리한 효과가 있을 경우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보조금 지급의 내역 및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술혁신분야의 선정과 투자결정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상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체제 정비 : 중소기업지원은 대체적으로 무역효과가 별로 없으며, 산업기반조성 및 경쟁촉진을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UR협정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의 비특정성이나 또는 허용보조금의 조건에 선행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특정산업의 경쟁방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지급, 특히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를 목표로 하는 보조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지원은 복잡하고 중복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허용보조금 체계에 맞추어 이를 대폭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등을 기술개발자금으로 흡수하여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도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손상호, 주요 선진국의 보조금 현황 및 국내 산업지원제도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1994.6

- 현행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수준은 GNP 대비 1.84%로서 OECD 국가들의 제조업 지원 평균 보조금율인 2.5%나 EU 국가들의 전체 산업지원 평균 보조금율인 2%에 비해 높지 않다. 보조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상지원액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저리융자의 경우는 융자금리와 차입금 평균이자율과의 차이에 대출잔액을 곱하여 구한다. 대출잔액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고 연간 지원실적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원실적에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곱합뒤 2로 나눔으로써 대출금의 평균잔액을 구하여 사용한다. 조세지원의 경우는 세액감면액이 무상지원에 해당된다. 금융지원의 보조금율은 1993년 기준 경상 GDP대비 0.88% (2조 3209억원에 해당)가 되며, 조세지원은 1991년 기준 경상 GDP대비 0.96% (2조 793억원에 해당)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금율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 영국보다는 높으나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보다는 낮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보조금율이 기대한 것보다도 크지 않은 이유는, 주요 선진국이 무상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저리융자 형태의 보조금이 주된 형태이며 금리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금융의 금리가 완전 자유화되면 보조금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정부재정에 기초한 부상지원 형태의 보조금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금융지원 자금중 15.5%에 해당되는 3.605억원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며, 35%인 8.094억원이 상계가능보조금이므로 전체 금융지원 자금의 절반 가량(49.5%)이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양상은 조세지원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조세지원 총액(2조 793억원)중 15.1%에 해당되는 금액이 금지보조금이며, 상계가능보조금은 25.5% 허용보조금은 40.3%이다. 1993년 기준 제조업과 자원·에너지 부문에 금융지원을 통해 공여된 보조금액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자원·에너지 부문의 지원 비중(38.8%)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투자촉진 지원(22%)이며 공업배치지원이 가장 작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때 우리나라의 보조금 규모는 결코 크지 않다.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금까지 재정보다도 금융에 주로 의존하여 저리용자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규모가 보조금액으로 혼동되기 쉬웠다는 점과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에 의해 모든 보조금이 공여되므로 외형적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쉽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자금의 비중을 늘리고, 지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발하며, 무상지원 형태의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지원제도 : 기술개발지원제도중 정부출연사업은 지원대상을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으로 제한하여 사전에 WTO에 통보한 후 전략기술개발을 목표로 적극 활용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용자는 주로 상업화단계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한다. 향후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가 자유화될지라도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저리용자 형태의 지원은 잔존될 수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지원세제는 대부분 허용보조금이거나 약간의 수정후 허용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큰 문제가 안된다.

- 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산업 구조조정지원제도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경쟁력이 하락하는 산업은 타 교역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으므로 사양산업에 대한 분류는 가능한 객관화하여 현 제도를 존속시키도록 한다. 단 사양산업의 영업손실을 직접 보전시키면 심각한 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첨단산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은 특정성을 배제할 수 있다. 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도 외산기자재에 대한 차별조항만 제거하면 대부분 상계가능보조금이다.

- 투자촉진 지원제도 : 외자도입에 의거하여 저리지원이 가능한 외화대출제도와 외화표시국산기계 구입자금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산기계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이 금지보조금이므로 이를 대신하여 기계산업에 대한 생산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리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사라지면 기업에 주는 혜택이 없어지므로 저리융자형태의 지원은 많은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부 투자촉진지원세제는 외산기자재에 대한 차별조항만 제거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 공업의 균형배치 관련제도 : 공업의 균형배치 관련제도는 대부분 허용보조금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

- 중소기업지원제도 : 중소기업지원제도는 대부분 허용보조금이다. 일부 금융지원제도는 국산기자재사용 의무조항과 수출조건부 규정을 제거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일부 세제도 외산기자재 구입에 대한 차별조항을 제거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 수출지원제도 : 무역금융은 융자금리의 자유화와 일반 대출을 통한 시장기능을 하루빨리 도입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의 운전자금지원을 원활히 해주고 한은재할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직접세의 감면, 공제, 이연제도들은 금지보조금이므로 철폐되어야 하나, 간접세와 관세의 감면 및 환급은 초과감면, 초과환급이 아닌 이상 문제가 안된다.

- 자원에너지 지원제도 : 자원·에너지 지원제도는 대부분 상계가능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으로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

○ 김준동,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 간접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12

- 수출금융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무역금융과 수출산업설비금융은 일반은행 대출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면에서는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수출실적에 따른 자금배분, 한국은행의 재할인 지원, 수입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차별 융자단가 적용, 수혜기업의 수출성과에 대한 의무조항 부여 등으로 인해 마찰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어음제도를 활성화하거나 현행 자금별 융자방식을 포괄금융제도로 전환하는 등

의 개선책의 검토와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출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연불수출금융은 GATT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수출신용으로서 연불수출금융조건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금리 및 용자기간 등의 조건(OECD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불금융의 최장 상환기간을 중·고소득국의 경우 OECD 가이드라인에 비해 장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용자조건 중 외자재 의존율 또는 국산기자재율 요구조항은 UR이 타결될 경우 국산품 사용을 촉진하거나 수입억제를 위한 조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의 지원확대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선진국 등과의 마찰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동지원조건을 국제적 규범(OECD 가이드라인 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연불수출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실물부문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는 현행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원대책품목을 일반적인 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화 하고, 수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연불수출금융 제공시 수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대규모 자본재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장기 연불수출금융 지원체제를 용자규모별 상환기간을 세분화하고 채권보전방법을 완하하는 등 중소규모 자본재 거래에 적합하게 용자조건을 설정하는 지원책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적수출금융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양허성 tied aid 재원인 War Chest와 같은 특별수출신용기금을 설정하여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혼합신용방식으로 공여하거나 자본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역외금융, Forfaiting, 수출리스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자본재 수출시장의 금융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불수출금융 소요재원의 재정자금 조달비율을 현행 35%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80-90% 이상으로 높이고, 대외경제협력자금과의 연계지원체제를 수립하여 연불수출금융업무의 보환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수출지원 조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조세제도로는 ①수출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목적

으로 함. 그 내용은 수출액의 1% 또는 수출소득의 50%중 적은금액 손금산입, 2년거치 3년분할 환입임.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됨), ②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외 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사업을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외화수입금액의 2% 소득공제임.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됨), ③해외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건설등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해외사업발생 외화수입금액의 2% 손금산입임.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됨), ④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손금산입 (해외건설등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외화수입금액의 1% 손금산입 2년거치 3년분할임.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됨),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외화획득사업 영위자의 조세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국내외 외화획득사업을 위한 접대비지출 전액의 손금인정임.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됨), ⑥외화획득사업용 장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제조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중소수출기업의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일반감가상각범위액 30% 내에서 특별감가상각인정, 손금산입임.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됨), ⑦수출용 원자재관세환급 (수출용원자재 수입시부과된 관세의 환급을 통하여 능률적 수출 지원과 교역증대도모를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수입한 수출원자재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용될 경우 관세화급임. 보조금 해당없음), ⑧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재, 국외제공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용역 공급자를 대상으로 함. 그 내용은 공급가액에 대해 1% 세율적용, 공급받을 때 기납부한 매입세액 조기환급임. 보조금 해당없음), ⑨특별소비세 면제 (수출상품 및 주한외국군 납품을 목적으로 함. 그 내용은 특별소비세 면제임. 보조금 해당없음) ⑩주세면제 (수출 및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되는 주류를 대상으로 함. 그 내용은 주세면제임. 보조금 해당없음)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불지원 조세제도는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준비금 손금 산입 제도는 거치기간중 무이자 융자 효과를 가지므로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관세 환급 등의 간접세 지원을 제외한 기타 조세지원제도도 직접세의 감면효과가 있으므로 금지보조금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접세 형태의 지원제도는 점차 축소시키거나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간접세 지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관세환급제도의 경우에는 초과환급이 발생한 때 초과분을 재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보조금 요건에 해당되지 안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규범에의 저촉여부를 우려할 필요가 없는 관세환급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서류의 단

순화, 표준화를 통한 환급절차의 간소화와 환급소요기간의 단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임주영, UR타결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 세미나 자료, 1994.4.

- UR 보조금협정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은 UR이 정한 규범을 지키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지원의 급속한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해당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 UR협정에 따라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는 감면자원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함.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세부담의 불평등심화, 막대한 세수의 누설, 세제의 복잡화, 조세의 시장중립성 상실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함.

- 국산우대세율의 폐지 : 현행 지원제도는 국산기자재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외산기자재를 이용한 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키므로 UR협정상 금지됨. 금지보조금 중 외화획득지원제도를 제외한 7종의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이에 속하며, 이들은 국산우대조항만 없앤다면 상계가능보조금 혹은 허용보조금으로 전환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 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국산우대를 고수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폐지하여 제도를 존치시키고 나아가 확충·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기계장치산업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국산기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보조금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론적으로 우리기계장치산업도 외국산들과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아기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정부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이를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업종제한의 폐지 : 현행 지원제도는 제조업을 국부의 근본이라고 보고 지원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UR협정상 타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상계조치토록 되어있음. 상계가능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와같은 업종제한 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면 특정성이 없어져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함. 현재 제조업은 직접세감면 실적의

50%정도를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제조업의 발전이 우리경제를 성장시켜온 원동력이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제국들의 사례를 볼 때 제조업의 보호·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여야 하며 특정산업의 낙후는 제조업을 포함한 여타 산업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됨 (예 : 유통산업의 낙후). 따라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자원을 유인하는 기능을 하는 조세지원의 경우 업종제한을 과감히 폐지하여 전산업에 지원효과가 골고루 미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불필요한 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감면자원의 낭비와 세수의 과도한 누실 및 해당산업의 이상과열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별다른 유인효과도 없이 막대한 세수만 누실되고 있으므로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도세 감면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 악용되어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원의 전반적 감축과 한시성 확보 : 단시일내에 지원이 축소·폐지될 경우 우리산업이 처할 어려움을 감한하여 지원제도를 가능한한 일정기간동안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축소되어야 함. 조세지원은 그 속성한 세부담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저해하며 세수의 누실을 초래함. 따라서 가능한한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유인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그러나 조세지원은 자금지원과는 달리 규모의 파악 및 통제가 어려워 경제성장과정에서 별다른 견제없이 규모·대상·수준이 팽창되어 왔는데 그 축소조정은 우리 세계의 당면과제임. 이는 정부의 지원을 축소해나가고 시장기구의 자율성을 확충해 나간다는 정책방향과도 일치함. 지원제도가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시적 운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 조감법을 5년 시한의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 5년마다 연장운동되므로 사실상 한시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따라서 감면의 기득권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UR협정에 의해 폐지되어야 하는 외화획득지원제도는 항구화된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예임.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지원제도별로 일몰법(Sun-Set Law)체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이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 지원의 규모·대상·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기술·인력개발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UR협정에서도 일정기준하에 허용되는 보조금이므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상당수의 지원제도들이 금지 혹은 규제대상이 되어 해당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현실하에서는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현행 지원제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개발세액공제제도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확충해야 함. 현재 정책당국은 기술개발 투자의 경상지출분에 대한 지원이 유인효과가 낮을뿐더러 항시 일정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증가지출분에 대한 지원만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상지출분에 대한 지원이 자본비용비용감소에 미치는 실질효과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UR에 의하여 허용된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원제도를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경상지출분에 대한 지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국산우대조향을 없애서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시켜야 함. 국산과 외산에 대한 차등지원의 규모도 크지 않으며 외산투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국산우대조향을 폐지하여 제도를 존속시켜야 함.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제도가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기술개발성과의 확실성을 제고하여 주는 별도의 제도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들에 비하여 훨씬 큰 폭으로 세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개발투자는 대규모의 자본투입이 필요한 반면 투자수익회임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설비투자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원제도는 국산우대조향과 특정성으로 인하여 모두 금지 혹은 상계가능의 규제대상 보조금이 되고 있는데 이 조향들을 제거하여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국산에만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서 설비투자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전환시켜야 함.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도 국산우대 조항을 없애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속성상 불가피하게 특정성이 내포되어 상계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강구되어야 함. 현행 감가상각제도의 상각율·내용년수·잔존가액을 대폭 수정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내용년수와 잔존가액을 낮추고 상각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투자재원 형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특정성없이 모든 산업이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어 UR규제에서 벗어나는 장점이 있음. 이 경우에 세수가 급속히 줄어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추정작업이 필요함.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조세지원은 실질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과 같이 매출·수익이 적어 세부담이 적은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조사대상 중소기업의 26.8% 정도만이 조세지원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직접세감면 실적에서 법인인 중소기업이 수혜받은 실적도 17%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지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율의 직접적인 인하가 보다 많은 대상이 폭 넓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임. 또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징수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여 형성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임. 재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하는 것은 UR협정에 의하여 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억제함. 대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줄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신용보증실적을 보면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0년 이후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명제 실시이후인 1993년에는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은 별로 증대되지 않아 신용보증운용배수가 1992년에는 12.4배에 이르러 추가보증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상 운용배수가 10이라는 가정하에서 만일 조세지원의 축소로 5천억원의 재원이 형성된다면 이를 신용보증 출자하여 5조원의 추가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형성된 재원을 재정투융자사업에 전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지금까지의 이차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자금의 가용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투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화획득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현행 외화획득제도 중 7종의 수출지원제도는 UR협정상 최우선 금지대상이므로 폐지가 불가피함. 이들은 그동안 정책당국

의 축소외지로 그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또한 우리 수출산업이 조세지원보다는 무역금융·연불수출금융·무역어음할인등 금융지원에 크게 의지하여 온 만큼 조세지원의 폐지는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수출산업은 UR타결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UR의 수혜자적인 입장임. 그러나 폐지는 단계적이고 공표된 일정에 의하여야 함. 수출증대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일정도 명백히 공고하여 기업의 적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 기타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규제대상지원제도인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지원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수의 누실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과감히 폐지하여야 함. 1980년대말 이래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증자시 이 제도가 크게 활용되어 막대한 세수의 누실을 초래하여 왔으나, 분석결과 증자소득공제의 한계자기자본비용 인하효과는 2%도 안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됨. 최근 세제개편시 지원대상 업종에서 금융산업을 배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특정성에 의하여 상계가능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세수를 추가확보하여 증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타인자본경영의 비용인 이자에 비하여 자기자본경영의 대가인 배당소득이 현행 세제에서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종합소득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별도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규제대상으로 분류되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제도는 우리 경제여건상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업종 제한을 없애서 전산업에 고루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하나, 지원의 내용이 기업통합과 사업전환시 양도세감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야기시킬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는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위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농업을 이제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농특세도 그 사용용도를 하루빨리 구체화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류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 기자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제도도 그 실효성을 재평가하여 정비해야 할 것임.

○ 이기영, UR타결에 따른 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 세미나 자료, 1994.4.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UR보조금 협정에 따라 명백히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폐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 나감. 철폐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과기간을 활용하여 점진적·단계적 축소방식을 채택하고, 대체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함.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제도는 비특정적 지원제도의 활용, 객관적·중립적 기준의 설정 등으로 특정성을 제거함으로써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거나 현행체제를 유지함.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UR보조금 협정에서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조금을 활용하여 대체수단을 개발함.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지원제도는 아직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새로이 개발하여야 할 것임. 수출지원금융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향후 계속 문제가 되므로 일반금융과 동등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확대함. 국산기계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은 일반기계구입 자금으로 전환하여 수입대체자금으로서의 특정성을 제거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율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금리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금리보조보다는 가용도(availability) 위주로 유지하고, 재원조달은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은행 자체자금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자금의 비중을 확대해 감.

- 수출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향후 수출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단기금융제도 경우 현행 체제내에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수출산업설비금융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국제적으로 그 사요이 허용되는 연불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무역금융은 무역업체의 자금가용성을 높여 수출촉진의 효과가 있으며 상당수의 무역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원효과가 매우 큰 단기 수출금융제도로서 1988년 계열그룹 대기업에 대한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상업어음재할인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전형적인 '단기' 유동성 공급수단으로서 일반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화관리에의 부담이 적은 편임.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마찰의 소지가 있으나, 당분간 이 제도를 개선하여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무역금융을 준상업어음화하여 상업어음과 함께 총액한도 재할인 대상

으로 하되, 재할인의존도의 축소에 대비하여 상업어음과 함께 표지어음화하여 은행의 일반매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표지어음의 업무취급을 현행의 단자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허용하며, 동 어음의 일반매출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진성어음의 소화와 유통을 촉진하도록 함. 수출산업설비자금은 중앙은행 취급 정책금융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1994.3.15)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 등과 통합되어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으로 운용되면서 그 재원의 반을 재정으로 부터 지원 받는 체제로 전환됨. 그러나 수출 및 수입대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 선정 기준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설비투자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연불수출금융은 GATT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수출신용으로서 융자조건이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향후 연불수출금융의 지원 확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을 국제적 규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도전금융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금리를 적용하고, 연불기간을 수출대상국별로 규정하고, 중·고소득국에 대한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융자조건 중 원자재 의존률 또는 국산기자재율 요구조항 등을 수입억제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됨. 연불수출금융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연불수출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실물부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원대상종목을 일반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화하고, 수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이 연불수출금융 제공시 수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대규모 자본재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체제를 중소기업 규모 자본재 거래에도 적합하게 융자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불수출 금융제도 활용도를 제고하며, 소요재원의 재정자금 의존도를 제고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과의 연계지원체제를 수립하여 연불수출금융업무의 보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수출보험은 금융 및 세제상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따른 한계성을 극복하는 대체수단으로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로서, 보험인수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수출활동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음.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율은 3%내외의 수준으로,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수출보험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보험기금 적립액의 확충이 필요하며, 기금확대는 정부출연금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보험요율, 보상률 등을 차등화하고, 포괄 보험제도의 활성화, 보험요율체계의 개편, 신보험상품의 개발 및 도입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중소기업지원 금융제도 : UR 타결에 따라 금지 혹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일부 자금의 특정성을 제거하여 허용보조금으로 전환됨.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자금중 국산기계구입자금과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시설자금은 일반시설자금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은 일반운전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유망 중소기업 육성제도 중 소재·부품 국산개발 및 수출지원을 일반적인 유망중소기업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성을 없애도록 함.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현행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술개발자금으로 전환함.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인 중소소재·부품 운전자금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야 할 것임. UR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요인이외에도,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및 금융시장 개방 등 일련의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상의 애로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특히 신용과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보다 더 큰 문제로 판단됨. 따라서 신용대출의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금융기관과의 연계보증제도 도입, 보증료의 차등적용, 신용평가기능의 확충 등 신용보증업무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대출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설정,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율을 반영, 부실거래자에 대한 제제강화,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기업정보 공시제도의 확충,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육성 등 제도 및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됨.

기술개발지원제도 : 향후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

속 증대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임. UR 협정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투자의 특성상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자금을 활용하여 특수은행(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과 정부의 직접출연에 의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자금의 성격상 전용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기술의 기술개발 단계별로 연계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제도의 종류는 많으나 수혜대상 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임. 따라서 정부는 직접출연을 통해 유사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산업합리화 및 투자촉진지원제도 : 산업은행의 대출제도 가운데 기계설비 자금, 신규개발기계구입자금 등 국산기계의 수요를 장려하는 제도는 기계구입자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발전소 건설 지원을 위해 대출대상을 한국전력으로 한정된 산업은행의 전원개발자금, 석재산업자금, 공업발전기금 중 합리화사업자금 등은 자원의 특정성이 있어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나 현행의 체제를 유지 혹은 허용보조금 형태로 전환할 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첨단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첨단사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양산업에 대한 합리화지원중 영업손실을 위한 지원은 1회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적인 정책금융관리체제의 정비 : 융자성 기금을 포함한 재정융자와 금융기관의 금융자금을 의한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운용하고 그 적용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함. 재특과 융자성 기금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규모는 금융기관에 의한 정책은행 및 공급액의 60% 수준(1992년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과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개발기관 포함)의 정책자금 간에 영역구분 기준이 애매함. 통화증발에 미치는 효과를 보더라도 재정융자는 통화금융기관 밖의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므로 통화에 중립적인 반면, 한은 재할인대상 정책금융의 경우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음. 또한 융자성 기금 등에 의한 재정융자와 금융자금을 의한 정책금융간에는 융자조건이나 특정부문 우대지원면에서 차별적 기준이 없음. 정책금융의 문제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책성 신용공급이라는 협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신용행위라는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지정과 금융간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현행 산업지원 금융제도는 종류가 많고 동일한 목적의 자원금융이 과도하게 다기화되어 있어 다부문·소액지원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주체가 금융기관·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자금이라도 지원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소액으로 중복·다기화되어 있어 지원금융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등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많은 기금의 경우 특정 제도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이 중복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대한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기술개발관련 중소기업금융의 경우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은행의 기술창업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자금, 기술개발지원기관의 신기술사업지원자금 등과 공업발전기금의 산업기술향상자금, 국민투자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석유사업기금의 산업기술향상자금 등 및 국산기계구입지원을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국산기계구입자금, 산업은행의 기계설비자금 및 신규개발기계구입자금,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지원자금의 국산기계구입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및 중소기업소재·부품지원자금중 국산기계구입자금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에서 두드러지는데, 정부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체제를 창업, 설비투자, 기술 및 인력개발 등의 기능별로 단순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유사한 중소기업자금의 융자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의 조달과 배분 및 정책금융의 전달체제 정비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단일의 주체가 관장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정책금융조정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임.

○ 송중국·박용태, UR협정 타결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기술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제도

- 연구보조금 지급의 한도 : 1992년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G7사업)의 11개 사업에서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차세대반도체기반기술(46.8%), 고선명 TV연구(41.1%), 신의약·신농약연구(50.5%), 첨단생산시스템

연구(51.1%), 첨단소재연구(58.2%), 차세대 자동차연구(48.8%), 신기능생물소재연구(51.7%), 환경공학연구(70.4%), 신에너지연구(72.8%), 차세대 원자로연구(19.2%),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10.4%)등으로 나타난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공통애로기술 및 요소기술개발(57%), 첨단산업기술개발(20%), 중소기업기술지원(74%), 국제공동기술개발(100%), 대일의존핵심기술개발(52%), 기술개발기획평가(100%)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 허용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공학연구가 70.4%, 신에너지연구가 72.8%로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활동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그 한도가 62.5%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사업에 있어서 민간의 연구비부담에 대한 정부연구개발기금에 의한 금융지원도 있어, 이 금융지원에 대한 혜택도 고려하여 실제 개발 프로젝트의 총 정부지원율은 위에서 산출한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므로 지원비율의 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가 출연한 금액을 기술사용료로 징수한다고 하나, 1993. 2월 현재 기술료 징수예정이 360억원에 이르나 징수된 금액은 92억원에 불과하고 있어 실제 상쇄효과는 의문시 된다.

- 연구개발 단계별 내용 : 우루과이협정 연구개발보조금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연구와 경쟁전단계의 연구로 구분하여 정부 보조금지급 한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연구개발사업지침에 의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된 11개사업의 개별 프로젝트를 우루과이협정에서 분류한 두가지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 우루과이협정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이지만, 기업화·상업화할 목적의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특정성이 없도록 개선해야겠다. 즉 광대역 ISDN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1년까지 4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ATM교환기개발·통신단말기개발 등 중과제의 내용이 상업적 제품개발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소될 여지가 있다. 과제들의 프로젝트별 연구내용과 목표를 보면 기초연구, 산업연구, 시작품 제작 등 혹은 경쟁전개발활동의 단계를 넘는 연구사업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부담 허용비율의 적용에 신중이 요구되며 제품개발과제의 경우 지원허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공업발전법 제13조) :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과제, 수출촉진, 수입대체 또는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기술

과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필요기술 과제, 유망 중소기업 기술 지원 과제, 선도적 핵심산업기술 과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기술조사 또는 기술평가 과제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참여 기업수 및 중소·대기업의 형태에 따라 총개발사업비의 2/3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정부주도의 과제인 경우 100%까지 지원한다. 즉,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거나 국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이며, 중소기업이 2이상이고 참여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며, 그 외는 총사업비의 1/2까지 지급한다. 대기업이 주관기관이고 중소기업이 2이상이고 참여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1/2, 그외는 2/5까지 지원한다. 이들 사업의 과제별 기술개발비 지출실적('87년 ~ '92년)을 보면, 공통애로기술 및 요소기술개발과제는 정부부담이 1,722억원(57.0%) 민간부담이 1,301(43.0%)억원, 첨단산업기술개발 과제는 정부 531억원(20.2%), 민간 2,098억원(79.8%), 중소기업기술지원과제는 정부 102억원(73.9%) 민간 36억원(26.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 대일의존 핵심기술개발사업 정부 58억원(52.7%), 민간 52억원(47.2%), 기술개발기획평가는 정부가 26억원(100%)을 지출하고 있다. 공기반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연구결과의 평가가 불량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각 연구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이 과제의 내용에 따라 상기 규정의 지원형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과제내용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 먼저 체신부의 기술개발자금출연사업을 살펴보면,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통신기기분야, 컴퓨터 및 S/W분야, 반도체 분야, 통신부품분야, Data Base분야 등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한국통신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에 체신부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동 사업은 기업 및 연구소의 공동기술개발과제와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가 우선지원대상이 되며, 총개발사업비의 80%까지 출연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자금의 종류는 체신부가 소관부처이고 전자통신연구소가 관리를 하는 체신부기술개발자금과 상공부 자원부가 주무부처이고 한국전력기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한국전력기술개발자금이 있다.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 공동연구를 우대하고, 연구비용의 80%까지를

지원해 준다 (단, 정부주도 과제는 100% 지원). 이들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우루과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제품화 단계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루과이협정에서 연구개발 내용별로 허용하는 보조금의 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이 산업연구나 경쟁전개발활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개발분야라는 특정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형태를 특정성이 없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제도는 '93년도 지원 계획이 총 1,040억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지원에서 대상기술과 지원내용 등을 보면 우선 상공자원부가 주관하는 공업발전기금에서 신제품, 신소재, 첨단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연 이자율 6.5%로 2년거치 5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로 융자해 주고 있다(첨단산업은 제한없음).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도 대출조건은 공업발전기금과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은 연간 이자율 8%에 3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를 융자해 주며, 산업은행의 첨단산업지원 및 기술개발자금은 기술개발, 기술도입, 개발기술기업화, 설비구입 등에 연 이자율 9.0~10.0%에 8년 이내 (3년거치 포함)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의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시중의 금리보다 낮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의 범주에 들며, 지원대상이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단계의 연구개발인 경우 특정성과 관계없이 총연구비의 75%,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이외의 금융지원은 보조금의 성격에 특정성이 있느냐에 따라 상계조치를 받게 되므로 경제적 객관성의 기준과 적용의 공정성에 따른 지원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제도도 보조금에 해당하나 제품 공정개발연구 등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년리 1%로 15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보증료의 경우 특정성이 없으며, 전체 제품생산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계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개선방향 :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은 연구비의 출연과 융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금전입액의 대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94년의 경우 59.9%에 달함), 기금자체의 속성상 융자의 비중이 출연보다 훨씬 높고, '94년의 경우 융자의 비중이 전체 지원금의 80%를 상회하고 있다(80.9%). 그런데 기금의 운용주체가 체신부장관이므로 이 기금을 통한 지원은 보조금이고 운용의 목적도 정보통신에 관한 연

구개발의 촉진 및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등 정보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므로 특정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비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연구내용과 지원한도를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연구가 가능한 과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 한국통신에서 바로 연구소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익자와 지원주체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력양성, 정보문화 확산, 정책연구 등 정보통신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은 낮은 편이고('94년 전체 출연금의 12%), 설비구입지원사업 및 국산전산기 보급확대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은 편이다('94년의 경우 전체 용자금의 30%선). 금융지원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간 6.5%(중소기업은 6.0%)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의 금융지원은 문제가 없으나 제품화나 그 밖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는 특정성에 해당되므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이외의 지원은 경제적 성격과 공평한 적용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제도적 규정의 개선도 따라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기금의 용도) 제1호에서 실용화사업은 UR협정에서 허용되는 산업연구나 경쟁전단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므로 삭제하고 이 사업의 지원은 특정성이 없는 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한국통신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위주의 연구개발에서 핵심요소기술 개발위주로 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제2호의 정보통신설비 현대화사업은 UR협정에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간접기반시설(S.O.C Infrastructure)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원결정금액 결정시 비목별 신청기준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술인증획득비”, “시험생산설비비”는 UR보조금협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목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80%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결정금액을 최고 75%까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 운용상 실질적인 혜택이 우루과이협정의 규정과 상반되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제도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지 말고 한국통신이나 사업자가 직접 지원해 주는 형식을 띠어 정부의 보조금에서 제외되도록 하거나 특정성이 없는 객관적인 보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용자 규모는 100억원이고 연 이자율 6.5%에 5년(2년거치)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은 총용자 규모는 200억원이고 연 이자율 6.5%에 용자기간이 5년(2년거치)이며, 국내 주전산기 보급 확대사업에는 총용자규모는 240억원이고 연 이자율 6.5%에 용자기간을 5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특정성의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시중 이자율과의 차이에 의한 실질 수혜금이 제품가격의 2%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한국통신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직접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선 : 최근 1993년 12월 정부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혁신관련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혁신관련 정부의 지원제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지원제도는 UR협정의 특정성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기업의 운용비용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장기적 해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기적 일회성 보조는 제외함), 기타 제한된 수의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 특정기업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업이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당국의 재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특정지역의 기업에만 수혜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조치가능성이 있는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개발금융지원의 경우 경쟁전개발단계 이후의 보조금은 시중금리와 차이가 현저한 경우 수혜자인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허용보조금한도의 초과 그리고 개발 및 기업화의 지원에 있어서는 아래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 즉, 상기 UR보조금에 속하는 보조금의 사용이 협정체약국의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거나, 직간접적으로 협정체약국에 돌아갈 혜택을 없애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협정체약국들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로서 한 제품의 추가가격보조가(최근 12개월 간 물품판매가격)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의 운용비용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장기적 해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기적 일회성 보조는 제외함), 직접적인 정부채무의 면제나 그 상환을 위한 보조금, 기타, 타협정체약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체 혹은 방해하는 보조금, 제3의 시장에서 타협정체약국의 수출을 대체 혹은 방해하는 보조금(매우 sensitive한 내용으로 피보조물의 시장점유율의 증가, 보조금이 없는 경우 감소하였을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불변하게 하거나

느린속도로 감소하는 경우 포함), 타협정체약국의 제품가격과 비교하여 피보조 물품이 동일시장에서 현저한 가격절하를 초래하거나, 가격인상 억제나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보조금, 피보조일차산품 혹은 상품의 지난 3년간의 평균 세계시장점유율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이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는 경우의 보조금, 특정성과 관련한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허용된 보조금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최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수혜경험이 거의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김은상,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0일자 제5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역제도 개편과 함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UR협정문에서는 도쿄라운드의 보조금코드와는 달리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및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허용되는 보조금의 범위를 R&D 환경 및 지역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금융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아닌 해외시장개척기금등 민간차원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UR협정하에서 예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연불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제도를 대폭 확충함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7.5%에 머물러 있는 수출보험활용률을 선진국수준인 20%대까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부재정에 의한 보험기금지원을 크게 확충함과 동시에 연불수출금융도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 둘째 통화관리상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의 값싼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 여건하에서는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영수제한이 국내유입시한을 늦출뿐 언젠가는 결국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그 영수제한만이라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무역어음 인수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확대시켜 수출금융지원 축소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세계국제화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발표한 94세계개혁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

재 수출손실준비금을 비롯한 13가지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중 그 절반이상 이 UR협정문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농특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그 인하효과가 상쇄되므로 추가로 법인세율을 2%인하함은 물론 이번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인하와 함께 즉시상각 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표 및 디자인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해외접대비와 국내접대비의 차별적용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대내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째 국내시장개방에 따라 중국 동남아등지로부터의 저가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제도를 개편해야할 것이다. 즉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규정등을 UR협정문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상 상공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독립적인 준가법기관으로 개편하여 급격한 수입증대에 따른 산업피해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섯째 WTO체제하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간접지원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있다. 21세기에 세계시장을 누빌 무역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전시공간의 확충, 그리고 자기상표 및 디자인의 국제화등 무역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차원의 금융·조세상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수출입관련 제한규정은 물론 각종 기술장벽과 위생·검역규제, 그리고 외국인투자제도등을 UR협정문에 일치시켜 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도 외국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각종 무역장벽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제3절 현행 보조금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개 관

보조금제도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금급여, 금융지원, 조세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 공공구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은

이상의 보조금을 모두 보조금제도의 정의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각 보조금 제도는 먼저 보조금제도와 관련된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평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 투영하여 그 상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각 보조금이 국제적 보조금관련 규정에 합당한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각 보조금제도는 그 보조금이 어느 산업분야에 공여되는가에 따라, 또 국가의 행정활동분야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협정상 「보조금」의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이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보조금인가 또는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인가, 아니면 허용되는 보조금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UR협정은 농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하여는 각각 「UR농업에관한협정」과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 별도의 협정서로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보조금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들 보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그 허용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행 보조금제도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우선 자금급여·금융지원·조세감면·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공공구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조금유형에 대하여 각 산업분야별로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있는 보조금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금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자금급여제도의 의의

자금급여제이란 “행정청이 기업 또는 개인 등 경제주체에게 해당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가재정중의 일부를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조금수혜자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구속을 요하며, 재정법적 및 보조금제도근거법 등에서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의 각종 측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하며 이를 위하

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 자금급여제도는 보조금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1조는 “정부의 자금의 직접지원 (무상지원)”을 보조금목록의 첫머리에 들고 있다.

나. UR 협정과 무관한 자금급여제도

(1) UR 협정과 무관한 자금급여제도의 범위

정부의 자금급여가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특정성」여부는 오직 기업 또는 산업체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만 판단하도록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2조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산업체가 아닌 자연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급여하는 보조금은 국제규범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제협정의 진전에 따라 그 개편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헌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적합성 및 필요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제상 UR협정과 무관한 자금급여제도

현행 법제상 운용되는 보조금제도중 아래의 보조금은 국제규범과 무관하며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목록에 해당된다.

첫째 과학기술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등에 대한 경비보조 (과학기술진흥법 제19조)
-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
- 기초과학연구인력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지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4조 제1항)
- 학술활동 및 연구에 대한 보조금지급 (학술진흥법 제13조)
- 기초과학학술단체 활동경비지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8조)
- 과학관 설립·운영경비의 일부보조 (과학관육성법 제17조)

- 원자력에 관한 우수한 특허발명을 한 자에 대한 상금교부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교부규정 제2조)
 -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한 장려금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교부규정 제3조)
 -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대한 출연금 지급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3조)
 -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지원 (해양개발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예컨대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등은 명백히 국제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된다.

다. 농림업관련 보조금제도

(1) 농림업관련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제규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최종결과로서 나타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은 「농업에 관한 협정」을 별도의 협정서로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장기목적이 합의된 기간 동안에 걸쳐 지속된 농업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농산물시장에서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농산물협정은 보조금제도 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감축약속을 이행계획서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¹⁾ 농산물협정의 적용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및 임

91)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도 적용배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동 협정 제5조는 “이 조는 농업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한 보조금이나, 농기구·농약·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은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UR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산물이며 기타 농축산물 관련품목인 원피, 생모피, 생사, 양모, 원면 등도 포함된다.

(2) 농산물협정상의 수출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

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수출보조금은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직접보조금,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및 국내운송비용지원금, 수출상품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등이 해당되는 바, 이들 수출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 6년간 보조혜택을 받는 물량이 1986년 - 1990년의 기준기간 수준의 64%와 79%를 초과하지 않도록 즉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감축하여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는 10년간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를 감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⁹²⁾

현행법제에 규정된 농수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여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을 들 수 있다.

- 농산물 수출한자에 대한 보조금 (농산물가격유지법 제7조)
 -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
 - 잠깐의 생산과 생사류 및 견직물의 소비촉진 또는 수출장려를 위한 장려금 (잠업법 제22조)
- 등을 들 수 있다.

(3) 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

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국내보조금은 “연구, 병충해방지, 유통·판매 촉진, 도로 등 하부구조지원 등 정부제공 일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생산량과 무관한 소득지원, 탈농·휴경보상,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 등 생산자 직접보조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은 허용보조금에 해당된다.

현행 법제에 규정된 농업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는

- 농수산특정연구사업관계자에 대한 출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0조)

92) 「농업에관한협정」 제9조 이하 참조.

- 농촌진흥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지도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농촌진흥법 제10조)
- 농촌진흥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규정 제2·3·5·6·13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의 보전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6조)
-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농수산물진흥기금에 대한 보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9조제2항)
- 농수산물소매업자등의 진흥을 위한 자금보조 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 전업농가에 대한 전업 장려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가에 대한 전업 장려금 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9조)
- 수입자유화 품목생산의 포기 또는 품목을 바꾸는 경우의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
-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
- 생산조정 또는 출하 조정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 및 하한가격 보장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
- 농지의 개발사업 및 영농비의 자금지원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9조)
- 농가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자금보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2조)
- 농가주택개량 사업용 자재 생산에 대한 보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3조)
- 농촌근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6조)
- 지력증진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자금보조 (지력증진법 제7조)
- 청원산림보호 직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제3조)
- 초지조성에 대한 자금보조 (초지법 제13조)
- 사료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보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산림법 제109조)
- 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보상 (산림법 제114조)

제 6 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기구구입에 대한 보조 (식물방역법 제24조)
 - 조수의 보호·번식에 관한 보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6조)
 - 종묘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보조 (종묘관리법 제17조)
 -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에 대한 보조 (주요농작물종자법 제19조)
 - 진도견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한 경비 보조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제9조)
- 등을 들 수 있다.

(4) 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

국내보조금중 허용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 6년간 금액기준 20%를 감축하여야 하며, 개도국은 10년간 금액기준 13.3%를 감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제에 규정된 국내보조금의 대상으로서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으로는

- 농업생산장려보조금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3조)
- 지정생산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6조)
- 지정 및 준지정품목 농수산물생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9조)
- 특정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 양곡의 관리와 수급조절관련 사업의 보조 (양곡관리법 제26조)
- 연초경작자에 대한 비료대금의 보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7조)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7조)
- 연초경작자에 대한 장려금 (담배사업법 제8조)
- 미강착유장려를 위한 보조금 교부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
- 인삼경작방법의 개량 또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장려금 또는 장려품지급 (인삼사업법 제9조)
-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인삼협동조합법 제7조)
- 인삼사업진흥을 위한 보조금 (인삼사업법 제20조)
- 잠업발전 도모를 위한 장려금 교부 (잠업법 제10조)
- 잠견출하장려금 (잠업법 제20조)
-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공업 등에 대한 보조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5조)

-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축산법 제57조)
- 축산사업 장려를 위한 보조금 (축산사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3·5·7·14조)
-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시설비 보조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0조)

라.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

(1)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의 의의 및 범위

「UR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제3조는 “UR농산물협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가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a) 부속서 I 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 (b)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 물품의 사용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은 금지된다. 회원국들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수출보조금은 동협약 부속서 I 에 제기된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을 포함하여 유일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지칭한다. 수출보조금은 보조금의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실제로 예상되는 수출, 또는 실제의 수출이나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출성과”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수출성과”(export performance)란 기본적으로 수출에 근거한 활동을 의미하며, 수출에 약간이라도 관계가 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즉,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동보조금을 수출보조금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수출실적에 기초하거나 또는 수출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수출보조금인 것이다.

이 경우 수출의무란 명시적으로 규정화된 조항은 물론 사실상 수출의무와 연결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내수와 수출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수출성과”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규모가 실질적인 수출규모와 반드시 비례하여야지만 수출보조금으로서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활동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을 공여하면 모두 수출보조금이 된다.

수출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수출보조금 예시목록」(동 협약 Annex I)에 12개의 중요한 유형들이 열거되어 있다.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기여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목록은 금지되는 수출보조금을 모두 망라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수출보조금에 대한 금지조항(제3.1.(a))에 “수출성과”라는 일반적인 조건을 삽입시키고 있다.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12가지의 재정적 기여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금급여의 유형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는 첫째로 정부가 수출성과에 따라서 기업이나 산업에 공여하는 직접보조금을 들 수 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직접 공여되고 수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직접보조금이란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직접적인 자금이전을 수단으로 하는 정부조치를 의미한다. 둘째로 외화보유제도나 수출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출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관행들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즉, 수출업자가 자신의 수입목적이나 제3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외화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제도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여되는 보조금이다. 즉, 국산품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산품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대체 등을 조건부로 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면 수입대체보조금이 된다. 동 조항은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는 바, 지금까지 동 조항을 운용한 사례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할 것이다. 다만, 교역재의 경우에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국산물품의 사용에 우대조치를 취하면 일응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법제상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띤 자금급여제도

현행 보조금에 관한 근거법령중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자금급여제도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행법제상 조사된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보유한 것

으로 보이는 보조금관련 법제로는

- 국산진흥 및 시장시설 확충에 대한 경비보조 (국산진흥및시장시설보조금 교부규칙 제1·2·3·4·5·8조)
 -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우선지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16조)
 -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
 - 건설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용보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 등을 들 수 있다.

마.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

(1) 상계가능보조금제도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의 의의 및 범위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하여 그 허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보조금이 「특정성」을 가지는 보조금인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보조금공여에 있어서 「특정성」(specifity)의 존재유무란 첫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특정조치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가」라는 사전적인 제한성의 문제와, 둘째 사후적으로 「대상기업들이 동 조치를 공평하게 이용하였는가」라는 실질적인 이용가능성(accessibility)의 문제를 말한다. 보조금이 “특정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의 공여로 인해 비록 타 체약국의 경제적 이익에 불리한 효과가 초래된다고 할지라도 쌍무간 또는 WTO 다자간채널을 통해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2조는 「특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이 공여기관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a)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어떤 기업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b)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당해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 수혜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면 특정성이 없다. 다만, 이들 기준 및 조

건은 입증 가능하도록 법령,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c) 상기 (a), (b)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제한된 수의 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어떤 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주된 사용, 어떤 기업에 대해 비례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공여, 보조금공여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에 의한 선별적인 방식.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제도가 집행되는 기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의 다양성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특정지역내에 위치하는 어떤 기업에 제한 되는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본 협약의 목적상 어떠한 수준의 정부에 의해서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결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WTO 체약국은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을 만족하는 보조금을 통하여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만약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공여한 결과 타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WTO 다자간 또는 쌍무적 채널을 통해 상계조치가 가능하다.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타 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대량으로 수출되면서 타 체약국의 국내산업이나 기업의 수익률을 저해시키면 상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타 체약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보조금은 사전에 감시되고 방지되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심해한 손상”이라는 개념은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에서 최초로 채택된 개념인 바, 여타와 상계가능보조금과는 달리 사전적인 감시기능이 도입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금지보조금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다만 “심각한 손상”에 관한 조항은 WTO 협정발효후 5년간 잠정 적용된 뒤에 재검토되며, 개도국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보조금은 타체약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더라도 제소가 가능하며, 피제소국은 동 보조금의 사용으로 인해 타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정체약국은 타체약국이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율이 5%를 초과하는 보조

금을 사용하거나,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공여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채무감면을 해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피제소국은 동 보조금의 공여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수입이 저해되거나, 제3국시장에서 타 계약국의 수출을 저해하거나, 가격인하, 가격억제 및 하락을 초래하거나, 또는 세계시장점유율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동 보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정계약국이 보조금을 공여함으로써 타 계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불리한 효과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피해국이 아니라 보조금공여국이 타 계약국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금지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각한 손상”의 존재여부에 대해 제소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물품가액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또는 특정물품에 대한 총보조율이 5%를 초과하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보조금액의 계산은 편의상 “수혜자의 수익개념”이 아닌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증거확보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혜자의 수익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예외적으로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초로 계산되는 “정부의 비용” 기준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특정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공여하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사양산업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영업손실보전용으로 자금을 직접 공여하는 경우에는 “심대한 손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특정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공여하면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비반복적인 1회의 조치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에 대한 추정이 배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조항은 특정기업에 대한 퇴출지원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하겠다.

넷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면제시켜 주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무상지원을 하는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채무를 감면시켜 주는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현행법제상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

현행 법령상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조금제도로는

- 장려사업자에 대한 경비보조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
-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광업법 제102조)
-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진흥위한 자금지원 (석탄사업법 제26·27조)
- 공업용역의 제조 또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염관리법 제8조)
-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 방산물자의 개발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기능사처우개선을 위한 장려금 지급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 원자재비축명령에 의한 원자재비축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8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산업은 농업에 관한 보조금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정산업인 수산업에관한 아래의 보조금은 그 규모 및 상대국의 피해정도에 따라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한 보조금 (수산업법 제87조)
- 수산업 또는 그 시설을 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3·4·5조)
- 수산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산진흥법 제13조)

바.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

(1) 허용보조금제도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의 의의와 범위

「특정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상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은 협약상 허용보조금이며, 이들 보조금은 공여후 타체약국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를 주게 되면 상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UR보조금·상계조치협약 제8조).

가) 특정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소가 행하는 「산업적 연구」의 경우에 정부가 연구비용의 75%까지, 상업화 이전 단계의 「경쟁전 개발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개발비용의 50%까지 무상지원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 경우 산업적연구(industrial research)란 신제품, 신공정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된 연구 또는 조사를 뜻한다.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이란 산업적 연구의 결과를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계획, 청사진 또는 디자인으로 전환하거나 상업적으로 즉시 이용될 수 없는 시제품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결국 판매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개발, 수정 및 개선에 이용하게 된다. 또한, 「경쟁전 개발활동」은 대체적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개념화, 디자인 및 최초의 시범, pilot project도 포함하나, 이와같은 계획들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전환 또는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제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기타의 작업을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비록 그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경쟁전 개발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지원제도가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지원의 허용범위는 두 종류의 활동이 허용하는 지원수준의 단순평균(62.5%)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동 협약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일반적 과학·기술지식의 확대로서의 기초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연구개발보조금에서 허용되는 지원수준은 개발계획들이 존속되는 총기간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계산되며, 이때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①연구원, 기술자 및 기타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②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이용되는 도구, 설비, 토지 및 건물비용, ③구입된 연구, 기술, 지식, 특허권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하여 이용되는

상당 및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비용, ④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간접비용, ⑤재료, 공급품과 같이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 등이다. 다만,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WTO 협정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각국의 경험과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에 비추어 보아 주요용어들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된다.

나)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일반적인 지역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되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특정성을 갖지 않은 형태로 지원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때 낙후지역이라 함은 일시적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발전지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즉, 직전 3년동안 측정된 해당지역의 1인당 소득, 1인당 가계소득 또는 1인당 GDP중 하나가 전국평균의 85% 이하이거나, 또는 직전 3년동안 측정된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110% 이상인 지역으로서 경제적, 행정적으로 동일성을 지니는 행정단위이어야 한다.

이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보조금」은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원상한액을 달리 설정하여야 하며, 지원상한액은 투자비용이나 직업창출비용등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입증이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이 지역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됨으로써 수혜대상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한정되지 말아야 한다. 즉, 보조금이 전체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특정한 고립지역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다) 「환경보조금」은 최소한 2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장이나 건물)를 새로운 환경관련법규나 규정에 적용시키기 위한 비반복적인 1회의 지원으로서 개선비용의 20%까지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때 지원규모는 기업의 오염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감축수준에 비례하여야 하며, 새로운 장비, 기계와 생산공정을 채택하는 모든 기업에게 이용가능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향후로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설비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과 같이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은 시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WTO보조금/상계조치 위원회에 통보해야만 한다. 즉, ①보조금의 형태(무상지원, 융자, 조세감면 등) ②단위당

보조금, 이것이 불가능하면 연간 보조금총액(가능하면 전년도에 단위당 평균보조금을 나타내는), 또는 보조금 소요예산총액, ③정책목표와 보조금의 목적, ④ 보조금의 지속기간과 기타 보조금에 부과된 시한 ⑤보조금의 무역효과측정을 위한 통계자료.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을 사용하는 회원국은 매년 최근의 운용현황을 동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제도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전년도 이후의 제도수정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타 회원국은 통보된 제도의 개별 보고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WTO 사무국은 특정성이 있는 허용보조금에 대한 통지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체약국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검토결과를 동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도의 적정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검토결과(또는 사무국이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 그 자체)를 신속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자금급여제도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가)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금급여제도

현행법제상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금급여제도로서는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급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 계열회사촉진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7조)
- 중소기업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교부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
- 산업표준화촉진업무에 대한 보조금 (산업표준화법 제35조)
- 소계곡수력발전소 시설사업비의 보조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제1·3·4·5·6·7·16조)
- 가스안전기술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보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9조)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 6 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전소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지점 조사 경비의 보조 (전원개발지점조사비 보조금교부규칙 제1·3·5·6·13조)
등을 들 수 있다.

(나) 유통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그 허용성에 의문이 없는 보조금제도

현행법제상 유통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그 허용성의 의문이 없는 보조금으로서

- 도·소매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보조 (도·소매업진흥법 제42조)
 - 유통산업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3조)
 - 항공운송사업진흥을 위한 자금보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 항공운송사업진흥을 위한 장려금 교부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4조)
 -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관광진흥법 제53조)
 - 민간항공단체의 육성을 위한 자금의 일부보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9조)
 - 버스노선개설명령에 의한 운영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육운진흥법 제5·11조)
 - 여객선의 취항·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이나 예비선박의 확보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지급 (해운법 제17조)
 -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보조 (해운산업육성법 제4·20조)
 -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해운업자에 대한 장려금 교부 (해운산업육성법 제14·20조)
 - 국제항로 취항결손에 대한 보조금교부 (해운산업육성법 제15·20조)
- 등을 들 수 있다.

(다) 연구개발보조금

현행법제상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서

- 국제공동연구사업 대한 자금지원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8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4)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출연 또는 보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
 -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에 대한 자금출연 또는 보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 원자력관계 연구에 대한 연구보조비 또는 위탁연구비 교부 (원자력에 관한 연구보조금및위탁연구비보조규정)
 - 유전공학연구사업에 대한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 (유전공학육성법 제18조 제3항)
 -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우선적 연구개발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5조)
 -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출연 (공업발전법 제13조)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에 대한 자금지원 등 (발명진흥법 제25조)
 -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수행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2·3조)
 - 발명장려보조금교부 (특허법 제27조)
 - 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발명진흥법 제23조)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8·9·10조)
 - 산업디자인·포장 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사업개발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
- 등을 들 수 있다.

(라) 지역개발보조금

현행 법제상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급여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의 예는 찾기 어렵다. 조항의 내용상

-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방재정법 제14조)
- 제도는 지역개발보조금의 성격을 띠다고 분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 환경관련보조금

현행 법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자금급여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제도로는

- 농어촌 환경보존에 대한 자금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8조)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집행비용보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금의 보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비용지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폐기물관리법 제52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재정적 지원 (폐기물관리법 제53조)
- 환경보전관련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 환경보전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비용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등을 들 수 있다.

3. 금융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금융지원제도의 의의

보조금교부제도가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금융지원제도는 행정청이 기금·준비금·자금등의 형식으로 조성된 자금을 경제주체에게 장기저리등 일반시장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청이 융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고,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금융지원은 지원된 자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의 형태이므로, 무상의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금급여제도와 구분된다.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은 금

융지원의 각 근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하나, 대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국가·정부투자기관·기금등으로부터의 예수금, 채권·복권등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금융지원제도가 지원된 자금의 상환을 전제로하는 제도이므로 보조금의 경우와는 달리 자금지원의 요건을 정하여 심사하고, 지원된 자금의 상환을 위한 각종 사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금융지원은 기술개발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고, 금융지원업무담당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식의 금융지원제도는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형식의 결정행위와 공법상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 형식의 자금교부행위의 2단계 행위로 이루어진다. 국가기관이 자금을 제공하면서 금융지원의 요건을 금융기관에게 고시하고,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의 고시에 따라 스스로 금융지원의 대상 및 액수를 결정하고 자금을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금융기관간에는 행정규칙의 반포 및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의 형태로 자금수수가 이루어질 것이나, 국가기관과 보조금수혜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보조금의 급여자체는 금융기관과 보조금수혜자간의 사법상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조금급여의 결정 및 급여행위도 당사자에게 사적자치의 허용되는 순수한 사법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요건이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금융기관은 그 구속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금융지원보조금의 공여에 있어서 보조금수혜자가 근거법령 등이 정한 각종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원업무담당기관은 그 설치·운영등에 관한 법률 뿐만아니라 각종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한 법령이 정한 제약을 받으며, 사업자도 이 한도에서 관계법령의 제약을 받는다.

금융지원제도는 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고,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특성상 그 근거법령의 조사 및 보조금유형의 구분이 어렵고 애매하다. 또 시장금리와 정책금융상의 금리와 차액만이 실제적 보조금의 액수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이 금리의 우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지원제도를 금지보조금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UR협정과 무관한 금융지원제도

(1) UR협정과 무관한 금융지원제도의 범위

자금급여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금융지원제도가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특정성」여부는 오직 기업 또는 산업체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만 판단하도록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2조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산업체가 아닌 자연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제도는 국제규범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제협정의 진전에 따라 그 개편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헌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적합성 및 필요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제상 UR협정과 무관한 금융지원제도

현행 법제상 UR협정과 무관하게 개인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되는 금융지원제도의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실정법에 나타난 예로는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대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 46조)를 들 수 있다.

나. 농림업관련 금융지원

농림업관련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금급여제도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국제규범에 따라 농림업관련 금융지원제도는 수출보조금과 허용보조금 및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1) UR농산물협정상의 수출보조금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금융지원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농수산물 협정상의 금융지원제도로써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어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을 들 수 있다.

- 농산물수출장려를 위한 자금 융자 (농산물가격유지법 제6조)

- 수출단지등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3조)
- 지정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14조)
- 지정품목에 대한 진흥기금의 융자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28조)
-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

(2)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R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내보조금은 “연구, 병충해방지, 유통·판매촉진, 도로 등 하부구조지원등 정부제공 일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생산량과 무관한 소득지원, 탈농·휴경보상,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 등 생산자 직접보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다. 현행 법제에 규정된 금융지원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산지가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 산지가공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전통요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 농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보급등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를 위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 품질인증받은 특산물 등에 대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 가공원료의 안정성생산·공급에 위한 자금지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 지정생산단지에 대한 생산자금의 융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

제 6 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생산자금의 융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영농·어 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융자 앞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자금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 수입자유화품목 생산의 포기 또는 품목을 바꾸는 경우의 자금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경작에 대한 우선직 금융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
- 농지구입자금의 우선적 지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 장기임대차 간척농지등의 매입에 대한 자금지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6조)
- 전업농가의 영농복귀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지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업기계구입등에 대한 자금지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보조기종의 농업기계생산에 대한 자금융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공동이용을 위한 농업기계의 구입·운영관리등에 대한 경비지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
- 농지의 개발사업 및 영농비의 자금지원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9조)
- 산림사업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한 융자 (산림법 제106조)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융자 (산림법 제109조)
- 양곡의 관리와 수급조절관련 사업의 융자 (양곡관리법 제26조)
- 영농기술자에 대한 영농자금 등 우선적 지원 (영농기술훈련규정 제11조)
- 지력증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자금조성 (지력증진법 제7조)
- 초지조성에 대한 자금융자 (초지법 제13조)

(3)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 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금융지원제도중 농림업에 대한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

상이 되는 금융지원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낙농진흥에 대한 융자 (낙농진흥법 제5조)
-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공업 등에 대한 융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5조)
- 미강착유장려를 위한 자금융자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
- 사료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융자 (사료관리법 제3조)
- 인삼경작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인삼사업법 제9조)
- 인삼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인삼사업법 제20조)
- 잠사류의 생산·수집·가공·수출에 대한 자금융자 (잠업법 제24조)

라.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1)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의 의의 및 범위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3조에 규정된 금지보조금의 형태를 띠는 금융지원제도는 수출보조금과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수출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지칭한다. 금융지원제도도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직접보조금이란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는 직접적인 자금융자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공여시에 재할인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보조금공여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조달비용보다도 낮은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하거나, 수출기업 자금조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즉, 수출신용을 공여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거나 수출신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재할인지원 등 정부가 취급기관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 수출보조금으로서 성립한다. 다만, 「수출신용에 관한 OECD 가이드 라인」과 이에 부속된 OECD 다자간조선협정, 항공기협정, 핵플랜트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들 협정에 부합하여 수출신용을 공여하는 한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보전에 불충분할 정도로 수출보험료율이나 보증료율을 낮게 책정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미

국상무부는 직전 5년 동안의 수출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운영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며, 이때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료율과 기업이 받는 혜택의 차이가 바로 기업에 대한 수혜이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여되는 보조금이다. 즉, 국산품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산품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대체 등을 조건부로 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하면 수입대체보조금이 된다.

(2) 현행 법제상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현행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근거법령 중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금융지원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법제상 조사된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관련 법제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용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
-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마.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특정성을 띠고 있으며, 앞서 자금지원제도에서 논한 심각한 손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금융지원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용자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 업종별합리화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공업발전법 제10조)
- 광물자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광업법 제102조)
- 광산물비축자금의 용자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0조)
- 석탄산업육성과 수요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석탄산업법 제28조)
- 대체물질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항공우주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2조)

바.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1) 허용보조금제도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의 의의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금융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종류의 상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는 협약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2)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

자금급여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가)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

현행법제상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전기사업자의 지원등 (농어촌전화촉진법 제20조)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액의 지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1조)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54조)
- 가스유통구조 개선사업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용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9조)
- 전기공사등의 사업지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
-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등의 지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 중소기업자의 유희시설의 해외이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의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대기업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6 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소기업창업자금 투·융자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에 대한 투·융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

(나) 유통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그 허용성에 의문이 없는 보조금제도

현행법제상 유통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금융지원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시장개척자 등의 자조적 노력에 대한 자금지원 (도·소매업진흥법 제8조)
- 도·소매업자의 직배송단지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소매업진흥법 제19조)
- 지정연쇄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
- 도·소매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융자 (도·소매업진흥법 제42조)
- 유통산업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3조)
- 화물터미널 사업에 대한 자금 (화물유통촉진법 제36조)
- 항공운송사업진흥을 위한 자금융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육운진흥법 제4·11조)
- 창고업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 융자 (화물유통촉진법 제47조)
- 복합운송주선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화물유통촉진법 제22조)
-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융자 (해운산업육성법 제4·20조)

(다) 연구개발관련 금융지원제도

현행법제상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서는

- 기술개발촉진자금의 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 기술개발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 산업기술연구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 소프트웨어공동개발구역에 대한 금융지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9조)
- 에너지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 유전공학연구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유전공학육성법 제16조)

- 유전공학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유전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3조)
-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 기업의 기술개발,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융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 산업디자인 및 포장전문회사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9조)
-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대한 금융지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라) 지역개발관련 금융지원제도

현행 법제상 지역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제도는 찾기 어렵다. 현행법제에서 조사된 예로는 아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 공업단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7조)

(마) 환경관련 금융지원제도

현행법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금융지원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자금의 융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
-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4.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조세감면제도의 의의

자금급여제도나 금융지원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급여함으

로써 보조금수혜자를 지원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조세감면제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에게 징수하여야 할 일정한 조세부담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사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극적인 자금급여가 아니라 소극적인 급여면제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자금급여 또는 금융지원제도와 구별된다.

조세감면제도는 납세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의 행정수단으로서 경제활동을 위한 일정한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할인세율 또는 면세의 적용을 통하여 목적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행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사경제주체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할 일정한 조세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국가적 수입의 포기를 통한 당사자의 지원이므로 넓은 의미의 보조금의 일종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부과를 통하여 전체를 거두어서 보조금수혜자에게 그 중의 일정금액을 급여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부과될 조세액중 일부만을 거둬으로써 보조금수혜자에게 같은 금액의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나 국가적 차원 또는 당사자의 차원에서 일정한 자금의 급여와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제도도 엄격한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조세감면제도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속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법제상 규정된 조세지원제도는 그 지원방법에 따라 직접지원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과세와 간접지원인 준비금과 특별상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저율과세등의 직접지원은 그 감면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종국적이어서 간접감면과 비교할 때 지원효과가 크고 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상의 불공평을 보다 심화시키고 경험적으로는 세수감수효과가 큰 단점이 있다. 반면 준비금과 특별상각의 간접지원은 지원시점에서 경감된 세액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환수하므로 종국적인 지원이 아니고 세부담을 이연시켜 무이자금융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나 세수감소면에서는 경험적으로 직접감면보다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감면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나. UR협정과 무관한 조세감면제도

(1) UR협정과 무관한 조세감면제도의 범위

자금급여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조세감면제도가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특정성」여부는 오직 기업 또는 산업체에 제공되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만 판단하도록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2조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산업체가 아닌 자연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제공되는 조세감면제도는 국제규범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제협정의 진전에 따라 그 개편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헌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적합성 및 필요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제상 UR협정과 무관한 조세감면제도

현행법제상 UR협정과 무관하게 개인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되는 조세감면제도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유전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 (유전공학육성법 제19조 제1항)·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의5)
-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의5)
-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발명진흥법 제28조)
- 천재지변등에 따른 주민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179조)
- 천재지변등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195조)
- 천재지변등에 따른 농지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02조)
- 천재지변등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34조)

나. 농림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농림업관련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금급여제도에서 기술된 바와 같

다. 국제규범에 따라 농림업관련 조세감면제도는 수출보조금과 허용보조금 및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1) UR농산물협정상의 수출보조금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농수산물 협정상의 조세감면제도로써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어 감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2)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R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내보조금은 “연구, 병충해방지, 유통·판매촉진, 도로 등 하부구조지원 등 정부제공 일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생산량과 무관한 소득지원, 탈농·휴경보상,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 등 생산자 직접보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다. 현행 법제에 규정된 조세감면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경작에 대한 우선적 조세상의 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
- 효율적인 농어촌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조세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2조)
- 농지개발에 대한 조세 및 수수료의 감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1조)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 위탁협동회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
-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 58조)

(3)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 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금융지원제도중 농림업에 대한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다.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1)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의 의의 및 범위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3조에 규정된 금지보조금의 형태를 띠는 조세감면제도는 수출보조금과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직접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을 특별히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환급, 유예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 다만, 각주57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본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란 일반적인 기업(enterprise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부과하는 것보다도 수출과 관련하여 특별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면 수출보조금으로서 성립한다. 물품생산이나 유통의 최종단계에서 징수되는 간접세의 면제 및 환급이 수출보조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국내소비용 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액을 초과하여 수출물품의 간접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수출물품생산의 최종단계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의 면제나 환급은 그것이 초과면제나 초과환급이 아닌 이상 수출보조금이 아니다(동 협약 제1조제1항의 각주). 물품생산의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 누적적 간접세에 대한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수출보조금으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의 규모를 초과하여 수출용물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는 수출보조금이 된다. 이때 재화와 용역은 기계, 노동력, 자재, 에너지, 기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생산요소이다. 다만, 국내소비용 물품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허용되지 않을지라도 수출용 물품에 부과된 누적간접세의 면제, 환급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초과면제, 초과환급 또는 초과유예가 아닌 이상 보조금이 아니다. 이때 면제, 환급 또는 유예의 대상은 전술한 언급된 기계와 노동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로서 물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요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촉매재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허용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수출보조금의 예외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⑨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이 초과환급되면 수출보조금이 된다. 다만, 기업이 수입원자재를 가지고 수출상품을 제조, 수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국산원자재로 대체하여 수출상품을 제조, 수출하였을 경우에도 수입과 그 대응 수출이 2년을 넘지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수입원자재를 수출상품의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의 수입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제도이다. 즉, 국산품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산품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대체 등을 조건부로 하여 조세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면 수입대체보조금이 된다. 동 조항은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는 바, 지금까지 동 조항을 운용한 사례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할 것이다.

(2) 현행 법령상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현행 법령상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연불수출선박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10조)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마.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제도가 특정성을 띠고 있으며, 앞서 자금지원제도에서 논한 심각한 손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조세감면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 공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 첨단·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부칙 제7조)
- 방위산업제품 제조용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부칙 제7조)
- 방위산업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
- 방위산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바.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1) 허용보조금의 의의와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금융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종류의 상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는 협약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2)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자금급여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가)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세감면제도

현행법제상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세감면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자도입법 제14조)
- 외국인 투자사업의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외자도입법 제15조)
-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 103조)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 28조)
- 도·소매업의 진흥위한 세제지원 (도·소매업진흥법 제42조)
- 유통산업근대화에 대한 세제지원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14조)
- 창업중소기업의 제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세감면규 제법 제114조)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의경영 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 중소기업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규제 법 제12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 14조)
-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 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으로 인한 각종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사업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
- 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나) 연구개발관련 조세감면제도

현행법제상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감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사용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3조)
- 신기술사업금융회사·투자조합 및 이에 투자한 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조세감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다) 지역개발관련 조세감면제도

현행법제상 지역개발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공업단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6조)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나) 환경보호관련 조세감면제도

현행법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조세감면제도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환경보전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28조의7)
- 대체물질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54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5.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의 의의

국유재산등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

원하지는 않지만 국공유재산등을 사경제주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여해 줌으로써 특정 경제활동을 지원·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며,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여는 그 사용료 또는 실시료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넓은 의미의 보조금제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국유의 ①부동산과 그 중물, ②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중물, ③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국채증권·지방채증권·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⑥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부동산신탁의 수익권등이 포함된다(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 등의 양여 및 대여의 내용에는 이들 각종 국공유재산, 정부에 귀속된 기기·설비·시작품 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여, 정부소유의 특허권등 각종 권리의 무상 양여 및 실시료를 면제해주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은 그 관리계획에 따라 엄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 중 오직 잡종재산만이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 및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잡종재산은 일반적으로는 그 처분 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일반에 공고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공유재산, 정부에 귀속된 기기·설비·시작품 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대여, 정부소유의 특허권 등 각종 권리의 무상 양여 및 실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는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여제도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령은 이를 위한 각종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며,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여는 그 사용료 또는 실시료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조금제도에 관한 각종 법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나. UR협정과 무관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1) UR협정과 무관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의 범위

자금급여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금융지원제도가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특정성」여부는 오직 기업 또는 산업체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만 판단하도록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2조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산업체가 아닌 자연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제공되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국제규범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제협정의 진전에 따라 그 개편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헌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적합성 및 필요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제상 UR협정과 무관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현행 법제상 운용되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중 아래의 제도는 국제규범과 무관하며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에 해당된다.

- 연구용역수행자, 연구용역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
-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4조)

다. 농림업관련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농림업관련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금급여제도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국제규범에 따라 농림업관련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수출보조금과 허용보조금 및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1) UR농산물협정상의 수출보조금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농수산물 협정상의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로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어 감축대상이 되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2)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R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내보조금은 “연구, 병충해방지, 유통·판매촉진, 도로 등 하부구조지원 등 정부제공 일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생산량과 무관한 소득지원, 탈농·휴경보상,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 등 생산자 직접보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다. 현행 법제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로써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국유지의 무상양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 농지개량 사업용 기계기구의 무상양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 국유림의 무상대부등 (산림법 제75조)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산림법 제79조)
- 국유림안의 토석의 무상양여 (산림법 제87조)
- 방제용약제와 기구의 무상 양·대여 (식물방역법 제24조)
- 종축의 무상대여 (축산법 제13조)

(3)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 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조세감면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금융지원제도중 농림업에 대한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라.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3조에 규정된 금지보조금의 형태를 띠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수출보조금과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현행 법령상 규정된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가운데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마.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가 특정성을 띠고 있으며, 앞서 자금지원제도에 서 논한 심각한 손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떨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생산의 신고사업자에 대한 국유시설 및 기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3조)
- 군수품의 제조·수리 기타 시공계약으로 인한 군수품의 무상양도·대여 (군수품관리법 제14·15조)
- 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바.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금융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종류의 상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원제도는 협약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 중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는 대개가 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허용보조금으로 특별히 분류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양여 및 대여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6. 공공구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공공구매제도의 의의

자금급여, 금융지원, 국유재산등의 양여 및 대여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경제주체에게 일정한 자금 또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며, 조세감면제도는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일정한 조세부담을 소극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사경제주체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정부가 수요자로서 특정 국가목적에 합당한 각종 용역 및 제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특정경제활동 관련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공공구매를 통한 경제지원제도이다.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갖는 강력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특정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특정 경제활동의 성패는 그 사업자가 생산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수요창출여하 및 계속적 수요획득 가능성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수요자인 국가의 구매정책에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구매제도는 특정 경제주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구매제도는 경쟁적으로 일정한 제품을 개발한 당사자중의 하나와만 정부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고, 그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계약체결과정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경쟁에서 탈락되도록 작용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구매제도는 일방적 수의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이중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일반시장에서의 각종 조건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공공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제도의 한 형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등이 제품의 구매를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는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예산회계법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공계약의 일반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제73조). 예산회계법상 규정된 정부구매계약에는 제품의 구매계약 이외에도, 제품의 제조계약· 각종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이 포함된다. 예산회계법은 정부구매계약의 형태로는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은 예산회계법이 정한 특별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제76조 제1항 제4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요자로서 특정 국가목적에 합당한 각종 용역 및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특정경제활동 관련 재화와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나. UR협정과 무관한 공공구매제도

자금급여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공구매제도가 국제규범상 허용

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특정성」여부는 오직 기업 또는 산업체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만 판단하도록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2조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산업체가 아닌 자연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제공되는 공공구매제도는 국제규범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제협정의 진전에 따라 그 개편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헌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적합성 및 필요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구매제도는 결국 기업적 생산품에만 적용될 것이므로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를 규정한 현행법제는 찾아볼 수 없다.

다. 농림업관련 공공구매제도

농림업관련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은 자금급여제도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국제규범에 따라 농림업관련 공공구매제도는 수출보조금과 허용보조금 및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보조금으로 구분된다.

(1) UR농산물협정상의 수출보조금으로 감축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농수산물 협정상의 공공구매제도로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어 감축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2)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R농산물협정상의 보조금으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국내보조금은 “연구, 병충해방지, 유통·판매촉진, 도로 등 하부구조지원 등 정부제공 일반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생산량과 무관한 소득지원, 탈농·휴경보상,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 등 생산자 직접보조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다. 현행 법제에 규정된 공공구매제도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규격표시된 농수산물 등의 우선구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3) UR농산물협정상의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 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

현행 법제에 규정된 공공구매제도중 농림업에 대한 국내보조금으로서 감축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양곡의 수급조절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양곡매입 (양곡관리법 제4조)
- 농수산물의 가격유지를 위한 농산물 매수 (농산물가격유지법 제3조)
-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출하조절용 농수산물의 구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0조)
- 농수산물 과잉생산시의 가격안정을 위한 구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라.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

「UR보조금/상계조치협정」 제3조에 규정된 금지보조금의 형태를 띠는 공공구매제도는 주로 수입대체보조금의 유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가지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물품 대신에 국내물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여되는 보조금이다. 즉, 국산품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산품사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수입대체를 촉진할 목적으로 공공구매제도를 사용할 경우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역재의 경우에 수입물품과 비교하여 국산물품의 사용에 우대조치를 취하면 일응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는

- 국산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제도가 수입대체보조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제도가 특정성을 띠고 있으며, 앞서 자금지원제도에서 논한 심각한 손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상계가능보조금의 성격을 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공공구매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제 6 장 보조금제도 관련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위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우선구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바.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

(1)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의 의의 및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금융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종류의 상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매제도는 협약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2)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

자금급여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제상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공공구매제도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가)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

현행법제상 특정성이 결여되어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지정품목·지정가공기술의 규격표시 제품 및 품질인증표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3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적 물품구매, 단체수의 계약 체결, 중소기업자의 신개발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발명진흥법 제27조)

(다) 연구개발관련 공공구매제도

현행법제상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산업기

술연구조합육성법 제15조)

- 유전공학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유전공학육성법 제 13조)

(다) 환경보호관련 공공구매제도

현행법제상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구매제도로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띠는 보조금으로서의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 재활용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0조)

제4절 현행 보조금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입법의견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필두로 한 실효성있는 국제적 규범체계의 등장으로인하여 이와 관련되는 국내법령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명시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보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다각적인 법령의 검토 및 개선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현행 보조금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국내법령에 반영해 나가는 작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국제적으로 명백히 금지항목에 해당하는 보조금제도가 법령에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철폐하거나 허용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제도는 수출보조금 또는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보조금이 다수 발견되며, 그 내용은 현황과 문제점의 제시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둘째로 금지대상은 되지 않지만 상계관세의 대상으로 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그 특정성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적 제재 가능성을 근거법령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허용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보조금은 그 국민경제적 의의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의 육성, 환경보호, 지역개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더욱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의 육성과 지원정책은 국가전체 더 나아가 전세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부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보조금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 및 형성의 자유를 제약하고 경쟁기업에 대한 침해가 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공정무역 및 자유무역의 기치아래서 보조금제도를 규제하는 규범이 효력을 발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도 현행 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외적으로 자생력을 가진, 뚜렷한 자기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각 공행정주체가 그 관할권의 범위안에서 국가경제의 경쟁력 및 공급능력이 공공재정의 특별한 도움없이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재정·사회적 제반여건을 최선을 다하여 형성하도록 하며, 사기업의 자기결정능력, 위험부담능력, 자기혁신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보조금관련 법령을 국제규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다각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경제가 보다 강화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종합적으로 고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입법의견으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통일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각종 경제행정규제완화, 산업 및 금융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체질개선, 과학기술의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외국인 투자확대, 근로자 복지증진등에 따른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진단에 기초한 법제개선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특히 국민경제의 세계경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서헌제, 시장개방과 법제개편, 국제화와 법적 대응,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제 4회 공개토론회, 1994.5.19. 27 면 이하
-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1994.3.
-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1994.5.
- 김중권, 자금조성에 관한 연구 -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87.12.
- 신유균, 신국제경제질서, 한국무역경제, 1993.2.
- 신유균, 국제화시대의 수입관리제도 발전방향,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4.1.
- 신유균, 관세법/대외무역법의 발전적 개편론, 한국무역경제, 1994.11.
- 오준근·송종국·정상조,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보고서, 1994. 7.
- 홍정선, 경제행정법과 교부지원, 고시계 1990.7. 79면 이하
- 신희택, 우루과이라운드 에서의 서비스 교역분야 일반협정에 관한 검토, 1994.5.
- 이운재, UR 협상에 따른 제반 문제점 개관, 1994.2.
- 김찬진, 미국통상법, 박영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 총점검, 1993.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 세부점검, 1994.3.
- 김준동,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 간접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3-09, 1993.12.
- 채 욱,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993.1.
- 경제기획원 국회보고자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경위 및 결과, 1993.12.
- 경제기획원, UR 협상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영향 및 대책, 1994.1.
- 경제기획원, UR 협상 후속추진과제 (안), 1994.1.
- 한국개발원, 국제화시대의 경쟁정책, 1993.12.
- 남중현·장의태, 우루과이라운드의 규율분야협상과 산업·무역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2.6. ·김남두, 보조금·상계조치, 「우루과이라운드

- 의제별 협상의 진전상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 유재원,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정책연구 91-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유재원, 산업지원제도,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연구 9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2.
- 채욱,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연구 9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재무부 관세국, UR 협정에 따른 보조금의 분류기준, 1994.6.
- 재무부 관세국, UR 보조금·상계관세 최종협정 해설 및 주요쟁점 정리, 1994.5.
- 재무부 관세국,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안 - 1993.12.15. TNC 채택, 1993.12.
- 재무부, UR 보조금·상계관세협상, UR 협상대책자료 1, 1991
- 재무부, 우리나라의 산업지원제도, UR 협상대책자료 3, 1991
- 재무부,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안 타결과 향후 대응방향, 1993.12. (보도자료)
- 재무부,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른 보조금제도 개편작업 추진현황 및 계획, 1994.2. (보도자료)
- 임주영·이기영, 산업지원제도와 UR 협정 타결의 의의,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 자료 UR 타결이후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 1994.4. 5면 이하
- 임주영, UR 타결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 자료 UR 타결이후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 1994.4. 11면 이하
- 이기영, UR 타결에 따른 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세미나 자료 UR 타결이후 조세·금융지원제도의 개편방향, 1994.4.
- 이기영,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1994.3. 한국조세연구원 정책연구자료
- 윤건영·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10.
- 김철수, WTO 출범과 산업정책방향, 「매경 오피니언 100 조찬간담회 강의자료」, 1994.5.6.
- 손상호/윤재형, UR 보조금·상계조치협정 해설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4. 6.
- 손상호, UR 보조금, 금융자율화와 산업금융·세계의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4.

- 손상호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연구실장), 주요 선진국의 보조금 현황 및 국내 산업지원제도 개편방안, 매일경제신문 94.7.1. 4면 에서, 수집요망
- 김기홍, UR 협상과 한국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총서, 1991.12.
- 상공부, 산업지원세제, 1990
- 상공부, 산업정책업무편람, 1991
- 상공자원부 국회보고자료, UR 협상경위 및 결과, 1993.12.
- 상공자원부, WTO 출범과 산업정책의 방향 (장관간담회 강의자료), 1994.5.
- 상공자원부, WTO 체제하에서 주요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1994.5.
- 상공자원부, 최근 일본정부의 기업세계화 지원, 1994.4.
- 선우석호 · 신현수 · 김미숙, 우리나라 보조금의 운용효율분석, 연구보고서 제 162호, 산업연구원 1989
- 산업연구원, 1990년대 산업정책방향과 정부의 역할, 1993.2.
- 중소기업연구원, UR과 중소기업, 1993.12.
- 대한상공회의소,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1989
- Jackson, John H. GATT 해설, 한국무역협회, 1988
- 대한무역진흥공사, 선진국의 대한 수출규제사례조사, 198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해설집, 1989.8.
- 한국기술용역협회, 기술용역에 관한 예산회계법 등 계약관련법령 개정연구, 1992.9.
- 송종국, 기술혁신 지향적 정부공공구매제도의 확립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 · 기획본부 기본연구, 1993.1.
- 송종국 · 박용태, UR 협정에 타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기술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 김광두 · 정운찬, 금융혁신과 기술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 · 기획본부 기본연구, 1992.11.
- 김선근, 기술금융의 제도적 확립과 발전방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 · 기획본부 기본연구, 1992.11.
- 법무부, UR의 법적 고찰 (상) (하), 1994.5.
- 외무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994. 4. 15. 마라케쉬), 1994.6.
- 최동현 · 최재선, UR 서비스협상 동향과 해운항만분야 대응방향, 해운산업연구

- 원 정책자료, 1993. 11.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우루과이라운드와 주요국의 농업정책, 입법참고자료 제 276호, 1991.
- 유환민, UR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 따른 국내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입법조사월보 1994.3월호, 12면 이하
- 유재영, 보조금에 관한 연구 -입법기술론 또는 입법학의 관점에서, 입법조사월보 1993. 7·8월호, 53면 이하
- 임재주, UR 농산물 협상 타결에 대응하는 국내 농업지원대책, 입법조사월보 1994. 1·2월호, 103면 이하
- 이한길, 이증미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993.5.월호, 1면 이하
- Ehlers, Die Kontrolle von Subventionen, DVBl. 1993, S. 862 ff.
- Ehlers, Die Handlungsformen bei der Vergabe von Wirtschaftssubventionen, VerwArch 1983, S. 112 ff.
- Henseler, Staatliche Verhaltenslenkung durch Subventionen im Spannungsfeld zur Unternehmensfreiheit des Begünstigten, VerwArch 1986, S. 249 ff.
- Happe, Zur innerstaatlichen Wirkung von Beihilfenentscheidungen gem. Art. 93 II EGWG, NVwZ 1993, S. 32 ff.
- Dickersbach, Die Entwicklung des Subventionsrechts seit 1984, NVwZ 1993, S. 846 ff.
- Jaras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und Wirtschaftsverfassungsrecht, 1984
- Püttn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989
- Sto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989
- Friauf,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Wirtschaftslenkung und Sozialgestaltung durch Steuergesetze, 1966
- Rüfner, Formen öffentlicher Verwaltung im Bereich der Wirtschaft, 1966

연구보고 94-4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4년 12월 25일 印刷

1994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8,000 원

